

건축정책 실행력 제고를 위한 건축기본법 개정 연구

Revision of the Framework Act on Building to Improve the Implementation of Architectural Policy

김영현 Kim, Younghyun
이여경 Lee, Yeokyung
이주경 Lee, Jookyung
백선경 Baek, Seongyeong
윤호선 Yoon, Hoseon

(aur)

건축정책 실행력 제고를 위한 건축기본법 개정 연구

Revision of the Framework Act on Building to Improve the Implementation of Architectural Policy

지은이	김영현, 이여경, 아주경, 백선경, 윤호선
펴낸곳	건축공간연구원
출판등록	제2022-12호 (등록일 '08. 02. 18.)
인쇄	2022년 12월 31일, 발행: 2022년 12월 31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8층
전화	044-417-9600
팩스	044-417-9608

<http://www.auri.re.kr>

가격: 25,000원, ISBN: 979-11-5659-388-1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건축공간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연구진

| 연구책임

김영현 건축정책본부장

| 연구진

이여경 건축공간법제연구단장

이주경 부연구위원

백선경 부연구위원

윤호선 연구원

| 연구심의위원

조상규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빅데이터연구단장

염철호 선임연구위원

강인호 한남대학교 교수

전영훈 중앙대학교 교수

| 연구자문위원

김승남 중앙대학교 교수

김승종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김명규 마실와이드 대표

김진욱 예지학 대표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남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윤서연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추용욱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진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장

조관우 국토교통부 사무관

홍성한 국토교통부 사무관

김기훈 국토교통부 주무관

제1장 서론

2007년 12월, 건축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건축기본법」이 제정되었다. 「건축기본법」은 건축의 생활공간적·사회적·문화적 공공성을 건축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천명하여 건축의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데 기여하였으며, 이후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 과정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정책과 입법 수요에 따라 후속 법률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한옥 등 건축 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건축물관리법」 등이 제정되어 건축정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왔다.

기본법이 지녀야 할 성격으로 정책의 체계화 및 종합화를 위해 개별법들을 연계하는 역할이 요구되지만 현재의 「건축기본법」은 개별법 간의 관계 및 연계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기본법의 기능적 측면에서 보면, 4차 산업혁명, 건축 안전, 빅데이터, 행정 프로세스 등 사회적 여건이 변함에 따라 유연한 대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건축문화 진흥'이라는 제한적 범위와 역할에 갇혀 있어 실효성 측면에서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건축 분야의 정책적 여건 속에서 「건축기본법」의 기본 법적 성격과 역할을 분명히 하고, 건축정책의 지속성과 실행력 제고를 위한 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제2장 건축기본법 고찰 및 현황

2장에서는 기본법의 법적 특성과 성격을 고찰하고, 건축기본법의 현황과 관련 여건을 분석하여 법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기본법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통해 기본법의 기본적인 기능을 범주화하고, 기본법의 법체계상의 위상을 재검토하였다. 그리고 현행 건축기본법의 구성을 검토하여 건축기본법에 누락된 사항과 법 구성 체계에서의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법의 특성을 구명함으로써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개정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첫째, 메가트렌드 변화에 따라 건축이 지향해야 할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여 건축정책의 기본이념과 방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건축기본법」 제정 당시 건축물의 공공성이 가장 중요한 화두였고, 따라서 건축의 공공적 가치 구현이 정책 이념으로 제시되었다. 하지만 사회·경제·환경 변화, 기술 발전 등에 따라 건축 분야에서 수용해야 할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유연한 자세를 가지고 건축정책의 이념과 방향성을 재검토해야 한다.

둘째, 건축에 관한 타 법령과의 관계 속에서 기본법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건축기본법」 제정 당시 ‘건축 관련 법률’은 4개였으나, 현재는 건축정책 분야별로 세분화되어 11개의 법으로 확대되었다. 개별법에 따른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법 정 계획도 늘어났으며, 이에 각 계획의 내용적, 위계적 측면이 모호해졌다. 따라서 「건축 기본법」과 건축에 관한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정책계획 간의 명확한 관계 설정이 시급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

건축 관련 법 제·개정에 따른 신규 계획 수립 현황

연도	법령	계획 명
2007	건축기본법 제정 (2007.12.21. 제정, 2008.6.22. 시행)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2010~2014)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2016~2020)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 (2021~2025)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정 (2012.2.22. 제정, 2013.2.23. 시행)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014~2018)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020~2024)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2013. 5. 22 제정, 2014. 5. 33. 시행)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2016)
2013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 (2013.6.4. 제정, 2014.6.5. 시행)	제1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019~2023)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행계획
	경관법 전부개정	제1차 경관정책 기본계획(2014~2019)

	(2013.8.6. 전부개정, 2014.2.7. 시행)	제1차 경관정책 기본계획(2020~2024)
2014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2014.6.3. 제정, 2014.6.4. 시행)	제1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2016~2020) 제2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2021~2025)
2019	건축물관리법 (2019.4.30. 제정, 2020.5.1. 시행)	(기타) 건축물 관리계획 작성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16호)

출처: 조사내용을 토대로 연구진 작성

마지막으로 건축정책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 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건축기본법」은 건축 관련 타 법령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다. 따라서 타 법령과의 관계 설정과 역할 분담을 기반으로 건축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제도적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3장 건축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과제

3장에서는 건축정책 실행체계별 추진 현황을 검토하고, 건축정책에 대한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법 개정 소요를 도출하였다.

「건축기본법」은 6개 장, 26개 조항으로, 세부적으로 정책 실행 측면에서 ‘건축정책의 수립’, ‘건축정책위원회 구성’, ‘건축문화진흥’, ‘한국건축규정’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축정책계획은 중앙부처(국토교통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건축정책 실행에 건축정책위원회의 역할은 주로 심의와 자문이 되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경우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 건축정책 국회보고에 대한 심의가 주 역할이 된다. 한편 건축문화 진흥을 위해 법에서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 법률에서는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법 제21조), 건축디자인 시범사업(법 제22조)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건축디자인시범사업의 경우 2009년부터 2017년까지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지원사업)의 명목으로 시행되었다.

더불어 건축정책 수요자 및 관계주체를 대상으로 현행 건축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건축정책의 실행력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원인을 조사·분석하기 위해 관련 분야 종사자를 중심으로 인식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건축기본법 및 건축정책계획(국가/지자체)의 인지도

건축기본법에 대해 관계 전문가 및 실무자가 얼마나 인지하고 활용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건축기본법(95.8%)과 건축정책기본계획(94.0%)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며, 특히 계획의 활용도 측면에서, 공공과 연구기관에서는 응답자의 64~70%가 계획을 업무에 활용한 적이 있다고 한 반면, 민간에서는 67.4%가 활용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즉, 민간 부문에 한정하였을 때 공공에 비해 계획의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건축기본법의 기본이념 및 정책방향에 관한 인식

건축기본법의 기본이념에 대한 인식에서는, 과반 이상(63.4%)의 응답자가 현재의 기본이념이 건축의 ‘공공적 가치 구현’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건축의 공공성’이 인구, 환경과 같은 여건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38.4%만이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기본이념의 수정 또는 보완과 관련해서는 ‘지속가능성’과 ‘환경 변화에의 대응’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더불어 응답자의 65.7%가 ‘건축의 공공적 가치 구현’ 외 새로운 정책 방향 설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 건축기본법 실행력 제고를 위한 개선 방향

설문 결과 건축정책기본계획이 건축문화진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축문화 진흥과 관련된 사업 대부분에 대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건축문화와 관련된 교육, 교류 등의 사업은 중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만족도가 낮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기금 마련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으며, 계획의 성격과 관련하여서도 건축정책기본계획이 여타 건축 관련 계획을 종합적으로 조정, 제시하는 상위계획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정책 실행체계 분석과 설문 결과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변화되는 정책 여건변화에 대한 반영이다. 먼저 건축기본법에서 다루는 정책의 대상과 범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건축의 공공성에 편중되어 있는 기본 방향을 확장하여 변화하는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가치를 지속적으로 흡수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정책 계획 간의 관계 정립 및 계획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 및 지역 건축 기본계획의 대상과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건축기본법 이후 제정된 개별 법령 및 계획관의 관계를 정립함으로써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위상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건축정책 실행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이다. 새로운 법령이 증가함에 따라 건축정책 및 행정업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정책 실행을 위한 지원 체계

는 여건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빅데이터, 건축산업, 건축문화 등 방대한 분야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건축정책 모니터링과 성과체계를 한 단계 고도화하는 형태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제4장 건축기본법 개정방향

4장에서는 앞에서 서술한 건축기본법의 체계와 구성, 기본법의 성격, 설문조사와 더불어 최근 제·개정된 타 기본법을 검토함으로써 건축기본법의 개정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제1장(총칙) 개정 방향

건축기본법 제1장 총칙 규정에는 기존의 건축정책 기본이념의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성’에 더해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제안하였으며, 건축기본법에서 사용되는 용어 정립 및 새로운 용어 정의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국민의 권리와 의무 조항에 헌법적 가치를 추가함으로써 헌법보완적 관계로서 기본법의 성격을 드러내었다.

- 제2장(건축정책의 기본방향) 개정 방향

UN 채택 의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포함하여 건축 및 도시공간환경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중요도와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2006년 제1차 지속가능 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현재까지 4차에 걸쳐 해당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제2장에서는 건축정책의 기본방향으로 기존의 ‘공공성’에 더하여 ‘지속가능성’ 규정 신설을 제안하였다.

- 제3장(건축정책의 수립) 개정 방향

제3장에서는 건축정책계획을 수립 주체(국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에 따라 구분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계획이 어떤 성격으로 수립되어야 하는지 명확히 규정하였다. 또한 건축정책기본계획이 건축관련 법령(녹색건축법, 한옥등건축자산법 등)에 의해 수립되는 계획과 정합성을 이루고 종합적 성격을 지닐 수 있도록 건축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개정을 제안하였다.

- 제4장(건축정책위원회) 개정 방향

법에서 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내용적 범위는 통상적으로 위원회의 역할, 범위, 구성, 지원 등의 범주에서 관련 사항을 규정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이러한 내용 외에도 성과보고, 건축 기본조사 등 다양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본 장에서는 새로운 규정을 신설 또는 수정하기보다 위원회에 해당되는 내용만 두는 형태로 축소 개정하였다.

- 제5장(건축정책 모니터링) 개정 방향

제5장은 현행법 제4장에 포함되어 있는 건축정책 성과점검에 대한 사항을 구분함으로써 그 성격을 분명히 하였다. 이에 더하여 성과점검이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건축정책 모니터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이의 모니터링을 위한 또는 모니터링에 의해 생성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표준화하기 위해 건축분야 정보체계의 통합 구축·운영을 제안하였다.

- 제6장(건축문화의 진흥) 개정 방향

건축정책의 실질적인 시책에 해당하는 부분은 건축문화의 진흥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법은 재정지원, 건축디자인 기준 설정 및 시범사업, 민간전문가 참여, 설계공모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재정지원의 경우 재원 마련을 위한 기금 및 회계에 대한 규정이 누락되어 있고, 대표적인 정책사업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은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현재는 중단된 상태이다. 따라서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새로운 시책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제6장에서는 기존의 규정에 더해 관련 행사, 연구, 재원마련 등의 새로운 규정을 제안하였다.

제5장 결론

건축 관련 법령의 모법 역할을 하고 해당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조정·종합하는 건축기본법이 2007년 제정되었다. 이후 건축 관련 법령들이 세분화 또는 분별화 되면서 선언적 규정에 머물렀던 내용들이 구체화 되었다. 이로 인해 여전히 선언적 규정에 머물러 있는 건축기본법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모법 또는 정책의 종합적인 역할 의미 또한 퇴색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의 사회적 여건변화와 신규 법령들의 제정 현황을 검토하여 건축기본법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 개정의 첫 단계로써 다음과 같은 개

선사향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먼저 건축기본법의 구성 및 형식적 측면에서, 구성체계는 기본법의 형식을 갖추었으나 세부 규정이 일관된 원칙에 구성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5장 구성 체계를 6장으로 구분하고, 세부 조항들을 일부 재편함으로써 입법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는 건축기본법이 관련 법령들을 종합·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세부적으로는 건축정책 및 건축문화 진흥에 관한 조문에서 관련 규정 내용을 보강하였다. 마지막으로 건축 및 공간 환경이 단순히 공간적 영역으로만 치부되지 않고 사회적 현안과 범지구적 과제 해결에 일조할 수 있도록 기술, 환경 등의 측면에서 사회적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정을 보완하였다. 세부적으로는 건축정책의 기본이념과 정책 방향에 포괄적인 형태의 규정을 두었으며, 건축문화 진흥 세부 규정에 기술, 산업, 교육, 문화행사와 관련된 신규 조문을 제안하였다.

최근 건축 관련 법령의 비약적인 증가와 분별화 과정에서 법률간의 관계 정립이 필요한 시점에서 건축정책의 통합 및 관련 분야 간 조정 역할을 위한 건축기본법 개정 연구는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건축 관련 법령들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건축 정책 전 분야를 포괄하는 규범성과 세부정책 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연구를 통해 제안된 내용은 건축기본법 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안) 작성에 반영 및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건축기본법, 건축정책, 건축의 공공성, 건축의 지속가능성

차 례

CONTENTS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2) 연구 목적 ——————	4
3) 기대효과 ——————	4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	5
3. 연구방법 및 연구수행체계 ——————	7
4.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	9

제2장 건축기본법 고찰 및 현황

1. 기본법의 법적 특성과 건축기본법 ——————	15
1) 기본법의 기능 및 유형 ——————	16
2) 기본법의 법체계상의 위상 ——————	20
3) 기본법의 구성 체계 ——————	22
4) 기본법의 법적 특성을 통해 본 건축기본법 ——————	24
2. 건축기본법의 현황과 여전 변화 ——————	30
1) 건축기본법의 제정 취지 및 변천 ——————	30
2) 메가트렌드 변화에 따른 건축정책의 사회요구 및 가치변화 ——————	35
3. 소결 : 건축기본법 개정의 필요성 ——————	40

제3장 건축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과제

1. 건축정책 실행체계별 추진현황 ——————	41
1) 건축정책 계획 수립 ——————	42
2) 건축정책위원회 구성 및 정책 성과관리 체계 ——————	46
3)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지원체계 ——————	52
2. 건축정책에 관한 관계자 및 전문가 인식 ——————	62
1) 조사 개요 ——————	62
2) 건축기본법, 건축기본계획의 인지도 및 활용도 ——————	64
3) 건축기본법의 기본이념 및 정책방향에 관한 인식 ——————	69
4) 건축정책 실행력 제고를 위한 개선방향 ——————	79

3. 건축기본법 개정 소요	96
1) 변화되는 정책 여건변화에 대한 반영 요구	96
2) 정책계획 간의 관계 정립 및 계획 역할 부여	99
3) 건축정책 실행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101

제4장 건축기본법 개정방향

1. 타 분야 기본법의 구성체계와 제·개정 현황	105
1) 타 분야 기본법의 제정 및 개정 이슈	105
2) 실행체계 비교·분석	117
3) 시사점	123
2. 건축정책의 기본이념과 범위 재정립	126
1) 건축정책의 이념 및 기본방향 재정립	126
2) 건축정책의 범위 및 대상	131
3. 건축정책 실효성 향상을 위한 개선방향	133
1) 건축 관련 법령 및 계획간의 관계 정립	133
2) 데이터기반의 정책 추진 체계 마련	140
3) 국민참여 확대 유도	142
4) 건축정책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체계 마련	143
5) 정책 거버넌스 및 위원회 역할 개선	145
6) 건축기금 및 재정 근거 검토 및 개선방향 제안	146
4. 건축기본법 개정안 제안	148
1) 제1장(총칙)	148
2) 제2장(건축정책의 기본방향) 개정 방향	150
3) 제3장(건축정책의 수립) 개정 방향	152
4) 제4장(건축정책위원회) 개정 방향	156
5) 제5장(건축정책 모니터링) 개정 방향(신설)	158
6) 제6장(건축문화의 진흥) 개정방향	162

제5장 결 론

1. 연구 결과 요약	169
2. 연구 한계 및 향후과제	171

참고문헌	173
------	-----

부 록

1. 건축기본법 초기 개정방향 검토를 위한 TF 회의 자료	182
2. 건축정책에 관한 전문가 인식조사 설문지	191

표차례

LIST OF TABLES

[표 1] 건축기본법상에서의 건축정책 기본방향	2
[표 2]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11
[표 3] 기본법의 4가지 유형	19
[표 4] 기본법과 개별법의 관계에 대한 입장	21
[표 5] 기본법의 구성 체계 및 내용	22
[표 6] 건축기본법에서 다루는 내용과 건축에 관한 법률	27
[표 7] 기본법의 구성 체계와 현행 건축기본법의 구성 비교	28
[표 8] 건축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제·개정 현황	32
[표 9] 건축에 관한 법령의 제정 추이	33
[표 10] 건축 관련 법 제·개정에 따른 신규 계획 수립 현황	34
[표 11] 메가트렌드에 따른 건축 수요 예측과 건축 정책 동향	36
[표 12] 지역건축기본계획의 국가계획 반영 현황	44
[표 13] 2차 광역건축기본계획 정책대상 및 주요내용	45
[표 14] 국가건축정책위원회 5기, 6기 주요 활동	47
[표 15] 지역건축기본계획의 국가계획 반영 현황	48
[표 16] 2021년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조사 항목	50
[표 17]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현황	53
[표 18]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 추진 목록(2009~2017)	53
[표 19] 민간전문가 운영 및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 추진 현황(2019~현재)	55
[표 20] 민간전문가 운영 및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 선정 지자체 및 지원금(2021)	56
[표 21] 국내 광역 및 기초 지자체 민간전문가 운영 현황(2022.8. 기준)	59
[표 22] 서울시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사례	60
[표 23] 설문 조사 내용	62
[표 24] 응답자 특성	64
[표 25] 건축 관련 법령에 대한 인지 및 활용 정도	65
[표 26] (국가) 건축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인지 정도	67
[표 27] 지역(광역) 건축기본계획에 대한 활용 정도	68
[표 28] 업무수행 중 주로 활용하는 계획 또는 지침 종류	69
[표 29] 건축기본법 용어 정의의 수정 필요성	70
[표 30] 건축기본법에 추가로 정의되어야 할 용어	70
[표 31] 「건축기본법」 용어별 정의 수정 방향	71

[표 32] 건축의 공공적 가치 구현 표현 정도	73
[표 33] 건축정책 기본이념인 '건축의 공공성'의 여건변화 대응성	73
[표 34] 「건축기본법」 기본이념의 수정 방향	74
[표 35] 건축정책 기본이념에 건축분야 트렌드를 반영해야 하는 필요성	75
[표 36] 건축정책 기본이념 및 방향 세부항목별 중요도 및 정책 우선순위	77
[표 37]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영향력	79
[표 38]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만족도 및 중요도	82
[표 39]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이 잘 되지 않는 이유	83
[표 40]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추가 필요 사업	84
[표 41] 기금 또는 특별회계 설치 근거 신설 필요성	85
[표 42]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위상(타 계획과 관계)	86
[표 43] 건축정책기본계획을 범부처 계획으로 추진할 근거 신설 필요성	87
[표 44] 건축정책기본계획 및 지역건축기본계획의 계획목표 기간	88
[표 45] 건축정책기본계획 및 지역건축기본계획의 계획목표 기간	89
[표 46] 건축정책기본계획 및 지역건축기본계획의 계획목표 기간	90
[표 47] 건축정책기본계획과 지역건축기본계획 계획수립 절차 관련 의견	91
[표 48] 건축정책에 대한 성과점검의 적절성	92
[표 49]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위상(타 계획과 관계)	93
[표 50] 건축정책 분야의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성과점검을 위한 법개정 필요성	93
[표 51] 건축 HUB 확대 및 통합 플랫폼 기능을 위한 근거 신설 필요성	94
[표 52] 건축정책기본계획과 지역건축기본계획 계획수립 절차 관련 의견	95
[표 53] 국가 및 지역건축기본계획의 내용	99
[표 54] 건축관련 기금 관련 근거조항	102
[표 55] 국토기본법 개정에 따른 국토모니터링 사례	104
[표 56] 「국토기본법」 제정 시 주요 골자	106
[표 57] 「국토기본법」 제정 이후 개정 과정	108
[표 58] 「환경정책기본법」 제정 시 주요 골자	111
[표 59] 「환경정책기본법」 제정 이후 개정 과정	113
[표 60]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시 주요 골자	115
[표 61] 타법 구성체계 비교	118
[표 62] 타법 실행체계 세부비교	122
[표 63] 건축관련 법령의 주요 가치와 건축기본법과의 연관성	129
[표 64] 건축 관련 법 제·개정에 따른 계획 수립 현황	135
[표 65] 건축기본계획 수립 주체에 따른 정책 대상의 구분	136
[표 66] 중앙부처의 기본계획 수립 체계	139
[표 67] 권한 및 위임 관련 개정(안) 예시	145
[표 68] 법률에 명시된 기금 및 특별회계별 설치목적과 근거	147
[표 69] 건축기본법 제1장 총칙 개정(안)	149
[표 70] 건축기본법 제2장 개정(안)	150
[표 71] 건축기본법 제3장 개정(안)	153

[표 72] 건축기본법 제4장 개정(안) —————	156
[표 73] 건축기본법 제5장 개정(안) —————	160
[표 74] 기념일 지정 사례 —————	163
[표 75] 진흥원의 공통기능 및 고유기능 예시 —————	165
[표 76] 건축기본법 제6장 개정(안) —————	166

그림차례

LIST OF FIGURES

[그림 1] 연구흐름도	8
[그림 2] 기본법의 주요 기능	17
[그림 3] 메가트렌드에 따른 건축정책의 변화	37
[그림 4] 건축현안과 메가트렌드를 종합한 미래 건축정책의 방향(3차 건축정책)	39
[그림 5] 건축기본법의 구성체계	41
[그림 6]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주요 중점정책 변화 과정	43
[그림 7] 광역지방자치단체 건축기본계획 수립 시행 경과	44
[그림 8]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구성 현황 및 주요 활동	46
[그림 9] 건축정책 과제관리카드	49
[그림 10] 건축통계 발표	50
[그림 11]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예시 : 통합마스터플랜 및 사업발굴	57
[그림 12] 한국건축규정 e시스템 홈페이지 화면	61
[그림 13] 「건축기본법」에 대한 인지 여부	64
[그림 14] 건축정책 가치(기본방향) 상대적 중요도	77
[그림 15]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사업별 추진 정도	81
[그림 16]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사업별 중요도	81
[그림 17]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에서의 건축정책 분야	97
[그림 18]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과 관련법령에 따른 계획간의 관계	100
[그림 19] UN의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	127
[그림 20] 건축 관계 법령 제정 연혁	134
[그림 21] 광역건축기본계획 예시(인천광역시)	137
[그림 22] 인천광역시 제2차 건축기본계획(안) 세부단위과제 구성을 위한 공간환경 분석 예시 –	138
[그림 23]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주기를 고려한 성과점검 변경(안)	159

제1장 서 론

-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 3. 연구방법 및 연구수행계획
 - 4.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건축정책의 기본 원칙, 준칙으로서 건축기본법의 제정과 운용

오늘날 현대 사회의 문제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종합적 성격의 정책이 요구되면서 각종 분야에 '기본법'을 명시한 입법례가 증가하고 있다.¹⁾ 건축분야에서는 생활공간적·사회적·문화적 공공성을 지니는 건축물에 대한 정책방향 제시 및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건축기본법」이 제정되었다('07.12). 그동안 건축의 모범 역할을 수행하여온 「건축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념적, 선언적인 형태의 기본법 제정을 통해 건축의 공공성을 천명하며 구체화한 것이었다.²⁾

세계 각국에서도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 건축정책의 방향 설정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법·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영국의 경우 「건축법」(The Building Act, 1984)을 통해 건축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방향성을 정하며 나아가 다양한 정책과 안전에 대해 다룬다. 영국의 건축법은 형식상으로 기본법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운영 양상을 보면 기본법적인 위상을 점하며 그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³⁾

1) 국회 법제실(2019, p.9)

2) 유광흠 외(2011, p.134)

우리나라는 「건축기본법」을 통해 건축물의 다양한 가치 중 공공성을 우선하여 생활공간·사회·문화라는 세 측면에서 건축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표 1] 건축기본법상에서의 건축정책 기본방향

생활공간적 공공성 구현	각종 재난에 대비한 안전한 건축환경을 조성하고, 계획 및 설계부터 장애인·노약자 등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한 정책 추진
사회적 공공성 확보	국민의 다양한 요구와 다원적 문화에 부응하고, 미래사회 및 기술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가능한 건축정책 추진
문화적 공공성 실현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유산을 보전하고, 문화적/산업적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문가 창의성을 향상시키는 건축정책 추진

출처 : 건축기본법 제7조, 제8조, 제9조의 내용에 따라 연구진 작성

□ 사회변화에 대한 대응력 향상을 위해 건축기본법의 전반적 개선 필요

2007년 제정된 「건축기본법」을 통해 건축의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으며,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 과정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정책 및 입법 수요에 따라 후속 법률이 제정되어 왔다. 기본법의 특성상 개별법으로 구체화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⁴⁾ 「건축기본법」 제정 이후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건축정책 세부분야별로 신규 법령들이 제정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기본법은 정책의 체계화 및 종합화를 위해 개별법들을 연계되어야 하나, 현재의 「건축기본법」은 개별법 간의 관계 및 연계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건축문화 진흥」이라는 제한적 범위와 역할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어 사회적 여건변화에 유연한 대처가 미흡한 상황이다.

그에 따라 「건축기본법」이 법률의 제정이념이나 정신을 제대로 표현하고 있는지, 제정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건축분야의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만족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⁵⁾ 특히 최근 건축물의 노후화에 따라 전생애주기를 고려한 유지관리가 중요해진 만큼 이에 대한 정책 규정이 필요하며, 인구감소, 4차 산업혁명, 탄소증립 등 최근 국내외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메가트렌드 및 다양한 여건변화를 고려했을 때 건축정책의 모범이 되는 건축기본법 전반에 대한 내용 재편이 필요하겠다.

3) 김용훈(2015, p.44)

4) 국회법제실(2019, p.10)

5) 유광흠 외(2011, p.145)

□ 건축정책의 실행력 측면에서의 제고 필요

「건축기본법」 제정 이후 지난 15년간 건축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다양한 성과를 이루어 왔으나 여전히 정책 실행력 측면에서는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우선 건축정책은 ‘건축정책기본계획’, ‘지역건축기본계획’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계획의 실행력 차원에서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일단 초기 건축기본계획에서 다루어져 온 녹색건축, 건축문화 및 건축자산, 건축산업 등이 신규 법령으로 재편됨에 따라 관련 계획간의 관계 정립과 함께, 각 계획에서 다루는 실행계획 여부 등 계획성격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정책을 다루는 건축정책기본계획과 지역건축기본계획 간 정책대상 및 내용에 차별성이 없으며, 지자체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법·제도, 행정프로세스, 기술개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계획의 실행력이 저조한 실정이다. 또한, 건축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사업과 기준에 대한 기준이 되는 법 제5장의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건축디자인 기준 설정’ 등은 지자체에서 별도로 운영된 사례가 극히 적고, 대부분 국토부에서 공공부문에 대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현재는 이들 사업도 폐지된 상황이다. 건축정책에서 다루는 정책대상은 공공부문의 공공건축을 비롯해서 민간건축물을 포함하고 있다. 공공건축은 시설용도에 따라 국토부 외에도 범부처에 걸쳐 발생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소관하는 정책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정책 운용에의 한계에 직면해 있다.

□ 건축정책의 지속가능성 및 실행력 제고를 위한 전반적인 개선 요구 증대

「건축기본법」의 운영 현황 및 실행력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원인을 분석하여 기본법으로서 정책 체계화 및 종합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건축 관련 전문가 및 관계기관 실무자와 함께 건축분야에서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정책 요구와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건축기본법 전반에 대한 개선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축정책의 지속성 및 실행력 확보를 위해 「건축기본법」 개정의 방향을 재정립하고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 국내·외 여건 및 메가트렌드 변화에 따른 정책적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건축정책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건축분야 최상위 법령인 「건축기본법」의 개정방향을 재정립하고, 구체적인 개정안 제시
- 「건축기본법」 전면 개정을 통해 그동안 작동이 미미하던 정책지원수단 및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기본법 이후 제정된 관련 법령, 계획 간 관계 정립

3) 기대효과

□ 학술적 기여도

- 「건축기본법」 이후의 건축정책 관련 법제 정비 과정 및 관계 정립
- 건축과 관련된 타 분야 기본법 사례 분석, 건축 관련 실무자 및 전문가 대상 인식 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건축정책의 수요변화 예측 및 기본법 개정방향 제안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건축정책의 기본이념과 정책 기본방향을 재정립하여 「건축기본법」의 역할 향상
- 「건축기본법」 및 관련 법령 간의 관계, 국가와 지역 건축기본계획의 관계 설정, 관련 부문별 계획 간의 관계 정립 등을 통해 국가 건축정책의 실행력 개선
- 건축정책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실행수단 및 거버넌스 체계 강화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 건축기본법 고찰 및 개정 필요성

- 기본법의 법적 특성과 건축기본법의 역할

국가 건축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의 체계화 및 종합화 등을 통해 「건축기본법」이 기본법으로서 역할하기 위한 요건을 분석한다.

- 건축기본법에 따른 정책 추진 현황과 여건변화 검토

2007년 「건축기본법」 시행 이후 건축정책의 기조변화, 1~3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정책 대상 및 주요내용, 건축 관련 신규 법령 및 전담지원기구 운영 현황, 그동안의 「건축기본법」 개정 사항 등을 정리하고, 「건축기본법」을 둘러싼 사회 및 정책적 여건 및 수요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 건축기본법 개정 필요성 제시

기본법의 법적 특성과 역할, 그간의 정책 현황과 여건변화를 토대로 건축정책이 추구해야하는 기본방향을 재정립하고, 건축정책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 정책추진과정에서의 문제요소들을 개선하기 위해 기본법 개정 방향을 제시한다.

□ 건축정책의 실행체계와 개선과제

- 건축정책 실행체계별 추진현황 분석

「건축기본법」에 명시된 정책 실행수단인 ‘계획 수립’, ‘위원회 구성·운영’, ‘시범사업 및 민간전문가 활용’, ‘디자인 기준 수립’, ‘재정지원’ 등을 중심으로 그간의 정책 추진현황과 한계점을 살펴본다.

- 건축정책에 관한 전문가 인식조사·분석

건축 관련 중앙정부 및 지자체 관계 실무자, 건축산업 종사자, 관련 학계 등 전문가 대상으로 「건축정책」의 정의, 대상, 실행체계, 개선방향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한다. 그에 따라 기본법 개정 필요성과 개선항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 건축정책의 실행력 부족 원인과 개선 필요성

건축정책의 대상 및 기본이념, 건축 관련 신규 법령 및 계획 간의 관계, 정책 실행체계의 문제점을 검토한다. 그리고 지자체의 건축정책에 대한 인식부족 및 실행력 저하의 문제 및 원인을 분석한다.

- 타 분야 기본법 구성 체계 분석

「국토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 등 타 분야 기본법의 구성 및 실행 체계를 분석한다. 그리고 타 정책 분야별 실행측면에서 쟁점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과 기본법 개정 과정, 최근 개선하려는 정책방향 등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 건축기본법 검토 및 개정방향 제안

- 건축정책의 기본이념과 범위 재정립

‘건축정책’에 대한 정의, 현 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건축의 공공성 구현’을 메가트렌드 및 정책수요 변화에 부합되도록 기본이념과 정책대상, 범위를 재정립한다.

- 건축 관련 법령 및 계획 간의 관계 정립

기본법 시행 이후 제정된 다양한 건축 관련 법령, 건축정책기본계획과 부문별 계획 간의 관계, 국가와 지역 계획의 관계 등 정책대상과 역할을 정립한다.

- 건축정책 실효성 향상을 위한 개선방향

건축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요구되는 개선방향을 제안한다.

- 건축기본법 개정안 제안

연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건축기본법」 개정 취지를 밝히고 개정(안)을 제시한다.

3. 연구방법 및 연구수행체계

□ 문현조사

현행 건축 관련 법제 선행연구의 동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기본법의 체계, 기능, 구성 원리 검토하며 기본법 및 관계 법령 간의 관계, 정책 추진체계에 대해 조사·분석하였다. 메가트렌드 변화 및 미래예측보고서 분석을 통해 건축분야 여건 및 미래 변화 전망을 위한 관련 연구를 분석하였다.

□ 설문조사 : 건축기본법 개정(안) 도출을 위한 유관분야 인식조사

건축정책을 추진하는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를 비롯하여, 국가 및 지역 건축정책위원회, 지자체 건축 관련 부서 실무자, 건축 관련 학·협회, 지역 총괄 및 공공건축가 등 관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세부 개정이 필요한 사항, 건축정책의 실행력 활보를 위한 건축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주체별로 설문조사를 분석하였다.

□ 전문가 TF 구성·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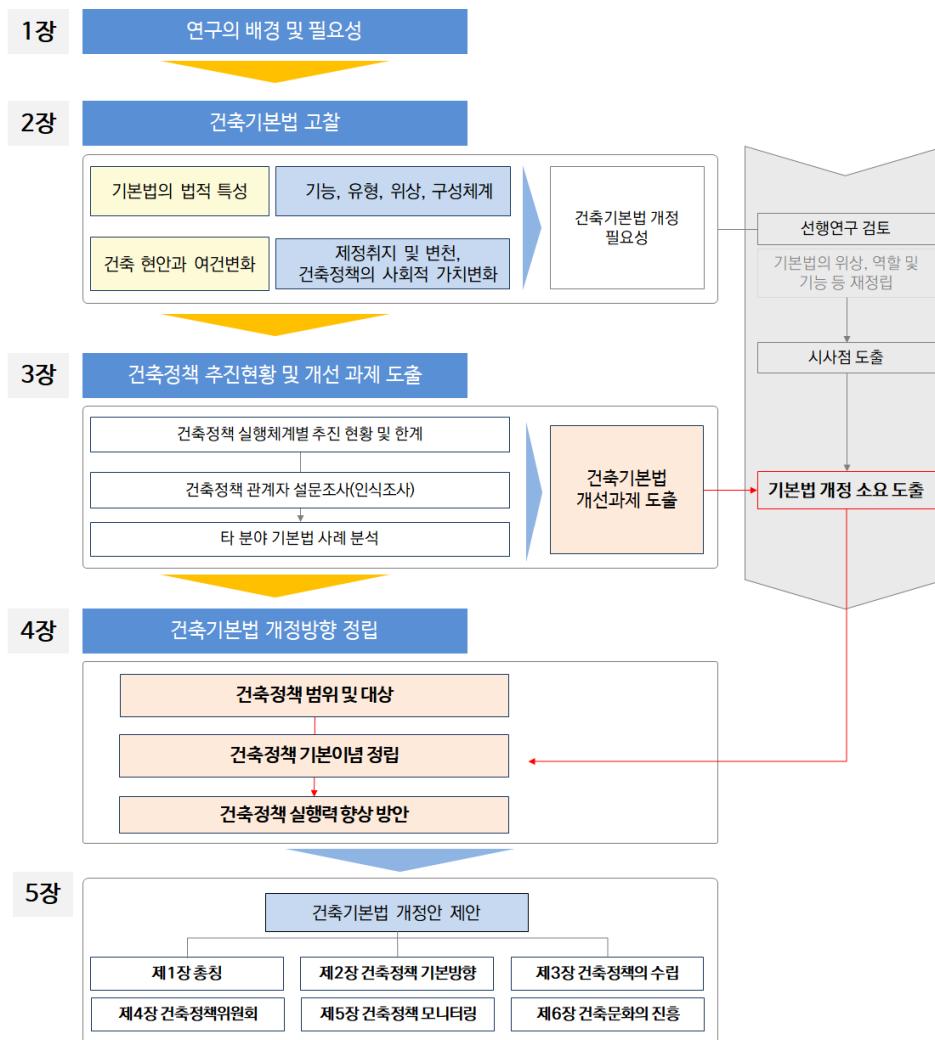
국가 건축정책기본계획 및 광역시도 건축기본계획 수립 경험이 있는 전문가, 건축업계 종사자, 법제 전문가, 행정 전문가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 TF팀을 구성하였다. 공통적으로는 건축기본법 개정(안) 및 연구 내용 전반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였다. 국토교통부를 통해 건축 관련 법률 소관 부서별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연구원은 지역 건축기본계획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가 계획과 지역 계획 간 관계 정립, 법제 분야에서는 기본법의 성격, 기능, 유형, 형식적 틀을 고려한 법의 체계적 정당성 및 내용적 타당성 검토, 마지막으로 민간 분야 전문가를 통해 건축 행위의 주체로서 건축산업 활성화 및 정책 지원의 실효성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기관, 대국민 대상 간담회 추진

전문가 TF 운영과는 별도로 관련 전문가 및 관계기관, 국민 대상으로 건축정책에 논의되어야 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여한 시민 및 학생을 비롯하여 건축관련 학·협회 관계자 대상 간담회를 추진

하여 기본법 개정방향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였다.

□ 연구수행 흐름도



[그림 1] 연구흐름도

4.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 선행연구 현황

- 건축정책 관련

건축정책과 관련하여 계획수립 및 성과관리, 행정평가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이를테면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 방향 설정과 체계 구축 관련 연구, 지역건축 기본계획에 있어 성과점검 및 실행력 향상을 위한 역할 정립, 계획수립 지침 연구 등이 있다. 김상호 외(2009)는 건축정책기본계획 성과관리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를 통해 정책평가 및 성과관리 관련 법·제도를 검토하고 국내 법정 기본계획의 성과관리 현황 및 운영사례를 조사·분석하였다. 김영현 외(2015)는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성과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 연구에서 지역건축기본계획의 당면문제와 원인을 밝히고 실효성 확보를 위한 수립 지침(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정책기획 체계 구축, 이를 통한 지방정부 발전전략 수립 연구 등 전략계획이론을 근거로 능률 향상을 위한 전략 및 체계구축 연구도 진행되어 왔다. 나태준 외(2003)는 공공조직의 전략기획체계 구축 방안 연구에서 서울시를 대상으로 공공부문의 비능률성을 줄이고 환경 대응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전략기획체계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윤정길 외(2003)는 전략기획을 통한 지방정부 발전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에서 영월군을 대상으로 전략기획의 접근법을 통해 지방정부의 능력형성, 발전방안, 비전을 제안한 바 있다. 한편 건축정책을 포괄하여 정책 실행력 제고를 위한 법령 등 체계구축을 심도 있게 논의한 연구는 미비하다.

- 기본법 개정 관련

유관분야에서는 변화하는 시대적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여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방향 및 개정안 제시 연구, 「환경정책기본법」 개정방향 연구 등을 수행하였다. 윤석진 외 (2011)는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선방안 및 관련 법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건축기본법」의 경우 제정(2008.12.) 이후 개선방향, 개정 또는 신설 필요조항에 대해 간헐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전영훈 외(2011)는 건축문화발전을 위한 국가 건축문화진

홍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를 통해 국내·외 건축문화 프로그램 사례 분석을 시행하고 시민 건축문화 대중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건축기본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별도의 정책연구는 부재한 실정이다.

- 건축분야 법령 개정 관련

건축 분야의 법령 개정과 관련하여 「경관법」 개정방안 연구 등이 있다. 이상민 외(2020)는 국토경관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경관법」 개정 방안 연구를 통해 국토경관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및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국토기본법」의 국토모니터링 신설 관련 지표 연구 등 일부조항의 개정 및 신설을 목표로 한 연구는 상당하다. 이용우 외(2007)는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지표 설정과 활용에 관한 연구에서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지표 설정모형 및 지표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건축 관련 법제 정비 방안 연구, 녹색산업 관련 법체계 연구 등 관련 법체계를 통합적으로 검토하여 부문별 개정안을 도출한 연구도 진행되어 왔다. 유광흠 외(2011)는 건축 관련 법제의 체계적 정비 방안 연구를 통해 국내 건축 관련 법제의 체계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주요 법제의 정비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건축 관련 법령 체계 검토를 바탕으로 「건축기본법」의 실증적인 개정방향 및 개정안을 도출한 연구는 없다.

- 기본법 관련

국내 기본법 제정 시 기본 틀이 되었던 일본 기본법 연구가 선행된 바 있다. 현행 기본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도출한 연구도 수행되었다. 박영도(1993)는 기본법의 법제상의 위치 연구를 통해 기본법의 성격과 기능, 유형과 구조를 검토하고 기본법의 역할 및 입법과제를 제시하였다. 박영도(2006)에서는 일본과 프랑스 기본법 사례를 상세 분석하여 입법모델을 도출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기본법은 국가의 중요 정책에 대한 기본방침을 명시하는 것으로 일본에서는 '기본법 우월성의 원칙'이 확립된 상황이다. 일본과 달리 국내 기본법은 내용상으로 기본방침 뿐 아니라 규제적 사항까지 다루는 경향이 있으며 기본법의 위상도 각 법률마다 다르다.

□ 선행연구의 한계 및 차별성

「건축기본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증대함에 따라 일부조항의 개정·신설에 대한 연구가 있어 왔으나, 개정방향 및 개정안을 제시한 연구는 부재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메가트렌드 및 건축정책의 수요변화를 고려하여 건축정책 추진

실행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축기본법」의 기본방향, 각 조문별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법 개정안을 제시한다.

[표 2]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구 분 번	순 번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건축 정책 관련	1 · 연구목적: 2007년에 제정된 건축기본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제2차, 3차 건축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성과 분석	· 과제명: 건축정책 성과보고서 작성성을 위한 연구 · 연구자(년도): 김영현외 (2021)	· 선행연구 검토 · 건축정책기본계획 이행실적 점검, 성과 조사·분석 · 국민인식조사, 전문가 자문
		· 과제명: 건축정책 성과보고서 작성 연구 · 연구자(년도): 조상규외 (2012)	· 제2차,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이행실적 점검 · 건축정책 주요성과 도출 · 건축정책 성과분석 및 향후 발전방향 제시
		· 연구목적: 2007년에 제정된 건축기본법 제15조에 근거하여 건축정책기본계획 단위과제별 주요 성과내용을 2년마다 모니터링 하고자 함	· 선행연구 검토 · 국·내외 사례조사 및 국토해양부 내부 사업점검 자료 및 추진자료, 성과계획서 등 조사·분석 · 관련 분야별 전문가 설문조사 · 지자체 담당공무원 워크숍
			·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건축정책기본계획 단위과제별 사업추진 현황 조사 분석 · 미래사회적 건축환경 변화 전망 및 대책 ·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과 사업 · 건축환경, 문화창달을 위한 지역의 풍토성 및 전통성 계승에 관한 시책 · 건축제도·기준 등의 국제화 · 건축기술·건축설계의 발전, 전문 인력 양성 등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 과제명: 국가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건축정책 발전방안 연구 · 연구자(년도): 조상규외 (2013)	·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발 표한 보도자료 조사 · 건축, 도시 조경 등 건축정책 관련분야별 전문가 설문조사 · 건축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 할 미래의 메가트렌드에 대해 STEEP법에 의해 사회, 기술, 경제, 생태, 정치영역으로 미래변화 검토
	3 · 연구목적: 국가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메가트렌드 분석을 통한 국내 건축 도시 분야의 여건변화를 검토하고, 제2차 건축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정책 아젠다 제안	· 과제명: 건축정책기본계획 성과관리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 연구자(년도): 김상호외 (2009)	· 국가사회적 건축정책 여건변화와 미래전망 · 전문가가 전망하는 건축정책의 방향 · 새 정부 국정과제와 건축정책으로 미래변화 검토 · 국내·외 성과관리와 관련된 선행연구 및 문헌자료 조사·분석 · 성과관리 관련 선행연구자들의 의견청취
		· 연구목적: 2010년 시행을	· 정책평가 및 성과관리 관련 법·제도 검토 · 해외 주요국의 정책평가 및 성과관리제도의 운영현황 파악 및 분석 · 국내 법정기본계획의 성과관리 현황 및

구 번	순 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목표로 수립중인 '건축정책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방안 모색			운영사례 조사·분석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성과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연구 · 연구자(년도): 김영현외 (2015) · 연구목적: 지역건축기본계획에 대한 그간의 성과를 종합분석하여 계획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정책방향을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계획 수립 및 관리 체계에 대한 최근 동향 및 이론적 검토, 국내외 사례 조사분석 · 지역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한 자자체 관련 부서 실무자 대상 정책성과 점검 · 관련 실무자 및 전문가 인식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건축기본계획 주요내용 분석 및 성과점검 · 지역건축기본계획의 당면문제와 원인 · 타 계획의 실행 및 관리 사례 분석 ·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실효성 확보 방안 제언 ·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지침(안) 제언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공공조직의 전략 기획체계 구축 방안 · 연구자(년도): 나태준외 (2003) · 연구목적: 공공부문의 비 능률성을 줄이고 환경에 대한 대응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수단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전략기획체제의 서울시 적용방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기획에 대한 이론적 검토 · 공공부문 및 민간기업 전략기획체계 벤치마킹 사례조사 · 국내의 전략기획 도입성과 평가를 위한 문헌조사, 현장 조사 · 서울시 기획체제 및 기획수 준 진단을 위한 설문 및 면접 조사 ·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기획관련 특성 및 현황조사 · 지방자치단체의 전략기획 도입 사례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사례를 통해 공공조직의 전략 기획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전체적인 청사진 제시 · 전략기획체계에 적합한 조직의 구축방안, 운영전략, 전략기획체제의 서울시 적용방안 제시 · 서울시 문화국을 시범 선정하여 전략적 기획체제 적용 및 결과도출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전략기획을 통한 지방정부 발전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 연구자(년도) : 윤정길외 (2003) · 연구목적 : 영월군을 대상으로 전략기획의 접근법을 통해 지방정부의 능력형성, 발전방안, 비전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조사 · 담당자 면담조사 및 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기획의 이론적 검토를 통한 분석틀 도출 · 전략기획 분석틀을 통한 영월군의 SWOT분석 및 지역주민, 공무원 설문조사·분석 · 분석결과를 통한 전략 쟁점 도출 	
기본 법 개정 관련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 연구자(년도) : 윤석진외 (2011) · 연구목적: 건설관련 법령의 규제실태 분석 및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방향 및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행연구 등 문헌조사 · 건설산업 법령, 해외 건설산업 체계 조사 · 관련부처 담당자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산업 관련 법령체계 및 규제사항 분석 · 해외 건설산업 규제체계 분석 · 「건설산업기본법」 개선방안 및 관련 법체계 개선방안 제시 	

구 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분 번	연구목적		
개정안 제시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건축문화발전을 위한 국가 건축문화진흥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 연구자(년도): 전영훈 외 (2011) · 연구목적: 국내외 건축문화 프로그램 사례 분석을 통한 시민 건축문화 대중화를 위한 정책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건축문화정책 기조분석을 위한 문헌자료 분석 · 국내외 건축문화 프로그램의 특성 및 효과 분석을 위한 사례조사 분석 및 담당자 자문, 설문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문화정책 기조 분석 · 건축문화정책 추진기구의 특성 분석 · 건축문화 프로그램의 유형 도출 · 국내 건축문화 프로그램의 문제점 및 개선점 도출 · 건축관련 법제도 상 적용가능성 검토 및 시행방안 제시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국토경관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경관법」 개정 방안 · 연구자(년도) : 이상민 외 (2020) · 연구목적: 국토경관 관리체계의 실행령 강화 및 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관법 개선방안 마련, 향후 필요제도 등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행연구 등 문헌조사 · 경관법 법제의 실행 및 주요 쟁점 조사 · 전문가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법에 따른 경관관리 현황 및 주요방점 도출 · 국토경관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개선안 도출 · 관련 제도 등 필요사항 제시
11	<p>건축 분야 법령 개정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 국토관리의 지속 가능성 지표 설정과 활용에 관한 연구 · 연구자(년도) : 이용우 외 (2007) · 연구목적 :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지표를 설정하고, 이의 활용방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행연구 등 문헌조사 · UN, OECD, 영국, 독일 등 해외사례연구 · 전문가 및 국민 의견수렴 : · 전문가 설문, 인터넷 이용한 국민 설문, 공청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유사지표 사례연구 ·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지표 설정 모형 ·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지표(안) 설정 ·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지표(안) 산정 및 목표치 설정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건축 관련 법제의 체계적 정비 방안 연구 · 연구자(년도) : 유광흠 외 (2011) · 연구목적: 건축관련 법률의 체계적인 정비방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행연구, 입법 및 법률체계 원리, 연혁 등 문헌조사 · 국내·외 건축관련 법률체계 사례조사 · 전문가 설문·면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건축관련 법제의 체계 조사 및 문제점 도출 · 해외 건축관련 법제의 체계 및 정비사례 조사를 통한 시사점 도출 · 법제 체계정비 및 입법사례 조사 (「소방법」, 「지방세법」, 「문화재 보호법」, 「산림법」) · 건축관련 법제의 체계 정비 방안 제시
13	<p>기본 법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기본법의 법제상의 위치 · 연구자(년도): 박영도 (1993) · 연구목적: 법제상 기본법의 담당 역할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행연구 등 문헌조사 · 일본 기본법과 사례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법의 성격과 기능 · 기본법의 우월성문제 · 기본법의 유형과 구조 · 기본법의 입법과제

구 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분 번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기본법의 입법모델연구 · 연구자(년도): 박영도 (2006) · 연구목적: 기본법 입법 등 향 및 법체계 분석 및 검토를 통해 공통 특징과 문제점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행연구 등 문헌조사 · 일본, 프랑스 기본법 사례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법의 의의 및 기능 검토 · 기본법 현황 및 특징 분석 · 일본과 프랑스 기본법 성격과 현황 사례 분석 · 기본법의 입법모델 분석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입법체계상 기본 법의 본질에 관한 연구~일 본의 기본법을 중심으로~ · 연구자(년도): 박정훈 (2009) · 연구목적: 비교법적 관점에서 일본 기본법의 구조, 지위등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기본법 문제점 규명 및 방향성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행연구 등 문헌조사 · 일본 기본법과 비교연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기본법의 정의 및 규범구조, 기능에 대한 분석 · 일본 기본법의 지위와 효력 검토 · 우리나라 기본법의 전개와 특징분석 · 우리나라 기본법 정립의 방향성 모색

제2장 건축기본법 고찰 및 현황

1. 기본법의 법적 특성과 건축기본법

2. 건축기본법의 현황과 여전 변화

3. 소결 : 건축기본법 개정의 필요성

1. 기본법의 법적 특성과 건축기본법

사회 여건이 빠르게 변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새로운 정책요구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분야에서 개별적인 입법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종합적 성격의 정책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분야별로 제명에 ‘기본법’임을 명시한 입법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회법제실, 2019, p.8). 기본법은 주로 “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 방향과 골격을 제시하고 이를 개별법으로 구체화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국회법제실, 2019, pp.9-10).

기본법 제정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에 ‘기본법’의 명칭을 부여하는지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이나 근거가 존재하고 있지는 않다. 이로 인해 분야별로 개별적 판단 하에 법률에 ‘기본법’이란 명칭을 붙여 왔다(홍준형, 1997, p.66; 박영도, 2006, pp.335-336).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본법이 동일한 기능과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 법적 위상 역시 관계법령의 모법이라고 단언할 수 없으며, 이는 법령의 제명이 아닌 법령에서 규율하는 내용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박영도, 2006, pp.339-340).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인 「건축기본법」에 대한 법적인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본 법의 법적 특성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건축기본법이 기본법으로서 어떠한 위상과 기능을 가지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 기본법의 「기능」, 「유형」, 「법체계상의 위상」, 「구성 체계」 등을 고찰
- 기본법의 법적 특성 고찰을 토대로 현행 「건축기본법」의 위상과 기능 등을 파악

1) 기본법의 기능 및 유형

□ 기본법의 기능

‘기본법’이라는 제명을 붙인 법률은 일반적으로 “국정의 중요한 분야에 있어서 지도법적·지침법적인 성격”¹⁾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기본법의 경향을 보면, 반드시 이러한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으로 진흥법, 조성법, 육성법, 촉진법 등의 제명을 사용하는 법령과 내용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 “기본법이라는 명칭은 입안자 내지 입법자의 인식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²⁾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법’이 가지는 몇 가지 공통적인 기능이 있으며, 주요 기능 6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³⁾

- 첫째, 국가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추진을 위한 체계 마련

기본법은 국가 차원에서 정책의 이념과 방향성을 정하고, 계획적·종합적·장기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한다(박영도, 2006, p.24). 기본법은 분야별 정책의 기본 방향과 골격을 제시하고 이를 개별법으로 구체화하도록 유도하며, 이로 인해 대부분 포괄적·추상적인 규정으로 구성 되는 것이 특징이다(국회법제실, 2019, pp.9-10).

또한 기본법은 사회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정책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할 경우 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이념과 방향성을 재정립하여 제시하고, 관계법령의 정비를 유도하는 기능을 담당하기도 한다(박영도, 2006, pp.24-25).

- 둘째, 제도 및 정책의 체계화 및 종합화

최근 입법수 및 법령수의 증가, 법제도의 복잡화 등에 따라 법률 간 상충이 발생하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법에서 이념과 지침에 근거해 해당 분야의 제도 및 정책의 전체상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해당 분야의 제도나 정책의 통일성 및 체계성을 도모하고 대국민 정책 이해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기본법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이다(박영도, 2006, p.25).

1) 박영도(2006, p.21)

2) 박영도(2006, p.22)

3) 박영도(2006, pp. 24-33) 내용 요약
(※ 모든 기본법이 5가지 기능을 모두 가지는 것은 아니며, 대체적인 경향임)

- **셋째, 정책의 계속성 및 일관성 확보**

기본법은 단기적이고 좁은 시야가 아닌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특정 분야 정책의 계속성, 일관성, 안정성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박영도, 2006, p.28).

- **넷째, 행정의 통제 기능**

기본법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행정의 통제이다. 의원입법으로 기본법이 제정된 경우 기본법은 국회가 행정에 일정한 틀을 가지고 감시·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박영도, 2006, pp.28~31). 이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기본법을 통해 제도나 정책의 이념과 방향성을 정하고, 행정부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형성과 입안을 담당하도록 유도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이다.

- **다섯째, 국민에 대한 정책메시지 발신기능**

기본법은 분야별 정책의 이념과 방향성을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국가가 이러한 정책 방향성을 국민에게 전하는 메시지로 활용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인식 개선, 참여 등을 촉구하는 기능을 담당하기도 한다(박영도, 2006, p.31).

- **여섯째, 지방분권의 추진기능**

기본법은 현재 정책적으로 지향하는 분권형 사회시스템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즉, 기본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할 뿐만 아니라,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주체별 역할을 조정함으로써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균형 있게 분담하는 것도 역할을 하는 것이다(박영도, 2006, pp.32-33).



[그림 2] 기본법의 주요 기능

출처: 조사내용을 토대로 연구진 작성

□ 기본법의 유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본법’ 제정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본법마다 법적 성격이 상이한 실정이다. 따라서 법령 제정 배경과 목적, 규정 내용 등을 기준으로 기본법의 성격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내용적 기준을 토대로 그간 제정된 기본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4가지 정도로 기본법의 유형을 정리할 수 있다.⁴⁾

- 첫째, 이념형·선언형 기본법

이념형·선언형에 해당하는 기본법은 제도나 정책에 관한 기본이념이나 원칙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유형의 기본법은 일반적으로 해당 분야의 지도법적인 성격을 가지며, 기본이념이나 원칙을 국민에게 널리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법령으로는 「국토기본법」, 「관광기본법」, 「교육기본법」, 「사회보장 기본법」 등이 있다(박영도, 2006, p.119).

- 둘째, 정책형 기본법

정책형 기본법은 특정 분야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 정책 및 제도의 목표, 방향 등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의 시책 추진을 촉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유형에 해당하는 법령 사례로는 「환경정책기본법」, 「농업·농촌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과학기술기본법」, 「여성발전기본법」 등이 있다(박영도, 2006, p.119).

단, 「환경정책기본법」, 「여성발전기본법」 등은 새로운 이념과 가치를 제시하고 사회의 의식개혁을 요구한다는 측면에서 이념형 기본법의 성격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박영도, 2006, p.119).

- 셋째, 대책형 기본법

대책형 기본법은 “사회질서의 유지, 복지 향상, 피해 예방·구제 등”⁵⁾ 특정 현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유형에 해당하는 법령으로는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소방기본법」 등이 있다.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소방기본법」은 현안에 대처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 규정을 두고 있는 전형적인 대책형 기본법이라 볼 수 있다.

4) 박영도(2006, pp.118-120) 내용 요약

5) 박영도(2006, p.120)

- 넷째, 개혁추진형 기본법

개혁추진형 기본법은 국정상 중요한 과제로서 특정 분야 개혁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유형의 대표적 사례로는 「행정규제기본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 등이 있다(박영도, 2006, p.120).

[표 3] 기본법의 4가지 유형

유형	주요 기능과 역할	대표적 입법례
이념형·선언형	제도나 정책에 관한 기본이념이나 원칙을 정함	- 국토기본법 - 관광기본법 - 교육기본법 - 사회보장기본법
정책형	특정 분야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 정책 및 제도의 목표, 방향 등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의 시책 추진을 촉구함	- 환경정책기본법 - 농업·농촌기본법 - 중소기업기본법 - 과학기술기본법 - 여성발전기본법
대책형	사회질서의 유지, 피해 예방·구제 등 시급한 현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 소방기본법
개혁추진형	국정상 중요한 과제로서 특정 분야 개혁을 추진함	- 행정규제기본법 - 부담금관리 기본법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출처 : 조사내용을 토대로 연구진 작성

2) 기본법의 법체계상의 위상

□ 현법과 기본법의 관계

기본적으로 헌법-법률-명령이라는 단계적 법체계 속에서 법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기본법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헌법-기본법-개별법-명령 체계로 기본법이 헌법과 개별법을 매개한다고 인식하기도 한다(박영도, 2006, p.328).

하지만 실질적으로 헌법에서 정하는 이념과 원칙을 보완하는 헌법보완법적 성격을 가지는 기본법은 극히 일부이며, 대다수의 기본법은 개별 시책에 대한 기본방향을 규정하고 있다(박영도, 2006, pp.329-330). 「교육기본법」과 같이 “헌법의 이념과 원리원칙을 보완·구체화”하거나 「양성평등기본법(구 여성발전기본법)」과 같이 “목정 규정에 헌법과의 관계를 규정한 사례”가 헌법보완적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박영도, 2006, p.329). 반면, 그 외에 헌법의 이념과 원칙을 보완하거나 구체화하지 않은 기본법은 개별 분야별 시책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 「양성평등기본법」 법률 제18099호(2021.4.20. 일부개정)

즉, 기본법이라는 제명을 가지는 모든 법령이 헌법보완법적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없으며, 분야별 기본법에서 “헌법을 보완하는 어떠한 규정을 두고 있는가”를 토대로 기본법과 헌법과의 관계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박영도, 2006, p.330).

□ 기본법과 개별법의 관계

기본법은 일반적으로 특정 분야의 제도나 정책에 대한 지도법 또는 지침법으로서 개별 법을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박영도, 2006, p.332; 국회법제실, 2019, 786). 하지만 법적으로 기본법이 개별법에 대한 우월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의견은 개별 학자마다 엇갈리는 상황이다(박영도, 2006, p.332).

기본법과 개별법과의 관계에 대한 입장은 3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기본법의 우월적 성격을 긍정하는 견해”, 둘째, “기본법의 우월적 성격을 부정하는 견해”, 셋째, “기본법의

우월적 성격을 한정적으로 긍정하는 견해”이다(박영도, 2006, pp.332-336).

[표 4] 기본법과 개별법의 관계에 대한 입장

구분	견해
1. 기본법의 우월적 성격을 긍정하는 견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법은 헌법규범을 구체화한 것- 법형식이 아닌 실질적 내용 측면에서 각종 정책과 법률의 체계화하고 일관성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법령 보다 우선 지켜야 할 필요- 기본법의 우월성을 인정하지만, 기본법과 개별법은 모두 헌법에 모체를 두고 있으므로, 기본법이 개별법의 모법이라고 할 수는 없음
2. 기본법의 우월적 성격을 부정하는 견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법은 헌법이 아니므로, 기본법과 개별법은 동격의 법률- 후법우선의 원리로 해결해야 함
3. 기본법의 우월적 성격을 한정적으로 긍정하는 견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법과 개별법은 법률이라는 동일한 법적 형식을 가지므로 법적인 측면에서 우선적인 효력을 가지지는 않음- 다만, 가능한 한 개별법의 규정을 기본법이 규정하는 이념, 원칙, 방침 등과 조화적으로 해석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

출처: 박영도(2006, pp.332-338)

특징적인 점은 기본법의 우월적 성격을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입장 모두 공통적인 전제가 기본법과 개별법은 모두 헌법을 모체로 한 동일한 법률이라는 점이다. 공통적으로 법적 형식 측면에서는 기본법이 개별법의 모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법의 우월적 성격을 긍정하거나 한정적으로 긍정하는 입장에서는 법 형식적 측면에서 기본법과 개별법은 동등한 위치이지만, 실질적인 의미나 내용적 측면에서 특정 제도나 정책의 체계화 및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 다른 법령 보다 우선적으로 지켜질 필요가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박영도, 2006, pp.339-340). 즉, 기본법에 개별법을 지도·유도하는 내용과 관련 규정을 포함하면, 법적인 효력을 가지지 않더라도 내용적 측면에서 우월성을 가진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앞선 검토결과를 종합하면, 기본법과 개별법 간의 관계에서 법형식적 우월성은 없지만 그 “내용”에 따라 실질적·내용적 우월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박영도, 2006, p.340).

3) 기본법의 구성 체계

기본법은 일반적으로 목적, 기본이념, 정의 기본계획·시행계획·위원회, 정책의 주요 내용, 보칙·별칙·부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 구성 체계와 내용은 아래 [표 5]와 같다. 기본법은 일반적으로 해당 분야의 정책이나 제도의 목표와 방향 등을 제시하고 정부에 대한 시책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이 많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목적, 기본이념, 책무, 정책의 주요 내용 외에 보칙이나 별칙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 다만, 해당 정책 내용이 “국민의 권리 · 의무에 영향을 주는 실체적인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 보고 · 검사, 청문, 권한의 위임 · 위탁 등 실체규정에 대한 절차적 · 보충적 사항을 보칙에 두거나, 의무위반에 대한 별칙 또는 과태료를 규정”하기도 한다.⁶⁾

[표 5] 기본법의 구성 체계 및 내용

항목	내용	주요 구성
제명	· 「○○○ 기본법」	-
목적	· 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의 정함을 반영하며, 기본법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정책 목적을 함께 기술	I. 종칙 (1) 목적
기본이념	· 법률 제정의 이념이나 방침을 강조하려는 경우에 규정 · 주요방향이나 정책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	(2) 기본이념 (3) 책무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의	· 정책의 대상 및 이와 관련된 용어 등 기본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주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기본법의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 · 필요한 경우 사업자 또는 국민의 책무를 함께 규정	
다른 법률과의 관계	· 향후 제 · 개정되는 다른 법률이 기본법에 부합하도록 규정	
기본계획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II. 정책의 기본계획 (1)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의 구분 (2) 기본계획의 책정 (3) 기본계획의 내용 (4) 계획책정절차 (5) 계획 간 조정 (6) 실시계획 (7) 기타
시행계획	· 일반적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	
위원회	·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등을 위해 관계 부처의 소속 공무원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	III. 위원회 (정책의 추진체계) (1) 위원회의 설치근거 규정 (2) 위원회의 기능

6) 국회법제실(2019, p.787)

항목	내용	주요 구성
		(3) 위원회의 구성 (4) 위원의 임기 (5) 위원의 직무 (6) 회의 규정 (7) 분과위원회(소위원회) (8) 전문위원 (9) 간사 (10) 실무위원회 (11)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12) 수당·여비 지급규정
정책의 주요 내용	· 입법목적에 따라 정책의 주요 내용을 다양하게 규정 · 국제협력, 조사·연구, 전문인력 양성, 정보화 촉진, 자금지원, 실태조사, 법제·행정·재정상 조치, 검사·검정, 인증, 지정제도, 전담조직 설치 등	IV. 정책의 내용 - (실체적 규정을 마련하는 경우) 특정 행위나 사업을 대상으로 조성, 지원, 규제에 대한 내용 포함
보칙	· 구체적인 권리·의무사항이 없는 경우 별도의 보칙 규정 불필요 · 다만, 보고·검사, 청문, 권한의 위임·위탁,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의 제재,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관계기관과의 협조 등 정책의 주요 내용에 따라 필요한 보칙 사항 규정	V. 보칙 (1) 보고의무 (2) 출입검사 또는 조사 (3) 청문 (4) 행정심판·행정소송 (5) 손실보상 (6) 수수료 (7) 권한의 위임·위탁 (8) 기타 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제재
국회보고	· 기본법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국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규정	VI. 벌칙
벌칙	· 구체적인 의무부과가 없는 경우 별도의 벌칙 규정 불필요 · 예외적으로 의무부과와 의무이행의 담보가 필요한 경우 벌칙사항 규정	
부칙	· 해당 분야에 처음 제정되는 기본법인 경우 대체로 시·부칙 행일만 규정	

출처: 국회법제실(2019, pp.787~799) 및 박영도(2006, pp.349~436)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

4) 기본법의 법적 특성을 통해 본 건축기본법

□ 현행 「건축기본법」의 유형 및 기능

- 「건축기본법」의 유형

「건축기본법」은 4가지 기본법의 유형(이념형, 정책형, 대책형, 개혁추진형) 중에서 이념형과 정책형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먼저, 「건축기본법」은 국가 차원에서 건축정책의 기본이념과 방향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이념형 기본법’의 성격을 가진다. 아울러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국가 차원의 정책·제도의 목표를 설정하고, 정부와 지자체에 시책 추진을 촉구한다는 측면에서 ‘정책형 기본법’의 성격도 동시에 보유한다고도 할 수 있다.

- 「건축기본법」의 기능

한편, 현행 「건축기본법」은 앞서 고찰한 기본법의 주요 기능 중에서 “국가정책의 방향 제시”, “정책의 계속성 및 일관성 확보”, “지방분권의 추진”, “국민에 대한 정책메시지 발신” 등에 대한 법적 기능을 법령상에 포함하고 있다. 첫째, “국가 정책의 방향 제시” 기능은 「건축기본법」 제7조~제9조에서 건축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10조에 근거해 국가 차원의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수립·실행하고 있으므로 현행 건축기본법에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건축기본법」 제2장 건축정책의 기본방향

제7조(건축의 생활공간적 공공성 구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고 그 안전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계획 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사용자의 건강과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의 이용을 배려하여 조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건축의 사회적 공공성 확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다양한 요구와 다원적(多元的) 문화에 부응하고 미래사회의 문화적 요구변화와 기술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건축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이 미래세대에 계승되는 사회·경제적 자산으로서 조성되고, 그 가치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조성하고 사용하는 과정 등에서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재이용과 재생을 촉진함으로써 자연과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제9조(건축의 문화적 공공성 실현) ①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조성하여 사용하는 전 과정에서 건축의 문화적 가치가 향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문화적·산업적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창의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이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풍토나 역사 또는 환경에 적합하게 조성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유산을 보전하고, 새로운 건축물 및 공간환경이 기존의 공간환경과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조성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시행한 건축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정책성과를 평가하는 등 건축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출처 : 「건축기본법」 법률 제18339호(2021.7.27. 일부개정)

다만, 타 기본법의 경우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 정책의 전환이 필요할 경우 법령 개정으로 새로운 이념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건축기본법」은 제정된 지 15년이 경과하였으나 여전 변화를 반영하여 정책 방향 재정립 및 이에 근거한 법령 정비는 미흡한 실정이다. 2007년 「건축기본법」 제정 당시 전문가를 중심으로 많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건축의 생활공간적 공공성 구현', '사회적 공공성 확보', '문화적 공공성 실현' 등 건축정책의 기본방향 3가지를 정하였으나, 이러한 정책 방향이 현재까지 유효한지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둘째, 「건축기본법」은 국가 차원의 5년 단위 중·장기적인 건축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장기적 관점의 건축정책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의 계속성 및 일관성 확보” 기능을 달성하도록 한다.

「건축기본법」 제3장 건축정책의 수립

제10조(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건축정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이하 생략)

제11조(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 건축정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건축의 품격 및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
4.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건축에 관한 발전 및 지원대책
6. 우수한 설계기법 및 첨단건축물 등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7. 건축분야 전문인력의 육성·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건축디자인 등 건축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9. 건축문화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10. 건축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 및 선도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11.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시행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진흥에 필요한 사항

출처 : 「건축법」 법률 제18339호(2021.7.27. 일부개정)

셋째, 「건축기본법」은 국가 차원의 건축정책기본계획을 토대로 이를 실행하기 위해 광역 단위에서는 의무적으로, 기초 단위에서는 재량에 따라 시행계획(지역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분권의 추진”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

「건축기본법」 제3장 건축정책의 수립

제12조(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지역의 현황 및 사회·경제·문화적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을 위하여 건축정책기본계획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광역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필요한 경우 건축정책기본계획 및 광역건축기본계획에 따라 시·군·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초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출처 : 「건축법」 법률 제18339호(2021.7.27. 일부개정)

넷째, 건축기본법 내 기본이념(제2조)과 건축정책의 기본방향(제7~9조)을 규율하여 국가가 “국민에게 정책메시지”를 전하고, 국민의 의무 규정(제5조)을 두어 국민에 대한 정책 참여를 유도하기도 한다.

「건축기본법」 내 국민을 향한 정책메세지

제5조(국민의 의무) ①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축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 및 발주자는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의하여 설계자와 시공자 등을 선정하고 적정한 대가를 지급 하며, 소유자 및 관리자는 제2조에 따른 건축의 공공적 가치가 올바르게 구현되도록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건축 관련 전문가는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이에 근거하여 독립되고 공정한 입장에서 국민의 건축에 대한 이해를 돋고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출처 : 「건축기본법」 법률 제18339호(2021.7.27. 일부개정)

반면, 현행 「건축기본법」은 “제도·정책의 체계화 및 종합화” 기능에 대한 법적 규정은 미흡한 실정이다. 「건축기본법」 제6조에서는 “건축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선언적인 수준이다. 건축 관계법령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하는 상황 속에서 건축기본법과 개별 법령에 따른 제도·정책과의 관계를 체계화·종합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법적 기능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 현행 건축기본법의 법체계상 위상

- 현법과 건축기본법

“건축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향상에 이바지”한다는 「건축기본법」의 목적 규정은 큰 틀에서 보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35조제1항과 연관이 있다. 하지만 「건축기본법」 내에서 법 형식상 헌법에서 정하는 이념과 원칙을 보완하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으며, 내용적으로도 「헌법」의 이념과 원칙을 보완하거나 구체화하는 사항이 있다고 보기 모호한 상황이다. 따라서 현행 「건축기본법」은 헌법 보완적 성격을 가지는 기본법이라기보다는 「국토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등과 같이 개별 분야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법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 건축기본법과 건축 관계 개별법령

「건축기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건축기본법」에 따른 기본이념에 맞도록 건축에 관한 개별법령을 제·개정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해당 조문에서 언급한 ‘건축에 관한 다른 법률’, 즉 관계법령의 범위가 모호하고 실질적으로 개별법령을 지도·유도할

수 있는 내용적 체계를 가지고 있지도 못한 실정이다. 현재 '건축'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법령은 10개이며 그 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실 소관 법률 1개(경관법)가 있으나, 이러한 법률을 뜻하는 건지, 아니면 재건축, 재개발 등 사업법까지 모두 건축에 관한 법률에 포함해야 하는 건지도 모호하다.

「건축기본법」과 개별법령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는 건축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출처: 「건축기본법」 법률 제18339호(2021.7.27. 일부개정)

[표 6] 건축기본법에서 다루는 내용과 건축에 관한 법률

「건축기본법」 제11조(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	건축에 관한 법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건축의 품격 및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 4.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건축에 관한 발전 및 지원대책 6. 우수한 설계기법 및 첨단건축물 등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7. 건축분야 전문인력의 육성·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건축디자인 등 건축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9. 건축문화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10. 건축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 및 선도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11.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시행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진흥에 필요한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물에 대한 국민 교육과 홍보 2) 우수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보존에 관한 사항 3)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4) 건축물과 공간환경에 관한 기록자료의 구축 5) 건축문화진흥 관련 주민자치기구의 설립과 운영 지원 등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건축문화진흥을 위하여 의결한 사항 	<p>〈 '건축'이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법률*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기본법 - 건축법 - 건축물관리법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건축사법 <p>〈 그 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실 소관 법률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법

* 재건축·재개발 등에 관한 사업법은 제외함

출처: 건축법 법률 제18339호(2021. 7. 27. 일부개정);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825호, 2022. 7. 26. 타법개정)

또한 「건축기본법」의 목적과 이념은 상당히 선언적이므로 실질적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기본계획 간의 관계를 규율할 필요가 있으나, 「건축기본법」과 개별법 상의 정책계획 간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연계성을 가져야 하는지도 현행 법령상에서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

□ 현행 건축기본법의 구성 체계

앞서 살펴본 기본법의 일반적인 구성 체계와 현행 건축기본법의 구성 체계를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공통적 특징으로는 법체계 측면에서 일반적인 기본법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건축기본법」은 총칙 – 정책 기본계획 – 위원회 – 정책 실체 규정(사업, 지원, 규제 등)으로 이어지는 일반적인 기본법 구성과 유사한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법체계 형식 및 내용적 측면에서 몇 가지 차이가 있다. 첫째, 내용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일반적인 기본법과는 다르게 건축기본법에는 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규정에서 ‘계획 간 조정’에 대한 조문이 누락되어 있다. 기본법은 관계 법령을 아우르는 이념과 원칙을 제시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관련 계획 간의 관계 규정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 이지만, 현행 「건축기본법」에는 누락되어 있다.

둘째, 법령 구성체계의 형식적 측면에서 보면, 일반적인 기본법은 보고 의무 등에 대한 규정은 ‘보칙’에서 규율하는 반면, 「건축기본법」에서는 ‘건축정책 국회보고’라는 보고 의무 조문이 제4장 건축정책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셋째,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규정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기본법 내 「보칙」에 포함되는 관한 위임·위탁 등에 관한 규정이 「건축기본법」에는 부재한 상황이다.

[표 7] 기본법의 구성 체계와 현행 건축기본법의 구성 비교

기본법	건축기본법		
	장	조항	조문명
I. 총칙	목적 기본이념 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제3조	기본이념 정의
		제4조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민의 의무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장 건축정책의 기본방향	제7조 제8조 제9조	건축의 생활공간적 공공성 구현 건축의 사회적 공공성 확보 건축의 문화적 공공성 실현

기본법		건축기본법		
		장	조항	조문명
II. 정책의 기본계획 (1)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의 구분 (2) 기본계획의 책정 (3) 기본계획의 내용 (4) 계획책정절차 (5) 계획 간 조정 (6) 실시계획 (7) 기타	기본계획 수립 시행계획	제3장 건축정책의 수립	제10조 제11조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포함)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
			제12조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III. 위원회 (정책의 추진체계) (1) 위원회의 설치근거 규정 (2) 위원회의 기능 (3) 위원회의 구성 (4) 위원의 임기 (5) 위원의 직무 (6) 회의 규정 (7) 분과위원회(소위원회) (8) 전문위원 (9) 간사 (10) 실무위원회 (11)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12) 수당·여비 지급규정	위원회	제4장 건축정책 위원회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설치&구성)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 기획단 지역건축위원회 (※설치&구성) 지역건축위원회의 기능
IV. 정책의 내용 - (실체적 규정을 마련하는 경우) 특정 행위나 사업을 대상으로 조성, 지원, 규제에 대한 내용 포함	정책의 주요 내용	제5장 건축문화의 진흥	제16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건축 기본조사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실시 민간전문가의 참여 설계공모의 시행
V. 보칙 (1) 보고의무 (2) 출입검사 또는 조사 (3) 청문 (4) 행정심판·행정소송 (5) 손실보상 (6) 수수료 (7) 권한의 위임·위탁 (8) 기타 별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국회보고 보칙	제6장 한국건축 규정의 운용	제25조 제26조	한국건축규정의 공고 등 한국건축규정의 개선 노력
VI. 별칙	별칙	제4장 건축정책 위원회	제15조	건축정책 국회보고
부칙	부칙	-	-	시행일만 규정

출처: 국회법제실(2019, pp.787-799)을 토대로 보완 및 재구성

2. 건축기본법의 현황과 여전 변화

1) 건축기본법의 제정 취지 및 변천

□ 건축기본법의 도입 배경 및 취지

2007년 법령 제정이유를 살펴보면, 「건축기본법」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공간인 동시에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조정하고 수용하는 공적공간이며 나아가 장차 미래세대에게 계승되는 문화유산으로서의 공공성을 지니는 건축물에 관한 기본법”⁷⁾으로 도입되었다. 또한 「건축기본법」은 “건축분야의 기본적인 정책이념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밝히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⁸⁾ 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건축문화를 진흥하고 국민의 삶의 질과 복리향상에 이바지”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건축기본법」 제정문

◇ 제정 이유

-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공간인 동시에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조정하고 수용하는 공적공간이며 나아가 장차 미래 세대에게 계승되는 문화유산으로서의 공공성을 지니는 건축물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통하여 건축분야의 기본적인 정책이념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밝히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하고 국민의 삶의 질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가. 국가기본계획 및 지역기본계획의 수립 등(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축정책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 후 확정하고, 지역의 현황 및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을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의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시·군·구의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 나. 건축정책위원회(법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
 -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의 심의 등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단을 두도록 하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소속하에 각각 시·도 건축정책위원회 및 시·군·구 건축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건축정책위원회의 업무를 관련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다.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법 제21조)
 -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건축디자인의 기준을 설정하여 건축물의 소유자들에게 권장하도록 하고, 공공시설에는 이를 적용하도록 함.

출처: 건축기본법(법률 제8783호, 2007. 12. 21. 제정) 제정·개정이유

7) 건축기본법(법률 제8783호, 2007. 12. 21. 제정) 제정·개정이유

8) 건축기본법(법률 제8783호, 2007. 12. 21. 제정) 제정·개정이유

9) 건축기본법(법률 제8783호, 2007. 12. 21. 제정) 제정·개정이유

□ 건축기본법의 변천

• 법 개정 현황

「건축기본법」은 2007년 제정 이후 2021년 7월까지 총 6차례 개정이 있었으며, 그 중 정부조직법 등 타법개정에 의한 개정을 제외하면 '15.8월과' '21.6월 두 차례 개정되었다. 먼저, 2015년 8월에 있었던 첫 번째 개정은 건축물 규정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개정이 추진되었다.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안전, 에너지, 환경 등에 관한 법령과 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그에 따라 “건축물과 관련된 관계 법령과 지자체 조례가 지속 늘어나고 있어 이를 통합한 건축 관련 규정의 필요성”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함이었다.¹⁰⁾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건축물 관련 규정을 통합한 한국건축규정을 공고”하고, 이를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8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에 반영하여 국민에게 제공¹¹⁾하기 위해 한국건축규정 운용을 신설”(제6장 제25조 및 제26조)하였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정부업무평가 시 한국건축규정의 개선 노력 등을 반영”¹²⁾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2021년 7월 일부개정은 기존의 한국건축규정 신설 이후 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와 목적과 성격이 상이하여 해당 내용을 분리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한국건축규정은 개별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및 유지·관리 등 건축물 관련 규정을 건축관계자에게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¹³⁾하기도 하였다.

• 시행령 개정 현황

「건축기본법 시행령」의 경우에는 타법 개정을 제외하면 2011년, 2013년, 2016년, 2021년 네 차례 개정되었다. '11년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의 민간위원 확대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으며,¹⁴⁾ '13년에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일반 정책위원회로서

10) 건축기본법(법률 제13470호, 2015. 8.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11) 건축기본법(법률 제13470호, 2015. 8.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12) 건축기본법(법률 제13470호, 2015. 8.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13) 건축기본법(법률 제18339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14) 건축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640호, 2011. 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부처 중심의 책임 있는 행정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두는 기획단의장을 대통령실 소속 건축정책업무 담당 비서관이 겸직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토교통부 소속 건축정책업무 담당 고위공무원이 겸직”¹⁵⁾하도록 하였다. 이후 ’16년과 ’21년은 「건축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하위법령 개정 형태로 추진되었다.

[표 8] 건축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제·개정 현황

건축기본법		건축기본법 시행령	
구분	제·개정 시기 및 주요내용	구분	제·개정 시기 및 주요내용
제정	'07.12.21.	제정	08.06.20.
타법 개정	'08.02.29. '13.03.23., '17.07.26., '20.06.09.	타법 개정	'10.03.15., '10.07.12., '13.11.20., '14.11.19., '16.04.26., '17.07.26., '17.12.29., '21.11.30.
일부 개정		일부 개정	<p>'11.01.26. 업무 관련성이 적은 당연직 정부위원 제외 및 민간위원 확대 (법 제5조)</p> <p>'13.03.23.</p> <p>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개정 (국토해양부→국토교통부)</p> <p>②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일반 정책위원회로서의 성격 명확화</p> <p>③ 기획단의 장 변경 (대통령실 소속 비서관 →국토교통부 소속 고위공무원)</p>
	<p>'15.08.11. 한국건축규정에 따른 조항 신설 - 법 제25조 한국건축규정의 공고 등 - 법 제26조 한국건축규정의 개선 노력</p> <p>'21.07.27. 한국건축규정 운영 방안에 따른 법 개정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와 분리, 위탁운영 근거 신설) - 법 제25조 제1, 3항 개정 및 제3, 4항 신설</p>		<p>'16.02.11. 한국건축규정 관련 기본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시행령 제22~24조)</p> <p>'21.10.26. 한국건축규정 관련 기본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시행령 제22~24조)</p>

출처: 표에서 명기한 「건축기본법」 및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개정 시기별 제정·개정이유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15) 건축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475호, 2013. 3.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건축 관계법령 제·개정 증가 및 건축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적 논의

「건축기본법」 제6조에서는 “건축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7년 「건축기본법」 제정 당시에는 “건축에 관한 법률”이 「건축법」, 「건축사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경관법」 4가지뿐이었으나, 2000년대 이후 법령 제정이 활발해지면서 ‘건축’이라는 단어가 제명에 들어가거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실 소관 법령은 총 11개로 늘어났다.

또한 2007년 「건축기본법」 제정 당시에 건축정책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계획은 건축정책 기본계획뿐이었다. 하지만 그 이후 제정된 건축 관련 개별법에서도 국가나 지자체 차원의 건축 관련 정책을 수립하도록 함에 따라 계획 간 관계 설정 및 조정이 필요해진 상황이다. 2022년 현재 국가 차원에서 수립하는 건축 관련 정책계획은 ‘건축정책기본계획’,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기본계획’,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 계획’, ‘경관정책 기본계획’,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등 6가지로 늘어났다.

[표 9] 건축에 관한 법령의 제정 추이

구분	1960년대 ~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건축법 (1962)	→		→
건축사법 (1963)	→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2005)		→
	경관법 (2007)		→
	건축기본법 (2007)		→
건축에 관한 법령 (제정시기)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01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2012)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13)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2013)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14)
			건축물관리법 (2019)

출처: ‘건축’이라는 단어가 제명에 들어간 법령 및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실 소관 법령을 조사하여 연구진 작성

이로 인해 각종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건축 관련 정책 간 관계 설정 및 조정이 필요해진 상황이다. 국가 차원의 정책계획에서는 건축정책기본계획에서 건축에 관한 모든 분야를 다루다 보니 개별법령에 따른 정책계획과 내용적으로 중복되며, 계획 내용상 위계가 불분명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 차원에서도 규제 또는 사업 추진 등 실체 규정을 가지는 개별법령에 비해 선언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실행력이 담보되지 않는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필요성 및 타 계획 간의 관계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이다.

이렇듯 국가 및 지자체 차원에서 건축정책 수립에 대한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현행 「건축기본법」이 관련 법령 및 그에 따른 정책계획을 체계화·종합화하고 개별 법령에 지침적인 역할(기본법의 기능)을 해야 하지만 법령 체계 및 기능 측면에서 실제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표 10] 건축 관련 법 제·개정에 따른 신규 계획 수립 현황

연도	법령	계획 명
2007	건축기본법 제정 (2007.12.21. 제정, 2008.6.22. 시행)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2010~2014)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2016~2020)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 (2021~2025)
2012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정 (2012.2.22. 제정, 2013.2.23. 시행)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014~2018)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020~2024)
2013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2013. 5. 22 제정, 2014. 5. 33. 시행)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2016)
2014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 (2013.6.4. 제정, 2014.6.5. 시행)	제1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019~2023)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행계획
	경관법 전부개정 (2013.8.6. 전부개정, 2014.2.7. 시행)	제1차 경관정책 기본계획(2014~2019) 제1차 경관정책 기본계획(2020~2024)
2014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2014.6.3. 제정, 2014.6.4. 시행)	제1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2016~2020) 제2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2021~2025)
2019	건축물관리법 (2019.4.30. 제정, 2020.5.1. 시행)	(기타) 건축물 관리계획 작성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16호)

출처: 조사내용을 토대로 연구진 작성

2) 메가트렌드 변화에 따른 건축정책의 사회요구 및 가치변화

□ 인구 변화에 따른 건축 수요 예측과 관련 정책 동향

현재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지역소멸, 가족 구조 변화 등 여러 사회구조가 변화되고 있다. 정부는 2020년을 기점으로 인구감소, 지역소멸, 초고령 사회 임박 등 3대 인구 리스크가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기획재정부, 2021)하고 있으며,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 내 사회기반시설 확충의 지연 및 도심 쇠퇴 현상이 발생(김병석, & 서원석, 2014)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구 감소로 인해 부동산에 대한 새로운 수요는 감소할 수 있으나, 1인 가구 증가, 고령화로 인한 소형주택 및 노인시설과 관련된 건축 시장은 유망할 것으로 전망¹⁶⁾하고 있다. 다만,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인해 건설시장의 자동화, 모듈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망¹⁷⁾하고 있다.

□ 환경 변화에 따른 건축 수요 예측과 관련 정책 동향

전 지구적 기후 변화로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염병 확산, 한파와 폭설, 산불 등 재난재해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은 최근 전 지구적으로 발생되는 여러 재난·재해로 이미 증명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완화정책으로 건축분야에서는 제로에너지빌딩 및 그린리모델링 등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최근에는 기후변화에 적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해 후 일상으로 돌아가는 복원력(Resilience)에 초점을 맞춘 방재정책으로 변화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지역별 재해특성을 고려한 건축물 재료, 시설물 구조 및 배치계획 마련이 필요하다(한우석, & 유진욱, 2015). 감염병 상시대응이 가능한 건축 환경 계획, 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 및 방재시설, 기후 변화를 늦추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과 제로에너지 건축 수요 증가가 필요하다.

16)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학교시설 축소가 전망(김지윤 & 김오석, 2021), 1인가구를 위한 지속적인 주택 공급이 필요한 상황(신미림 & 남진, 2011)

17) 국내 건설현장의 기능 인력 수급이 어려워지고 있어 건설환경 개선, IT기술 활용 및 시공자동화 등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장호면, 김경훈, & 김재준, 2009).

□ 기술 변화에 따른 건축 수요 예측과 관련 정책 동향

스마트시티 관련 산업이 전세계적으로 크게 성장¹⁸⁾하고 있는 가운데, 기술발전과 도시 내 다양한 서비스 도입으로 인해 건축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측되고 있다.

무인화, 지능화가 가속화되어 주거형태나 생활방식에도 많은 변화를 예측¹⁹⁾하고 있으며, 산업분야 또한 기술발전에 따라 디지털화, 자동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²⁰⁾하고 있다.

건축분야에서는 첨단 산업단지, 스마트홈 등 신기술을 활용한 건축물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건설시공의 무인화, 자동화, 모듈화 요구 증대, 메타버스, 디지털트윈, 지능화를 통해 여러 종류의 활동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공간 수요가 예상된다.

□ 경제 변화에 따른 건축 수요 예측과 관련 정책 동향

한편 경제적 측면에서는 저임금 일자리가 감소하고 소득불평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자국시장 보호를 등을 위한 탈세계화 경향도 강화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을 겪으며 전자상거래 및 배달경제가 급속하게 성장하였다.

이러한 경제악화 및 저성장 시대에서 저렴주택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공공 복지 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물류센터와 같은 전자상거래 및 배달경제 관련 시설 공급이 확대될 전망²¹⁾이다.

[표 11] 메가트렌드에 따른 건축 수요 예측과 건축 정책 동향

메가트렌드		건축 수요 예측	건축 정책 동향
구분	내용		
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화• 1~2인 가구 증가• 생산인구(노동공급)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시설 축소• 1~2인 소형 주택 수요 증가• 고령층을 위한 시설 수요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시설 복합화•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장애인

18) 전세계적 스마트홈 시장은 2018년부터 연평균 21.2% 성장 중이며, 2021년 기준 국내 스마트홈 시장 규모는 22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신윤오, 2021).

19) AI 혁명 등 기술발전을 통해 사회 전반에 무인화, 지능화가 가속되고 메타버스 확산 및 로봇과 공존 등으로 인해 인간의 일과 활동에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된다(김현곤, 2022).

20) 생산 자동화 진전으로 산업단지 디지털화가 예상되고, 건설시공에 있어서도 무인화 및 자동화가 진행될 것을 전망(오원섭, 2018)

21) 라스트마일 딜리버리 확대를 위해 도심내 소규모 분산 물류시설 도입이 촉진(삼정KPMG 경제연구원, 2018)

구분	내용	메가트렌드	건축 수요 예측	건축 정책 동향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변화(지구온난화) 재난재해 증가 인수공통감염병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인력부족으로 인한 사전제작 및 모듈러 공법 확대 저탄소 녹색건축 증가 건축물의 안전관리 강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상가 공실률이 하락하고 물류센터 등 이커머스 관련 시설 공급 증가 재택근무 확대로 주거·사무공간 복합화, 대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편의시설 설치 건설자동화 사업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지속·확대 학교 등 실내 공기질 관리 건물부분 탄소중립 추진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율주행자동차 발달 홈 사물인터넷 발달 3D프린터 상용화 데이터 사용량 급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스마트홈 증가 3D프린팅 건축 도입 데이터센터 등 기반시설 증가 건축 데이터 표준화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교통 데이터 개방 추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추진 공공건축물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 상향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불평등 심화 저성장 탈세계화 온디맨드, 전자상거래 및 배달경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렴주택 필요 물류센터, 촬영장 등 전자상거래 관련 시설 수요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확대 전자상거래를 위한 인프라 지원

출처: 조사내용을 토대로 연구진 작성

□ 메가트렌드 변화에 따른 미래 건축정책의 방향

2021년 2월에 발표한,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에서는 메가트렌드 변화에 따라 건축물이 가져야하는 기능과 성능이 '건축의 공공성'에 더하여 빠르게 변화해 가는 사회, 경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림 3] 메가트렌드에 따른 건축정책의 변화

출처: 국토교통부(2021),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자료집, p.58.

이제 건축정책은 인구사회, 기술, 환경, 경제 등 메가트렌드에 따라 건축 자체에 대한 국민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생산방식도 개선되고, 건축성능과 품질이 ‘건축의 지속가능성’ 측면 대폭 개선되어야 할 시대에 도래했다.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에서 정리한 건축분야 현안 진단에 따른 정책 방향을 살펴보면, 크게 9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²²⁾

첫째, 기존 공공건축 품질개선을 위한 국가정책은 건축기획 및 설계 등 생산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사후설계관리 및 시공단계 품질 관리 등 공공건축 전생애 전반에 대한 관리로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건축물, 도로, 가로시설물, 조경시설 등 공간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전체 도시 공간 구조와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시와 건축을 통합하여 구현하는 도시건축 통합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우수한 건축자산이 무분별하게 가치가 훼손되거나 멸실되지 않도록 정책 수단을 마련하고, 일상 속에서 건축문화 인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건축문화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

넷째, 전 지구적 관점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는 기후변화와 이상기후에 대비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확대 등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지속가능한 건축물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켜야 한다.

다섯째, 코로나19를 비롯하여 이상기후·장기화로 인한 재난·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건축 부문에서도 불확실한 재난 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화·자발적 안전관리를 주도해야 한다.

여섯째, 시민 일상생활공간에 안전을 위협하는 건축 및 도시환경으로써 빙집, 방치 및 위반건축물 등 지역 안전위협 요소를 제거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정비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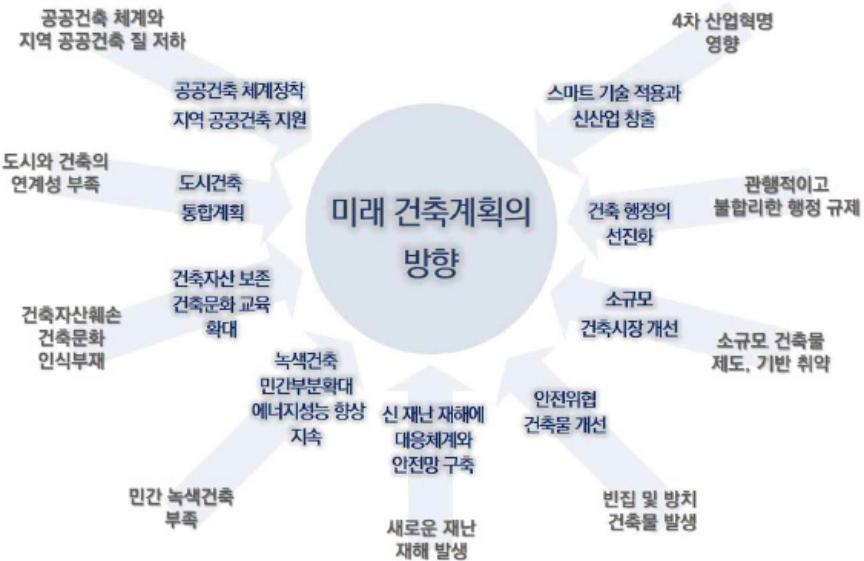
일곱째, 다양하고, 개성있는 건축물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소규모 동네 건축시장의 품질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역량있는 소규모 건축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여덟째, 복잡하고 비합리적인 건축 인허가 절차로 인해 우수건축물 양산에 걸림돌이 되는 비효율적 건축행정을 개선하고 선진화하여야 한다.

아홉째, ICT 기반 첨단기술의 발달, 신소재 기술융합발전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

22) 국토교통부(2021),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자료집, pp.50-53.의 내용 요약 및 정리

할 수 있는 첨단 건축기술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건축 정보를 구축 및 고도화 하여야 한다.



[그림 4] 건축현안과 메가트렌드를 종합한 미래 건축정책의 방향(3차 건축정책)

출처: 국토교통부(2021),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자료집, p.53.

3. 소결 : 건축기본법 개정의 필요성

앞선 기본법에 대한 법적 특성 고찰, 기본법으로서의 건축기본법의 위상과 기능, 건축 기본법의 변천과 여전 변화 등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봤을 때, 건축기본법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측면에서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 첫째,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건축정책의 기본이념과 방향 재설정

「건축기본법」 제정 당시에는 건축물의 공적공간이자 문화유산으로서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이와 관련된 정책이념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환경 변화, 기술 발전 등에 따라 건축물의 공공성 확보라는 기본적인 정책이념과 더불어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는 건축정책의 이념과 방향을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 둘째, 건축에 관한 타 법령과의 관계 속에서 기본법으로서의 역할 정립

「건축기본법」 제정 당시에는 ‘건축에 관한 법률’은 「건축법」, 「건축사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경관법」 4가지뿐이었으나, 현재는 11가지로 급증한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제는 「건축기본법」 뿐 아니라 개별법에서도 국가나 지자체 차원의 건축 관련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각종 건축분야 정책계획은 건축기본법에 따른 정책계획과 내용적 위계가 모호한 실정이다. 이는 각종 건축분야 정책 계획 간의 중복·상충, 실행체계 및 주체 모호 등의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따라서 「건축 기본법」과 건축에 관한 개별법령에 근거해 수립되는 각종 건축 관련 정책계획 간의 명확한 관계 설정이 시급하며, 이는 앞서 고찰한 기본법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겠다.

□ 셋째, 건축정책의 실행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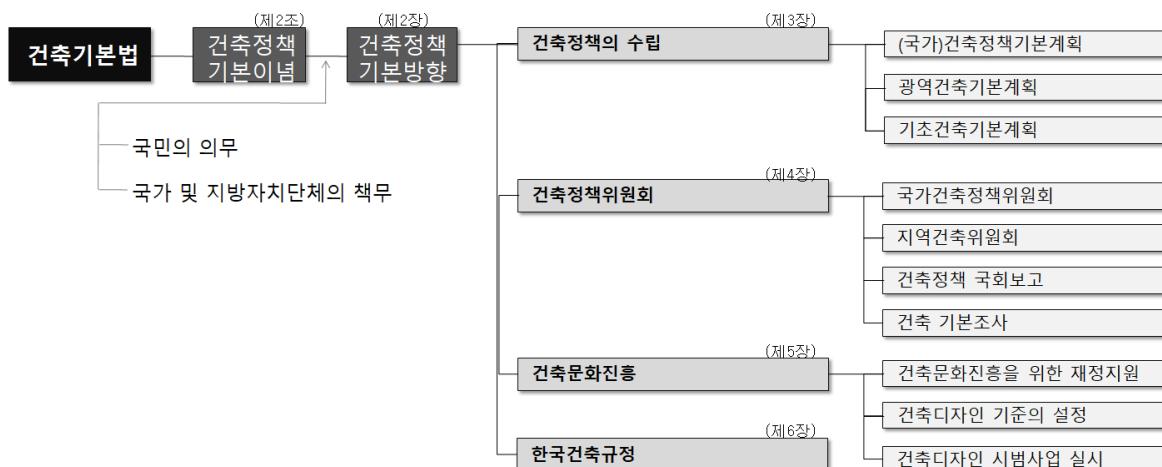
건축에 관한 타 법령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건축정책 기본계획의 실효성이나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필요성 등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건축에 관한 타 법령과의 관계 설정과 역할 분담을 기반으로 건축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제도적 수단을 마련하도록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제3장 건축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과제

1. 건축정책 실행체계별 추진 현황
2. 건축정책에 관한 관계자 및 전문가 인식
3. 건축기본법 개정 소요

1. 건축정책 실행체계별 추진현황

「건축기본법」은 6개장, 26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정책 실행을 위해 ‘건축정책의 수립’, ‘건축정책위원회 구성’, ‘건축문화진흥’, ‘한국건축규정’ 등 크게 4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다.



[그림 5] 건축기본법의 구성체계

출처: 김상호 외(2008), 질적 특성을 고려한 건축도시공간정책의 방향설정을 위한 연구, p.35. 내용을 재구성

1) 건축정책 계획 수립

□ 국가단위에서의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건축기본법 제10조(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제10조(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건축정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제13조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 후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건축기본법 제11조(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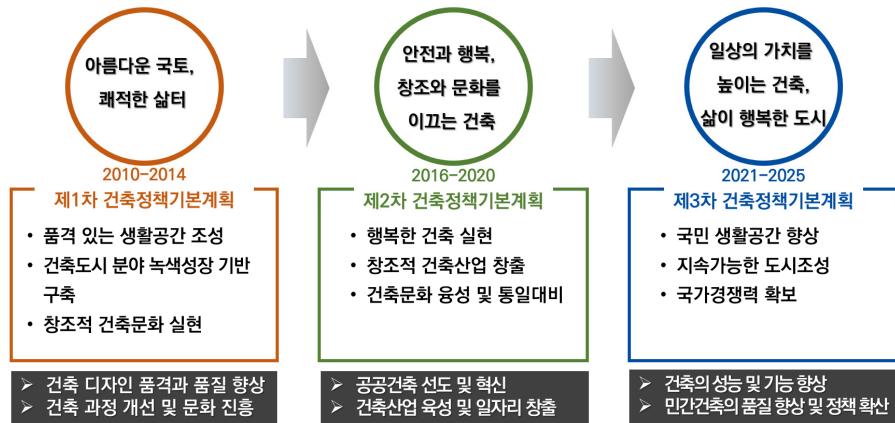
1. 건축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건축의 품격 및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
4.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건축에 관한 발전 및 지원대책
6. 우수한 설계기법 및 첨단건축물 등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7. 건축분야 전문인력의 육성·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건축디자인 등 건축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9. 건축문화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10. 건축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 및 선도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11.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시행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진흥에 필요한 사항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건축기본법」 제정의 주요 목적은 건축 분야의 기본적인 정책이념을 제시하는 것이며, 이러한 법 제정의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 그간 세 차례의 국가 차원의 건축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왔다. 그간 수립된 제1~3차 건축정책 기본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각각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에서는 건축물의 디자인 품격과 품질향상을 위해 건축 과정에 대한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 이후 2차 건축정책기본계획에서는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공공건축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건축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었다. 가장 최근에 수립된 3차 건축정책기본계획에서는 종전에 중요하게 다루던 정책아젠다인 건축디자인 품질 뿐만이 아니라 메가트렌드에 따라 변화되는 건축물이 갖추어야 할 새로운 성능과 기능에도 초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이와 더불어 「건축기본법」은 “건축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의의를 가지는데, 최근 건축을 둘러싼 사회요구와 가치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기후변화 및 재난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주기적인 감염병 발생에 따라 감염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건축물이 요구되고 있다. 그 외에

도 기술 발전 가속화로 지능형 건축, 스마트건축 등 기존에는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고려하지 않았던 다양한 가치들이 중시되고 있다.



[그림 6]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주요 중점정책 변화 과정

출처: 국토교통부(2021),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자료집, p.5.의 내용 재구성

□ 지역 건축기본계획 수립

[건축기본법 제12조(지역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2조(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지역의 현황 및 사회·경제·문화적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을 위하여 건축정책기본계획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광역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필요한 경우 건축정책기본계획 및 광역건축기본계획에 따라 시·군·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초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광역건축기본계획 및 기초건축기본계획(이하 “지역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제18조에 따른 시·도건축정책위원회 또는 시·군·구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4조(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광역건축기본계획 및 기초건축기본계획(이하 “지역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건축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가차원의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하되, 지역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광역시·도에서는 지역건축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법정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국가차원에서의 건축정책기본계획에 따라 1차와 2차계획은 법정계획으로써 모든 광역지자체(광역시, 도)에서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지자체 여건과 상황에 따라 3차 계획은

서울시와 경기도, 부산시가 현재 수립 중에 있다.



[그림 7] 광역지방자치단체 건축기본계획 수립 시행 경과

출처: 조사내용을 토대로 연구진 작성

2022년을 기준으로 15개의 지자체에서는 제2차 건축기본계획이 시행되고 있으며, 2개 지자체(대구, 충청남도)에서 수립 중에 있다. 국가계획 공표 이후, 지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계획 수립에 대한 예산 확보 및 계획 수립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10개 광역지자체는 2차 계획에서 국가 3차계획을 반영하고 있으며, 국가계획과 속도를 맞추어 3차계획까지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 부산, 경기도에 한정되어 있다.

[표 12] 지역건축기본계획의 국가계획 반영 현황

국가정책	반영 지역 현황	
	반영된 지역계획 차수	지자체
3차까지 반영	3차	서울시, 부산시, 경기도
3차까지 반영	2차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대구, 세종,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2차까지 반영	2차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1차까지 반영	모든 지자체 반영	

출처: 조사내용을 토대로 연구진 작성

지역건축기본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비전과 3대 목표 체계, 실천과제와 실행체계로 구성되어 국가 건축정책의 틀을 따르고 있으며, 단·중·장기의 단계별 계획 목표를 설정하고, 5년 내 시행 가능한 단기과제를 구분해서 제시하고 있다.

특·광역시에서 진행된 건축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전략을 종합해본 결과 지역 계획에서는 건축문화 분야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비전 설정도 많이 한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많이 다루고 있는 분야는 건축산업 분야로 대부분 전략 이상으로 다루고 있다. 첨단건축의 경우 국가정책에서 3차 건축정책기본계획부터 다루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특·광역시에서는 아직 많이 다루지 있지 않았다.

[표 13] 2차 광역건축기본계획 정책대상 및 주요내용

건축 분야	건축 경관	공공 건축	녹색 건축	건축 산업	건축 자산	건축 문화	건축 안전	공간 복지	건축 재생	통일 건축	첨단 건축	건축 행정	건축 교육	시민 참여	민간 건축
서울		○	○	●	○	●	◎	○	○			○	○	★◎	○
부산	◎	◎	●	◎	◎	●	●	○	◎		◎	○	○	◎	
광주	◎	◎	◎	●	◎	★ ●	●	◎	○		○	○	○	○	○
대전	○	○	●	●	◎	●	○	○	○	◎	★ ●	◎	○	○	○
울산	○	◎	●	◎	○	★ ●	◎	○	○				○	★	
인천	●	●	◎	●	◎	●	●	○	◎		◎	○	◎	○	○
제주		◎		◎	●	●	◎	◎	○			○			

★비전 , ● 목표, ◎전략, ○ 실천과제, □ 단위사업 (목표년도가 2022년 이후인 계획만 포함)

출처: 조사내용을 토대로 연구진 작성

건축기본법 제12에서는 17개 광역시·도 외에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기초건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기초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한 지자체는 ‘순천시’가 유일하다.

2) 건축정책위원회 구성 및 정책 성과관리 체계

□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주요 활동

[건축기본법 제13조(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13조(국가건축정책위원회)
①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관계 부처의 건축정책의 조정 및 그 밖에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가건축정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기본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총 30명으로 구성(위원장 포함 민간위원 19명과 당연직위원 11명¹⁾)되며, 국가 건축정책의 비전과 목표 제시 및 관계부처 건축정책의 심의·조정을 주요 역할로 한다. 2008년 12월 제1기 위원회가 구성되고 2년 주기로 위원회가 재구성되어 현재까지 총 6기 위원회가 운영되어 왔다.

2008년 12월 발족	제1기 (위원장: 정명원)	“ 아름다운 국토 쾌적한 삶 ”		
		품격 있는 생활공간 조성		건축 · 도시분야의 녹색성장 기반 구축
2011년 04월 출범	제2기 (위원장: 이상정)	“ 아름다운 국토 쾌적한 삶 ”		
		품격 있는 생활공간 조성		건축 · 도시분야의 녹색성장 기반 구축
2013년 12월 출범	제3기 (위원장: 김석철)	국가 경쟁력 제고 기반 마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국가 경제성장 견인 (지속 가능한 건축산업 플랫폼 구축)	
		안전한 도시 만들기	생활밀착형 공간복지	도시수출로 경쟁장 견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주거수요 다변화 대응
2016년 02월 출범	제4기 (위원장: 제해성)	“ 국민이 행복한 건축 ”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환경	효율적인 공공건축	통일된 국토 미래상 제시 건축서비스 산업의 진흥 편안하고 살기 좋은 집
2018년 04월 출범	제5기 (위원장: 송효상)	“ 좋은 건축 행복한 삶, 좋은 도시 건강한 사회 ”		
		공공건축 (좋은 공공건축이 선도하는 건축의 질과)	건축시스템 (연료성과 배양성에 기반한 건축 프레임)	건축문화 (국민이 향유하는 문화로서의 건축)
				도시공간 (입체적이고 통합적인 도시공간 구현)
2020년 05월 출범 ~ (계속)	제6기 (위원장: 박인석)	“ 좋은 건축, 열린 도시 ”		
		건축생산 시스템 혁신	열린 도시 구현	건축산업의 정상화 도시환경개선 및 건축재전 활성화 대국민 공감대 형성

[그림 8]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구성 현황 및 주요 활동

출처: 국토교통부(2021), 건축정책 성과보고서(2019~2021) 발표자료.

1) 당연직 위원(11인):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구성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주로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좋은 건축 및 도시 정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공공건축, 건축시스템, 도시공간, 건축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기획, 추진해 왔다.

[표 14] 국가건축정책위원회 5기, 6기 주요 활동

구분 (5,6기 정책부문)	주요 활동	활동 내용
공공건축	총괄 건축가 / 공공 건축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등의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확대 ·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9-360호) 개정 · 민간전문가(총괄/공공건축가)제도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 “민간전문가(총괄/공공건축가) – 공간환경 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 추진
	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개정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
	공공건축 부문 업무기준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개정 (설계공모 당선작 설계비감액 금지 조항) · 부처별 지역개발사업 시행지침 개정
	공공건축 특별법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개정 ·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개선 ·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발표
건축시스템	소규모 건축시장 산업구조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혁신방안 대정부 건의 ·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심의제도 개선’ 관련 보고 · 「건축허가 및 심의절차 선진화 방안」 관련 간담회 개최 · 건축행정버스터브향상을 위한 건축법 개정(안) 논의
	건축사 자격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사 자격제도 및 시험제도에 관한 개선 필요성 공론화 · 「공공건축 혁신 9대 핵심과제」 발표
	설계의도 구현제도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의도 구현’ 관련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발표 · ‘설계의도 구현’ 관련 세부과제 도출
	건축 인허가 및 심의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업체에 대한 기준과 등록제도 마련 · 제1차 건축서비스산업진흥 기본계획(안) 수립 참여 ·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관련 정책 기획
도시공간	도시·건축 통합계획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토지주택공사 조직개편을 통한 ‘도시건축통합계획단’ 신설 · 과천 과천지구 ‘도시건축 통합계획 설계공보
	도시설계 제도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도시설계연구단 개편 · 지구단위계획 제도 개편 노력
건축문화	근현대 주요 건축·도시공간 자산관리 체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현대건축 및 도시공간 자산관리 체계화 추진 · 2020년도 도시건축박물관 건립 예산안 편성 및 공공건축가 위촉 · 도시건축박물관 국제설계공모 추진 · 문화산업 내 건축설계 산업 포함 추진 ·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 건축물 추진
	도시건축박물관 건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범정부협의체 발족
	건축문화에 대한 국민공감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시설 디자인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및 추진체계 마련
	학교건축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공간혁신사업 가이드라인 마련 · 국립 부설 특수학교 2교, 학교건축 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출처: 국가건축정책위원회(2020), 제5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활동성과, 국토교통부(2021), 건축정책 성과보고서(2019~2021) 내용 재구성

□ 건축정책 성과점검 및 국회보고

[건축기본법 제15조(건축정책 국회보고)]

제15조(건축정책 국회보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건축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2년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성과 등에 관한 사항
2. 미래사회와의 건축환경 변화 전망 및 대책
3.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과 사업 등에 관한 사항
4. 건축환경, 문화 창달을 위한 지역의 풍토성 및 전통성 계승에 관한 시책
5. 건축제도·기준 등의 국제화에 관한 사항
6. 건축기술·건축설계의 발전,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건축에 관한 중요 사항

건축정책에 대한 성과관리는 기본법 제15조에 근거하여 매2년마다 기본계획 실천과제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건축정책 전망에 대한 사항을 정리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4차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보고를 마쳤다.

[표 15] 지역건축기본계획의 국가계획 반영 현황

구분	추진 경위
2010.05.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2010~2015) 고시
2013.03.	[2010~2012] 건축정책기본계획 성과 국회보고(1차)
2016.01.	[2010~2015] 건축정책기본계획 성과 국회보고(2차)
2016.11.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2016~2020) 고시
2019.07.	[2016~2018] 건축정책기본계획 성과 국회보고(3차)
2021.02.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2021~2025) 고시
2022.02.	[2019~2021] 건축정책기본계획 성과 국회보고(4차)

출처: 조사내용을 토대로 연구진 작성

건축정책의 성과점검은 1차적으로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세부 단위과제별 수행 여부를 검토대상으로 진행된다. 또한, 건축정책이 국토부 외에도 건축정책 관련 유관기관에서도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 산하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 등), 국책연구원(건축공간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관련 협회(대한건축사협회 등) 등 유관 기관 주요 사업 및 연구 실적, 산업 지원 내용을 토대로 이행현황을 분석한다.

1차로 조사된 사항을 토대로 2단계에서는 건축정책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세부단위과제별 추진주체(정부부처)를 대상으로 과제관리카드를 배포하여 각 과제 담당부서 및 담당

자를 통해 해당 사업의 추진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1】		【행정안전부-2】																									
3대 목표	행복한 건축실현	9개 추진전략	생활공간의 안전성 증진																								
26개 설천과제	건축안전 제도기반 구축																										
단위과제 1-1~2~4 공간유지체계 세우는 차세대 대응 시스템 구축																											
팀 장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별호) 전(회) 부서	재난안전정책관 (별호)	현(회) 부서 재난안전정책과 (지진방재정책과)																								
	담당자 (주관) 한현성	044-205-5227 cal@koreatv.or.kr	전화번호: 이메일																								
과제 현황	재난안전정책 (주관) 한현성	044-205-5189 jihwae@kreaitv.or.kr	이메일 066016@koreatv.or.kr																								
	재난안전정책 (주관) 노현관	044-205-5237 nokim@koreatv.or.kr																									
과제 현황	추진현황(해당하는 항목에 체크)																										
	계획 추진기간 실제 추진기간																										
	✓전형 △완료 □비정 □중단 □기타()	2016 2020 2017 계속	착수 완료 착수 완료																								
과제부수증																											
내종성상장부서를 통한 지원 안전 기관 정부 세종 - 지원안전 시설을 이용하는 시설이나 내종성상장부서를 통한 지원 세종 및 지원기관 내종성상장부서를 유도 취약요소(주택 분양기관) 건축물 지원 조사관리																											
분류																											
✓법 제도 개선과정 △계획수립 미시법사업지원 및 추진 △연구용역 △자침 및 기준 마련 △사업지원 □교육시행 □기타()																											
과제성과 및 실적	성과 및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진분양 표시제 시행 - 기존 종합개발을 대상으로 행정기구로부터 일괄적인 내종성상장부서를 구하는 내종성상장부서를 확보(내종성상장부서는 17.1.20.까지) 자진분양제로 분양기관은 시장경기 18.12.4) 목상에 따른 분양기관 건축물 조사관리 - 노후 건축물 947개소(면적 1,381개소) 내종성상장부서(777개소) 																										
	성과 추진계획																										
성과 및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복지관, 경로당,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생활안전 취약계층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8,683명)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안전 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교육 질보고서(작성중), • 생활안전 안전교육 결과 보고서(작성중) 																											
근거자료	18년 생활안전 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교육 질보고서(작성중), 18년 장애인 안전교육 결과 보고서(작성중)																										
	□고시 및 공고 △연구용역 보고서 □보도자료 □기타()																										
	△법 제도 지원 △기타()																										
예산 계획	(단위: 억원)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비고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전) 계</td> <td>0</td> <td>0</td> <td>0</td> <td>0</td> <td>0</td> </tr> <tr> <td>국 비</td> <td>0</td> <td>0</td> <td>0</td> <td>0</td> <td>0</td> </tr> <tr> <td>지방비</td> <td>0</td> <td>0</td> <td>0</td> <td>0</td> <td>0</td> </tr> <tr> <td>민 자</td> <td>0</td> <td>0</td> <td>0</td> <td>0</td> <td>0</td> </tr> </table>			(전) 계	0	0	0	0	0	국 비	0	0	0	0	0	지방비	0	0	0	0	0	민 자	0	0	0	0	0
	(전) 계	0	0	0	0	0																					
국 비	0	0	0	0	0																						
지방비	0	0	0	0	0																						
민 자	0	0	0	0	0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국비</td> <td>0</td> <td>0</td> <td>0</td> <td>1.5</td> <td>3</td> <td>3</td> <td>7.5</td> </tr> <tr> <td>지방비</td> <td>0</td> <td>0</td> <td>0</td> <td>0</td> <td>0</td> <td>0</td> <td>0</td> </tr> <tr> <td>민자</td> <td>0</td> <td>0</td> <td>0</td> <td>0</td> <td>0</td> <td>0</td> <td>0</td> </tr> </table>			국비	0	0	0	1.5	3	3	7.5	지방비	0	0	0	0	0	0	0	민자	0	0	0	0	0	0	0	
국비	0	0	0	1.5	3	3	7.5																				
지방비	0	0	0	0	0	0	0																				
민자	0	0	0	0	0	0	0																				

[그림 9] 건축정책 과제관리카드

출처: 국토교통부(2021), 건축정책 성과보고서(2019~2021), p.120.

그러나, 과제관리카드에 의한 성과관리를 진행하는데 있어 관련 과제 추진부서 및 담당자의 부서이동 및 보직변경 등으로 인해 구체적인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으며, 기본적으로 건축정책기본계획 세부단위과제 이행점검 달성을 여부에 집중한 성과점검으로 이루어져 건축정책 추진을 통해 사회에 어떠한 영향과 성과를 미쳤는지에 대한 성과분석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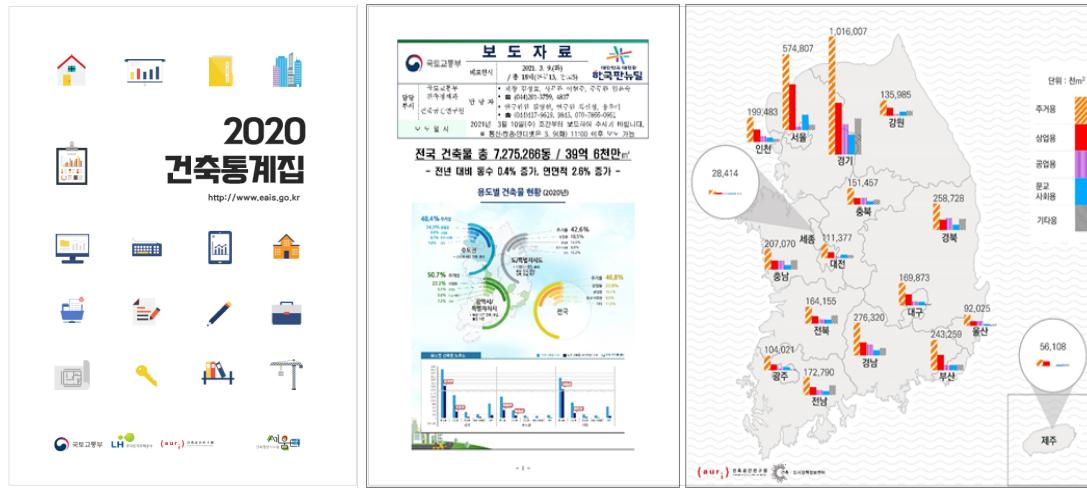
□ 건축 기본조사 및 통계 개발

【건축기본법 제16조(건축 기본조사)】

제16조(건축 기본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축에 관한 각종 통계, 건축물 현황, 건축에 관한 인식도 및 기대수준, 그 밖에 제15조제2항 각 호와 관련되어 필요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제1항의 조사사항 중 일부에 대하여 이를 직접 조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

건축분야에서의 빅데이터는 ‘건축물대장정보’이다. 이를 관리하는 건축행정정보시스템(세움터)에서는 연간 건축 통계집을 작성하고 발간하고 있다. 또한 건축행정정보인 건축물대장, 건축인허가 대장, 주택인허가 대장, 폐말소대장을 수집하여 매년 초 건축물 현황 통계를 보도자료로 공표하고 있다.



[그림 10] 건축통계 발표

출처: 국토교통부(2020), 2020 건축통계집 표지, 국토부 보도자료(2021.3.9.일자).

2022년에는 건축정보 HUB 구축사업으로 분산된 건축관련 정보와 서비스를 통합하여 건축정보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건축정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이와 함께,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매년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건축공간연구원이 통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계작성지 정기관으로 지정받아 매년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를 국가승인통계로 발표할 예정이다.

[표 16] 2021년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조사 항목

부문	조사항목	활용목적
사업체 일반현황	회사의 조직형태 연간 매출액 연간 지출액 사무실 점유형태 및 면적, 임대비용 해외지사 유무, 수	산업현황 및 여건전망

부문	조사항목	활용목적
사업분야 및 수주, 생산성	사업체 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 사업분야 연간 수주액 서비스별 수주액 비중 제안(입찰), 수주(낙찰) 프로젝트 건수 발주처 유형 발주처별 수주액 공공/민간 사업 계약 형태, 수주액 민간 사업 대가 방식, 평균대가 기획업무 후 계약미체결 건수, 소요비용 향후 진출희망 사업분야	발주제도 개선 건축서비스의 표준화 적정대가마련
해외사업 및 해외업체 협업	해외업체 협업 프로젝트 수 해외업체 협업 분야 해외 프로젝트 수행 건수 해외프로젝트 계약건수, 연간 매출액 해외사업 주요 발주방식 해외사업 중 해외업체와 협력한 프로젝트 건수, 분야 해외 프로젝트 참여 의사 해외 프로젝트 진출 지역 우선순위 해외사업 추진 시 어려움	해외시장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정보기술 및 시설현황	BIM, GIS 보유 여부 BIM, GIS 활용 가능 인력 현황 BIM, GIS 활용유무, 활용 업무, 활용 비중 업무수행을 위한 장비 보유 수	전문인력 육성 산업생산성 향상
교육 및 홍보	사업체가 실시한 직원교육, 필요한 직원교육 사업체 홍보방법	대학 교육프로그램 개선 생산성 및 지속성 향상 홍보전략 수립
인력 및 근로환경 현황	총 직원수 종사자 구성 : 고용유형, 국적, 부서 종사자 현황 : 성별, 연령, 학력, 기술등급별 직원 수 근속년수별 직원 수 대학전공별 직원 수 자격 보유자 수 향후 예상 직원 수 직원 채용의 어려움 입사자 수, 퇴사자수, 주요 퇴사사유 직원 경력별 평균 연봉 월 평균 급여, 월 평균 근로일수, 월 평균 후가일수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건축서비스산업의 고용 및 창업 촉진

출처: 건축공간연구원 건축서비스산업 지원사업 내부자료(2022).

3)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지원체계

□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건축기본법 제21조(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 제21조(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축디자인(공공공간은 제외한다)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공공간의 건축디자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의 범위 안에서 지역 내 건축디자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물 및 공간환경 시설물의 소유자·관리자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디자인 기준에 따르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디자인 기준 설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디자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에서 2009년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을 마련한 이후 4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며, 최종적으로는 2019년 7월에 개정된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시행 2019. 7. 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60호, 2019. 7. 4., 전부개정])」이 있다.

여기에는 건축기본법 제23조에 명시된 민간전문가로써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에 대한 역할과 업무지원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건축디자인 단계별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건축디자인을 위한 사전조사, 사업계획 수립, 설계 발주방식 결정, 기획업무의 의뢰 및 공공건축 사전검토 실시, 설계의도 구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 건축디자인시범사업

[건축기본법 제22조(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실시)]

- 제22조(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건축디자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건축디자인을 개선하는 개발·정비사업
3. 민간에서 발주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절차, 건축디자인 기준의 적용, 재정지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기본법 제22조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시범사업은 대표적으로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과 「민간전문가 및 공간환경전략계획 지원사업」이 있다. 두 사업은 명칭 및 시기가 다르게 시행되었으나 사업의 기본방향 및 목적은 유사하다. 이는 법 22조 제1항 제1호

및 제2조에 의거 지역의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에 대한 통합마스터플랜 수립과 법 23조에 따른 민간전문가 운영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된 것으로 지자체의 통합마스터플랜 수립과 사업 총괄계획이 운영을 지원하였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지역 총괄계획기획, 2019년 이후 현재는 총괄·공공건축가 운영 및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표 17]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현황

구분	시기	지원 내용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	2009~2017	- 사업 총괄계획과 통합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민간전문가 지원사업	2015~2018	- 지역 총괄계획이 지원
민간전문가 및 공간환경전략계획 지원사업	2019~현재	- 총괄·공공건축가 및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

출처: 각 사업내용을 토대로 연구진 작성

2009년부터 시작된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의 경우 매년 적게는 2개, 많게는 11개의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를 선정하였다. 특히 1차년도 신규 대상지에는 통합마스터플랜 수립을, 2차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지원하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주요 계획 수립의 경우 별도의 선도사업을 추진하여 시공에 대해서도 지원하였다.

[표 18]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 추진 목록(2009~2017)

년도	지자체	사업명	지원금
2009 (10개)	강원 춘천	경춘선 철도교량 하부 녹색 공간 조성	2억
	경기 안산	공공디자인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들의 상록수	1억
	경북 영주	새롭게 열리는 역사의 통로	2억
	대구 남구	함께 소통하는 공간으로_미군부대가로환경정비사업	1억
	대전 중구	대전 문화흐름‘중교통’조성 사업	1억
	부산	행복한 도시어촌 청사포 만들기	2억
	전남 목포	목포 근대역사문화타운 내 신파의길 시범가로 조성사업	2억
	전남 영암	전통 주거문화의 보급과 확산을 위한‘한옥상징 타워 & 박물관’건립	1억
	충남 아산	도시 속에 초록 빛 씨앗을 뿌리다	1억
	충북 충주	도심 속 녹색생활공간 조성 사업	2억
2010 (8개)	강원 철원	자연과 소통하는 청정 철새마을 문화기반시설 조성 시범사업	2억
	경남 김해	호계천 주변 창의적인 네트워크 사업	2억
	경북 포항	해양강국으로 가는 느낌표! 국립 등대박물관 및 호미곶 주변일대 Redesign 사업	1.5억
	부산 중구	영주동‘오름동 문화 만들기’	1.5억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 워터프런트 디자인 리노베이션 프로젝트	1.5억

년도	지자체	사업명	지원금
	충북 청주	빛이 흐르는 아름다운 경관조명 사업	1.5억
	부산시	(2차년도) 행복한 도시어촌 청사포 만들기	5억
	경북 영주	(2차년도) 새롭게 열리는 역사의 통로	5억
2011 (6개)	경남 거창	창조 공공디자인 조성사업	1.5억
	충남 홍성	역사도시 홍성 도심 활성화 계획	1.5억
	부산 대청로	부산 대청로 지역대표거리 조성사업	2억
	강원 철원	(2차년도) 자연과 소통하는 청정 철새마을 기반시설조성 시범사업	2억
	부산	(시공) 행복한 도시어촌 청사포 만들기	2억
	경북 영주	(시공) 새롭게 열리는 역사의 통로	3억
2012 (11개)	전남 광양	광양읍 공공공간·공공건축물 통합 마스터플랜	1.5억
	경북 울진	울진 보부상 옛터의 재조명	1.5억
	부산 동래	부산 고(古) 도심의 개발여건 변화에 따른 통합 재생정비 방안에 따른 통합 재생정비 방안을 통한 동래 재창조	1.5억
	충북 충주	충주 재탄생 마스터플랜 수립	1억
	경기도 안성	역사 문화의 정체성과 조화되는 주거지 경관 형성	1.5억
	전북 익산	익산시 금마시가지 역사마을	1.5억
	강원 철원	(2차년도) 양지리 청정철새마을 문화기반시설 조성 기초조사 및 기본설계	1억
	경남 거창	(2차년도) 아카데미파크 조성사업	2억
	충남 홍성	(2차년도) 홍주성문화마당 및 도청다도거리 등	1억
	부산	(시공) 행복한 도시어촌 청사포 만들기	10억
	경북 영주	(시공) 새롭게 열리는 역사의 통로	40억
2013 (8개)	경남 하동	공공공간, 공공시설을 활용한 도심의 중심성 활력강화 프로젝트	1.5억
	전북 완주	역사가 현재가 되고, 교육이 경제가 되는 “신택리지 고산만들기 사업”	1.5억
	강원 강릉	폐철도 지상부 토지활용 사업	1.5억
	부산 대청로	(2차년도) 부산 대청로 지역대표거리 조성사업	3억
	전남 광양	(2차년도) 광양읍 공공공간·공공건축물 통합 마스터플랜	1.5억
	경북 울진	(2차년도) 울진 보부상 주막거리 및 멀티광장 조성사업	1.5억
	부산	(시공) 행복한 도시어촌 청사포 만들기	40억
	경북 영주	(시공) 새롭게 열리는 역사의 통로	11억
2014 (8개)	경기 수원	파장초등학교 주변 안전마을 만들기	1.5억
	충남 공주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송산마을 만들기	1.5억
	광주	광주 폴리 둘레길 & 생태탐방길 조성계획	1.5억
	경북 김천	대한민국 행복중심 김천 상업문화특화가로 조성사업	1.5억
	경남 하동	(2차년도) 하동읍 활력강화 프로젝트	1.5억
	전북 완주	(2차년도) 신택리지 고산만들기 사업	1.5억
	부산	(시공) 행복한 도시어촌 청사포 만들기	8.5억
	경북 영주	(시공) 새롭게 열리는 역사의 통로	16.16억
2015 (11개)	경기 고양	지역자산을 활용한 시경계부 활력창조 네트워크 만들기	1.5억
	경기 광주	수청리마을 경관디자인 사업	1.5억
	충남 논산	역사와 마을을 품은 탑정호 마을만들기	1.5억
	경북 상주	2000년 고도의 도심활성화 프로젝트	1.5억

년도	지자체	사업명	지원금
	대구시 남구	자연·예술이 숨쉬는 고산골 마을 만들기	1.5억
	전남 강진	'남도답사 1번지 강진' 동부지구 활성화 프로젝트	1.5억
	경기 수원	(2차년도) 파장초등학교 주변 안전마을 만들기	1.5억
	광주	(2차년도) 광주풀리 둘레길 & 생태탐방길 조성계획	1.5억
	경북 김천	(2차년도) 대한민국 행복중심 김천 상업문화특화가로 조성사업	1.5억
	경북 울진	(시공) 울진보부상 문화거리 바지게 광장 조성	8억
	경남 하동	(시공) 하동 1970관 조성사업	6.8억
2016 (4개)	경기 시흥	다양성이 공존하는 자족적 구도심 활성화 계획 'Wannabe 신천인'	1.5억
	경남 밀양	산수(山水)도시 밀양 RE-디자인을 위한 "2+2" 네트워크 플랜	1.5억
	인천 옹진	통일한국과 해양관광시대를 준비하는 백령 평화마을 만들기	1.5억
	전남 강진	(2차년도) '남도답사 1번지 강진' 동부지구 활성화 프로젝트	1.5억
2017 (2개)	경북 고령	대가야읍 중심지 발전구성 통합마스터플랜 상가라-도(上加羅-道) 삶을 잊다. 역사를 잊다.	1.5억
	경남 밀양	건축자산으로 거듭나는 산수(山水)도시, 밀양	0.5억

출처: 국토교통부. (2016). 2010~2015 건축정책 성과보고서. pp.88~89.

국토교통부. (2007).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 홈페이지. <http://www.designcity.or.kr>(검색일: 2022.12.6.)

2019년부터는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개정과 관련하여 건축기본법 제23조에 따른 민간전문가에 대해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로 구분하고 지자체의 민간전문가 운영 지원을 본격화하였다. 그리고 민간전문가가 지역의 통합마스터플랜인 공간환경전략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였다.

공간환경전략계획은 도시차원의 관리계획과 필지단위 사업계획 간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으로서 지역의 정체성 및 통합적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 공간관리의 방향과 전략을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전략계획을 의미한다. 공간환경전략계획은 지역에서 개별적·산발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들의 연계를 강화하고 종합적으로 구상함으로써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으로 중점권역 도출, 중점권역별 특성 및 이슈 도출, 발전방향 및 전략 설정, 중점추진권역의 설정, 중점추진권역의 전략계획 수립(비전 및 목표, 추진 전략, 구체적 사업계획 및 사업추진계획) 등을 포함한다(국토교통부, 2022, p.3).²⁾

[표 19] 민간전문가 운영 및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 추진 현황(2019~현재)

년도	사업명	지원금
2019 (신규 8개)	광주, 충남, 경남, 당진, 원주, 춘천, 파주, 진주	총 15억

2) 공간환경전략계획의 개념과 목적,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 내 설명을 인용한 것임. 국토교통부. (2022). 2022년 민간전문가 및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 관리·운영지침.

년도	사업명	지원금
2020 (15개)	(신규 11개) 성남, 남해, 창원, 구미, 의성, 대구 수성, 인천 서구, 공주, 부여, 홍성, 청주 총 32억 (연속 4개) 파주, 원주, 춘천, 진주	
2021 (25개)	(신규 15개) 제주, 세종, 충남 서천, 김해, 서초구, 시흥, 양주, 순천, 수원, 파주, 강동구, 총 30억 부여, 청주, 남해, 당진 (연속 10개) 성남, 구미, 의성, 창원, 남해, 인천서구, 대구 수성, 홍성, 부여, 청주	
2022 (20개)	(신규 14개) 고양, 부산, 의정부, 오산, 경북, 천안, 익산, 양주, 시흥, 대구 수성, 청주, 당진, 창원, 순천 등 14개 지자체 (연속 6개) 양주, 시흥, 제주, 세종, 김해, 순천 등 계속사업 6개 지자체,	총 22.9억

출처: 건축공간연구원(2022), 지역 공간환경 통합관리 사업의 성과분석 및 개편방안 연구, 내부자료.

이 사업은 매년 적게는 8개, 많게는 15개의 신규 지자체를 선정하며 예산을 비롯해 모니터링을 통해 컨설팅,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등 사업 관리 전반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국토환경디자인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2차년도 지자체에도 연속 지원을 한다. 특히 매년 세부 유형이 달라 지자체별 지원금 또한 일부 차이가 있는데 2021년도의 경우, 민간전문가 운영과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을 함께 진행하는 지자체에는 2.75억 원을 지원하였다. 민간전문가 운영에 대해서는 0.55억 원, 공간환경전략계획의 경우 지역 전체를 수립한다면 2억 원, 중점권역을 추가 수립하는 지자체에는 1.3억 원으로 차등 지원하였다. 연속 지원 지자체(2차년도)에는 0.5~0.6억 원을 지원하였다. 2022년도에는 건축기획 유형을 추가하여 0.5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즉, 해당 지원 사업은 이전의 국토환경디자인사업과 다르게 지자체별 특성 및 성과 등을 고려하여 유형을 세분화하고 차등 지원하고 있는 것이 주요 특징 중 하나이다.

[표 20] 민간전문가 운영 및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 선정 지자체 및 지원금(2021)

구분	지원 세부유형	지원금	선정 지자체
신규	민간전문가 운영 +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75백만원/개소 + 2억원/개소	· 총 5개소 :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서울 서초구, 충남 서천군, 경남 김해시
	민간전문가 운영	55백만원/개소	· 총 3개소 : 경기 양주시, 시흥시, 전남 순천시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역전체 2억원/개소 중점권역 1.3억원/개소	· 총 7개소 : 서울 강동구, 경기 파주시, 수원시, 충북 청주시, 충남 당진시, 부여군, 경남 남해군
연속*	민간전문가 운영	50~60백만원/개소	· 총 10개소 : 경기 성남시, 인천 서구, 대구 수성구, 경북 구미시·의성군, 경남 남해·창원시, 충남 청주시, 부여·홍성군

* 연속: 2차년도 지원을 받는 지자체를 의미하며 이후로는 지원 불가

출처: 국토교통부. (2021), 지자체-민간 전문가 맞손… 공공건축으로 지역경관 품질 높인다. 4월 1일 보도자료.

한편 국토환경디자인사업에 이어 공간환경전략계획을 통해 지역의 통합마스터플랜을 수립한 결과에 대해 효용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간환경전략계획의 결과

가 상당히 유의미함에도 불구하고 비법정 계획으로서 실질적인 역할 제고가 필요하며, 그에 따라 지속적인 지원뿐 아니라 제도적 뒷받침이 이어져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³⁾



[그림 11]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예시 : 통합마스터플랜 및 사업발굴

출처: 건축공간연구원. (2022). 2022년 지원사업 척수협의회. 건축공간연구원 내부자료.

□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건축기본법 제23조(민간전문가의 참여)]

제23조(민간전문가의 참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조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민간전문가의 자격·업무범위·보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기본법 및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에 따라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해당 법과 기준에 의거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2019.7.)’을 공표하였다. 가이드라인에서 명시하고 있는 총괄건축가 또는 총괄계획가, 공공건축가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총괄건축가 또는 총괄계획가 : 행정구역 및 사업구역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사업의 기획·설계 및 시행과정에 대한 총괄·조정 등 건축·도

3) 현재 건축공간연구원은 민간전문가 및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 지자체에 대한 모니터링 기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음. 지원사업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2021년도 간담회 결과에 따르면 비법정 계획인 공간환경전략계획에 대한 주요 쟁점으로 계획 수립의 실질적인 목적, 사업 실현 가능성 등이 제기됨. 건축공간연구원. (2021). 2021년 간담회. 건축공간연구원 내부자료.

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전문가

- 공공건축가 : 개별 건축사업에 대하여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민간전문가

건축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으며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민간전문가의 자격 기준과 업무 범위를 정하고 있다. 한편 일부 지자체는 현재 자격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 건축가, 조교수 등을 위촉하고 있는데, 중소도시일수록 위촉에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법령에 조례 위임 사항이 규정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는 상황이다.⁴⁾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민간전문가의 참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건축·도시 또는 조경 관련 기술사(「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를 말한다)
3. 대학에서 건축·도시 또는 조경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건축기본법 및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에 따른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 라인(2019.7.)’에서는 총괄건축가 및 총괄계획가의 업무를 비전수립 및 기획 지원, 통합 마스터플랜수립 지원, 건축·도시 관련 사업 총괄조정 및 자문, 사업발주방식 검토·지원, 공공건축가 운영 지원, 건축도시문화 진흥 지원 등으로 정하고 있다.⁵⁾ 공공건축가의 업무는 건축·도시 기획업무 참여, 건축·도시 주요 공공사업 조정 및 자문, 공공건축물 설계업무 참여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민간전문가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총 54개 기초 지자체에서 1,193여명의 총괄건축가 및 민간전문가가 위촉된 것으로 나타났다(‘22.8. 기준).⁶⁾ 광역 지자체 17개 중에서는 13개(76.5%)가, 226개 기초에서는 54개(23.9%)가 운영 중이다. 기초 지자체 가운데 총괄 및 공공건축가를 모두 운영하는 지자체는 31개(57.4%)이며 총괄건축가 또는 총괄계획가만 운영하는 경우는 5개(9.3%), 공공건축가만 운영하는 지자체는 18개(33.3%)이다. 또한 민간전문가를

4) 건축공간연구원. (2021). 2021년 간담회. 건축공간연구원 내부자료.

5) 시·군·구 총괄건축가 및 총괄계획가의 업무이며, 도·특광역시의 경우에는 통합마스터플랜수립 지원 업무를 제외함

6)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부적으로 지자체별 대면·비대면 면담을 통해 추가 조사한 결과임.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2022). 민간전문가(총괄·공공건축가) 현황. <https://www.npbc.or.kr/trend/page04>(검색일: 2022.12.6.)

운영하는 총 54개 기초 지자체 중에서 29개(53.7%)가 건축기본법 조례 또는 별도의 민간전문가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다.⁷⁾ 지역의 특성이 다른 만큼 운영 현황 및 특성 또한 다양한데,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공공건축가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운영하고 사업에 대한 자문뿐 아니라 기획, 설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표 22]).

[표 21] 국내 광역 및 기초 지자체 민간전문가 운영 현황(2022.8. 기준)

광역	인구(만명)	도입시기	총괄	공공	기초(도입시기)
서울시	960	2014	○ ○	○	강동구('19)·은평구('19)·서초구('20)
부산시	334	2019	○ ○	- -	
대구시	242	-	- -	○	수성구('20)
인천시	295	2021	○ ○	○	서구('20)
광주시	149	2019	○ ○	- -	
대전시	150	2020	○ ○	○	서구('19)
울산시	114	2020	- ○	-	-
세종시	35	2015	○ ○	-	-
경기도	134	-	- -	○	수원시('19)·고양시('21)·성남시('20)·남양주시('21)·안성시('20)·부천시('22)·용인시('19)·화성시('20)·파주시('19)·시흥시('21)·포천시('19)·오산시('21)·양주시('21)
강원도	151	-	- -	○	강릉시('20)·춘천시('19)·원주시('19)·인제군('19)
충북	163	-	- -	○	청주시('20)
충남	220	2019	○ ○	○	천안시('21)·당진시('18)·서천군('21)·청양군('21)·부여군('16)·홍성군('20)
전북	180	2020	○ ○	○	익산시('22)·정읍시('20)·전주시('19)
전남	176	2020	○ ○	○	순천시('21)·광양시('19)
경북	266	2019	○ ○	○	경주시('19)·구미시('20)·영천시('20)·의성군('19)·영주시('09)
경남	335	2019	○ ○	○	통영시('20)·창원시('20)·남해군('20)·김해시('20)·고성군('21)·거창군('19)·하동군('12)·양산시('19)·거제시('21)·사천시('19)·진주시('19)·의령군('19)·창녕군('20)·함안군('19)
제주도	67	2019	○ ○	-	-

출처: 백선경, 김민서. (2022). 국내 민간전문가 운영 및 제도 구축 현황분석.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논문집.

7) 민간전문가 운영 현황은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및 다음의 연구를 참고하여 작성함. 백선경, 김민서. (2022). 국내 민간전문가 운영 및 제도 구축 현황분석.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논문집.

[표 22] 서울시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사례

구분	주요 내용
도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건축 및 공간환경의 공공성 확보 및 품질 향상을 통한 서울의 경쟁력 제고젊고 참신한 신진건축가 발굴 및 육성 토대 마련건축을 사유재산 및 기술로 보는 인식에서 공공재 및 문화로 보는 인식으로의 변화소규모 공공건축물의 설계를 통한 지역 풍경 및 커뮤니티 향상서울시 도시건축정책의 홍보를 통한 국제적 위상 제고
공공건축가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신진건축가 : 선정 당시 만 45세 이하의 건축가중진 건축가 : 선정 당시 만 45세 초과의 건축가총괄계획가 : 대규모 정비사업의 자문 및 각종 도시건축 사업의 총괄 조정자
주요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공공 발주 건축물의 기획·설계업무에 대한 조정·자문소규모 공공건축물(1억 미만)의 지명현상설계 참여정비계획(재개발·재건축·뉴타운)의 가이드 제시 및 자문
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위촉일로부터 2년 및 총 임기는 6년 제한(2회 연임 가능)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2020년 서울시 공공건축가 현황 : 265명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2014년 : 공공건축가 자문 및 설계 참여 100건, 소규모 및 대규모 공공건축물 전시회 개최2015년 : 공공건축가 자문 및 설계 참여 121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간개선 사업 전시2016년 : 공공건축가 자문 및 설계 참여 160건, 공공건축가 참여 사업 작품집 발간
주요 사업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주거 : 가양동 협동 조합형 공공주택, 만리동 예술인 협동 조합형 공공주택 등어린이집 : 강동구 기리를 어린이집, 수유 새싹어린이집 리모델링 등도서관 : 휴경 어린이도서관, 송인동 아름꿈 도서관 리모델링 등

출처: 서울시. (2021). 서울정책아카이브 서울시 공공건축가 설명 자료. <https://seoulsolution.kr>(접속일 2021.8.4.)

국토교통부. (2021). 2019~2021 건축정책 성과보고서. p.35.

□ 한국건축규정

2016년 2월, 건축기본법 개정으로 제25조(한국건축규정의 공고 등), 제26조(한국건축 규정의 개선 노력) 조항이 신설되었다. 건축관련된 법령과 지속적으로 발전되면서 관계 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대해 통합한 건축관련규정으로써 건축물 관련 규정을 통합한 한국건축규정을 공고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에게 쉽고 정확한 정보를 안내 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시스템을 개발하였으나 초기 시스템 개발 이후, 이후 시스템 고 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 조항에 따라 건축관련 규정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개선,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강력한 조항이 반영되었다.

[건축기본법 제25조(한국건축규정의 공고 등)]

제25조(한국건축규정의 공고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및 유지·관리 등과 관련된 「건축법」 및 그 관계 법령, 행정규칙 및 조례 등의 규정(이하 이 조에서 "건축물 관련 규정"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건축물 관련 규정을 관掌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건축물 관련 규정을 통합한 한국건축규정(이하 "한국건축규정"이라 한다)을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7.>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고된 한국건축규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7.>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7.>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하는 건축물 관련 규정이 제정,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건축규정에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7.>

제26조(한국건축규정의 개선 노력)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건축규정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공무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한국건축규정 협의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건축규정의 내용 중 개선·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개선·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3년마다 한국건축규정과 관련된 소관 조례를 평가하고, 개선·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관 조례의 개선·보완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3년마다 한국건축규정과 관련된 관할 시·군·구의 조례를 평가하고, 개선·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선·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국무총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정부업무평가 시 제25조제4항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선 노력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1. 7. 27.>

[그림 12] 한국건축규정 e시스템 홈페이지 화면

출처: <http://220.76.251.202/>(접속일자. 2022.11.30.)

2. 건축정책에 관한 관계자 및 전문가 인식

1)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건축정책 수요자 및 관계주체를 대상으로 현행 건축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건축정책의 실행력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원인을 조사·분석하여 건축기본법 개정 방향을 설정하고자 진행하였다.

□ 조사 설계

조사 대상, 방법, 표본 규모, 기관, 기간은 다음과 같다.

- (조사 대상) 건축 관련 전문분야 종사자 및 공무원(중앙+지방)
-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 (표본 규모) 총 216명
- (조사 기관) (주)엠브레인퍼블릭
- (조사 기간) 2022년 8월 18일 ~2022년 8월 31일

□ 조사 내용

조사 내용은 크게 응답자 일반사항, 건축기본법·건축기본계획의 인지도 및 활용도, 건축기본법의 기본이념 및 정책방향 인식, 건축정책 실행력 제고를 위한 개선방향, 건축정책 정책방향 중요도 평가 등이다.

[표 23] 설문 조사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응답자 일반사항	·소속, 전문분야, 건축 분야 업무 경력, 성, 연령
건축기본법,	·「건축기본법」에 대한 인지 여부
건축기본계획의	·건축 관련 법령별 인지도 및 활용도(건축기본법,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한옥 등 건축자산

인지도 및 활용도	<p>의 진흥에 관한 법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건축법, 건축물관리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정책기본계획 인지도 및 활용도 ·지역(광역) 건축기본계획 인지도 및 활용도 ·업무 중 활용하는 계획 및 지침
건축기본법의 기본이념 및 정책방향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기본법」 정의 수정 필요 용어 및 수정 방향 ·「건축기본법」 용어 외 추가 정의 필요 용어 ·건축의 공공적 가치 구현 표현 정도 ·향후 인구·환경·경제·기술·정책 등의 변화 대응 정도 ·「건축기본법」 기본이념의 수정 방향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정책 기본방향 추가 필요성
건축정책 정책방향 중요도 평가	<p>건축정책 기본방향의 상대적 중요도 (건축의 생활공간적 공공성, 건축의 사회적 공공성, 건축의 문화적 공공성, 기후변화 등 재난으로부터의 지속가능성, 건축 생애 과정에서의 지속가능성, 미래기술 및 산업구조의 지속가능성)</p>
건축정책 실행력 제고를 위한 개선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문화진흥에 긍정적 영향 정도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사업별 추진 정도 및 사업 추진이 잘 되지 않는 이유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사업별 중요도 ·기금 또는 특별회계 설치·운용 근거 신설의 필요성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추가 필요 사업 ·건축정책기본계획 관련 계획과의 관계 ·건축정책기본계획 범부처 추진을 위한 법령 내 근거 신설 필요성 ·건축정책기본계획과 지역건축기본계획의 계획 목표 기간 ·건축정책기본계획과 지역건축기본계획의 계획 수립 과정 ·건축정책기본계획과 지역건축기본계획의 간소화 필요 부분 ·건축정책기본계획과 지역건축기본계획 계획수립 절차 관련 의견 ·건축정책에 대한 성과점검 적절성 ·건축정책 국회 보고, 성과점검 주기에 대한 의견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성과점검을 위한 법 개정 필요성 ·「건축기본법」에 건축 HUB 확대 관련 근거 신설의 필요성 ·건축정책 실행력 제고를 위한 개선방향

출처 : 연구진 작성

□ 응답자 특성

응답자 직업군 특성은 중앙 및 지방지 공무원(25.5%), 건축 관련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원 및 대학교수(36.6%), 건축설계사무소, 기타 공기업 및 엔지니어링 등에 종사하는 산업조사자(38.0%) 등 3그룹으로 구분하였다. 전문분야는 건축(84.3%), 도시(11.6%), 기타(4.2%)로 구성되었으며, 건축 분야 업무 경력은 10년 이상이 86.6%를 차지하였다. 남성이 82.9%, 여성이 17.1%하였으며, 연령은 50대(41.7%)와 40대(29.2%)가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표 24] 응답자 특성

구분	사례수(명)	비율(%)
전체	(216)	100.0
소속	공무원(중앙+지방)	25.5
	연구기관과 대학	36.6
	건축설계사무소, 기타	38.0
전문분야	건축	84.3
	도시	11.6
	기타	4.2
건축 분야 업무 경력	10년 미만	13.4
	10년 이상	86.6
성	남성	82.9
	여성	17.1
연령	30대 이하	10.2
	40대	29.2
	50대	41.7
	60대 이상	1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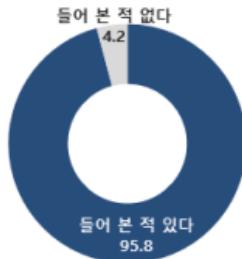
출처 : 연구진 작성

2) 건축기본법, 건축기본계획의 인지도 및 활용도

□ 건축기본법에 대한 인지

- 응답자의 95.8%가 건축기본법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

전체 응답자의 95.8%가 「건축기본법」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해 대다수가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13] 「건축기본법」에 대한 인지 여부

※ BASE : 전체(N=216) / 단위 : %

□ 건축 관련 법령에 대한 인지 및 활용 정도

- 건축법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았으며(어느 정도 알고 있음 96.8%)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인지도가 가장 낮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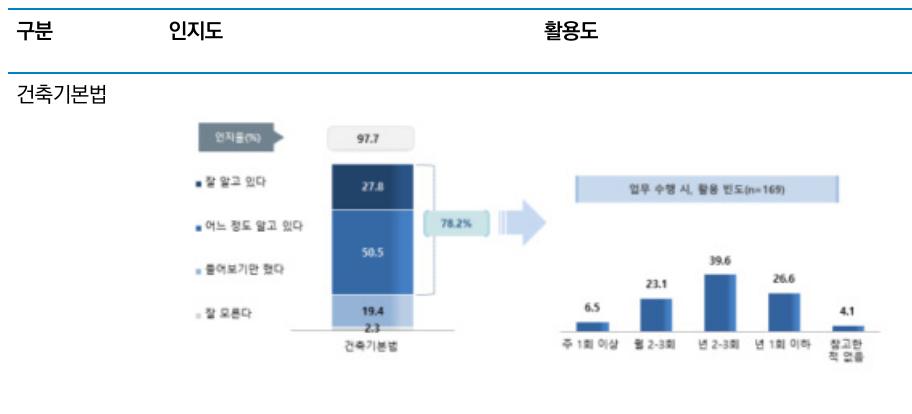
건축 관련 법령으로 건축기본법,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건축법, 건축물관리법 등 각 법령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며, 실무 또는 연구 등 업무 수행에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법령에 대한 인지 정도가 가장 높은 것은 건축법(잘 알고 있다 67.6%, 어느 정도 알고 있다 29.2%로 총 96.8%)이 관련 법령 중 가장 높았으며, 건축 관련 전문가 대부분은 관련 법령에 대해 어느 정도 이상은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관련 법령 중에서는 가장 인지 측면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건축법을 가장 자주 활용하고 있었으며(월 2~3회 이상 76.1%), 그 다음으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건축물관리법 순으로 자주 활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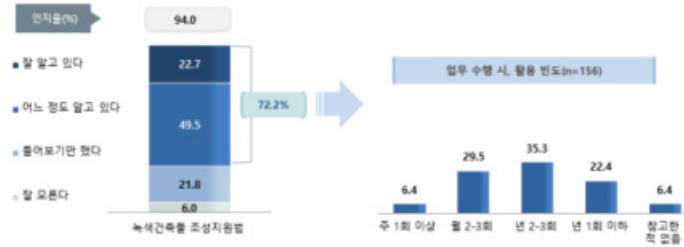
업무 활용 정도에 대해서도 건축법(주 1회 이상 39.7%, 월 2~3회 36.4%, 총 76.1%)이 가장 자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월 2~3회 이상 42.5%), 건축물관리법(월 2~3회 이상 42.9%),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월 2~3회 이상 35.9%), 건축기본법(월 2~3회 이상 29.6%),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월 2~3회 이상 17.3%) 순이다. 대부분 일년 중 2~3회 정도 업무 수행을 위해 법령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 건축 관련 법령에 대한 인지 및 활용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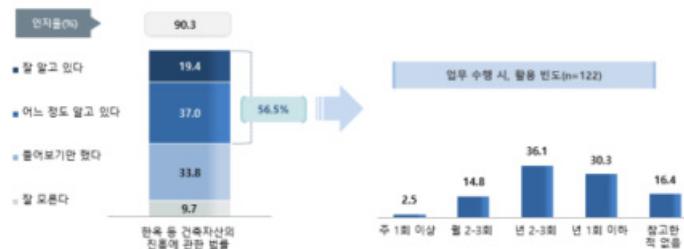
(BASE : 전체(N=216)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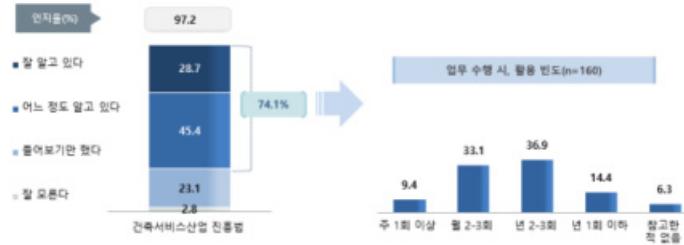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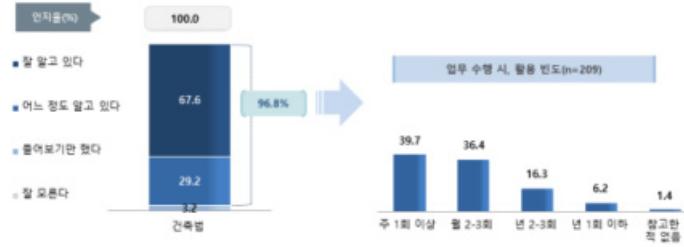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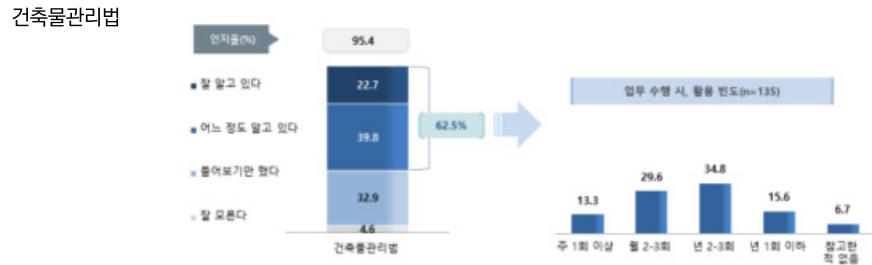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건축법





출처 :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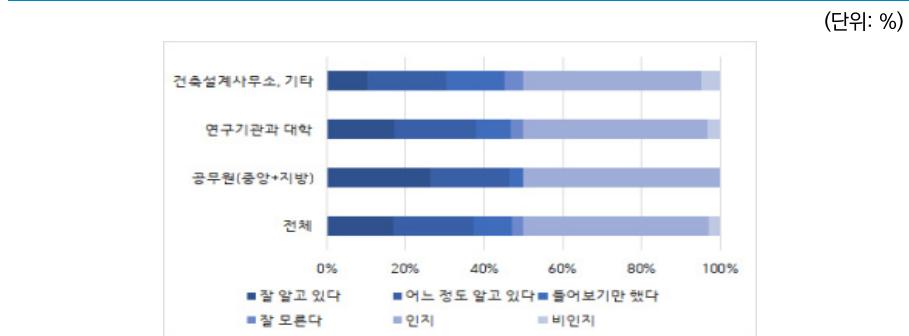
□ 건축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인지 및 활용 정도

- 건축정책기본계획을 대다수(94.0%)가 인지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이상 알고 있는 응답자 중 과반수 이상이 업무 수행시 이를 활용한 경험이 있음

건축정책기본계획에 대해 94.0%가 인지하고 있으며, 인지 수준별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40.7%), 잘 알고 있다(33.8%), 들어보기만 했다(19.4%) 순으로 높다. 건축 관련 전문가 대부분이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특히 공무원과 연구기관과 대학 전문가의 인지정도가 높았고, 건축설계사무소 및 산업 종사자 직군은 상대적으로 계획에 대한 인지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 (국가) 건축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인지 정도

구분	사례수	잘 알고 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들어보기만 했다	잘 모른다	인지	비인지
						(단위: 명, %)	
전체	(216)	33.8	40.7	19.4	6.0	94.0	6.0
소속	공무원(중앙+지방)	(55)	52.7	40.0	7.3	0.0	100.0
	연구기관과 대학	(79)	34.2	41.8	17.7	6.3	93.7
	건축설계사무소, 기타	(82)	20.7	40.2	29.3	9.8	90.2



출처 :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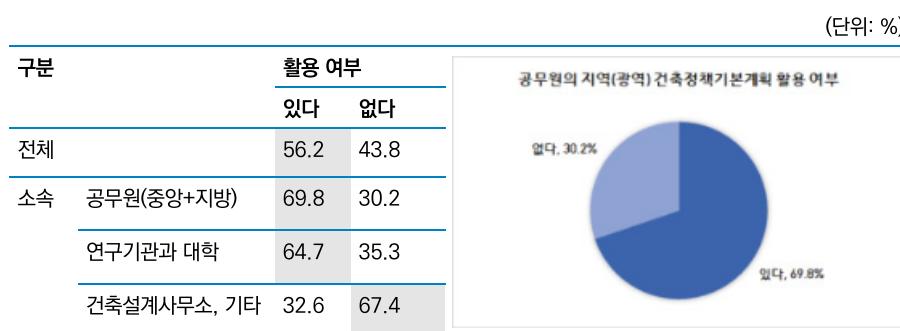
건축정책기본계획에 대해 잘 알거나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응답자(74.5%) 중 업무 수행 시 이를 활용해 본 경험은 63.4%로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무원(중앙+지방)이 72.5%로 가장 활용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가계획에 비해 지역건축기본계획에 대한 인지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반면, 국가계획에 비해 지역건축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인지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광역) 건축기본계획에 대해서는 88.9%가 인지하고 있으며, 인지 수준별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35.6%), 잘 알고 있다(27.8%), 들어보기만 했다(25.5%) 순으로 높다. 지역건축기본계획에 대한 인지가 가장 높은 직군은 공무원으로 나타났으며, 연구기관과 대학, 산업 종사자의 경우는 대략 60% 정도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광역) 건축기본계획에 대해 잘 알거나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응답자(63.4%) 중 업무 수행 시 이를 활용해 본 경험은 56.2%로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은 69.8%가 활용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연구기관과 대학 교수도 64.7%가 활용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산업종사자는 32.6% 정도만 계획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 지역(광역) 건축기본계획에 대한 활용 정도



출처 : 연구진 작성

- 업무수행 중 주로 활용하는 계획 또는 지침 종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68.1%), 도시/군 기본계획(56.5%)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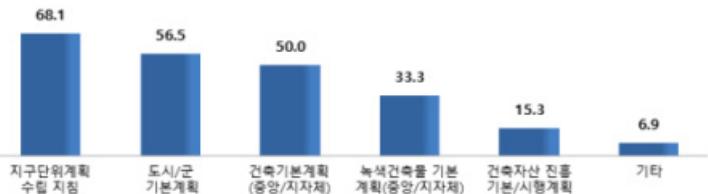
건축분야의 전문가 또는 관련 부서에서 종사하는 실무자가 업무수행 중 주로 활용하는 계획 또는 지침 종류에 대해 질문한 결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이 68.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도시/군 기본계획(56.5%), 건축기본계획(중앙/지자체)(50.0%) 순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의 경우 건축기본계획(중앙/지자체)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계획 중에서는 건축자산진흥기본계획에 대한 활용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8] 업무수행 중 주로 활용하는 계획 또는 지침 종류

(BASE : 전체(N=216) / 단위 : %, 종복응답)

구분	사례수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	도시 / 군 기본계획	건축기본 계획(중앙 /지자체)	녹색건축 물 기본계 획(중앙/지자체)	건축자산 기본계 획(중앙/지자체)	기타
전체	(216)	68.1	56.5	50.0	33.3	15.3	6.9
소속	공무원(중앙+지방)	(55)	50.9	47.3	67.3	38.2	27.3
	연구기관과 대학	(79)	65.8	60.8	55.7	36.7	20.3
	건축설계사무소, 기타	(82)	81.7	58.5	32.9	26.8	2.4
							12.2

(단위 : %, 종복응답)



출처 : 연구진 작성

3) 건축기본법의 기본이념 및 정책방향에 관한 인식

□ 건축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용어

- 과반수 이상(58.3%)이 용어 정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수정이 필요한 용어로는 ‘품격’, ‘공간환경’, ‘건축디자인’, ‘건축’순으로 응답

현행 건축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용어인 ‘건축물’, ‘공간환경’, ‘공공공간’, ‘건축디자인’, ‘품격’, ‘품질’, ‘건축’ 등에 대해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질문하였다.

건축기본법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 “공간환경(空間環境)”이란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공공공간 및 경관을 말한다.
- “공공공간(公共空間)”이란 가로·공원·광장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公衆)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 “건축디자인”이란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조성으로 건축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설계하고 개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 “품격”이란 주변환경과의 관계 규모, 형태, 구조, 재료, 시공수준 등을 통하여 그 목적과 지역의 정체성을 창출할 수 있는 적절성을 말한다.
- “품질”이란 안전, 보건, 기능, 폐적, 자원절약과 재활용 등의 객관적 성능을 말한다.
- “건축”이란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건축기본법. 법률 제18339호 제3조

조사 결과, 「건축기본법」에서 정의된 용어 중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58.3%로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정의 수정이 필요한 용어로는 품격(29.6%), 공간환경(19.9%), 건축디자인, 건축(각 19.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9] 건축기본법 용어 정의의 수정 필요성

구분	사례수	품격	공간 환경	건축 디자인		건축물	공공 공간	품질	필요 없음
				건축	건축 디자인				
전체	(216)	29.6	19.9	19.0	19.0	14.4	12.5	11.1	41.7
소속	공무원(중앙+지방)	(55)	27.3	7.3	14.5	14.5	18.2	9.1	45.5
	연구기관과 대학	(79)	36.7	31.6	20.3	22.8	16.5	16.5	34.2
건축설계사무소, 기타	(82)	24.4	17.1	20.7	18.3	9.8	11.0	8.5	46.3

(단위 : 명, %, 중복응답)



출처 : 연구진 작성

- 추가 용어 정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74.5%로 높았으며, 추가로 필요한 용어는 '건축문화', '공공건축', '지속가능성' 순으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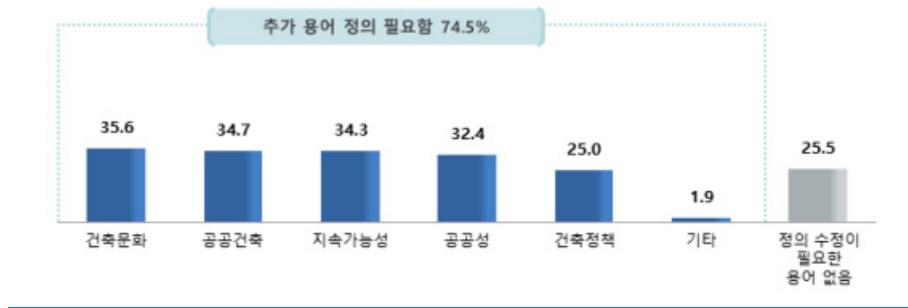
「건축기본법」의 7가지 용어 외 추가 용어 정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74.5%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 중 정의가 추가로 필요한 용어는 건축문화(35.6%), 공공건축(34.7%), 지속가능성(34.3%), 공공성(32.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0] 건축기본법에 추가로 정의되어야 할 용어

구분	사례수	건축 문화	공공 건축	지속 가능성		공공성	건축 정책	기타	없음
				건축 문화	지속 가능성				
전체	(216)	35.6	34.7	34.3	32.4	25.0	1.9	25.5	
소속	공무원(중앙+지방)	(55)	36.4	20.0	14.5	20.0	21.8	0.0	38.2
	연구기관과 대학	(79)	31.6	40.5	48.1	39.2	22.8	1.3	20.3
건축설계사무소, 기타	(82)	39.0	39.0	34.1	34.1	29.3	3.7	22.0	

(단위 : %, 중복응답)

(단위 : 명, %, 중복응답)



출처 : 연구진 작성

- 용어 정의 수정 방향으로는 구체화, 포괄화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

그 밖에 용어 정의 수정 방향에 대한 개방형 질문 답변으로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구체화 시켜야 한다’, ‘포괄적으로 넓혀야 한다’, ‘쉽게 풀이해야 한다’, ‘추상적이다’, ‘현실화 시켜야 한다’, ‘건축디자인의 목적이 건축 공공성의 실현에 있지 않다’ 등이 나왔다.

[표 31] 「건축기본법」 용어별 정의 수정 방향

(단위 : 명, %, 중복응답)

내용	전체	품격	공간 환경	건축	건축 디자인	건축물	공공 공간	품질
사례수	(271)	(64)	(43)	(41)	(41)	(31)	(27)	(24)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구체화 시켜야 함	6.3	4.7	14.0	2.4	2.4	6.5	3.7	12.5
포괄적으로 넓혀야 함	5.5	0.0	4.7	7.3	2.4	16.1	11.1	4.2
쉽게 풀이해야 함	4.8	4.7	9.3	2.4	2.4	0.0	7.4	8.3
추상적임	3.7	10.9	4.7	0.0	0.0	0.0	0.0	4.2
현실화 시켜야 함	3.0	3.1	2.3	2.4	2.4	3.2	3.7	4.2
건축디자인의 목적이 건축 공공성의 실현에 있지 않음	2.2	0.0	0.0	0.0	14.6	0.0	0.0	0.0
품격 용어 사용이 맞지 않음	1.8	7.8	0.0	0.0	0.0	0.0	0.0	0.0
너무 포괄적임	1.5	0.0	4.7	0.0	0.0	3.2	3.7	0.0
건축설계와 차별성이 부족함	1.5	1.6	0.0	0.0	7.3	0.0	0.0	0.0
정성적인 부분에서 정량적인 정의를 추가함	1.5	4.7	0.0	0.0	0.0	0.0	0.0	4.2
품격 명칭이 명확하지 않음	1.5	4.7	0.0	0.0	0.0	0.0	0.0	4.2
원안	1.5	1.6	0.0	0.0	2.4	0.0	7.4	0.0
토지에 정착 범위가 제한적임	1.1	0.0	0.0	0.0	0.0	9.7	0.0	0.0
협의적임	1.1	0.0	0.0	4.9	2.4	0.0	0.0	0.0
지역의 정체성 표현이 혼란을 야기함	1.1	4.7	0.0	0.0	0.0	0.0	0.0	0.0

(단위 : 명, %, 종복응답)

내용	전체	품격	공간 환경	건축	건축 디자인	건축물	공공 공간	품질
물리적인 공간에 한정시키지 말아야 함	1.1	0.0	7.0	0.0	0.0	0.0	0.0	0.0
연구진이 정해야 함	1.1	1.6	2.3	0.0	2.4	0.0	0.0	0.0
사용자의 요구를 만족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시킴	0.7	3.1	0.0	0.0	0.0	0.0	0.0	0.0
디자인도 포함 시켜야 함	0.7	0.0	0.0	0.0	2.4	0.0	0.0	4.2
품격과 품질 용어가 적절치 않음	0.7	1.6	0.0	0.0	2.4	0.0	0.0	0.0
재화의 의미보다 유무형의 모두를 총칭 및 다른 단어로 수정	0.7	1.6	0.0	0.0	0.0	0.0	0.0	4.2
부유 건축물을 범위를 확대 시켜야 함	0.7	0.0	0.0	0.0	0.0	6.5	0.0	0.0
건축법상의 건축 정의와 다름	0.7	0.0	0.0	4.9	0.0	0.0	0.0	0.0
인간이 접하는 모든 주변의 시설 및 생활공간으로 확대 시켜야 함	0.7	0.0	2.3	2.4	0.0	0.0	0.0	0.0
아름다움이 추가 되었으면 함	0.7	0.0	0.0	2.4	0.0	0.0	0.0	4.2
품질 용어 사용이 맞는지 의문임	0.7	0.0	0.0	0.0	0.0	0.0	0.0	8.3
건축과 건설의 정의를 구분지어야 함	0.7	0.0	0.0	4.9	0.0	0.0	0.0	0.0
용어 및 서술 구조 구성	0.7	0.0	2.3	0.0	0.0	0.0	3.7	0.0

출처 : 연구진 작성

※ 모름(6.3%), 기타 소수 응답 표시하지 않음

□ 건축정책의 기본이념에 대한 인식

- 현행 건축기본법에 따른 기본이념이 건축의 ‘공공적 가치 구현’을 잘 표현한다는 의견이 과반수(54.6%) 이상 나타남

건축기본법에서 건축정책에 대한 기본이념으로 ‘건축의 공공적 가치 구현’을 명시하고 있다. 기본이념이 건축의 ‘공공적 가치 구현’을 잘 표현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건축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공동의 노력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국민의 안전·건강 및 복지에 직접 관련된 생활공간의 조성
-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조정하고 수용하며 경제활동의 토대가 되는 공간환경의 조성
- 지역의 고유한 생활양식과 역사를 반영하고 미래세대에 계승될 문화공간의 창조 및 조성

출처: 건축기본법. 법률 제18339호 제2조

조사 결과, 현행 「건축기본법」의 기본이념이 건축의 ‘공공적 가치 구현’을 잘 표현하고 있다 는 의견은 63.4%(매우 그렇다 8.8%, 어느 정도 그렇다 54.6%)로 과반수 이상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부정적 의견은 12.0%로 나타났다.

[표 32] 건축의 공공적 가치 구현 표현 정도

구분	사례수	전혀	별로	보통	어느	매우	응답비율(%)		100점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이다	정도	그렇다	부정	긍정	만점 [평균·점]
전체	(216)	2.3	9.7	24.5	54.6	8.8	12.0	63.4	64.5
소속	공무원(중앙+지방)	(55)	1.8	10.9	20.0	52.7	14.5	12.7	67.3
	연구기관과 대학	(79)	1.3	7.6	27.8	57.0	6.3	8.9	63.3
	건축설계사무소, 기타	(82)	3.7	11.0	24.4	53.7	7.3	14.6	61.0
									62.5

(BASE : 전체(N=216) / 단위 : %, 점)



출처 : 연구진 작성

- 기본이념인 ‘건축의 공공성’의 여건변화 대응에 대해서는 보통 정도의 적절성으로 인식(잘 대응할 수 있다는 의견 38.4%)

반면, 「건축기본법」의 기본이념이 앞으로의 인구·환경·경제·기술·정책 등의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다는 의견은 38.4%(매우 그렇다 6.0%, 어느 정도 그렇다 32.4%)로 보통 정도의 적절성으로 인식하고 있다.

[표 33] 건축정책 기본이념인 ‘건축의 공공성’의 여건변화 대응성

구분	사례수	전혀	별로	보통	어느	매우	응답비율(%)		100점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이다	정도	그렇다	부정	긍정	만점 [평균·점]
전체	(216)	2.8	19.0	39.8	32.4	6.0	21.8	38.4	55.0
소속	공무원(중앙+지방)	(55)	3.6	12.7	36.4	36.4	10.9	16.4	47.3
	연구기관과 대학	(79)	1.3	20.3	44.3	30.4	3.8	21.5	34.2
	건축설계사무소, 기타	(82)	3.7	22.0	37.8	31.7	4.9	25.6	36.6
									53.0



출처 : 연구진 작성

-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가능성, 환경, 시대 변화 수용 등과 관련됨

건축기본법의 기본이념이 바뀌어야 한다면 어떤 부분에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지속가능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10.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환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다’(8.8%), ‘시대 환경 변화의 수용/대응이 필요하다’(4.6%) 등의 순으로 의견이 나타났다.

[표 34] 「건축기본법」 기본이념의 수정 방향

내용	비율	비율
지속가능성이 필요함	10.2	인구 구성의 변화에 따른 공간 사용자의 요구를 반영해야 함
환경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반영이 필요함	8.8	개인의 가치 실현을 도와주는 방안이 필요함
시대 환경 변화의 수용/대응이 필요함	4.6	국민의 행복 개념이 추가되어야 함
구체성이 필요함	3.2	국민이 누려야 할 건축/공간적 권리가 강조됐으면 함
미래지향적인 반영이 필요함	2.8	국민의 안전/건강/복지에 관련된 양질의 생활 공간의 조성이 필요함
경제적 가치에 대한 내용이 필요함	2.3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지는 공간으로의 변화가 필요함
탄소 중립과 관련한 부분이 필요함	2.3	삶의 풍요를 추구해야 함
실행 가능해야 함	2.3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건축 구현이 필요함
철학적/개념적 이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1.9	국민들이 생각하는 건축 기본의 이념 정립이 필요함
추상적인 의미를 지양해야 함	1.4	국민의 공동 노력이 어떠한 것인지 모호
포괄적인 개념이어야 함	1.4	여가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어야 함
건축종사자들의 권리/복지/인권에 관한 내용 필요함	1.4	사회적 요구가 반영되어야 함
사회적 철학/비전을 담아야 함	0.9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건축물의 역할이 필요함

(단위 : %, 중복응답)

내용	비율		비율
세계적인 비전이 필요함	0.9	사회문화 척도의 일부라는걸 강조해야 함	0.5
문화적인 가치를 반영해야 함	0.9	사회가 추구하는 공공 가치에 대한 내용이 강조됐으면 함	0.5
경제활동의 토대가 되어야 함	0.9	사회의 다양한 요구 조정 및 수용하는 경제활동의 토대 공간환경의 조성 재정의가 필요함	0.5
지역적인 부분이 먼저 고려되어야 함	0.9	인구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정책 방향의 변화가 필요함	0.5
공공성을 강화해야 함	0.9	사회적 교류에 관한 부분이 포함돼야 함	0.5
공공적 가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0.9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0.5
미학적 가치가 필요함	0.9	경제활동의 토대로 경제의 하부 구조로 포함시키는 것에서 벗어나야 함	0.5
건축 디자인의 위상이 제고되어야 함	0.9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내용이 필요함	0.5
이해하기 쉬웠으면 함	0.9	지역 상황에 맞는 이념이 추가되어야 함	0.5
적극적이어야 함	0.9	역사적 가치가 구현되어야 함	0.5
실질적이어야 함	0.9	주변 지역/도시와의 조화로움을 고려한 도시적 속성이 필요함	0.5
현재의 이념을 살려야 함	0.9	에너지 분야의 보완이 필요함	0.5

출처 : 연구진 작성

※ BASE : 전체(N=216)

※ 없음(23.6%), 모름(10.6%), 기타 소수 응답 표시하지 않음

- 과반수 이상(65.7%)이 정책 기본방향 추가가 필요하다고 응답

이와 함께, 건축정책의 기본이념에 현행 ‘건축의 공공적 가치 구현’ 외에 최근 건축분야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정책 기본방향을 추가할 필요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65.7%(매우 그렇다 24.1%, 어느 정도 그렇다 41.7%)로 과반수 이상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부정적 의견은 13.4%로 나타났다. 건축분야의 새로운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정책 기본이념을 재정립할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의 전문가가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축정책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공무원 직군에서 기본이념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5] 건축정책 기본이념에 건축분야 트렌드를 반영해야 하는 필요성

(단위 : 명, %, 점)

구분	사례수	전혀	별로	보통	어느	매우	응답비율(%)	100점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이다	정도	그렇다		부정	긍정
전체	(216)	1.9	11.6	20.8	41.7	24.1	13.4	65.7	68.6

소속	공무원(중앙+지방)	(55)	0.0	5.5	20.0	40.0	34.5	5.5	74.5	75.9
	연구기관과 대학	(79)	2.5	12.7	21.5	50.6	12.7	15.2	63.3	64.6
	건축설계사무소, 기타	(82)	2.4	14.6	20.7	34.1	28.0	17.1	62.2	67.7

(BASE : 전체(N=216) / 단위 : %, 점)

100점 만점(평균) 68.6점



출처 : 연구진 작성

건축정책의 기본이념 및 기본방향에 대해 현행 법령 제7조~제9조에서 '건축의 공공적 가치 구현'을 3가지 측면인 '건축의 생활공간적 공공성', '건축의 사회적 공공성', '건축의 문화적 공공성'으로 표현하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해 구성된 전문가 TF팀을 통해 1차적으로 도출한 건축정책의 기본이념 및 기본방향에 대해 '건축의 공공성' 외에 추가적으로 '건축의 지속가능성'을 3가지 측면으로 '기후변화 등 재난으로부터의 지속가능성', '건축 생애 과정에서의 지속가능성', '미래기술 및 산업구조의 지속가능성'으로 정리하였다.

현행 건축기본법에서의 '건축정책의 기본방향'(제7조~제9조)

- ① 건축의 생활공간적 공공성 : 모든 이용자가 생활하기 편리하고, 폐적한 건축
 - ② 건축의 사회적 공공성 : 국민의 다양한 요구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 자원의 재이용 및 재생 촉진
 - ③ 건축의 문화적 공공성 : 건축문화자산의 보전, 지역 환경과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건축
- 출처: 건축기본법. 법률 제18339호 제7조~9조.

추가하고자 하는 '건축정책의 기본방향'(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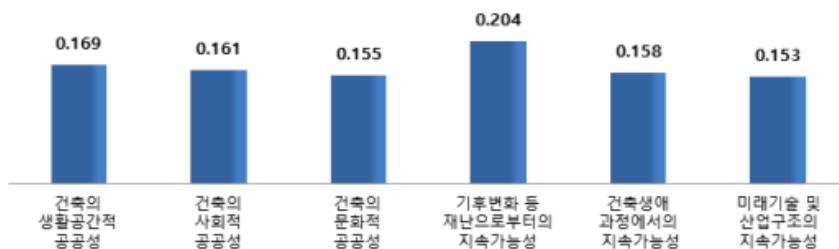
- ④ 기후변화 등 재난으로부터의 지속가능성 :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건축
- ⑤ 건축생애 과정에서의 지속가능성 : 건축생산부터 유지관리 전 과정에서의 안전과 사용가치 향상
- ⑥ 미래기술 및 산업구조의 지속가능성 : 첨단 건축기술변화의 능동적 대응 및 전축산업 경쟁력 강화

이에 따라, 전문가 216명 대상으로 건축정책이 추구해야 하는 기본이념과 기본방향에 대해 크게는 2가지 측면인 건축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에 따라 6가지 세부 정책 기본이념 및 기본방향에 대한 중요도 및 정책 우선순위를 쌍대비교 방식으로 평가하여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을 실시하였다. 총 216명의 응답자 중 일관성지수

및 비율이 0.1 이상으로 응답하여 일관성이 부족한 응답자 47명을 제외한 169명의 응답 결과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 ‘기후변화 등 재난으로부터의 지속 가능성’, ‘건축의 생활공간적 공공성’, ‘건축의 사회적 공공성’ 순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남

분석 결과, ‘기후변화 등 재난으로부터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중요도가 0.20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건축의 생활공간적 공공성’(0.169), ‘건축의 사회적 공공성’(0.161), ‘건축생애 과정에서의 지속가능성’(0.158), ‘건축의 문화적 공공성’(0.155), ‘미래기술 및 산업구조의 지속가능성’(0.153) 순으로 중요도가 높다.



[그림 14] 건축정책 가치(기본방향) 상대적 중요도

※ BASE : CR 0.1 이상(n=169)

※ CR(Consistency Ratio, 일치성비율) : 0.0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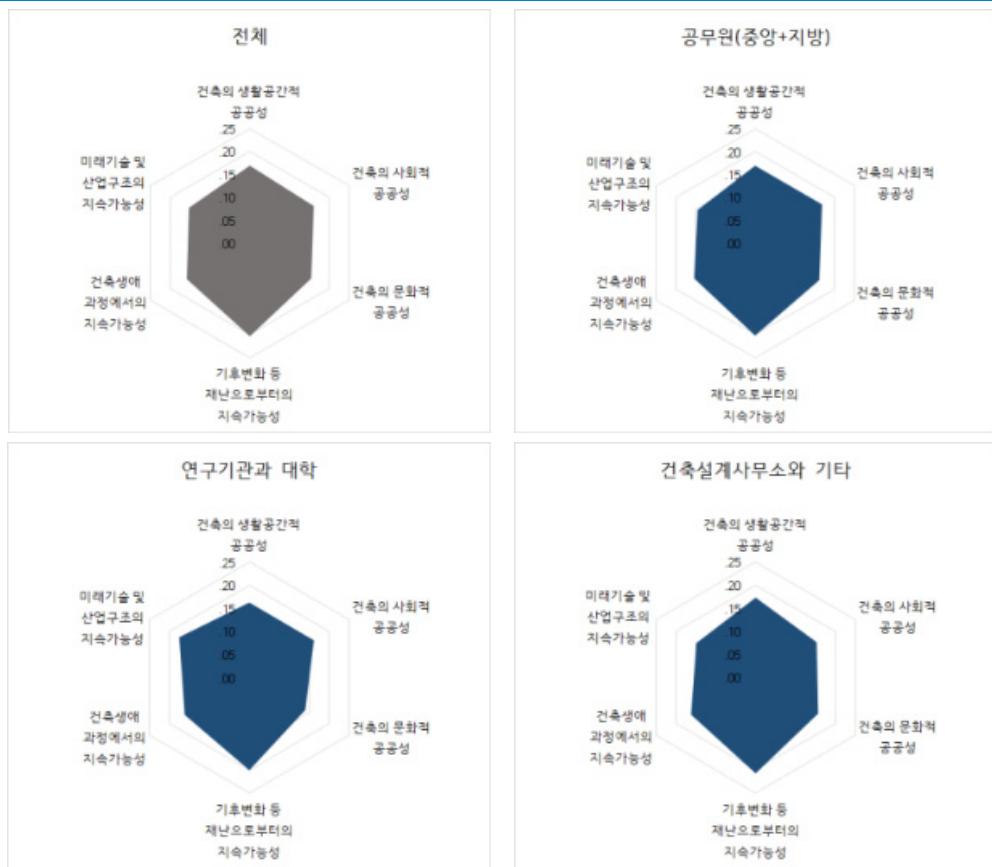
※ CR이 0.1 이하인 경우 계층분석 결과의 일관성이 확보되어 조사결과가 유효함을 의미

※ CR값 0.1 이하인 응답자(n=47)는 분석에서 제외함

연구자 그룹과 건축산업종사자 그룹은 유사한 결과 값을 보였으나, 공무원 그룹은 ‘기후 변화 및 재난으로부터의 지속가능성(0.200)’ 다음으로 ‘미래기술 및 산업의 지속가능성(0.175)’ 순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연구기관과 대학 그룹에서는 ‘생활공간적 공공성(0.169)’과 ‘사회적 공공성(0.169)’를 같은 순위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36] 건축정책 기본이념 및 방향 세부항목별 중요도 및 정책 우선순위

구분		사례수	생활공간적 공공성	사회적 공공성	문화적 공공성	기후변화 및 재난으로 부터 의 지속가능성	건축생애 과정에서의 지속가능성	미래기술 및 산업의 지속가능성	일관성 비율CR
전체	(169)	0.169	0.161	0.155	0.204	0.158	0.153	0.040	
소속	공무원(중앙+지방)	(40)	0.163	0.161	0.140	0.200	0.161	0.175	0.040
	연구기관과 대학	(67)	0.169	0.169	0.162	0.202	0.154	0.145	0.041
	건축설계사무소, 기타	(62)	0.173	0.153	0.157	0.208	0.162	0.149	0.038



출처 : 연구진 작성

4) 건축정책 실행력 제고를 위한 개선방향

□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영향력

- 과반수 이상(62.5%)이 건축정책기본계획이 우리나라 건축문화진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인식

건축정책기본계획이 우리나라 건축문화진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의견은 62.5%(매우 그렇다 9.7%, 어느 정도 그렇다 52.8%)로 과반수 이상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부정적 의견은 13.9%로 나타났다.

[표 37]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영향력

구분	사례수	전혀	별로	보통	어느	매우	응답비율(%)	(단위 : 명, %, 점)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이다	정도 그렇다	그렇다		부정	긍정
전체	(216)	1.4	12.5	23.6	52.8	9.7	13.9	62.5	64.2
소속									
공무원(중앙+지방)	(55)	1.8	9.1	27.3	49.1	12.7	10.9	61.8	65.5
연구기관과 대학	(79)	1.3	11.4	25.3	54.4	7.6	12.7	62.0	63.9
건축설계사무소, 기타	(82)	1.2	15.9	19.5	53.7	9.8	17.1	63.4	63.7

(BASE : 전체(N=216) / 단위 : %, 점)



출처 : 연구진 작성

□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만족도 및 중요도

-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는 ‘건축문화 관련 시설의 설립 및 운영’과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보존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 순으로 조사

건축기본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건축문화 진흥을 위해 다음 9가지 항목

에 대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문화 관련 시설의 설립 및 운영’, ‘출판·전시·축제 등 건축문화 관련 사업’, ‘국민의 건축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건축 관련 해외 진출 및 국제교류’,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보존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 ‘건축문화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인 또는 단체의 설립’, ‘건축물과 공간환경에 관한 기록자료의 구축사업’ 등이다.

건축기본법 제20조(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건축문화 관련 시설의 설립 및 운영
2. 출판·전시·축제 등 건축문화 관련 사업
3. 국민의 건축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4. 건축 관련 해외 진출 및 국제교류
5. 제21조에 따른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6. 제22조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7. 그 밖에 건축문화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출처: 건축기본법. 법률 제18339호 제20조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18조(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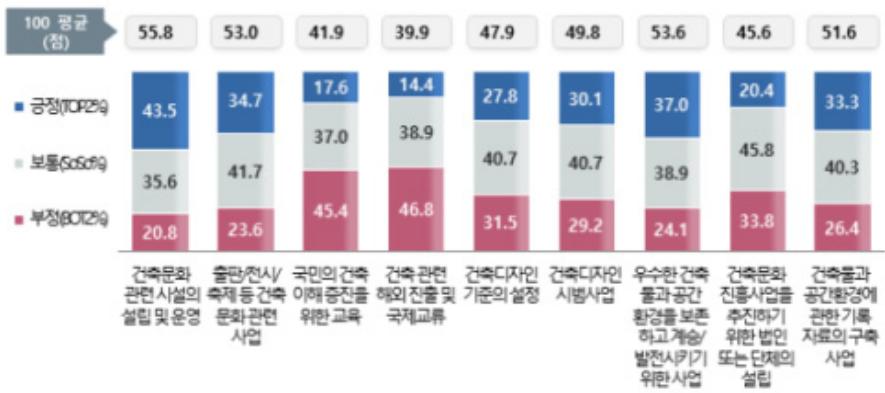
② 법 제20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보존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
2. 건축문화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인 또는 단체의 설립
3. 건축물과 공간환경에 관한 기록자료의 구축사업
4. 그 밖에 건축문화진흥을 위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출처: 건축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825호 제18조 제2항

이에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세부 사업 항목에 대해 현재 사업이 어느 정도 잘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5점 리커드척도로 만족도와 함께, 건축문화 진흥에 있어 어떠한 사업이 중요한지 중요도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만족도가 가장 높은 사업은 ‘건축문화 관련 시설의 설립 및 운영’(55.8점)이다. 그 다음으로는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보존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53.6점)이다. 주로 시설을 설립하거나 보존하는 등 물리적 공간과 관련된 사업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만족도가 가장 낮은 사업은 ‘건축 관련 해외 진출 및 국제교류’(39.9점), 그 다음으로는 ‘국민의 건축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41.9점), ‘건축문화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인 또는 단체의 설립’(45.6점)은 그간 사업 추진이 저조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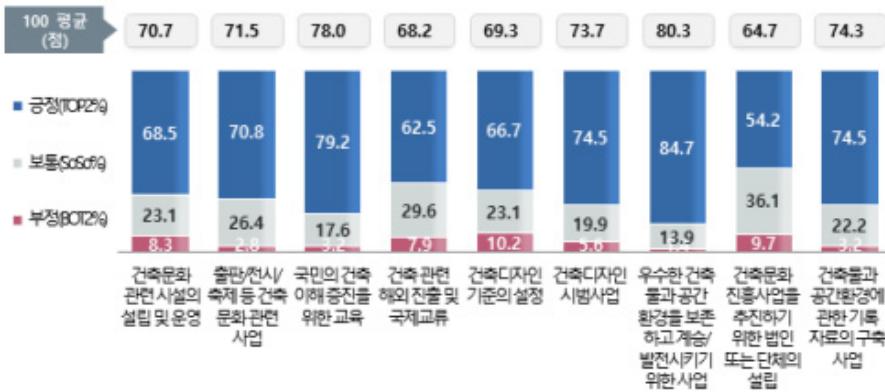


[그림 15]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사업별 추진 정도

※ BASE : 전체(N=216) / 단위 : %, 점

- 중요도가 높은 사업으로는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보존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 ‘국민의 건축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순으로 조사

반면, 중요도가 높은 사업으로는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보존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80.3점)’, ‘국민의 건축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78.0점)’, ‘건축물과 공간환경에 관한 기록자료의 구축사업(74.3점)’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16]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사업별 중요도

※ BASE : 전체(N=216) / 단위 : %, 점

- ‘국민의 건축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은 만족도가 낮으면서 중요도가 높은 사업으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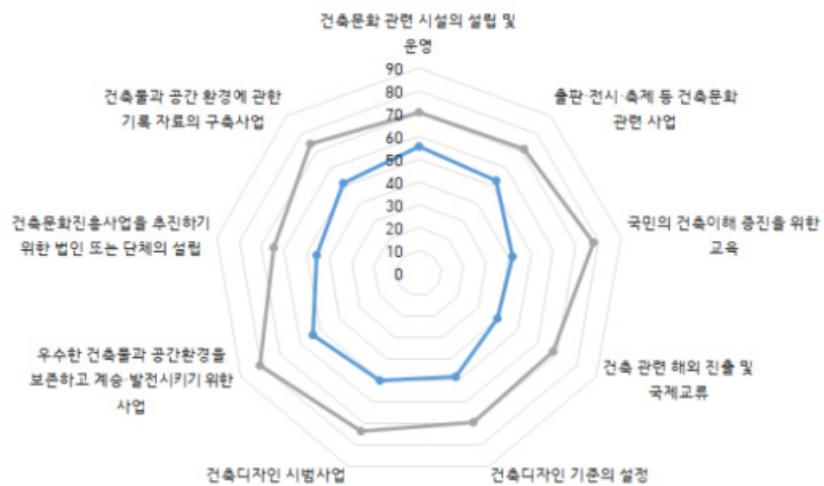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보존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은 만족도가 높으면서도 여전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평가하는 반면, ‘국민의 건축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은 만족도가 낮으면서 중요도가 높은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38]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만족도 및 중요도

구분	만족도 평균 (100점 환산)	중요도 평균 (100점 환산)	(단위 : 명, %) 인식 차이
건축문화 관련 시설의 설립 및 운영	55.8	70.7	△14.9
출판·전시·축제 등 건축문화 관련 사업	53.0	71.5	△18.5
국민의 건축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41.9	78.0	△36.1
건축 관련 해외 진출 및 국제교류	39.9	68.2	△28.3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47.9	69.3	△21.4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49.8	73.7	△23.9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보존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	53.6	80.3	△26.7
건축문화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인 또는 단체의 설립	45.6	64.7	△19.1
건축물과 공간 환경에 관한 기록 자료의 구축사업	51.6	74.3	△22.7

(BASE : 전체(N=216) / 단위 : 점)

■ 만족도 ■ 중요도



출처 : 연구진 작성

-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이 미비한 이유로는 홍보부족, 가시적 성과 부족, 예산 부족 등이라고 응답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이 잘 되지 않는 이유로는 ‘홍보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10.9%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가시적 성과가 부족하다’, ‘예산이 부족 하다’(각 8.8%), ‘체감되지 않는다’(5.8%) 등의 순으로 의견이 많았다.

[표 39]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이 잘 되지 않는 이유

(단위 : %, 중복응답)

내용	비율	비율
홍보가 부족함	10.9	해당 지역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
가시적 성과가 부족함	8.8	지자체의 건축행정은 인허가와 그에 따른 감사에 치중
예산이 부족함	8.8	성공사례에 대한 인식 확산이 부족함
체감되지 않음	5.8	우리나라 건축의 외국 홍보 부분의 개선이 필요함
실제 추진 사업이 부족함	5.1	관련 언론 보도가 부족함
일반 시민의 관심이 부족함	3.6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폭넓은 홍보가 필요함
교육이 부족함	3.6	화제성이 부족함
추진이 적극적이지 않음	2.2	건축물을 부동산 투자, 재테크 수단으로의 인식이 강함
지자체의 관심이 부족함	2.2	인식이 부족함
국민의 건축문화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함	2.2	중앙정부의 관심이 부족함
정책 지원이 부족함	2.2	기관장의 관심이 부족함
인력이 부족함	2.2	관련 업무 종사자의 인식이 부족함
인지도가 낮음	2.2	공공단체의 역할이 미비
건축기본법이 선언의 성격이 강함	1.5	코로나 등 사회적 혼란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함
정책 기조의 변화가 잦음	1.5	다양한 계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함
다양한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건축문화 선도적 기능을 강화했으면 함	1.5	너무 건축가 중심의 사고로 추진되어 일반인들의 관심과 괴리가 있음
건축물 DB 구축이 필요함	1.5	재정당국의 건축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
구체성이 필요함	1.5	최상위 관리자의 이해인식 노력이 부족함
기대했던 범위 면에서 차이가 있음	0.7	국민과 교감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함
기대했던 속도에 차이가 있음	0.7	건축문화 진흥에 사회·문화·예술적 환경이 포함되었으면 함
기대했던 수준면에서 차이가 있음	0.7	환경 개선 개념이 중요
성과면에서 일부 특정 기관이나 단체의 결과물만 나올 것 같음	0.7	디자인의 기준이 실제 공공건축물의 설계와 조성시 효율적이지 않음
사회·경제·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는 경향이 있음	0.7	건축디자인 기준이 분명하지 않음
국가 공모사업 등 지원 대책이 미흡	0.7	건축기본법에 대한 인지도가 낮음
국가사업 대비 지역적 사업은 진행이 더딤	0.7	건축기본법이 개별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음

출처 : 연구진 작성

※ BASE : 9개 사업 중 1개라도 부정 응답자(N=137)

※ 없음(1.5%), 모름(5.1%), 기타 소수 응답 표시하지 않음

-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추가 사업으로는 교육지원, 저가 수주 방지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9개 사업 외 추가로 필요한 사업으로는 ‘건축분야의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이 필요하다’(4.2%), ‘저가 수주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홍보가 필요하다’, ‘기존 사업의 성과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으면 한다’(각 1.9%) 등의 의견이 나타났다.

[표 40]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추가 필요 사업

(단위 : %, 중복응답)			
내용	비율	비율	
건축분야의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이 필요함	4.2	미래문화유산 자원에 대한 대응 작업이 필요함	0.9
저가 수주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함	1.9	건축문화의 다양성 및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필요함	0.9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함	1.9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건축문화진흥원 설립이 필요함	0.5
홍보가 필요함	1.9	사업의 지속성 및 일관성을 위한 재단 설립이 필요함	0.5
기준 사업의 성과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으면 함	1.9	유튜브 운영이 필요함	0.5
건축인 인권 보호가 필요함	1.4	메타버스 운영이 필요함	0.5
적정 대가 지급이 필요함	1.4	건축문화 진흥의 대상 확인을 위한 위원회 운영이 필요함	0.5
공공건축물 설계 가이드 기준 구축이 필요함	1.4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이 필요함	0.5
건축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1.4	건축 관련 단체 통합이 필요함	0.5
교류 활성화가 필요함	1.4	건축사협회의 제대로 된 역할이 필요함	0.5
지역 특색에 맞는 특화문화 사업 운영이 필요함	0.9	건축문화진흥사업 추진을 위한 법인/단체의 설립을 유도하지 않았으면 함	0.5
건축문화 창달을 위한 기금 마련이 필요함	0.9	조기 집행 지향이 필요함	0.5
규제의 최소화가 필요함	0.9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 내부의 운영 시스템 개발이 필요함	0.5
실질적인 기준 및 법규 마련이 필요함	0.9	건축 행정의 간소화가 필요함	0.5
건축문화 진흥을 담당할 행정체계 혁신 방안이 필요함	0.9	사업들이 실제 추진되고 있는가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함	0.5
도시와 건축행정 및 디자인행정으로서의 통합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0.9	공공건축 품질 및 성능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이 필요함	0.5
공공건축 발주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함	0.9	서민들을 위한 건축정책이 필요함	0.5
선진국 수준의 포상이 필요함	0.9	최소 주거면적으로 인허가되는 도시형생활주택 개선이 필요함	0.5
각 지역별 우수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함	0.9	중소설계업체로의 우수한 인재 유입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0.5
일률적인 디자인 기준은 지양했으면 함	0.9	공공건축 공모 프로세스 및 선정기준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함	0.5
건축 관련 단체들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구심체 마련이 필요함	0.9	건축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 관리가 필요함	0.5
첨단 IT기술 등과 융합해 다양하고 새로운 공간적 시도를 했으면 함	0.9	건축사 자격 완화가 필요함	0.5
녹색건축기술 등 미래건축을 위한 사업 투자가 필요함	0.9	청년 건축인 지원이 필요함	0.5
건축만을 강요하지 말고 사회문화예술적인 내용을 포함되었으면 함	0.9	취약 공간에 대한 개선사업 및 표준모델 개발이 필요함	0.5
한국 전통건축 역사문화에 관한 자료 발굴 및 정리가 필요함	0.9	우수 건축물에 대한 예산지원이 필요함	0.5

출처 : 연구진 작성

* BASE : 9개 사업 중 1개라도 부정 응답자(N=137)

* 없음(33.8%), 모름(9.3%), 기타 소수 응답 표시하지 않음

□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기금 또는 특별회계 설치 근거 신설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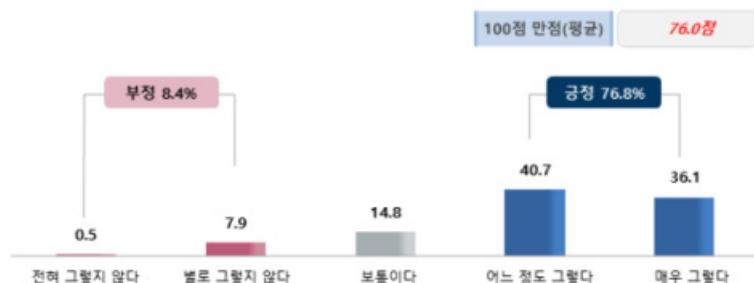
- 대다수(76.8%)가 기금 또는 특별회계 설치 근거 신설이 필요하다고 응답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기금 또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할 근거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76.8%(매우 그렇다 36.1%, 어느 정도 그렇다 40.7%)로 높게 나타났으며, 부정적 의견은 8.4%로 나타났다.

[표 41] 기금 또는 특별회계 설치 근거 신설 필요성

구분	사례수	전혀	별로	보통	어느	매우	응답비율(%)		100점 만점 [평균:점]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이다	정도 그렇다	그렇다	부정	긍정	
전체	(216)	0.5	7.9	14.8	40.7	36.1	8.4	76.8	76.0
소속	공무원(중앙+지방)	(55)	0.0	7.3	14.5	34.5	43.6	7.3	78.2
	연구기관과 대학	(79)	0.0	7.6	16.5	46.8	29.1	7.6	75.9
건축설계사무소, 기타	(82)	1.2	8.5	13.4	39.0	37.8	9.8	76.8	75.9

(BASE : 전체(N=216) / 단위 : %, 점)



출처 :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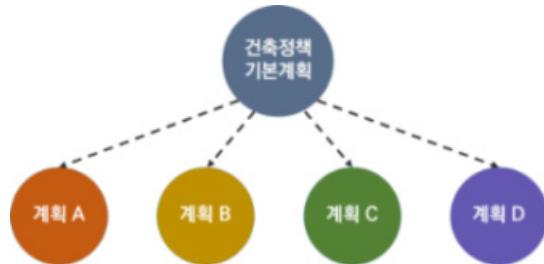
□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위상(타 계획과 관계)

- 대다수(71.8%)가 건축정책기본계획이 건축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조정/제시하는 종합 또는 상위 계획의 역할을 한다고 응답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위상 및 타 계획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조사 하였다. 첫 번째는 건축정책기본계획이 건축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조정·제시하는 종합 또는 상위 계획 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동등한 법적 위상의 계획으로 독립된 계획이자 필요 시 상호 보완하는 계획이라는 인식이다.

① 건축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조정·제시하는 종합 또는 상위 계획

한국 등 건축자산의 진흥기본계획,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등 건축정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종괄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② 동등한 법적 위상의 계획으로 독립된 계획이자 필요 시 상호 보완하는 계획

개별 법정계획과 마찬가지로 건축기본법에 국한된 계획이자 필요시 일부 계획 및 사업 내용을 공유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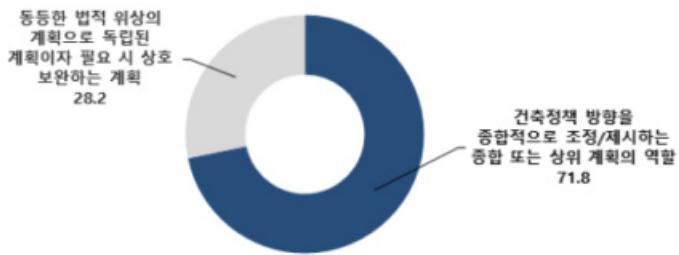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1.8%는 건축정책기본계획이 관련된 계획들과 건축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조정/제시하는 종합 또는 상위 계획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건축정책기본계획은 동등한 법적 위상의 계획으로 독립된 계획이자 필요 시 상호 보완하는 계획이라는 의견은 전체 응답자의 28.2%를 차지하였다.

[표 42]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위상(타 계획과 관계)

구분	사례수	건축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조정/제시하는 종합 또는 상위 계획	동등한 법적 위상의 계획으로 독립된 계획이자 필요 시 상호 보완하는 계획	(단위 : 명, %)
		71.8	28.2	
전체	(216)	71.8	28.2	
소속	공무원(중앙+지방)	(55)	80.0	20.0
	연구기관과 대학	(79)	74.7	25.3
	건축설계사무소, 기타	(82)	63.4	36.6

(BASE : 전체(N=216) / 단위 : %)



출처 : 연구진 작성

□ 건축정책기본계획을 범부처 계획으로 추진할 근거 신설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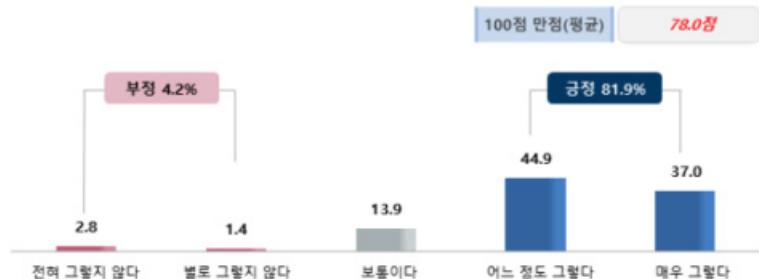
- 대다수(81.9%)가 건축정책기본계획이 범부처 계획으로서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 내에 근거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

건축 및 공간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해 건축정책기본계획이 범부처 계획으로서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 내에 근거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81.9%(매우 그렇다 37.0%, 어느 정도 그렇다 44.9%)로 높게 나타났으며, 부정적 의견은 4.2%로 나타났다.

[표 43] 건축정책기본계획을 범부처 계획으로 추진할 근거 신설 필요성

구분	사례수	전혀	별로	보통	어느	매우	응답비율(%)		(단위 : 명, %, 점)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이다	정도 그렇다	그렇다	부정	긍정	100점 만점 [평균:점]
전체	(216)	2.8	1.4	13.9	44.9	37.0	4.2	81.9	78.0
소속	공무원(중앙+지방)	(55)	0.0	0.0	10.9	40.0	49.1	0.0	89.1 84.5
	연구기관과 대학	(79)	3.8	1.3	12.7	58.2	24.1	5.1	82.3 74.4
	건축설계사무소, 기타	(82)	3.7	2.4	17.1	35.4	41.5	6.1	76.8 77.1

(BASE : 전체(N=216) / 단위 : %, 점)



출처 : 연구진 작성

□ 건축정책기본계획 및 지역건축기본계획의 계획목표 기간

- 국가 건축정책기본계획은 10년 단위, 지역건축기본계획은 5년 단위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각각 51.9%와 74.1%로 다수를 차지

국가 건축정책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중장기 계획으로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필요시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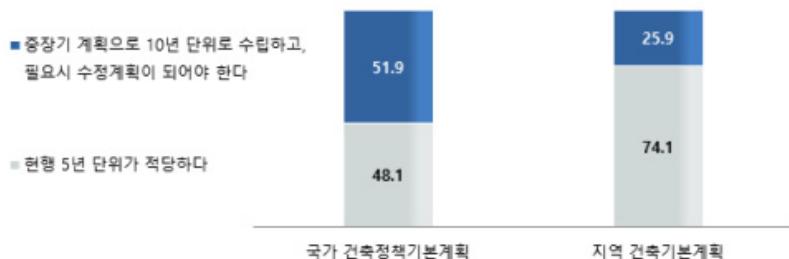
정계획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51.9%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반면, 지역건축기본계획에 대해서는 현행 5년 단위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74.1%로 높다.

국가 건축정책기본계획에 대해 중장기 계획으로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필요시 수정 계획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공무원(58.2%)이 높고, 지역건축 기본계획에 대해 현행 5년 단위가 적당하다는 의견은 연구기관과 대학(75.9%)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44] 건축정책기본계획 및 지역건축기본계획의 계획목표 기간

구분	사례수	국가 건축정책기본계획		지역 건축기본계획	
		현행 5년 단위가 적당	중장기 계획으로 10년 단위로 수립	현행 5년 단위가 적당	중장기 계획으로 10년 단위로 수립
		(단위 : 명, %)			
전체	(216)	48.1	51.9	74.1	25.9
소속	공무원(중앙+지방)	(55)	41.8	58.2	30.9
	연구기관과 대학	(79)	44.3	55.7	24.1
	건축설계사무소, 기타	(82)	56.1	43.9	24.4

(BASE : 전체(N=216) / 단위 : %)



출처 : 연구진 작성

□ 건축정책기본계획 및 지역건축기본계획의 계획 수립 과정

- 건축정책기본계획과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과정은 현재가 적당하다는 의견(44.9%, 43.1%)이 가장 높고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그다음(31.0%, 32.4%)임

건축정책 기본계획 수립 절차는 ‘계획 착수’, ‘공청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 ‘대통령 보고’, ‘계획 고시’ 순이다. 지역 건축기본계획 수립 절차는 ‘계획 착수’, ‘공청회’, ‘시·도 의회 의견청취’, ‘지역 건축정책위원회 심의’, ‘계획 고시’ 순이다.

[참고] 건축정책 기본계획 및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 주요 절차

건축정책 기본계획 수립 절차(법적 의무 절차)

: 계획 착수 → 공청회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 → 대통령 보고 → 계획 고시

지역 건축기본계획 수립 절차(법적 의무 절차)

: 계획 착수 → 공청회 → 시·도 의회 의견청취 → 지역 건축정책위원회 심의 → 계획 고시

국가 건축정책기본계획과 지역건축기본계획 모두 계획 수립 과정에 대해 현재가 적당하다(44.9%, 43.1%)는 의견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간소화가 필요하다(31.0%, 32.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국가 건축정책기본계획의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건축설계사무소와 기타(35.4%)에서 가장 높은 반면, 지역건축기본계획의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공무원(36.4%)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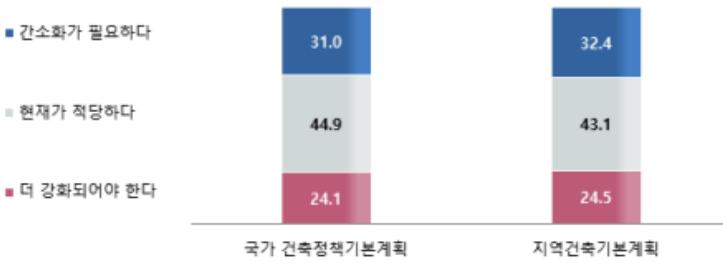
- 간소화가 필요한 부분으로는 국가 건축정책기본계획의 경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68.7%), 지역건축기본계획에서는 시/도의회 의견 청취(51.4%)가 높게 나타남

기본계획 수립과정 중 간소화가 필요한 부분으로 국가 건축정책기본계획에서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68.7%), 지역건축기본계획에서는 시/도의회 의견 청취 (51.4%)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 부분의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건축설계사무소와 기타(69.0%)에서 가장 높고, 시/도의회 의견 청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연구기관과 대학(54.5%)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5] 건축정책기본계획 및 지역건축기본계획의 계획목표 기간

구분	사례수	국가 건축정책기본계획			지역 건축기본계획		
		간소화 필요	현재가 적당	더 강화	간소화 필요	현재가 적당	더 강화
전체	(216)	31.0	44.9	24.1	32.4	43.1	24.5
소속	공무원(중앙+지방)	(55)	34.5	38.2	27.3	36.4	40.0
	연구기관과 대학	(79)	24.1	50.6	25.3	27.8	44.3
건축설계사무소, 기타	(82)	35.4	43.9	20.7	34.1	43.9	22.0

(BASE : 전체(N=216) / 단위 : %)



출처 : 연구진 작성

기본계획 수립과정 중 간소화가 필요한 부분으로 국가 건축정책기본계획에서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68.7%), 지역건축기본계획에서는 시/도의회 의견 청취 (51.4%)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 부분의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건축설계사무소와 기타(69.0%)에서 가장 높고, 시/도의회 의견 청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연구기관과 대학(54.5%)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6] 건축정책기본계획 및 지역건축기본계획의 계획목표 기간

구분	국가 건축정책기본계획			지역 건축기본계획				
	사례수	공청회	국가건축정책 위원회 심의	사례수	공청회	시도의회 의견청취		
						건축정책 위원회 심의		
전체	(67)	31.3	68.7	(70)	15.7	51.4	32.9	
소속	공무원(중앙+지방)	(19)	31.6	68.4	(20)	20.0	50.0	30.0
	연구기관과 대학	(19)	31.6	68.4	(22)	13.6	54.5	31.8
건축설계사무소, 기타	(29)	31.0	69.0	(28)	14.3	50.0	35.7	

(간소화 필요 응답 N=() / 단위 : %)



출처 : 연구진 작성

- 수립 절차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 수렴, 실행력 강화, 지역특성 반영, 미래 건축 방향제시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

건축정책기본계획과 지역건축기본계획 관련 계획 수립 절차에 대한 의견으로는 ‘건축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5.1%), ‘기본계획 수립의 실행력을 강화해야 한다’, ‘지역계획은 지역 특성을 잘 반영해야 한다’, ‘미래 건축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각 3.7%) 등의 의견이 나타났다.

[표 47] 건축정책기본계획과 지역건축기본계획 계획수립 절차 관련 의견

(단위 : %, 종복응답)

내용	비율	내용	비율
건축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5.1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0.9
기본계획 수립의 실행력을 강화해야 한다	3.7	도의회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으면 한다	0.9
지역계획은 지역 특성을 잘 반영해야 한다	3.7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0.9
미래 건축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야 함	3.7	공청회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으면 함	0.9
공청회를 확대해야 함	3.2	이전에 수립된 계획의 세부과제 이행을 점검해야 함	0.9
기본계획 수립의 절차를 간소화해야 함	2.8	지역계획의 건축 가이드 라인을 통해 지역의 이해도를 높였으면 함	0.9
기본계획 수립이 도시기본계획과 연계되었으면 함	2.8	지역계획의 목적 달성을 위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함	0.9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야 함	2.8	건축정책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지역건축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면 함	0.9
기본계획 수립이 연계성이 있었으면 함	2.3	건축정책기본계획이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상위계획의 역할을 해야 함	0.9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홍보를 해야 함	2.3	예산 전과정이 투명해야 함	0.9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함	2.3	기본계획 수립의 절차를 간소화하지 않아야 함	0.5
지역계획과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의 연계가 필요함	2.3	기본계획 수립을 공개 해야 함	0.5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야 함	1.9	기본계획 수립을 통일 해야 함	0.5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함	1.9	기본계획 수립을 국민들의 시각에서 수립해야 함	0.5
기본계획 수립을 타 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해야 함	1.4	기본계획 수립의 현안을 파악해야 함	0.5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해야 함	1.4	기본계획 수립의 유연한 대응이 필요함	0.5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건축기본계획 담당부서를 설립해야 함	1.4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해야 함	0.5
예산을 확충 해야 함	1.4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사업적 측면을 강화해야 함	0.5
기본계획 수립을 현실화해야 함	0.9	기본계획 수립이 지속적이었으면 함	0.5
기본계획 수립이 실질적이었으면 함	0.9	기본계획 수립이 예측 가능해야 함	0.5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함	0.9	기본계획 수립이 하향식 계획 수립을 해야 함	0.5
기본계획 수립의 상호 기간을 맞추어야 함	0.9	기본계획 수립 시 디자인이 우수해야 함	0.5
기본계획 수립이 구체적이었으면 함	0.9	위원회 참여 인력 배경이 다양해야 함	0.5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함	0.9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함	0.5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야 함	0.9	중앙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함	0.5

출처 : 연구진 작성

※ BASE : 9개 사업 중 1개라도 부정 응답자(N=137) / 단위 : %, 종복응답

※ 없음(33.8%), 모름(9.3%), 기타 소수 응답 표시하지 않음

□ 건축정책에 대한 성과점검의 적절성

- 건축정책에 대한 성과점검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31.5%로 높음

건축정책에 대한 성과점검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견은 26.9%(매우 그렇다 1.4%, 어느 정도 그렇다 25.5%)로, 부정적 의견(31.5%) 대비 낮은 수준이다. 응답자 특성별로 긍정적 인식을 살펴보면, 공무원(32.7%)이 가장 높다.

[표 48] 건축정책에 대한 성과점검의 적절성

구분	사례수	전혀	별로	보통	어느	매우	응답비율(%)	(단위 : 명, %, 점)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이다	정도 그렇다	그렇다		부정	긍정
전체	(216)	3.7	27.8	41.7	25.5	1.4	31.5	26.9	48.3
소속	공무원(중앙+지방)	(55)	1.8	18.2	47.3	30.9	1.8	20.0	32.7
	연구기관과 대학	(79)	5.1	35.4	32.9	24.1	2.5	40.5	26.6
	건축설계사무소, 기타	(82)	3.7	26.8	46.3	23.2	0.0	30.5	23.2

(BASE : 전체(N=216) / 단위 : %, 점)

100점 만점(평균) 48.3점



출처 : 연구진 작성

□ 건축정책 국회보고 또는 성과점검 주기

- 성과점검 주기는 현행대로 매 2년마다 시행하자는 의견이 46.8%로 가장 높음

건축정책 국회 보고 또는 성과점검 주기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매 2년마다 시행이 46.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건축정책 기본계획의 중간과 종료 시점 각 1회(26.9%), 매년 시행(14.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현행대로 매 2년마다 시행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연구기관과 대학(50.6%)에서 가장 높다

[표 49]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위상(타 계획과 관계)

구분	사례수	매년 시행	현행대로 매 2년마다 시행	계획의 중간 계획 종료 시 시점 1회		총료 국회보고 또는 성과점검 불필요
				과 종료 시 시점 1회	점 각 1회	
전체	(216)	14.4	46.8	26.9	8.8	3.2
소속	공무원(중앙+지방)	(55)	7.3	49.1	25.5	12.7
	연구기관과 대학	(79)	15.2	50.6	29.1	3.8
	건축설계사무소, 기타	(82)	18.3	41.5	25.6	3.7

(BASE : 전체(N=216) / 단위 : %)

Category	Percentage
매년 시행	14.4
현행대로 매 2년마다 시행	46.8
건축정책 기본계획의 중간과 종료 시점 각 1회	26.9
건축정책 기본계획 종료 시점 1회	8.8
국회보고 또는 성과점검 불필요	3.2

출처 : 연구진 작성

□ 건축정책 분야의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성과점검을 위한 법개정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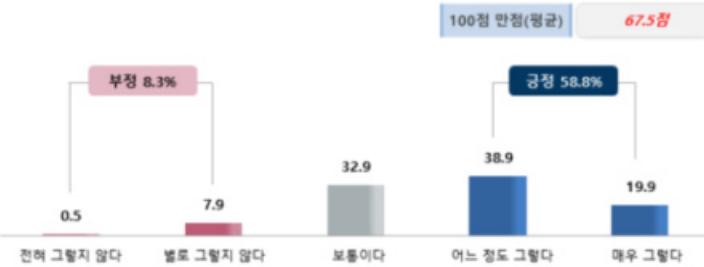
- 상당수(58.8%)가 모니터링 및 성과점검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

건축정책 분야의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성과점검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58.8%(매우 그렇다 19.9%, 어느 정도 그렇다 38.9%)로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적 의견은 8.3%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긍정적 인식을 살펴보면, 건축설계사무소와 기타(61.0%)에서 가장 높다.

[표 50] 건축정책 분야의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성과점검을 위한 법개정 필요성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응답비율(%)		100점 만점 [평균:점]
							부정	긍정	
전체	(216)	0.5	7.9	32.9	38.9	19.9	8.3	58.8	67.5
소속	공무원(중앙+지방)	(55)	1.8	5.5	34.5	40.0	18.2	7.3	58.2 66.8
	연구기관과 대학	(79)	0.0	8.9	34.2	34.2	22.8	8.9	57.0 67.7
	건축설계사무소, 기타	(82)	0.0	8.5	30.5	42.7	18.3	8.5	61.0 67.7

(BASE : 전체(N=216) / 단위 : %, 점)



출처 : 연구진 작성

□ 건축 HUB 확대 및 통합 플랫폼 기능을 위한 근거 신설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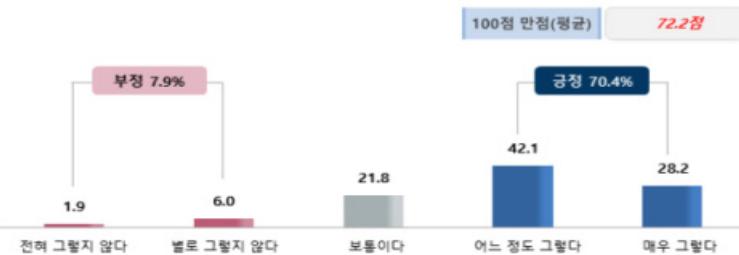
- 대다수(70.4%)가 건축 HUB 확대 및 통합 플랫폼 기능 근거 산설이 필요하다고 응답

「건축기본법」에 건축 HUB를 확대하여 여러 정보체계와 통합 플랫폼으로서 기능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70.4%(매우 그렇다 28.2%, 어느 정도 그렇다 42.1%)로 높게 나타났으며, 부정적 의견은 7.9%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긍정적 인식을 살펴보면, 공무원(78.2%)이 가장 높다.

[표 51] 건축 HUB 확대 및 통합 플랫폼 기능을 위한 근거 신설 필요성

구분	사례수	응답비율(%)					100점 만점 [평균:점]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216)	1.9	6.0	21.8	42.1	28.2	70.4 72.2
소속	공무원(중앙+지방)	(55)	0.0	5.5	16.4	47.3	30.9 5.5 78.2 75.9
	연구기관과 대학	(79)	1.3	3.8	25.3	36.7	32.9 5.1 69.6 74.1
	건축설계사무소, 기타	(82)	3.7	8.5	22.0	43.9	22.0 12.2 65.9 68.0

(BASE : 전체(N=216) / 단위 : %, 점)



출처 : 연구진 작성

- 실행력 제고를 위해 예산지원, 전담부서 역량 강화, 인력보강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

건축정책 실행력 제고를 위한 개선방향으로는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4.2%), ‘전담부서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인력보강이 필요하다’, ‘현실성 있는 정책 이어야 한다’, ‘홍보를 강화했으면 한다’(각 2.3%) 등의 의견이 나타났다.

[표 52] 건축정책기본계획과 지역건축기본계획 계획수립 절차 관련 의견

(단위 : %, 중복응답)

내용	비율	내용	비율
예산 지원이 필요함	4.2	입찰과정에 의무 이행사항으로 일부 프로젝트로 시작했으면 함	0.5
전담부서의 역량을 강화해야 함	2.3	교육이 필요함	0.5
인력보강이 필요함	2.3	건축정책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함	0.5
현실성 있는 정책이어야 함	2.3	우수 설계 및 시공기술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교육체계를 마련해야 함	0.5
홍보를 강화했으면 함	2.3	지자체장에게 건축정책의 중요성을 이해시킬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함	0.5
(지자체)유관 부처간 유기적인 협업이 필요함	1.9	국제적 인지도를 갖춘 건축가 양성이 필요함	0.5
지자체 전담조직이 필요함	1.4	지표 설정이 필요함	0.5
인센티브 제공으로 공급 및 수요자의 자발적 참여 유도가 필요함	1.4	공공건축물 외에 민간 건축물에도 적용이 필요함	0.5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함	0.9	모든 정책은 시장에 기반을 둔 정책이어야 함	0.5
건축설계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함	0.9	지자체 합동평가 등 평가지표로 상정했으면 함	0.5
(지방)공무원의 교육을 강화해야 함	0.9	건축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야 함	0.5
실행 체계를 개념화 했으면 함	0.9	용적률 상향이나 높이제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함	0.5
관련 실정법과 유기적 연계가 필요함	0.9	도시계획법으로 허용하는 용적률을 지구단위에서 하향 고시해야 함	0.5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필요함	0.9	지자체 담당자를 위한 민간전문가 제도를 운영해야 함	0.5
전문가의 정책 모니터링이 필요함	0.9	건축기본법 활용을 위한 점검 및 원인분석, 개선방안이 필요함	0.5
부처간 조정 및 조율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함	0.9	난립한 건축관련 조항 정리 및 단일화가 필요함	0.5
정보 접근성 향상이 필요함	0.9	건축법에서 119조는 시행령을 별도로 분리하였으면 함	0.5
미래지향적인 정책 제안이 필요함	0.9	복잡한 법체계는 지양함	0.5
일관되고 지속적인 정책 제안이 필요함	0.9	법제화 필요함	0.5
기본에 충실해야 함	0.9	시도별 추진 중인 총괄 건축가와 공공건축가제도 연계가 필요함	0.5
목표가 명확해야 함	0.9	건축정책과 도시계획 정책간 연계성을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0.5
지방의 특색이 반영한 정책이어야 함	0.9	법 규정에 맞추기 위해 비효율적 건축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	0.5
국민이 알기 쉽게 홍보했으면 함	0.9	개별법의 목적에 건축기본법을 명시가 필요함	0.5
국가, 지자체, 협회의 공동 인식이 필요함	0.9	건축인 인권 보호가 필요함	0.5
국가건축안전센터를 설립했으면 함	0.5	정치적 경향에 의해 관련 법령이 자주 변경 된다	0.5

출처 : 연구진 작성

※ BASE : 전체(N=216) / 단위 : %, 중복응답

※ 없음(34.7%), 모름(4.6%), 기타 소수 응답 표시하지 않음

3. 건축기본법 개정 소요

1) 변화되는 정책 여건변화에 대한 반영 요구

□ 건축기본법에서 다루는 건축정책의 대상과 범위의 모호성

건축기본법에서 다루는 ‘건축정책’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 기본법 제1조(목적)에는 “건축정책의 수립·시행 등을 규정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함으로써~”로 건축정책과 건축문화 진흥에 대해 강조를 하고 있으나 제3조(정의)에서는 ‘건축물과 공간환경’, ‘공공공간’, ‘품격’, ‘품질’, ‘건축’에 대한 다소 모호한 용어정의만 하고 있어 ‘건축정책’이 다루는 대상과 범위, 목적에 대한 재정립 필요하다.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 처음으로 수립된 2010년 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에서는 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건축물’, ‘공간환경’, ‘공공공간’에서 정의하고 있는 대상으로써 도시를 구성하는 건축물, 가로, 공원, 광장을 비롯하여 건축문화, 녹색건축도시, 교량 및 가로시설, SOC 국가기반시설, 경관, 주택 등 모든 시설 유형에 대한 디자인 품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려 노력하였다. 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한 관계자 및 연구진들은 당시 주택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등에서 다루는 정책대상인 주택공급, 도시기반시설 SOC까지를 건축정책에 포함되어 관련 계획 담당부서와의 정책대상에 대한 의견 차이도 있었다⁸⁾. 두 번째 정책계획인 2차 건축정책 기본계획에서는 통일에 대비한 건축으로 북한건축에 관한 정책방향까지 포함하여 실제 계획 실행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건축정책을 먼저 시작한 유럽 주요국의 정책계획 내용을 분석해보면, 유럽건축정책포럼(EFAP: European Forum for Architectural Policies)에 소속된 37개 국가의 건축정책은 ①건축문화 인식 확산, ②공공건축 설계성능 기준 개선, ③지속 가능한 건축기술 확대 등 3개 부문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⁹⁾.

8) 김영현 외(2015), p.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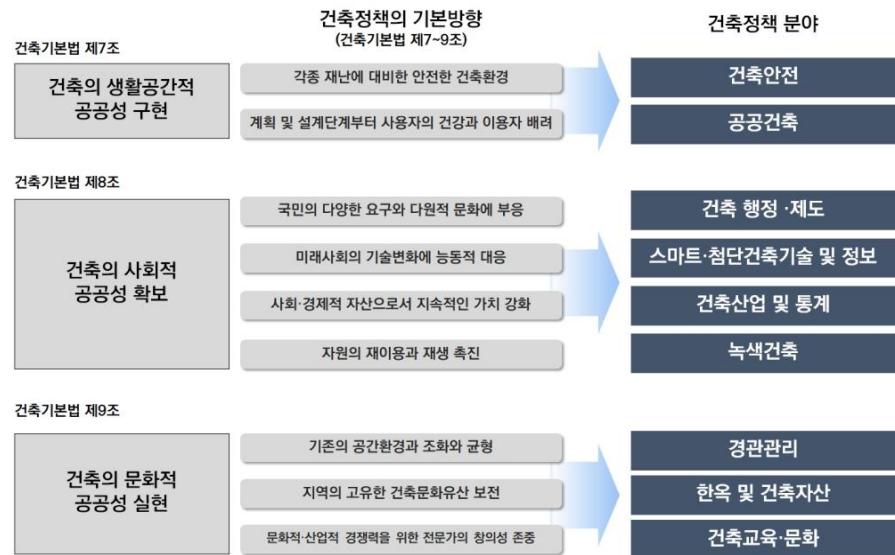
9) 김영현(2014), 유럽 건축정책 동향과 시사점, auri brief, p.4.

□ 건축분야 여건 및 정책 수요 변화에 대한 반영 미흡

건축기본법 제정 당시 공공에서의 저가발주, 기회업무 부실 등 건축기획 및 설계를 강화하여 건축물이 사적 자산만이 아닌 공공재로서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며, 1977년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발표한 건축정책 목표인 ‘건축의 공공성’이 반영 프랑스 건축법 1조는 “건축은 문화의 표현이다. L’ architecture est une expression de la culture.”로 시작하여 건축이 가지는 문화적 가치와 공공의 이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¹⁰⁾.

건축정책의 기본방향을 명시한 건축기본법 제7조~제9조에서는 건축물이 지니는 공공성에 초점을 두고 생활공간·사회·문화라는 유형에 따라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생활공간적 공공성 구현) 각종 재난에 대비한 안전한 건축환경을 조성하고, 계획 및 설계단계부터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한 건축정책(제7조)
- (사회적 공공성 확보) 국민의 다양한 요구와 다원적 문화에 부응하고, 미래사회 및 기술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가능한 건축정책(제8조)
- (문화적 공공성 실현)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유산을 보전하고, 문화적·산업적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문가 창의성을 향상시키는 건축정책(제9조)



[그림 17]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에서의 건축정책 분야

출처 : 국토교통부(2021),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자료집, p.59.

10) 권영상(2009), 창조적 공간문화 구현을 위한 정책방향, auri brief, p.1.

2021년에 공표된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에서는 건축정책 분야에 대해 근거법인 건축 기본법에 의한 ‘건축의 공공성’에 따라 9개의 건축정책 분야를 정리하여 계획을 수립하였다. 건축기본법 제7조~제9조까지의 법령 문구를 세분화하여 9개분야로 구분하였지만, 새로운 메가트랜드에 따른 탄소중립, 4차 산업혁명, 팬데믹, 인구감소 등에 대응하는 정책 기본방향을 ‘건축의 공공성’ 개념을 중심으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현행 기본법에서의 건축정책 기본방향은 ‘건축문화 진흥’으로 한정되어 있어 최근 정책수요에 따라 건축물과 공간환경이 만들어지는 생산 프로세스와 건축 물 전생애주기를 고려하여 건축정책의 대상과 목적도 폭넓게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최근 해외에서도 건축정책의 대상에 대해 공간환경 및 장소디자인을 비롯하여 인구, 기후변화, 에너지, 지속가능성, 도시계획 등과 연계된 정책대상 확대를 고민 중이다.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포르투갈 등의 가장 최근에 수립된 건축정책에서는 그 대상이 되는 공간적 범위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새로운 사회적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기후변화, 에너지, 물관리 등 새로운 도전 과제에 대응하고, 사회적 불평등해소, 복지, 교육, 지역커뮤니티 등 새로운 가치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네덜란드의 경우 물관리, 기후변화와 같은 새로운 과제 및 사회적,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네덜란드 건축정책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다.

2) 정책계획 간의 관계 정립 및 계획 역할 부여

□ 국가 및 지역 건축기본계획의 대상 및 내용에 대한 차별성 부족

건축정책에 대한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해 5년 단위로 국가와 광역시·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국가와 지역계획의 대상과 내용에 대한 차이가 불분명하고, 계획자체에 대한 실효성 측면에서의 문제 제기가 빈번히 있어왔다.

건축기본법 제12조(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에서는 “지역의 현황 및 사회·경제·문화적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을 위하여 건축정책기본계획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있으나 서울, 부산을 비롯한 모든 지자체 건축기본조례에서의 계획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이 국가 계획의 내용과 차별이 없어 국가계획과 유사한 기본계획이 양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건축기본계획이 수립된 내용을 분석해 보면, 지자체에서 추진이 불가능한 성격의 사업이나 과제가 그대로 포함된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표 53] 국가 및 지역건축기본계획의 내용

(국가)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 (건축기본법 제11조)	(광역시·도) 지역건축기본계획의 내용 (건축기본법 제12조 및 지자체 조례)
1. 건축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2.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1. 건축 현황·여건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건축의 품격 및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	2.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4.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	3. 건축에 관한 발전 및 지원 대책
5. 지역의 건축에 관한 발전 및 지원대책	4. 우수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우수한 설계기법 및 첨단건축물 등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7. 건축분야 전문인력의 육성·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공적공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건축디자인 등 건축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7. 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시책 구현에 관한 사항
9. 건축문화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8. 건축문화 진흥 등을 위하여 주민자치기구의 설립과 운영 지원 등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
10. 건축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 및 선도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건축문화 진흥과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시행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진흥에 필요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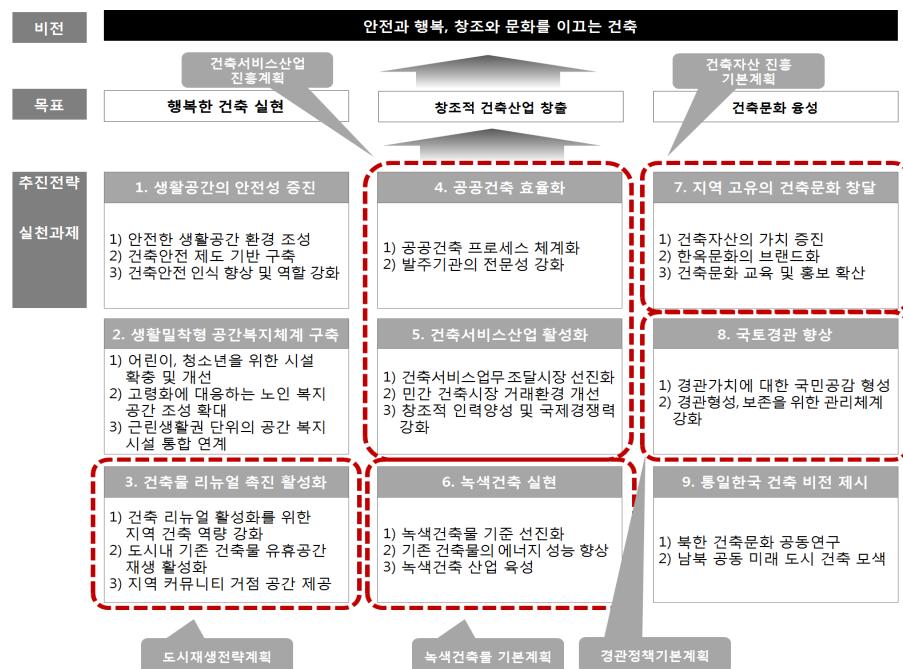
출처 : 건축기본법 제11조, 제12조.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은 건축정책에 대한 중장기적 측면에서의 비전과 정책목표를 정하고, 선언적 측면에서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행적 측면에서의 구체화된 계획은 지역건축기본계획에서 지역 현황과 여건에 부합하여 계획 수립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되나 실상으로는 추진주체가 명확하고 이행성과를 점검하도록 한 국가계획이 지역계획보다 이행률이 높은 실정이다. 이에 과제 추진주체 및 성격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가능한 과제’와 ‘지역차원에서의 실천과제’로 분리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계획과 지역계획의 내용에 대한 법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시·군 단위에서의 ‘기초건축기본계획’은 기본법에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 실질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는 순천시가 유일하여 실질적으로 작동 되지 못하고 있어 기초건축기본계획의 차별화된 역할을 부여하고 명확한 계획성격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 건축기본법 이후 제정된 법령 및 계획간의 관계 정립 필요

건축기본법 이후 제정된 관련 법령에 따라 녹색건축 기본계획, 건축자산 진흥기본계획, 경관기본계획, 건축서비스산업진흥계획 등 부문별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기본법에 의한 계획과 관련 계획간의 관계정립이 명확하게 명시될 필요가 있다. 각 계획별 내용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계획, 기본계획, 실행계획 등 계획 간 위상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림 18]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과 관련법령에 따른 계획간의 관계

출처: 김영현(2015),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성과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130.

또 한편으로는 계획수립 시점과 기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계획수립시점에 대해 ‘매 5년 단위’로 명시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지역건축기본계획은 자체 예산확보, 계획수립 과정을 포함할 때, 국가계획이 지역계획에 반영되는데는 통상 2년에서 3년 이상의 시간적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3) 건축정책 실행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새로운 건축정책 실행을 위한 지원체계 부재

건축기본법 이후 신규 건축관련 법 제개정으로 인해 건축생산 및 유지관리 전과정에서 추진해야 할 건축정책 및 행정업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건축정책 및 행정업무를 추진하는 지자체에서는 새로운 건축정책 요구에 대한 조직 및 예산, 인력 등에서 가중되는 업무량 및 전문성 측면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에 따라 지역건축행정 실무자의 교육연수, 지역 건축전문직 공무원 확대 방안 등 지역 건축행정 역량 강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

일례로 2017년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도록 근거가 마련되고, 2020년 12월에는 인구 50만 명 이상의 지자체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의무화가 되었지만, 지자체의 인력과 예산부족, 지역 민간전문가 확보 어려움 등으로 대부분의 지자체가 현재까지 설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건축기본법 제정 이후 건축 관련 신규 법령들이 증가하면서 개별법령별 새로운 전담지원조직(센터) 구성·운영에 대한 규정이 증가하고 있어 지역에서는 각 개별 법령에 따른 전담부서 또는 기구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도 많다.

□ 건축정책의 주체 및 협업체계 부족

건축기본법에서는 건축정책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계 부처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심의 및 자문할 수 있는 기구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지역건축정책위원회 설치를 명시하고 있다.

건축기본법에 의한 ‘지역건축정책위원회’는 광역시도는 ‘광역건축위원회’, 시군구는 ‘기초건축위원회’로 명시하고 있으며, 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대부분 광역시도에서는 ‘건축기본조례’를 통해 몇몇 광역시도는 지역건축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심의 등 대부분은

‘건축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지자체는 소수에 불과하다.

건축관련 법령에서 위원회 구성 운영을 대부분 명시하고 있으나 중소도시 지자체의 지역전문가가 부족한 대부분은 위원 구성에 한계가 있으며, 각 위원회에 대한 역할과 범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건축 관련 위원회의 역할 재정립도 필요하다¹¹⁾.

□ 건축기금 및 재정지원 구조 개선 필요

건축기본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건축문화진흥을 위해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분야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재정 지원을 위한 별도의 기금 및 회계는 부재하다.

건축 관련된 재정 지원 조항으로는 건축안전특별회계(건축법), 건축진흥특별회계(건축 서비스산업 진흥법 제31조), 건축자산특별회계(한옥등건축자산법 제36조), 그린리모델링기금(녹색건축법 제28조) 등이 있다.

[표 54] 건축관련 기금 관련 근거조항

건축진흥특별회계 용도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31조제3항)	건축자산특별회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건축기본법 제20조, 시행령 제1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연구 개발 · 보급에 필요한 비용·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강좌 개설 및 교육자료의 제작 · 배포에 필요한 비용·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창업지원에 필요한 비용· 진흥시설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비용· 우수 건축물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행계획에 필요한 비용· 건축자산의 진흥을 위한 연구 개발 · 보급에 필요한 비용· 건축자산의 보전 · 건축에 대한 지원 자료의 제작 · 배포에 필요한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문화 관련 시설 설립 · 운영· 출판 · 전시 · 축제 등 건축문화 관련 사업· 국민의 건축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건축 관련 해외 진출 및 국제교류·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보존하고 계승 · 발전· 건축문화진흥사업 추진을 위한 법인 또는 단체의 설립· 건축물과 공간환경에 관한 기록자료의 구축사업· 건축문화진흥을 위하여 국가건축정책 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11) 건축 관련 위원회 : 건축위원회(건축법), 건축물관리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건축물관리점검 평가위원회(건축물관리법), 건축정책위원회, 건축디자인 조정위원회(건축 기본법 및 지역 조례), 공공건축심의위원회(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경관위원회(경관법)

□ 디지털 정부 대응을 위한 건축 통합 정보체계 구축 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데이터는 모든 국가와 기업의 경쟁원천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의 신자본(New Capital)으로 인식하고 있으며(우창완 외 2018, p.4.), 건축정보는 환경, 재난방재, 주거복지, 도시계획, 에너지 등 도시환경과 직결되고 국민 일상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빅데이터이다(김영현 외 2020, pp.1-4.).

건축행정정보를 활용하여 구축된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건축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 건물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 건축데이터 민간개방시스템, 한국건축규정e시스템, 건축자재 플랫폼, 건축서비스산업정보체계 등 7여개의 정보체계가 개별적으로 운영 또는 구축 중에 있다. 각각의 정보체계에서 생산·관리되는 건축정보들이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융복합 정보 생산에 한계가 있어 건축정보의 정보수집-가공-유통·활용되는 데이터 가치사슬을 고려하여 데이터기반의 정책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건축 HUB에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 기능 외에도 건축정보 통합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건축산업 육성 및 건축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근거 마련 필요

현행 건축기본법에는 건축문화 진흥 재정지원 외에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정이 없고, 타 분야와의 협력을 위한 규정이 미흡하다. 건축 관련 단체 및 건축영재 육성, 건축인 교육 등 건축 분야 인적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도시·교통 등 분야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추진하고, 국제 교류 등 글로벌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건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축기술 연구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한편으로는 건축분야 전문가에게는 ‘건축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활용성 측면에서도 그간 많은 발전이 이루어져 왔으나 대국민 측면에서는 아직 건축정책 및 건축문화에 대한 인식에 있어 부족함이 많다. 그간 건축정책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주도로 전문가 중심의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 왔으나, 이제는 대국민의 정책수요에 귀 기울여 국민 참여형 정책 추진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건축주간, 건축의 날, 건축비 엔날레, 건축문화교육, 대국민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 국민 소통 플랫폼 구축 등 국민 체감도 향상 및 소통을 위한 건축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근거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건축정책 모니터링 및 성과점검 체계 고도화

건축기본법 제15조에서 건축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보고서를 2년마다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의 건축정책에 대한 성과보고서는 건축정책기본계획

세부단위과제 중심의 형식적인 이행현황 점검으로 건축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은 실상 어려운 점이 많다. 과제별 이행여부 중심의 양적 평가 중심으로 계획 수립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 및 성과를 검토하기 위한 수단이 부재하여 정책수립에 따른 투자 및 결과에 대한 평가, 정책의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등 성과평가의 범위와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행법 상 매 2년마다 건축정책 국회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계획의 시간적 범위 및 이전 계획과 신규 계획 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시간적 공백 등을 고려하여 성과 관리 주기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단위에서는 성과관리에 대한 근거조항이 있지만, 법령 및 지역 조례에서 지역 건축기본계획이나 지역 건축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분석은 미규정¹²⁾하고 있어 지역에서 계획 수립 시 형식적으로 전차 계획의 이행현황에 대해 분석을 수행하는 등 내실 있는 건축정책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표 55] 국토기본법 개정에 따른 국토모니터링 사례

- 국토조사를 기반으로 과학적이고 실증적으로 국토종합계획 및 정책 집행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근거법인 국토기본법을 개정(2020.9월)
 - 기존의 국토조사를 확대하여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센서, 드론 등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책을 모니터링 할 계획 (국토기본법에 국토모니터링의 추진(25조의2, 시행령 10조의3) 신설('20.9.)
- 국토변화 모니터링 대상 10대 핵심주제에 건축관련 이슈 포함
 - 건축정보는 건축물이 생성되어 활용, 유지관리, 소멸되는 전 생애주기에서 건축주, 건축가, 시공자, 행정담당자, 이용자, 유지관리자 등 이해당사자들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포함
 - 국토모니터링에서 건축부문의 통계 및 모니터링 등 정책지원 요구 증대

[국토모니터링 대상 100대 지표 중 건축도시 관련 지표]

- 10. 인구 당 생활인프라 적정 공급(규모, 장서수 등) / 27. 미이용 부지의 재활용률 / 28.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면적 비율 / 29. 토지(건물)이용 압축도 / 30. 토지(건물)이용 복합도 / 31. 빙상가 현황 / 32. 폐공가 재활용률 / 33. 노후건물비율 / 34. 노후주택비율 / 40. 공공임대주택재고 / 52. 폐공간 및 폐시설 감소율 / 57. 제로에너지건축물 비율 / 58. 기존건물 그린리모델링 비율 / 60. 스마트 기술 및 인프라 시설의 비율(스마트 교통, 스마트 안전, 스마트 건축 등의 분야에서 지능화된 시설의 비율) / 68.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 심의를 거친 신규 건축 수 / 69. 공공 건축가제도 운영 자체 비율 / 75. 노후운송시설물 수(비율) / 76. 노후수자원시설물 수(비율)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우리동네 생활여건 변화를 한 눈에 ‘2020 국토모니터링 보고서’ 발간”(2021.8.5.일자), 내용 및 국토 연구원 내부자료를 검토하여 연구진 작성

12) 서울시와 경기도만 건축기본조례에서 성과관리를 위한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제4장 건축기본법 개정방향

1. 타 분야 기본법의 구성체계와 제·개정 현황
 2. 건축정책의 기본이념과 범위 재정립
 3. 건축정책 실효성 향상을 위한 개선방향
 4. 건축기본법 개정안 제안
-

1. 타 분야 기본법의 구성체계와 제·개정 현황

1) 타 분야 기본법의 제정 및 개정 이슈

① 「국토기본법」

□ 개요

- 제정 및 목적

2002.02.04. 제정(법률 제6654호)된 「국토기본법」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을 통해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국토건설종합계획법」(2003.01.01. 폐지)을 보완·발전시킨 것이다. 「국토기본법」은 제1장 제1조(목적)에 따라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헌법 제120조 제2항 및 제122조와 관련

「대한민국헌법」에서는 국토의 개발과 이용, 보전을 위한 국가의 계획 수립과 법률의 정함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120조 제2항에 따르면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제122조에 따라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 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 기본이념, 계획수립, 국토정보체계, 위원회(심의) 관련 주요체계 구분

「국토기본법」 제정 시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기본이념, 계획수립, 국토정보체계, 위원회(심의) 관련 사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를 제1장 총칙, 제2장 국토계획의 수립 등, 제3장 국토계획의 효율적 추진, 제4장 국토정보체계의 구축 등, 제5장 국토정책위원회, 제6장 보칙으로 구분하여 체계를 구축하였다.

[표 56] 「국토기본법」 제정 시 주요 골자

구분	주요 내용	체계	※ 현재 체계
기본이념 관련	·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이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있음을 명시	- 제1장 총칙	- 촉동
계획수립 관련	· 국토종합계획·도종합계획·시군종합 계획·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으로 구분 · 계획별 수립목적, 내용, 기간, 절차 및 상호간의 관계 명시	- 제2장 국토계획 의 수립 등	- 촉동
평가 및 조사 관련	· 국토계획과 정책이 합리적으로 수립·집행되도록 국토정보체계의 구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 보고서, 국토조사에 관한 사항 규정	- 제3장 국토계획 의 효율적 추진 - 제4장 국토정보 체계의 구축 등	- 촉동 - 제4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 등 (개정 2020.04.07.)
위원회(심의) 관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관리에 관한 중 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 하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토정책위원회 설치 규정	- 제5장 국토정책 위원회	- 촉동
기타	· 비용부담의 원칙, 측량법의 준용, 권한의 위임 및 위탁 관련 명시	- 제6장 보칙	- 촉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개정 현황 및 이슈(2022.07. 기준)

- 「국토기본법」 제정(2002.02.04.) 이후 총 11차례 타법개정 시행

「국토기본법」은 다음의 8개 법률 제정, 전면 또는 일부개정, 제명에 따라 타법개정을 시행하였다.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국토정보체계 규정을 삭제하고(법률 제9440호, 2009.02.06.), 이후 해당 법률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으로 제명함에 따라 개정하였다(법률 제12736호, 2014.06.03.). 또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준용 규정(법률 제9774호, 2009.06.09.) 및 해당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한 것과 관련하여 개정을 시행하였다(법률 제12738호, 2014.06.03.).

이후 일부개정에 따른 조항 반영(법률 제17063호, 2020.02.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른 법 문장 및 용어 개정(법률 제10599호, 2011.04.1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법 문장 및 용어 개정, 삭제(법률 제12737호, 2014.06.03.),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용어 개정(법률 제14804호, 2017.04.18., 법률 제15489호, 2018.03.20., 법률 제17857호, 2021.01.05.), 「정부조직법」에 따른 용어 개정(법률 제8870호, 2008.2.29., 법률 제11690호, 2013.03.23.)이 있었다.

• 총 9차례 일부개정 시행

총 9차례의 일부개정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첫째, 평가 기준·대상·절차 및 모니터링 규정, 둘째, 계획 시 타 계획과 연계 및 시대여건 반영, 셋째, 국민의견 반영의 근거 명시, 넷째, 국토정책위원회 폐지 및 설치 규정과 관련하여 법 문장 및 용어 개정 또는 신설, 삭제가 있었다. 각각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 기준·대상·절차 및 모니터링 규정과 관련하여, 일단 평가지표 및 기준의 설정·공고를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법률 제8122호, 2006.12.28.), 이후 국토계획평가의 대상 및 기준 등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법률 제10758호, 2011.05.30.). 그리고 국토계획 및 국토정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국토모니터링의 수행 근거를 마련하였다(법률 제17228호, 2020.04.07.).

둘째, 계획 시 타 계획과 연계 및 시대여건 반영, 추가 대상 규정과 관련하여,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 간 연계를 위한 조항 개정 및 신설이 있었다(법률 제14335호, 2016.12.02.). 또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개발과 활용을 계획 내용에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하고(법률 제15598호, 2018.04.17.), 환경영의 개념 반영을 위해 개정을 시행하였다(법률 제16491호, 2019.08.20.). 최근에는 특별자치시 및 초광역권계획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법률 제 18387호, 2021.08.10., 법률 제18829호, 2022.02.03.).

셋째, 국민의견 반영의 근거 명시와 관련하여, 계획 및 정책 수립 과정에 국민의견을 반

영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다(법률 제17228호, 2020.04.07.).

넷째, 국토정책위원회 폐지 및 설치 규정과 관련하여, 제정 시 규정한 국토정책위원회를 폐지하였다가(법률 제8870호, 2008.2.29.), 이후 다시 신설하였다(법률 제10758호, 2011.05.30.).

그 외 제2조(국토관리의 기본 이념) 등에 대해 문장 및 용어 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이 있었다(법률 제10758호, 2011.05.30.).

[표 57] 「국토기본법」 제정 이후 개정 과정

순번	구분	주요 내용	주요 조문	
1.	일부 개정 (시행)	법률 제8122호, 2006.12.28. (시행 2007.12.29.)	· 국가 및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촉진·평가하기 위한 국토관리의 평가지표 및 기준의 설정·공고 근거 마련	- (신설) 제5조의 2(지속가능한 국토관리의 평가지표 및 기준)
2.	일부 개정 (시행)	법률 제8870호, 2008.2.29. (시행 2008.02.29.)	· 국토정책위원회(대통령 소속)를 폐지하고 위원회 기능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수행(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 문구 삭제 및 개정)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용어 개정	- (삭제) 제26조(설치), 제27조(조직), 제28조(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 제29조(사무), 제30조(국토정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
3.	타법 개정 (시행)	법률 제9440호, 2009.02.06. (시행 2009.08.07.)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국토정보체계 규정 삭제	- (삭제) 제23조(국토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
4.	타법 개정 (시행)	법률 제9774호, 2009.06.09. (시행 2009.12.10.)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준용 규정	- (개정) 제32조('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준용)
5.	일부 개정 (시행)	법률 제10758호, 2011.05.30. (시행 2011.05.30.)	· 국토계획평가제도 도입 · 계획 간의 조정 요청내용 보완 · 국토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국토정책 관련 위원회 폐지 및 통합 · 기본이념 등 법 문장 정비	- (신설) 제19조의2(국토계획 평가의 대상 및 기준), 제19조의3(국토계획평가의 절차) - (신설) 제20조(계획 간의 조정) 제1호~제2호 - (신설) 제26조(국토정책위원회), 제27조(구성 등), 제28조(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 등)
6.	타법 개정 (시행)	법률 제10599호, 2011.04.14. (시행 2012.04.1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른 법 문장 및 용어 개정	- (개정) 제6조(국토계획의 정의 및 구분), 제12조(국토종합계획의 승인)
7.	타법 개정 (시행)	법률 제11690호, 2013.03.23. (시행 2013.03.23.)	· 정부조직법 전부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용어 개정	- (개정) 제5조의2 등

순번	구분	주요 내용	주요 조문
8.	타법 개정 (시행)	법률 제12737호, 2014.06.03. (시행 2015.01.01.)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법 문장 및 용어 개정, 삭제	- (개정) 제16조(지역계획의 수립) 제1항 제2호 - (삭제) 제3호~제4호
9.	타법 개정 (시행)	법률 제12736호, 2014.06.03. (시행 2015.06.04.)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을 국가공간 정보 기본법으로 제명	- (개정) 제25조(국토조사)
10.	타법 개정 (시행)	법률 제12738호, 2014.06.03. (시행 2015.06.04.) ·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 (개정) 제32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준용)
11.	일부 개정 (시행)	법률 제14335호, 2016.12.02. (시행 2016.12.02.) ·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 연계를 위한 방법·절차 규정(환경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개정) 제5조(환경친화적 국토관리) 제1항 - (신설) 제5조(환경친화적 국토관리) 제4항, 제20조(계획 간의 조정) 제3호
12.	타법 개정 (시행)	법률 제14804호, 2017.04.18. (시행 2017.10.19.)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용어 개정	- (개정) 제4조(경쟁력 있는 국토 여건의 조성), 제10조(국토종합계획의 내용)
13.	타법 개정 (시행)	법률 제15489호, 2018.03.20. (시행 2018.03.20.)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에 따른 용어 개정	- (개정) 제27조(구성 등)
14.	일부 개정 (시행)	법률 제15598호, 2018.04.17. (시행 2018.04.17.) · 국토종합계획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개발과 활용 관련 명시	- (신설) 제10조(국토종합계획의 내용) 제2의2
15.	일부 개정 (시행)	법률 제16491호, 2019.08.20. (시행 2019.08.20.) · 환경정의 관련 명시	- (개정) 제5조(환경친화적 국토관리) 제1항
16.	일부 개정 (시행)	법률 제17228호, 2020.04.07. (시행 2020.10.08.) · 계획 및 정책 수립 과정에 국민의견 반영에 대한 명시 · 국토모니터링 수행, 활용 규정	- (신설) 제4조의2(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토 여건 조성), 제17조의2(국민의 의견 청취 등) - (신설) 제19조의2(국토계획 평가의 대상 및 기준) 제3항, 제25조의2(국토모니터링의 추진 등)
17.	타법 개정 (시행)	법률 제17063호, 2020.02.18. (시행 2021.02.19.)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조항 반영	- (개정) 제32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준용)
18.	타법 개정 (시행)	법률 제17857호, 2021.01.05. (시행 2021.07.06.)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용어 개정	- (개정) 제5조(환경친화적 국토관리), 제20조(계획 간의 조정)
19.	일부 개정 (시행)	법률 제 18387호, 2021.08.10. (시행 2021.08.10.) · 특별자치시 계획에 대한 규정 · 국토계획 기간 만료 시 미수립의 경우 종전의 계획을 따르도록 규정	- (개정) 제6조(국토계획의 정의 및 구분) 제3호 - (신설) 제7조(국토계획의 상호 관계 등) 제4항

순번 구분	주요 내용	주요 조문
20. 일부 개정 2022.02.03. (시행 2022.08.04.)	· <u>초광역권계획에 대한 규정</u>	- (신설) 제6조(국토계획의 정의 및 구분) 제2항 1의2호, 제12조의2(초광역권계획의 수립)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② 「환경정책기본법」

□ 개요

- 제정 및 목적

「환경정책기본법」은 다양화, 복잡화해가는 환경문제 대응과 관련하여 「환경보전법」을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개별 단행법으로 분리함에 따라 국가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념과 방향을 제시하고 관계 법률 간의 체계를 정립하여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 1990.08.01. 제정되었다(법률 제4257호). 「환경정책기본법」은 제1장 제1조(목적)에 따라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헌법 제35조 제1항과 관련

「대한민국헌법」에서는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대해 법률로 정함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35조 제2항에서는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대해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 기본이념, 책무, 계획수립 관련 주요체계 구분

「환경정책기본법」 제정 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이념, 책무, 계획수립 관련 사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를 제1장 총칙, 제2장 환경보전 계획수립등, 제3장 법제 및 재정상의 조치, 제4장 환경보전위원회, 환경보전자문위원회, 환경보전협회, 제5장 보칙으로 구분하여 체계를 구축하였다.

[표 58] 「환경정책기본법」 제정 시 주요 골자

구분	주요 내용	체계	※ 현재 체계
기본이념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보전법 폐지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 및 국민의 환경보전을 통한 향유, 계승에 대해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장 총칙 - 제2장 환경보전 계획수립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동 - 좌동
책무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오염의 원인을 발생하게 한 자는 오염된 환경의 회복과 피해구제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장 법제 및 재정상의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장 법제상 및 재정상의 조치 <개정 2011.07.21.>
계획수립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는 매년 주요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환경오염이 현저한 지역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환경의 영향권별로 환경오염상태를 파악하고, 그 방지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영향권별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환경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처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그 평가서의 작성 시에는 반드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환경관계분쟁의 신속한 조정과 피해의 적정한 구제를 위하여 정부가 필요한 제도를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장 환경보전위원회, 환경전문자문위원회, 환경보전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장 환경보전위원회 <개정 2010.02.04.>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감사원, 환경기술감리단, 권한의 위임 및 위탁 관련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장 보칙 	좌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개정 현황 및 이슈(2022.07. 기준)

- 「환경정책기본법」 제정(1990.08.01.) 이후 총 15차례 일부개정 시행

「환경정책기본법」은 총 51차례 개정 중 타법개정을 제외하고 일부개정의 경우 총 15차례, 전부개정 총 1차례를 시행하였다.

총 16차례 일부개정 및 전부개정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첫째, 시대변화에 따른 목적, 기본이념, 정의 추가 규정 및 개정, 둘째, 평가 규정, 셋째, 국가계획 내실화 및 지역계획의 의무 규정, 계획 간 관계 명시, 넷째, 주민 등 의견수렴 의무 규정, 다섯째, 환경보전위원회의 삭제 및 설치, 통합 기능 규정, 여섯째, 관계기관 설치·운영 근거 마련, 그 외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을 위해 법 문장 및 용어 개정 또는 신설, 삭제가 있었다.

첫째, 시대변화에 따른 목적, 기본이념, 정의 추가 규정 및 개정과 관련하여, 개정 또는

신설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일단 법 제정 이후 제1조(목적), 제2조(기본이념), 제3조(정의)를 개정하였다(법률 제6097호, 1999.12.31.).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제1조(목적) 개정(법률 제7561호, 2005.05.31.), 제3조(정의) 개정 및 제6호 신설, 제7조의2(환경과 경제의 통합적 고려 등)를 신설하였으며(법률 제6846호, 2002.12.30.), 형평성 관련 명시를 위해 제2조(기본이념)를 개정하였다(법률 제11268호, 2012.02.01.). 또한 기후변화 및 화학물질 관련 명시를 위해 제2조(기본이념) 및 제3조(정의)를 개정하였다(법률 제16267호, 2019.01.15.).

둘째, 평가 규정과 관련하여, 환경상태의 조사에 평가를 추가로 규정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였다(법률 제6846호, 2002.12.30.). 이후 환경기준 평가로 명시하며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다(법률 제16267호, 2019.01.15.).

셋째, 국가계획 내실화 및 지역계획의 의무 규정, 계획 간 관계 명시와 관련하여, 국가계획 내실화를 위해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등을 개정 및 신설하고 지역계획을 의무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법률 제6846호, 2002.12.30.). 그리고 직전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 반영을 규정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였으며(법률 제14494호, 2016.12.27.),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5년) 폐지 및 국가계획 통합과 관련하여 개정이 시행되었다(법률 제17857호, 2021.01.05.). 또한 계획수립 주기를 늘리고(법률 제13535호, 2015.12.01.), 국가 및 지역계획 간 관계를 명시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다(법률 제17857호, 2021.01.05.).

넷째, 주민 등 의견수렴 의무 규정과 관련하여, 국가계획 정비 및 지역계획 수립 시 주민 등 의견수렴 의무 규정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다(법률 제17857호, 2021.01.05.).

다섯째, 환경보전위원회의 삭제 및 설치, 통합 기능 규정과 관련하여, 제정 시 명시한 환경보전위원회를 삭제하였다가(법률 제6846호, 2002.12.30.), 이후 관련 위원회를 통합하기 위해 개정을 시행하였다(법률 제10032호, 2010.02.04.).

여섯째, 관계기관 설치·운영 근거 마련과 관련하여, 국제협력 추진기관의 설치·운영을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 및 신설하였다(법률 제16619호, 2019.11.26.).

[표 59] 「환경정책기본법」 제정 이후 개정 과정

순번	구분	주요 내용	주요 조문
1.	일부 법률 제6097호, 개정 1999.12.31. (시행 2000.08.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대변화에 맞게 <u>목적, 기본이념, 정의 등</u> 개정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관련 사항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 제1조(목적), 제2조(기본이념), 제3조(정의) - (신설) 제3조(정의) 4의2
2.	일부 법률 제6846호, 개정 2002.12.30. (시행 2003.07.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한 <u>발전 관련 환경정책의 기조 전환</u> 반영 <u>국가계획 내실화</u> <u>지역계획 의무 규정</u> <u>환경평가 규정</u> 개발 시 사전환경성검토협의 규정 <u>환경보전위원회 심의 규정</u>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 제3조(정의),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 (신설) 제3조(정의) 제6호, 제7조의2(환경과 경제의 통합적 고려 등) - (개정) 제12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 (신설) 제13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 제4호 제가목~제차목 - (신설) 제14조의4(시·군·구환경정보전계획의 수립 등) - (개정) 제15조(환경상태의 조사·평가 등) - (신설) 제25조(사전환경성검토 협의) - (삭제) 제36조(환경보전위원회) - (개정) 제37조(환경보전자문위원회)
3.	일부 법률 제7561호, 개정 2005.05.31 (시행 2006.06.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u>목적에 지속가능성 명시</u>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사전환경 검토로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 제1조(목적) - (신설) 제3조(정의) 제7호
4.	일부 법률 제8471호, 개정 2007.05.17. (시행 2007.07.01.)	사전환경성검토 관련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 제27조(개발사업의 사전허가등의 금지)
5.	일부 법률 제10032호, 개정 2010.02.04. (시행 2010.05.05.)	<u>환경정책위원회 설치</u>	- (개정) 제37조(환경정책위원회)
6.	전부 법률 제10893호, 개정 2011.07.21. (시행 2012.07.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부소관의 5개 위원회를 폐지하고 <u>환경정책위원회로 통합</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 제37조 등
7.	일부 법률 제11268호, 개정 2012.02.01. (시행 2012.07.22.)	<u>형평성 관련 기본이념에 명시</u>	- (개정) 제2조(기본이념)
8.	일부 법률 제11751호, 개정 2013.04.05. (시행 2013.04.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재정적 지원근거 명시 	- (개정) 제46조(회계의 세입)
9.	일부 법률 제13535호, 개정 2015.12.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추가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항 및 제4항

순번	구분	주요 내용	주요 조문	
		(시행 2016.01.01.) · 계획수립 주기 개정	- (개정) 제14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 (신설) 제16조의2(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	
10.	일부	법률 제13894호, 개정 2016.01.27. (시행 2016.01.27.)	· 인공조명 관련 명시	- (개정) 제3조(정의)
11.	일부	법률 제14494호, 개정 2016.12.27. (시행 2017.03.28.)	·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시 <u>직전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 반영 규정</u>	- (개정) 제15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 제6호
12.	일부	법률 제16267호, 개정 2019.01.15. (시행 2019.07.16.)	· 기후변화 관련 기본이념에 명시 · 화학물질 관련 명시 ·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 · <u>환경기준 평가 규정</u>	- (개정) 제2조(기본이념) - (개정) 제3조(정의) - (신설) 제6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 (신설) 제12조의2(환경기준 등의 공표), 제12조의3(환경기준의 평가 등)
13.	일부	법률 제16861호, 개정 2019.12.31. (시행 2020.01.01.)	· 교통 · 에너지 · 환경세의 환경개선 특별회계로 전입비중 조정	
14.	일부	법률 제16619호, 개정 2019.11.26. (시행 2020.05.27.)	· 국제협력 적극 참여를 위한 개정 및 추진기관 근거 마련	- (개정) 제27조(국제협력 및 지구 환경보전) - (신설) 제27조의2(국제환경협력 센터의 지정 등)
15.	일부	법률 제17857호, 개정 2021.01.05. (시행 2021.07.06.)	· 환경보전종기종합계획(5년) 폐지 및 국가환경종합계획 개정 · 국가 및 지역계획 간 관계 규정 · 국가계획 정비 및 지역계획 수립 시 주민 등 의견수렴 의무 규정	- (삭제) 제17조(환경보전종기종합계획의 수립 등) - (개정) 제15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 - (신설) 제18조의2(시 · 도 환경 계획의 승인), 제19조의2(시 · 군 · 구 환경계획의 승인) - (개정) 제16조의2(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 제18조(시 · 도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제19조(시 · 군 · 구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16.	일부	법률 제18918호, 개정 2022.06.10. (시행 2023.06.11.)	· 환경보전협회의 명칭 변경	- (개정) 제59조(한국환경보전원)

※ 타법개정을 제외하고 일부개정을 중심으로 작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③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개요

- 제정 및 목적

「탄소중립기본법」은 급격한 기후변화 및 기후위기에 따라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에 의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이행해야 하는 바,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추진을 위해 기존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2022.01.01. 폐지)의 한계를 보완하여 2021.09.24. 제정된 것이다(법률 제18469호). 「탄소중립기본법」은 제1장 제1조(목적)에 따라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촉진·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헌법과 직접적인 관련성 없음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이유에는 헌법에 규정된 사항의 정합 또는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이라는 명시가 없다. 다만, 해당 법은 2015년 파리에서 채택된 「파리협정」에 따라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근거로 하고 있다.

- 목적, 방향, 계획수립, 위원회(심의), 시책, 확산, 기금 관련 주요체계 구분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시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목적, 방향, 계획수립, 위원회(심의), 시책, 확산, 기금 관련 사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를 제1장 총칙, 제2장 국가비전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제3장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장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제5장 온실가스 감축 시책, 제6장 기후위기 적응 시책, 제7장 정의로운 전환, 제8장 녹색성장 시책, 제9장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확산, 제10장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 제11장 보칙으로 구분하여 체계를 구축하였다.

[표 60]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시 주요 골자

구분	주요 내용	체계	※ 현재 체계
목적 관련	· 이 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촉진·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을 명시	- 제1장 총칙	- 좌동

구분	주요 내용	체계	※ 현재 체계
방향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국가 비전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하도록 규정 	- 제2장 국가비전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 좌동
계획수립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는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10년, 시·군·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 	- 제3장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좌동
위원회(심의)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통령 소속으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는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명시 	- 제4장 2050 탄소 중립 녹색 성장위원회 등	- 좌동
시책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시책을 시행하도록 명시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기후위기 영향에 취약한 시설을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은 기후위기적응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관련 제도·시책을 시행하도록 명시 정부는 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을 마련하고,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를 지정하며 국민 참여 보장, 협동조합 활성화,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 설립 등 제도·시책을 시행하도록 명시 정부는 녹색경제·녹색산업을 육성·지원하고 관련 제도·시책을 시행하도록 명시 	- 제5장 온실가스 감축 시책 - 제6장 기후위기 적응 시책 - 제7장 정의로운 전환	- 좌동
확산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관련 확산과 교육·홍보,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 등 명시 	- 제9장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확산	- 좌동
기금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는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운용·관리하도록 규정 	- 제10장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	- 좌동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협력의 증진, 국제규범 대응, 국가보고서 등 작성, 국회 보고 등,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청문, 권한의 위임과 위탁,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의 제, 과태료 	- 제11장 보칙	- 좌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개정 현황 및 이슈(2022.07. 기준)

- 「탄소중립기본법」 제정(2021.09.24) 이후 개정 없음

「탄소중립기본법」은 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까지 개정 사항은 없다.

2) 실행체계 비교·분석

□ 구성 비교

- 「국토기본법」 본칙은 총 5장, 「환경정책기본법」은 총 4장, 「탄소중립기본법」은 총 10장으로 구성

「국토기본법」의 경우 제1장 총칙에서 목적, 기본이념 등을 명시하고, 제2장은 계획수립 관련, 제3장 및 제4장은 평가와 조사, 제5장은 위원회 설치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은 제1장 총칙에서 목적, 기본이념, 정의, 책무 등을 명시하며, 제2장은 마찬가지로 계획수립과 관련하여 규정한다. 제3장은 법제상의 조치 등 규정과 재정 지원 근거를 명시하며, 제4장에서 위원회 설치 등에 대해 규정한다. 「탄소중립기본법」도 유사하게 제1장 총칙에서 목적, 정의, 기본원칙, 책무 등을 명시한다. 제2장은 국가의 무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3장에서 계획수립 관련, 제4장에 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며, 제5장~제8장에는 온실가스 및 기후위기 등에 대한 별도의 제도·시책 시행을 정하고 있다. 제9장은 확산, 교육·홍보 등, 제10장에 기금 근거를 명시한다.

「건축기본법」의 경우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 기본이념, 정의, 책무 등을 명시하고, 제2장은 건축정책의 기본방향, 제3장에서는 계획수립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4장은 위원회, 제5장은 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등을 규정한다.

- 공통적으로 제1장 총칙 외에 계획수립 및 위원회와 관련하여 별도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향, 평가·조사, 진흥·기금 등 관련 내용은 장 또는 조항으로 규정

「탄소중립기본법」의 경우 제1장 제3조(기본원칙)과 별도로 제2장에서 국가비전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건축기본법」도 마찬가지로 제1장 제2조(기본원칙) 외에 제2장에서 건축정책의 기본방향을 명시한다.

「국토기본법」만 평가·조사와 관련하여 각각 제3장 및 제4장에서 별도로 규정하는데, 「환경정책기본법」은 제2장에서 계획수립 관련 평가를, 「탄소중립기본법」은 제3장에서 계획수립의 점검에 대해 명시한다. 「건축기본법」의 경우 평가에 대해 제2장 제9조(건축의 문화적 공공성 실현)에서, 조사는 제4장 건축정책위원회의 제16조(건축 기본조사)에서 정하고 있다.

또한 진흥·기금 등 관련 내용에 있어 「환경정책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은 별도의 장에서 규정하나, 「국토기본법」은 국민의 의견 청취 등과 관련하여 규정한 제2장의 제17

조의2에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건축기본법」은 제5장 건축문화의 진흥에서 시범사업 등 진흥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다.

[표 61] 타법 구성체계 비교

구분	「국토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	※ 「건축기본법」
제1장	총칙	총칙	총칙	총칙
제2장	국토계획의 수립 등	환경보전 계획수립등	국가비전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건축정책의 기본방향
제3장	국토계획의 효율적 추진	법제상 및 재정상의 조치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건축정책의 수립 등
제4장	국토정보체계의 구축 등	환경정책위원회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건축정책위원회 등
제5장	국토정책위원회	보칙	온실가스 감축 시책	건축문화의 진흥
제6장	보칙	-	기후위기 적응 시책	한국건축규정의 운용
제7장	-	-	정의로운 전환	-
제8장	-	-	녹색성장 시책	-
제9장	-	-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확산	-
제10장	-	-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	-
제11장	-	-	보칙	-

기본이념, 방향 등 관련 계획수립 관련 평가·조사 관련 위원회 관련 진흥·재원 관련

※ 관련 사항을 별도의 장으로 구성한 경우에만 명암 표기로 구분

□ 실행체계 주요 쟁점

- **(기본이념 및 기본방향 관련)** 「국토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 모두 목적뿐 아니라 기본이념 또는 기본원칙을 명시하며 「탄소중립기본법」의 경우에만 제2장에서 별도로 국가비전 등에 대해 규정

기본이념 및 기본방향 명시와 관련하여, 「탄소중립기본법」은 제2장 국가비전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에 제7조(국가비전 및 국가전략),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제9조(이행현황의 점검 등)를 규정하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의 경우 별도의 장으로 구성한 것은 아니나 제1장 제7조~제10조에 원칙 및 주체별 역할, 방향 등에 대해 추가로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타 기본법에서 국토정책, 환경정책, 탄소중립 녹색성장정책 등에 대한 기본방향을 규정한 것은 아니다. 한편 「건축기본법」의 경우 제1장 제2조(기본이념)뿐 아니라 관련하여 제2장에서 건축정책의 기본방향을 제7조(건축의

생활공간적 공공성 구현), 제8조(건축의 사회적 공공성 확보), 제9조(건축의 문화적 공공성 실현)로 정하고 있다.

- **(정의 관련)** 「국토기본법」의 경우에만 별도의 정의 조항 부재

정의에 있어 「국토기본법」은 제2장 국토계획의 수립 등의 제6조에서 국토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환경정책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의 경우 계획수립과 관련한 용어 등을 모두 제1장 총칙의 정의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건축기본법」의 경우에는 제3조(정의)에서 관련 용어를 정의한다.

- **(책무 관련)** 「환경정책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은 국가·지자체 및 그 외 관련 주체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나 「국토기본법」의 경우 책무 조항 없음

책무와 관련하여 「국토기본법」에서는 제3조(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제4조(경쟁력 있는 국토 여건의 조성), 제4조의2(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토 여건 조성), 제5조(환경친화적 국토관리)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은 국가·지자체 외 사업자의 책무를, 「탄소중립기본법」은 공공기관,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를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한다. 「건축기본법」은 국가·지자체 외에 제5조(국민의 의무)에서 국민, 건축주 및 발주자, 건축 관련 전문가의 의무에 대해 명시한다.

- **(다른 법률 및 계획과의 관계 관련)** 「환경정책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은 제1장에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며 「국토기본법」은 제2장 국토계획의 수립 등의 제8조에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에 대해서만 명시

다른 법률 및 계획과의 관계에 있어 「국토기본법」은 제8조에서 국토종합계획이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국토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정책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에서는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건축기본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1장 제6조에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시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 **(계획 관련)** 「국토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 모두 별도의 장으로 계획수립에 대해 규정하며 수립 주기는 모두 다름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은 20년마다 수립하며 5년마다 정비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에서도 마찬가지로 국가환경종합계획은 2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정비하도록 규정한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건축기본법」에 따른 건축정책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한다.

- **(기초계획 의무수립 관련)** 「환경정책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의 경우 기초 자체의 계획수립에 대해 의무수립 규정

기초계획 의무수립과 관련하여 「국토기본법」은 지역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립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한다. 「건축기본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국가 및 광역 외에 기초건축기본계획은 필요한 경우 수립·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 **(부문별 계획 관련)** 「국토기본법」의 경우에만 부문별 계획수립에 대해 명시

부문별 계획과 관련하여 「국토기본법」 제17조(부문별계획의 수립)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소관 업무에 관한 부문별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건축기본법」은 부문별 계획수립 관련 조항이 없다.

- **(국가·지역 간 계획 관련)** 「국토기본법」은 국가 및 지역 간 계획에 대해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

국가 및 지역 간 계획과 관련하여 「국토기본법」 제7조(국토계획의 상호 관계 등)에서는 국토종합계획이 초광역권계획, 도종합계획 및 시·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되며, 부문별 계획과 지역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의 경우에는 제14조(법령 제정·개정에 따른 통보 등)에 중앙행정기관이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는 계획의 수립·요청 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비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 통보하도록 명시한 정도이다. 「건축기본법」에는 국가 및 지역 간 계획 관련 조항이 없다.

- **(성과평가 관련)** 「국토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은 계획에 대한 성과평가 의무 규정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국토기본법」은 국토계획 평가에 대해 제3장 국토계획의 효율적 추진으로 별도의 장을 구성하여 의무사항을 정하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은 제13조(국가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에서 국가기본계획을 매년 점검하여야 함을 규정한다. 「건축기본법」의 경우 제9조(건축의 문화적 공공성 실현)에서 건축정책 성과평가에 대한 노력을 명시한 정도이다.

- **(지표·기준 관련)** 「국토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은 현황 등에 대해 측정·평가하기 위한 지표 및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

지표 및 기준과 관련하여 「국토기본법」은 제5조의2(지속가능한 국토관리의 평가지표 및 기준)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평가하기 위한 지표 및 기준을 설정하여 공고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은 국가가 환경기준

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해당 기준을 시행령에 고시하도록 한다. 「건축기본법」에는 지표 및 기준 설정에 대한 규정이 없다.

- **(모니터링 관련)** 「국토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은 현황에 대한 상시 조사 명시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국토기본법」은 제25조의2(국토모니터링의 추진 등)에 국토의 변화상과 국토계획 및 국토정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주기적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은 제22조(환경상태의 조사·평가 등)에 환경 현황, 실태 등에 대해 상시 조사·평가하여야 함을 규정한다. 「건축기본법」의 경우 제9조(건축의 문화적 공공성 실현)에서 국가·지자체의 건축정책 모니터링 실시에 대한 노력을 명시하는 정도이다.

- **(보고 관련)** 「국토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 모두 매년 보고하도록 규정

「국토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주요 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주요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위원장은 국가기본계획의 추진상황 및 주요 성과를 정성·정량적으로 점검한 결과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하고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기본법」의 경우 제15조(건축정책 국회보고)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건축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한 뒤 2년마다 제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 **(국민참여 관련)** 「국토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은 별도의 조항으로 국민의 의견 청취, 국민참여에 대해 명시함

국민참여와 관련하여 「국토기본법」은 제17조의2(국민의 의견 청취 등)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건축기본법」의 경우에는 제1장 제5조(국민의 의무) 제1항에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축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한다. 또한 제2장 건축정책의 기본방향에서 제9조(건축의 문화적 공공성 실현) 제3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이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풍토나 역사 또는 환경에 적합하게 조성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다만, 건축정책 과정에 국민 의견수렴 및 참여를 분명하게 명시한 것은 아니다.

- **(진흥 관련)** 「국토기본법」은 교육과 홍보,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보전 교육, 관련 협력·교류 등, 「탄소중립기본법」은 지자체 연대, 교육·홍보 등의 수행 근거 명시

진흥과 관련하여 「환경정책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의 경우 단지 교육·홍보뿐 아니라 관계 기관과의 협력·교류, 지자체 연대 등을 명시하고 있다. 「건축기본법」은 제20조에 교육을 비롯해 출판·전시·축제, 국제교류 등을 위한 재정지원을 설명하는데, 관계기관 및 지자체 협력에 대한 근거는 부재하다.

- **(기금 또는 특별회계 등 관련)**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한 환경 개선특별회계에 대해, 「탄소중립기본법」은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를 규정

「국토기본법」의 경우 기금 또는 특별회계 등 설치 규정은 없다. 「건축기본법」 또한 제20조(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외에 별도의 기금 등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표 62] 타법 실행체계 세부비교

주요 내용	「국토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	※ 「건축기본법」
목적	○ (제1조)	○ (제1조)	○ (제1조)	○ (제1조)
기본이념	○ (제2조)	○ (제2조)	○ (제3조) *기본원칙	○ (제2조)
방향	-	-	○ (제7조~제9조)	○ (제7조~제9조)
정의	-	○ (제3조)	○ (제2조)	○ (제3조)
책무	국가·지자체	-	○ (제4조)	○ (제4조)
그 외	-	○ (제5조) *사업자	○ (제5조) *공공기관, 사업자, 국민	○ (제5조) *국민, 건축주 및 발주자, 전문가
다른 법률과의 관계	-	○ (제6조의2)	○ (제6조)	○ (제6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 (제8조)	-	-	-
계획	국가	○ (제9조) *의무규정	○ (제14조) *의무규정	○ (제10조) *의무규정
	광역	○ (제13조) *의무규정	○ (제18조) *의무규정	○ (제11조) *의무규정
	기초	○ (제16조)	○ (제18조) *의무규정	○ (제12조) *의무규정
부문별	○ (제17조)	-	-	-
국가·지역관계	○ (제7조)	-	○ (제14조)	-
성과평가	○ (제18조) *평가 의무 규정	-	○ (제13조) *점검 의무규정	○ (제9조)
지표·기준	○ (제5조의2) *의무규정	○ (제12조) *의무규정	-	-

주요 내용	「국토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	※ 「건축기본법」
조사	<input type="radio"/> (제25조) *의무규정	<input type="radio"/> (제22조) *의무규정	<input type="radio"/> (제20조)	<input type="radio"/> (제16조)
모니터링	<input type="radio"/> (제25조의 2)	<input type="radio"/> (제22조) *의무규정	-	-
보고	<input type="radio"/> (제24조) *매년/정부	<input type="radio"/> (제11조) *매년/정부	<input type="radio"/> (제78조) *매년/위원장	<input type="radio"/> (제15조) *2년/국토교통 부장관
위원회	<input type="radio"/> (제26조) *심의/국무 총리소속	<input type="radio"/> (제58조) *심의·자문/ 환경부소속	<input type="radio"/> (제15조) *심의·의결/대 통령소속	<input type="radio"/> (제13조) *심의·시행/대통 령소속
국민의 권리	-	<input type="radio"/> (제6조)	-	-
국민참여 (또는 의견수렴)	<input type="radio"/> (제17조의 2)	- (제2조)	<input type="radio"/> (제51조)	<input type="radio"/> (제5조 및 제9조)
진흥	- (제17조의2) *교육·홍보	<input type="radio"/> (제25조 외) *환경 보전 교육, 협력· 교류 등	<input type="radio"/> (제65조 외) *연대, 교육·홍 보 등	<input type="radio"/> 제20조 외 *시범사업 등
기금 (또는 특별회계 등)	-	<input type="radio"/> (제45조 외) *특별회계	<input type="radio"/> (제69조 외) *기금	-

※ 별도의 조항으로 명시한 경우 ○ 표기

3) 시사점

□ 종합

「국토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을 중심으로 타 분야 기본법의 제정 및 개정 이슈를 살펴보며 현 실행체계를 비교·분석한 결과, 다음의 세 측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였다.

먼저 헌법 관련성에 있어 「국토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의 경우 「대한민국헌법」과의 연계가 분명하며 각각 목적 및 기본이념에 명시하고 있다.

주요 체계의 경우 「국토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 모두 계획수립 및 위원회와 관련하여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는데 방향, 평가·조사, 진흥·기금 등 관련 내용은 장 또는 조항으로 규정하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각 법의 개정 연혁을 분석하여 개정에 대한 이슈를 확인한 결과, 「국토기본법」은 제정(2002.02.04.) 이후 ①평가기준·대상·절차 및 모니터링 규정, ②계획 시 타 계획과

연계 및 시대여건 반영, ③국민의견 반영의 근거 명시, ④국토정책위원회 폐지 및 설치 규정과 관련하여 주요 개정을 하였다. 「환경정책기본법」은 제정(1990.08.01.) 이후 ① 시대변화에 따른 목적, 기본이념, 정의 추가 규정 및 개정, ②평가 규정, ③국가계획 내실화 및 지역계획의 의무 규정, 계획 간 관계 명시, ④주민 등 의견수렴 의무 규정, ⑤환경 보전위원회의 삭제 및 설치, 통합 기능 규정, ⑥관계기관 설치·운영 근거 마련을 위해 주요 개정을 시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중립기본법」의 경우 제정(2021.09.24) 이후 개정은 없었다.

□ 「건축기본법」개정 관련 시사점

위 분석 내용을 통해 「건축기본법」개정과 관련하여 다음의 세 범주에 대한 쟁점 사항을 도출하였다.

첫째, 기본이념 및 대상과 범위에 있어, 「국토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은 헌법 및 국제협정에 따른 국가목표와 관련하여 제1장을 통해 기본이념 또는 기본원칙에 대해 명시하는데, 「탄소중립기본법」은 탄소중립과 관련하여 국가비전 및 관련 사항의 추진방안 등을 별도로 2장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토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의 경우 시대변화에 따라 목적, 기본이념, 정의뿐 아니라 계획 관련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개정해 왔음을 확인하였다.

「건축기본법」의 경우, 제2장에서 건축정책의 기본방향(공공성 관련)을 명시하고 있다. 해당 장을 유지할 경우 제1조(목적) 및 제2조(기본이념), 제3조(정의) 규정과 연계되도록 개정되어야 하며, 이때 건축정책에 대한 정의를 비롯하여 대상과 범위 또한 명확하게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시대변화 반영이 필요한 시점이다.

둘째, 관련 법령 및 계획 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타 기본법 모두 20년마다 계획수립 또는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며 특히 「국토기본법」은 국토계획과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 간 관계에 있어 우선하여 기본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부문별 계획수립과 관계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은 국가계획과 지역계획 간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분한다. 한편 「환경정책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의 경우 기초 지자체의 계획수립에 대해서도 의무수립을 규정하고 있다.

「건축기본법」의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 간 관계, 부문별 계획수립에 대한 조문은 부재하며 지역계획의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아 차별성 있는 계획수립·시행에 대한 진단이 요구된다. 또한 「건축기본법」의 계획 및 정비기간에 대한 규정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실효성과 관련하여 「국토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은 현황 등에 대해 측정·평가하기 위한 지표 및 기준을 마련하도록 정함으로써 조사, 평가, 모니터링 비롯한 계획수립과 체계적으로 연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국토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은 별도의 조항으로 국민의 의견청취, 국민참여에 대해 명시하며 「환경정책기본법」은 특별회계를, 「탄소중립기본법」은 기금을 통해 재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환경정책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의 경우 단지 교육·홍보뿐 아니라 관계 기관과의 협력·교류, 지자체 연대 등에 대해서도 명시한다.

「건축기본법」의 경우, 지표·기준 설정에 대한 규정이 부재한 상황으로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조항 신설 및 개정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이다(모니터링 규정 시 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검토). 또한 진흥을 위한 국민참여 명시 조항 및 연대를 위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2. 건축정책의 기본이념과 범위 재정립

1) 건축정책의 이념 및 기본방향 재정립

□ 사회적 여건변화 및 국제 아젠다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의 방향 설정

일반적으로 건축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되는 국가사회의 주요국을 보면 국가마다 방향과 지향점이 다르다 하더라도 국가 주도로 건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건축의 문화융성”, 프랑스는 “건축의 공공성”, 덴마크는 “건축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노르웨이는 “건축의 지속가능성” 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다양한 나라에서 국가 주도의 건축정책을 추진 있다.

우리나라의 건축정책은 건축기본법을 근간으로 하는데, 건축기본법에서는 건축 정책의 기본방향을 생활공간적·사회적·문화적 공공성 구현으로 규정한다. 한편 건축기본법 제정 이후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응, 건축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관리 필요성 증대 등 건축물과 공간환경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함께 이에 대한 정책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물의 생산부터 유지관리 전생애 과정에서의 안전성 확보, 탄소중립 및 지속가능성, 건축산업 경쟁력 강화 등 사회적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건축정책 방향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더불어 국제사회에서 지속가능성의 아젠다가 인류 공동 목표로 채택된 만큼, 지속가능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¹⁾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²⁾ 측면에서 ‘건축’이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범주와 역할에 대해서도 폭넓은 시각에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1)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³⁾”가 1987년에 발표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에서 “미래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 (development that 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이라고 정의

2) 2015년 제70차 UN총회에서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의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인류 공동의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

[지속가능발전목표 Goal11]

Make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inclusive, safe, resilient and sustainable

포용적이고, 안전하고, 복원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환경 조성

- 안전하고 적정가격의 주택과 기본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 보장
- 취약계층으로 고려한 안전하고 적정가격이며 접근이 용이한 지속가능한 교통시스템
-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화 확대 및 참여적, 통합적, 지속가능한 계획과 관리 역량 강화
- 문화·자연유산 보호 및 보존
- 빈곤, 취약계층을 고려하여 재해 재난으로부터의 보호
- 공기질 및 기타 폐기물을 관리 및 부정적 환경 영향 감축
-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접근이 용이한 공공 녹지공간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



[그림 19] UN의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

출처 : 환경부,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번역서.

□ 관련 법령을 고려한 기본이념 검토

국내 실정법은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계를 가진다. 헌법은 모든 법령을 제정하는 근거로서 국가 실정법 체계에서 최고법의 지위를 지니며 하위법을 창설하는 규범이자 근거이다.

기본법은 당해 분야에서 지도법 및 기준법의 성격을 지니며, 국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 외에도 헌법을 보완하거나 헌법 규정을 개별법과 관련시키는 모습으로 구체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성격을 갖는다.

최상위 법인 헌법은 모든 법의 근원인 만큼 많은 법령들이 헌법에 근거하여 제정되는데, 예를 들어 제9차 개정헌법의 제34조 제6항에서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재해구호법」은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만든 법률로 이해할 수 있다.

「국토기본법」은 헌법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에 근거하고 있으며, 「환경정책기본법」은 헌법 제35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에 근거한다. 한편 2015년에 제정된 주거기본법의 경우 헌법에서 주거권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 제34조(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5조(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국가가 주택개발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생활에 노력할 의무)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³⁾

기본법이 헌법과 관계에서 헌법을 보완함과 아울러 헌법과 개별법 간을 연계하는 매개 법으로서의 위치를 고려한다면⁴⁾, 건축정책의 방향과 기본이념을 설정하는데 앞서 현행 헌법에서 건축·도시 분야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헌법적 가치와 정합성을 바탕으로 기본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건축정책의 이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9차 개정헌법에서의 건축·도시 관련 규정]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인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0조 ②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3)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5년 5월 29일자 기사, ‘주거기본법 제정안 국회 통과’)에서는 주거기본법의 헌법적 근거를 제17조, 제34, 제35조에 근거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하성규(1999, p.21) 연구에서는 주거권의 헌법적 근거를 헌법 제10조, 제16조, 제34조, 제35조, 제26조로 보고 있는바 연구자에 따라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음

4) 우기택(2016), p.39

[표 63] 건축관련 법령의 주요 가치와 건축기본법과의 연관성

구분	주요 키워드 및 목적	건축기본법 내용 검토
건축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정하고 건축정책의 수립 · 시행 등을 규정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공동의 노력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국민의 안전 · 건강 및 복지에 직접 관련된 생활공간의 조성 2.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조정하고 수용하며 경제활동의 토대가 되는 공간환경의 조성 3. 지역의 고유한 생활양식과 역사를 반영하고 미래세대에 계승될 문화공간의 창조 및 조성	
제7조(건축의 생활공간적 공공성 구현) 안전한 건축환경, 장애인·노약자 배려 제8조(건축의 사회적 공공성 확보) 국민 요구 및 다원적 문화 부응, 미래사회, 기술변화 대응 제9조(건축의 문화적 공공성 실현) 건축문화유산 보전, 문화·산업적 경쟁력 제고, 전문가 창의성		
대한민국헌법	- 인간다운 생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쾌적한 주거생활) - 국민 보호, 위험으로부터의 안전	- 생활공간적 공공성에 포함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 기후위기 대응 - 탄소중립·녹색성장 -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 환경 친화, 지속기능한 녹색건축물	- 기후위기, 탄소중립 등 지속가능성에 관한 내용 부재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 미관 개선 - 안전 확보 - 국토이용의 효율성 제고	- 미관, 국토이용 효율성에 관한 내용 부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 - 국민편의 증진 - 국민경제의 발전	- 문화적 공공성 실현에 문화적/산업적 경쟁력으로 표현 - 4차산업, 디지털 및 데이터, 기술적 관점에서의 스마트건축 등 내용 부재
경관법	-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 특성 - 국토환경과 지역환경 조성	- 경관(미관)에 대한 직접적 내용 부족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 한옥 등 건축자산 보전·활용 - 미래의 건축자산 조성 -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 국가의 경쟁력 강화	- 건축의 문화적 공공성 실현
건축물관리법	- 건축물의 안전 확보 - 편리·쾌적·미관·기능 등 사용가치 유지·향상 - 건축물의 생애 관리 -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	- 기본이념, 생활공간적 공공성에 포함 - 건축물 생애 관리에 대한 내용 부재

출처:법령정보센터에서 각 법령 내용을 토대로 연구진 작성

□ 건축정책 기본이념 및 방향에 ‘건축의 지속가능성’ 반영

1987년 제9차 개정헌법 이후 지금까지의 겪어온 과도기적 상황은 정치·경제는 물론이고 건축·도시 분야 역시 많은 변화를 경험하였다. 1960년대 이후 본격적인 경제개발정책으로 고도성장을 이루하였으나 단기간에 이루어진 압축 성장으로 인해 수도권의 과밀화, 지역 간 불균형, 기반시설부족, 환경오염 등의 사회적 문제 또한 수면에 떠오르게 되었는데, 이러한 성장 속에서 국토개발에 관한 정책기조의 변화는 국가에서 주기적으로 수립·시행하고 있는 관련 계획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예로 1972년에 수립된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경제 성장, 국토개발, 공업단지 개발이 주 목표였고, 제2차(1981) 계획에서는 지역균형개발, 거점형 개발, 중소공업단지 조성, 주택 공급, 인프라 확충 등 여전히 국토개발기반이 주요 과제였다. 제3차(1991) 계획 수립시기에는 국토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신도시개발, 신산업지대 조성, 주택인프라 확충 등 개발 지향적 사고가 주를 이루었고, 난개발의 방치로 국토 전략을 제시하는데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제4차(2000) 계획에서는 개발 자체보다는 국토의 보전, 지속 가능한 개발 등 보전 및 관리의 성격이 두드러지는데, 즉 2000년 이전 정책이 양적 위주의 개발 일변도 정책 이었다면 2000년대 이후에는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공생’, ‘녹색성장’, ‘보전’이 건축과 도시, 환경 등 전 분야에 걸쳐 주요 화두가 되었다. 또한 2000년 UN에서 채택된 의제가 새천년개발목표(MDGs)⁵⁾였으나,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새로운 의제로 채택된 것은 이러한 사회적 변화가 반영된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건축관련 정책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건축기본법 지향하고 있는 ‘건축의 공공성 구현’과 ‘건축문화 진흥’ 이외에도 ‘지속 가능성’에 대한 가치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다양한 지속적 가치 가운데서도 건축이 지니는 본래적 기능과 성격에 대한 지속성, 그리고 오늘날 안전 불감증에 따른 다양한 사고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지속성, 향후 기술 발전과 사회적 변화에 순응하고 대응하기 위한 지속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 (기후변화 및 이상기후 등 재난으로부터의 지속가능성)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건축 분야의 지속가능성 확보

5) 밀레니엄 개발 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는 UN에서 2000년에 채택된 의제로, 2015년까지 세계의 빈곤을 반으로 줄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건축생산부터 유지관리 건축생애 과정에서의 지속가능성) 국민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건축물 생애 관리를 통한 안전 및 사용가치 향상
- (미래기술변화와 산업구조로부터의 지속가능성) 디지털 및 데이터 등 정보기술 및 건축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건축 구현 및 건축산업경쟁력 강화

2) 건축정책의 범위 및 대상

건축기본법에서는 건축정책의 대상을 ‘건축물’과 ‘공간환경’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본법 시행 초기 정책대상에 대한 논쟁이 빈번히 발생하였는데, 제1차 건축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이러한 물리적 공간을 중심으로 건축문화, 녹색건축도시, SOC 국가기반시설, 건축도시산업, 경관, 주택 등이 주로 계획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건축정책의 대상을 물리적 요소에만 국한하지 않고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건축 생산 프로세스와 건축물 전생애주기를 고려하여 건축 분야 기획,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해체, 행정 등 각 단계 과정별 기본법에 포함 가능한 요소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나아가 당초 건축정책기본계획이 국토부에 한정된 계획이 아닌 범부처 계획이었던 취지를 고려하여 관계부처 협동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에 해당 근거를 규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또한 필요하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위상, 건축 분야 최상위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위상을 고려할 때 범부처 성격으로 계획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계획 실행력으로 인해 차수가 거듭될수록 국토부에 한정되어 계획 수립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노르웨이 건축정책의 참여 부처]

노르웨이 건축정책은 타 유럽국가보다도 정책수립 과정에 가장 많은 중앙부처가 참여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 행정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지방정부·지역개발부, 문화종교부, 교육부, 농림식품부, 환경부, 산업통상부, 석유에너지부, 교통·커뮤니케이션부, 외교부 등 13개 중앙부처가 참여

- ▶ 여성가족부 : 장애인을 위한 정책 코디네이팅을 담당하는 부처로 유니버설 디자인 및 시설 접근성 제고에 대한 건축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 ▶ 행정부 : 정부소유의 행정시설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는 부처로 공공 건설사업 및 부동산 관리기관인 “Statsbygg”를 중심으로 공공건축물을 대한 자문, 빌딩 커미셔너, 시설관리에 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 국방부 : 노르웨이에서 가장 큰 면적의 공공토지를 소유·관리하고 있는 부처로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방호시설에 대해 문화유산으로써 건축자산을 보존·활용하는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국방시설관리위원회(Norwegian Defence Estates, FB)는 국방부가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 건물, 인프라 전반에 대한 전담하는 전문조직으로 국방시설에 대한 투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 보건복지부 : 최근 급격히 고령화되고 있는 사회적 변화에 맞추어 노인시설, 사회복지시설의 보급·관리에 대한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 ▶ 지방정부·지역개발부 : 주택 및 건설정책을 주관하고, 관련 지원에 대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처로 건축설계, 친환경 자재 이용, 에너지 효율성, 커뮤니티 디자인 등에 대한 관련 법·제도 정비를 담당하고 있다.
- ▶ 문화·종교부 : 문화 및 체육시설, 종교시설에 대한 인허가 및 관리를 주관하는 부처로 노르웨이 건축센터인 Norsk Form과 국가 예술건축디자인박물관(National Museum of Art, Architecture and Design)을 관리하고 있다.
- ▶ 교육부 : 산하 고등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를 맡고 있으며, 건축과 관련된 오슬로 건축디자인 학교, 노르웨이 과학기술대학교, 베르겐 건축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을 하고 있다.
- ▶ 농림식품부 : 농촌시설에 대한 신축, 지형에 대한 공간분석, 유휴농촌시설에 대한 활용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 환경부 : 정부의 환경정책 중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계획 수립, 문화유산 사이트의 보존 및 이용, 수질 좋은 해수 보존 및 톡신 억제, 안정적 기후 및 청량한 산소 확보, 생태계 다양성 보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 산업통상부 : 국제전시 사무국 BIE멤버십을 관리하는 부처로 노르웨이 건축산업 위상을 제고하는 정책과 관련이 있다. 산하에 지난 10년간 노르웨이 건축의 국제적 프로파일링 제고를 위해 기여한 노르웨이 디자인위원회(Norwegian Design Council)를 두고 있다.
- ▶ 석유에너지부 : 에너지 정책에 대한 코디네이팅을 담당하는 부처로 관련 에너지정책을 추진하는 공기업 에노바(Enova)를 담당하고 있다.
- ▶ 교통·커뮤니케이션부 : 도로, 철도 등 네트워크 분야의 중장기적 계획 수립 및 평가, 이와 관련된 법제도 정비 및 예산관리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 외교부 : 국제적인 문화협력사업과 노르웨이 건축의 국제화, 관광산업의 촉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노르웨이 건축을 전시, 발표, 세미나 등에 대한 홍보 및 마케팅 수단으로 인터넷 포털 'norgesportalen'을 관리하고 있다.

출처: 김영현 외(2015), pp.61~62. (원문: Norwegian Architectural Policy: architecture now.)

3. 건축정책 실효성 향상을 위한 개선방향

1) 건축 관련 법령 및 계획간의 관계 정립

□ 건축기본법과 개별법간 관계 정립

건축분야 관련 신규 법령이 증가할수록 건축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건축기본법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건축기본법과 개별법간 관계 정립을 위해서는 법 체계를 고려하였을 때 상위법 우선의 원칙, 또는 특별법, 신법 우선의 원칙이 고려될 수 있겠으나 기본법의 경우 법 체계적으로는 상위법으로 보지 않으며 또한 특별법, 신법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법이 지니는 가치와 중요성으로 인해 기본법과 개별법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기본법의 우월성(계층성) 긍정’과 ‘기본법의 우월성 부정’, 기본법의 한정적 우월성 인정‘에 대한 견해가 존재한다.⁶⁾

우기택(2016, p.52) 연구에서는 건축기본법을 포함하여 12개 기본법을 기본법의 우월적 성격에 해당하는 법률로 보고 있는데, 이는 “기본법이 계획법으로서 다른 법률에 대한 우월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그 기본법의 내용을 헌법을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이해하는 구성적 해석을 하는 것으로서, 기본법을 상급의 계획법으로서 각종 정책과 법률의 체계화 및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⁷⁾

건축기본법 제정 이후 ‘건축자산’, ‘녹색건축’, ‘건축서비스산업’, ‘건축물관리’ 등 정책 대상이 세분화되었고, 이러한 내용들이 개별 법령들로 분법화 되었다. 형식적 효력이 같

6) 기본법과 개별법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기택(2016, pp.51~53) 연구를 참고하여 작성

7) 반대로 기본법의 우월성을 부정하는 견해는 “기본법이라는 입법형식이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새로 운 법률을 제정하는 데 있어 당연히 기본법의 입법목적이나 기본이념을 존중하여 하나, 그러나 그러한 방침과 모순·저촉하는 법률이 제정된다면 일반적으로 타당하지는 않으나 법리적으로는 기본법은 헌법이 아니라 동격의 법률이므로 신법우선의 원리로 해결해야 하는 입장”과 기본법을 한정적으로 우월성을 인정하는 경우로써 “기본법과 개별법은 같은 형식이며, 기본법이 우선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개별법에서 의식적으로 기본법과 다른 규정을 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개별법의 규정을 기본법의 이념·원칙·방침 등과 조화적으로 해석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며, 또한 법 규정의 해석으로는 조정할 수 없는 모순이 있는 경우에도 신법우선의 원칙 및 특별법우선의 원칙을 바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개별법 규정의 적용을 자제하고 신속하게 해당 규정을 개정하는 등 그 모순을 해소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견해”로 정리하고 있다.

은 두 개 이상의 법령 내용이 모순되는 경우 시기적으로 나중에 제정된 법령이 우선한다는 “후법우선”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지만, 우기택(2016) 연구에서와 같이 건축기본법의 경우 개별법보다 우월성을 인정하는 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건축 관련 신규 법령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후법우선의 원리를 적용하기보다 관계 법률의 제·개정시 건축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존중하고 기본법 규정내용을 구체화하는데 충실해야 한다.



[그림 20] 건축 관계 법령 제정 연혁

출처: 법령정보센터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 건축정책기본계획과 관련 계획 간의 관계 정립

건축정책기본계획에서 선언적 내용에 그쳤던 다양한 시책들이 개별법에 근거하여 별도 계획으로 수립되면서 계획 내용이 구체적인 정책과제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리고 정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직들이 법령에 규정됨에 따라 공공건축지원센터와 같이 새로운 기구들이 신설되었고, 건축 안전, 행정, 문화 등 다양한 정책들이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었다.(아래 표) 따라서 건축문화, 행정, 안전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한 건축정책기본계획은 자연스럽게 건축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의 성격을 띠게 되었고, 구체화된 실행계획은 부문별 관련계획에 반영되는 형태로 전개되었다.

건축기본법 제정 이후 건축정책의 하위 분야로 볼 수 있는 대상(녹색건축, 건축자산, 건

축산업 등)들이 신규 법령으로 제정되었는데, 그에 따른 법정 계획이 증가와 각 계획 간의 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건축기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보다는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로 개정하고 계획 간의 관계를 분명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

[표 64] 건축 관련 법 제·개정에 따른 계획 수립 현황

연도	법령	계획 명
2007	건축기본법 제정 (2007.12.21. 제정, 2008.6.22. 시행)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2010~2014)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2016~2020)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2021~2025)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정 (2012.2.22. 제정, 2013.2.23. 시행)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014~2018)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020~2024)
	공사중단 장기방지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13. 5. 22 제정, 2014. 5. 33. 시행)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2016)
2013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 (2013.6.4. 제정, 2014.6.5. 시행)	제1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019~2023)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행계획
	경관법 전부개정 (2013.8.6. 전부개정, 2014.2.7. 시행)	제1차 경관정책 기본계획(2014~2019) 제1차 경관정책 기본계획(2020~2024)
2014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2014.6.3. 제정, 2014.6.4. 시행)	제1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2016~2020) 제2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2021~2025)
	건축물관리법 (2019.4.30. 제정, 2020.5.1. 시행)	건축물 관리계획 작성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16호

출처: 국토교통부(2021),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 p.7. 내용을 토대로 재작성

□ 건축정책기본계획 및 지역건축기본계획 간 관계 정립

건축정책기본계획이 정부 차원에서의 건축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계획이라면, 지자체(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에서는 지역의 현황 및 사회·경제·문화적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을 위해 지역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건축기본법 제12조). 그러나 국가 계획과 지역계획의 구성과 내용의 차이가 불분명함에 따라 지자체 계획의 대안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계획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하였을 때 타 법제상의 계획과 달리 건축기본계획의 경우 국가, 광역시·도, 시·군 모두 ‘기본계획’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⁸⁾

8) 건축기본계획의 수립 주체에 따라 구분하면 ‘국토교통부장관’, ‘광역시·도지사’, ‘기초지자체장’으로 구분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계획의 명칭은 ‘건축정책기본계획’, ‘광역건축기본계획’, ‘기초건축기본계획’으로 구분된다. 즉 계획 시행을 위한 공간적 범위나 적용 대상과 상관없이 전부 ‘기본계획’의 성격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한옥 등 건축자산법」에서의 법정계획의 경우 중앙부처에서 수립하는 계획은 ‘건축자산 진흥 기본

건축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계획 간 차별화 및 역할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계획 수립 주체에 따른 계획의 성격, 명칭, 계획간 관계 및 역할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건축기본계획이 실행력에 기반된 계획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지만, 각 계획별 내용적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기본계획 일변도의 성격을 ‘종합계획’, ‘기본계획’, ‘실행계획’ 등의 형태로 계획 위상에 따른 명칭 및 성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표 65] 건축기본계획 수립 주체에 따른 정책 대상의 구분

계획 수립권자	정책대상
중앙부처	(정책 성격) 국가 계획에서 제시한 건축 기준에 대해 지역특성 및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에 적합한 구체적인 설계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과제) (정책 대상) 법, 지침 및 기준, 행정프로세스 개선, 기술개발, 산업육성지원 등 건축분야의 종합적인 정책 및 전략계획적 측면에 초점
지자체	(정책 성격) 국가 정책방향에 부합하고, 지역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 할 수 있는 사업 (정책 대상) 지역 공간에 대한 현황 및 문제진단, 실질적으로 공간의 질적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정책사업 및 실행계획적 측면에 초점

출처: 김영현 외(2015), pp.160-161.

□ 국가-지역건축기본계획의 정책대상과 주요내용

-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의 대상과 주요내용

국가 계획은 국내외 메가트렌드 분석 및 정책여건변화를 진단하고, 건축정책 추진을 위한 법 제·개정, 지침 및 기준, 행정프로세스 개선, 기술개발 및 적용, 산업육성·지원 등 국가에서 추진해야 할 건축정책의 종합적인 중장기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계획의 목적 및 성격에 “건축관련 법령 및 건축기본계획의 상위계획으로써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임을 분명히 드러낼 필요가 있다.

- 광역건축기본계획의 대상과 주요내용

지역의 건축 및 공간환경에 대한 현황분석과 문제진단을 토대로, 실질적으로 공간의 질적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정책 및 관련 사업 등 지역 건축관련 계획의 방향을 제시하여야 하며, 광역시에서 수립하는 계획은 구·군에서 실행 가능하도록 기초건축기본계획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더불어 계획의 목적 및 성격에 “지역 도시건축 현안문제를 진

계획’, 지역에서 수립하는 계획은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단하고, 건축을 통해 해소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전략계획”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 기초건축기본계획의 대상과 주요내용

광역건축기본계획 내용을 토대로 지역의 인구특성 및 수요에 적합한 공공건축 복합화 및 리모델링 등 거점화 계획, 지역 장소성 및 특화거리, 경관개선 사업 등 공간환경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야 하며, 계획의 목적 및 성격에 “지역의 통합적 경관 및 지역 커뮤니티 거점 조성을 위해 실행할 수 있는 공공건축 및 공간환경 개선사업을 제시하는 실행계획”임을 명시하여야 한다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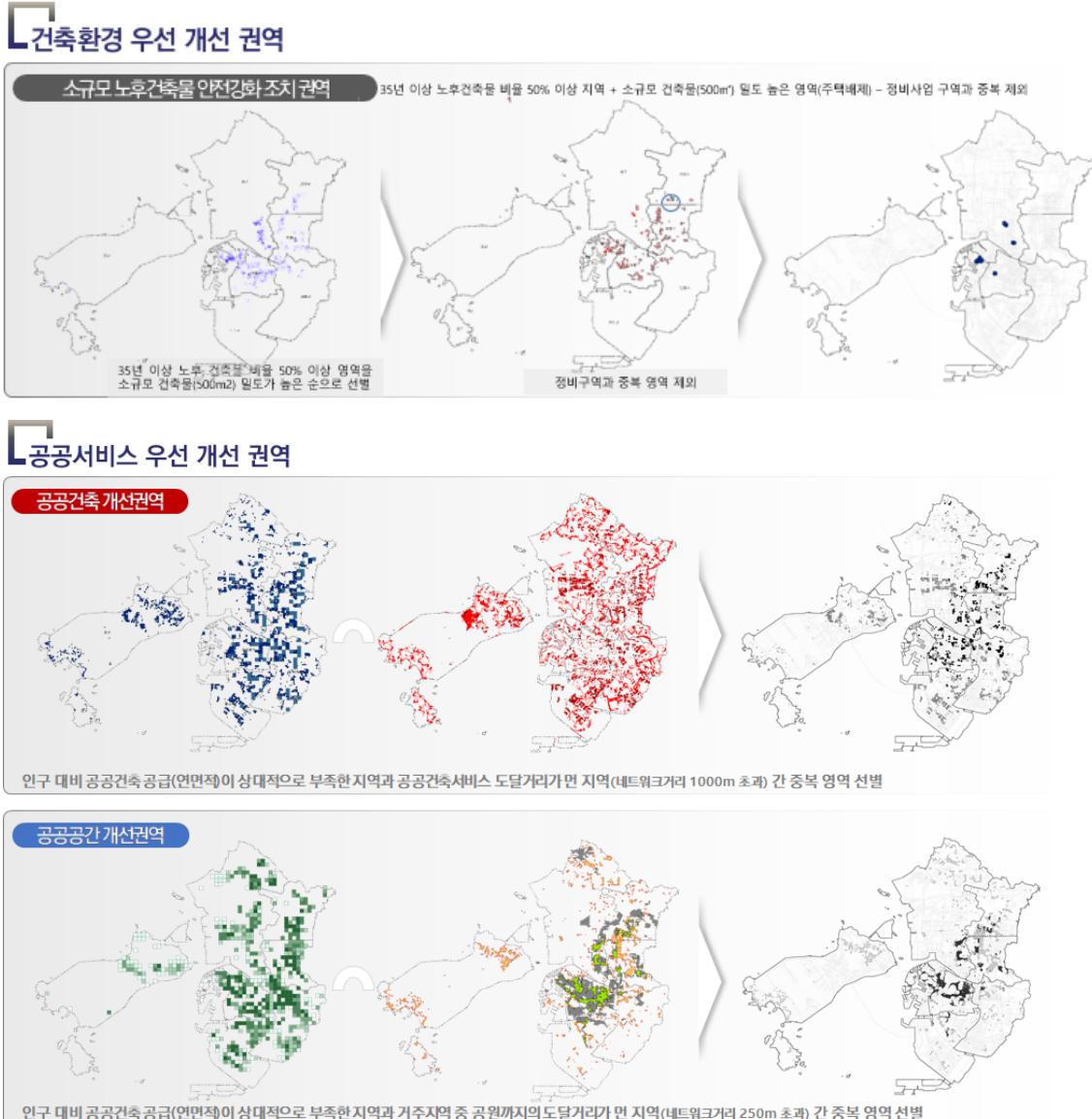
[그림 21] 광역건축기본계획 예시(인천광역시)

출처: 2026 인천광역시 건축기본계획 공청회 자료.p.67.

건축정책기본계획의 경우 타 계획(국토종합계획(20년), 국가에너지 기본계획(20년), 국가환경종합계획(10년)) 대비 수립 주기가 짧은 것이 특징인데, 빈번한 계획 수립이 비록

9)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민간전문가 및 공간환경전략계획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공간환경전략계획에서 광역건축기본계획의 관계 및 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사회·경제적 변화를 잘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정책의 지속성, 행정적 부담에 대한 문제가 염려되고 있다. 이에 계획 수립주기에 대한 조정 및 검토가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다만 세부 시책을 제시하는 지역계획의 경우 실행계획의 성격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현행 5년 주기는 적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22] 인천광역시 제2차 건축기본계획(안) 세부단위과제 구성을 위한 공간환경 분석 예시

출처: 2026 인천광역시 건축기본계획 공청회 자료 pp.68-71.

[표 66] 중앙부처의 기본계획 수립 체계

계획구분	근거법령	기본계획 수립주기	(집행) 추진계획	시행 계획	수립주체	관련 위원회	지역 계획
저탄소녹색성장 (국가전략과) 5개년계획	저탄소녹색 성장 기본법	(09~50년) 5년	중앙추진 계획(5년)	매년	관계부처 합동	-	●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	(20년단위) 5년	-	5년	산업통상 자원부	국가에너지 정책전문위원회	●
국가 환경종합계획	환경정책기본법	10년	환경보전중 기종합계획 (5년)	매년	환경부	환경보전자문 위원회	●
국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양성평등 기본법	5년	-	매년	여성 가족부	양성평등실무 위원회	●
국토종합계획	국토기본법	(20년단위) 5년(검토)	-	5년	국토 교통부	국토정책분과 위원회	●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건설기술 진흥법	5년	-	5년	국토 교통부	-	-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	건설산업 기본법	5년	-	매년	국토 교통부	-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기본계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을 위한 특별법	5년	-	매년	관계부처 합동	-	●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5년	-	매년	보건복지 가족부	-	●

출처: 김영현 외(2015),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성과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p.145~146.

2) 데이터기반의 정책 추진 체계 마련

1990년대 중반 이후 전자정부 구현정책이 본격 추진된 이후 2000년대에는 ‘정보화’가 하나의 정책 패러다임으로 등장하였다. 다양한 채널 등장과 정보의 생산, 유동, 보유량의 증가로 디지털 데이터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¹⁰⁾, 2010년대 들어서는 이러한 ‘정보화’의 패러다임이 ‘데이터’로 바뀌었으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정책연구가 본격 시작되었다.

국내 건축정책은 건축기본법 개정 이후 체계화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그동안의 건축분야의 정책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선제적 대응보다는 건축·공간환경의 물리적 환경 조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저출산 및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재해 증대와 각종 안전사고, 질병 확산, 스마트 및 첨단기술 발전 등 사회·경제·환경·기술적 여건변화와 미래사회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건축분야에서의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었으며, 이에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의 중요성이 증가하였다.

현재 건축분야와 관련된 플랫폼은 세움터, 생애이력, 건물에너지, 민간개방, 한국건축규정, 건축HUB, 건축자재 플랫폼 등 7개 정보체계가 구축·운영 중이다. 이러한 플랫폼은 기존의 의견기반 정책(Opinion-Based Policy)에서 증거기반 정책수립(EBP : Evidence-Based Policy-making)으로 변화하였음을 시사하고, 여기에서 발생한 다양한 정보는 환경, 재난방재, 주거복지, 도시계획, 에너지 등 도시환경과 직결되고 국민 일상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정보의 생산과 활용에 대한 중요성은 국가공간정책 기본계획에서도 가늠할 수 있는데, 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10-2015)에서는 정보의 개방·연계·융합·활용이 주요 목표 중 하나로 등장하였고, 제5차 계획(2013-2017)에서는 ‘융복합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가 핵심 목표로 부상하였으며, 제6차 계획(2018-2022)은 ‘공간정보 융복합 르네상스로 살기좋고 풍요로운 스마트코리아 실현’으로 각 분야 정보간의 융복합 및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강조하고 있다.

각각의 정보체계에서 다양한 정보들이 생산·관리되고 있지만 이러한 정보들이 개별적으로 운영·관리되고 있어 융복합 정보의 생산이나 새로운 시장 및 비즈니스 창출에의 기

10) '07년부터 전세계적으로 생성된 디지털 정보량이 사용 가능한 저장공간을 초과하기 시작하여 '11년 전세계 데이터에 생성될 디지털 정보량이 1.8ZB에 달하는 제타바이트 시대로 진입하였다. 디지털 정보량의 기하급수적인 증가에 따라 대규모 데이터가 중대 이슈로 부각되며 빅데이터 (big data)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복경수 외 2014)

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건축 분야 역시 신산업 창출 및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을 위해 정보 활용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특히 정보의 수집·가공·유통·활용이라는 데이터 가치사슬 측면에서 고품질 정보생산을 위한 법적 근거가 정비될 필요가 있다.

세부적으로는 현재 운영 또는 구축 중인 7개 정보체계를 통합적으로 아우르는 플랫폼을 위한 법·제도 정비와 데이터의 수집·가공 및 활용 확대를 위해 '데이터 표준화', '개인정보보호 및 저작권'과 관련하여 기본법에 반영될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건축 빅데이터 체계를 구축하고, 근거기반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체계 지원 등 법정부적 활용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또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한옥 등 건축자산진흥법」,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건축물관리법」 등 개별법에 의해 생성·관리되는 데이터에 대한 연계 및 통합관리가 고려되어야 한다. 더불어 건축생산, 유지관리 과정에서 생산되는 건축정보의 공개 및 개방 관련 범위, 저작권 등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신규 통계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데이터 발굴이 요구된다.

타 기본법 사례(국토기본법)

제25조(국토 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에 관한 계획 또는 정책의 수립,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공간정보의 제작, 연차보고서의 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미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교통, 환경, 토지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6. 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국토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제1항의 국토 조사 사항 중 일부를 직접 조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4. 7.>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국토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조사 등을 실시할 때 국토 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4. 7.>

⑤ 제1항에 따른 국토 조사의 종류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4. 7.>

제32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국토계획의 수립 등을 위한 국토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국토 조사의 통지·공고, 토지 등의 출입, 장애물 등의 변경·제거, 토지 등의 일시 사용, 국토 조사로 인한 손실 보상, 표지의 설치·관리·보호에 관하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제6항·제7항,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01조 및 제102조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4. 6. 3., 2020. 2. 18.>

타 기본법 사례(환경정책기본법)

제24조(환경정보의 보급 등) ① 환경부장관은 모든 국민에게 환경보전에 관한 지식·정보를 보급하고, 국민이 환경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보급 등을 위하여 환경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환경정보망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환경정보망을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환경현황 조사를 의뢰하거나 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⑤ 제2항에 따른 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 제4항에 따른 환경현황 조사 의뢰 및 환경정보망 구축·운영의 위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타 기본법 사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제36조(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① 정부는 국가 및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흡수량, 배출·흡수 계수(係數) 등 온실가스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개발·분석·검증·작성하고 관리하는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환경부에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이하 “종합정보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에너지·산업공정·농업·폐기물·해양수산·산림 등 부문별 소관 분야의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 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별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등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및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개발·분석·검증·작성·관리하거나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협정의 기준을 최대한 준수하여 투명성·정확성·완전성·일관성 및 비교가능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국가 및 부문별·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잠정치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각종 정보 및 통계를 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 종합정보센터 운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제출의무대상 정보·통계의 범위, 정보 및 통계의 개발·분석·검증·작성·관리, 각종 정보·통계의 공개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참여 확대 유도

국가 정책에서 국민참여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과거 정책에 의 참여는 선거, 민원 형태의 소극적 참여였다면 현재는 정책을 직접 제안하거나 때로는 심사에도 관여하는 등 참여 방법이 다각화되었다. 정부 차원에서도 국민참여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행정안전부는 ‘2021년 국민 공무원 제안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여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에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도입함으로써 행정 업무의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한편 그동안의 건축정책은 정책의 발굴·수립·시행에 있어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일반인의 참여가 미흡했으며, 관련 근거 또한 부재하였다. 또한 정책의 토대가 되는 건축정책기본계획과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 과정 역시 설문조사나 공청회 외 일반인의 참여 수단이 부족했고, 계획 수립 후 정책 운영에 대한 국민 모니터링 실행체계 역시 부족했다. 그러나 「건축기본법」의 목적이 건축문화의 진흥이며,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주체가 국민임을 고려한다면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 참여에 대한 부족한 소통창구의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정책에서의 국민 참여는 국민 수요에 부응하고, 체감도가 높은 정책 발굴에 도움이 되

며,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국민 참여 방안은 두 가지 성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해당 법령에 국민의 권리, 국가 및 지역의 주요 정책 수립 시 입안과정부터 시행 및 개정사항 등에 국민 참여를 규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문화행사, 교육, 홍보채널, 참여공모 등 실제로 국민이 참여 가능한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것이다. 현행 건축기본법이 국민 참여를 소극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범위와 방법에 대한 개선과 정책이 실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

4) 건축정책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체계 마련

전술하였듯이 증거 기반 정책수립이 중요해지면서, 미래 예측을 위한 데이터 수집 외에도, 기존의 정책이 어떻게 수행되어 왔는지 내용을 점검하고, 사회적 현황과 정책의 인과성 또한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제 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이 수립됨과 동시에,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국토조사를 기반으로 국토종합계획 및 정책 집행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근거법인 「국토기본법」을 2020년 9월에 개정하였다.

국토모니터링의 대상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이터 중 하나가 바로 건축정보이다. 건축물은 기초적인 국민생활공간이고 모든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는 공간이다. 또한, 국민 개인의 자산이고, 집합적으로는 도시 및 국가의 대표적인 자산이다. 따라서 건축도시 공간의 정보는 도시환경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국민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정보로서 정책 분야별 여건변화를 모니터링하여 즉각적이고 예견적인 정책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대응 방향의 첫 번째로 건축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이행점검 및 성과관리를 위한 평가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두 번째로 건축현안과 이슈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통계 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건축정책의 결과에 해당하는 지역별 건축문화지수 등 3가지 측면에서 건축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이 고려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건축정보를 활용한 신규 통계 기획 및 개발 관련 조항 신설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책 모니터링 내실화를 위해 인구·에너지·산업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된 통계 기획 및 개발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건축현황 및 여건변화에 관한 정량적 모니터링을 추진하기 위한 지표를 도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도출된 지표와 함께 도시경쟁력, 도시브랜드, 도시이미지 지수와 같이 지역의 건축문화 및 행정, 안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건축정책지표 개발을 검토하여야 하며, 종합적인 건축정책지표를 바탕으로 우수 지자체 선정하는 등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건축정책 성과보고는 2013년에 처음 시행되어 현재까지 총 4회의 성과보고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건축기본법 제정 및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이후 신규 법령 간의 불분명한 관계로 통합적인 성과점검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행 건축정책 성과보고 시기 조정을 통한 계획의 탄력적 관리 및 후행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성과점검 방법 개선이 필요하다. 개선 방향으로는 매 2년마다 시행하는 건축정책 국회보고를 건축정책기본계획 시행기간의 중간과 종료 후 시행하고, 성과 결과를 수정계획 또는 신규계획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 평가 관련 타법

「국토기본법」 제19조의2(국토계획평가의 대상 및 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장기적·지침적 성격의 국토계획이 국토관리의 기본 이념에 따라 수립되었는지를 평가(이하 “국토계획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국토기본법」 제19조의3(국토계획평가의 절차)

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국토계획평가 대상이 되는 국토계획의 수립권자는 해당 국토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④ 생략

※ 모니터링 관련 타법

「국토기본법」 제25조의2(국토모니터링의 추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 변화상과 국토계획 및 국토정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주기적 또는 수시로 점검(이하 “국토모니터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토계획의 수립과 국토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국토모니터링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④~⑤ 생략

※ 사례

“국토모니터링”

(현행) 국토교통부는 「국토기본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토조사를 실시

(지표) 「2020 국토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총 6개 부문(인구와 사회, 토지와 주택, 경제와 일자리, 생활과 복지, 국토인프라, 환경과 안전) 내 총 72개 주요 국토지표에 대해 조사

(쟁점) 그 중 노후건물, 노후산업단지, 공공체육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공연문화시설, 도서관, 종합 사회복지관, 노인여가복지시설, 경로당, 보건기관, 의원, 병원, 응급의료시설, 양국, 주차장, 경찰서, 소방서, 지진옥외대피소, 신재생에너지 등 건축관련 지표 상당

▶ [그림] 2020 국토모니터링 보고서 표지

다음으로 현재 계획의 실행-모니터링-성과관리의 환류체계가 부족하다. 서울시의 경우 성과관리를 위한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점검하고, 경기도의 경우 지역발전연구원인 경기연구원에서 별도의 연구과제를 통해 계획 이행을 점검하고 있다. 따라서 계획의 수립과 진단, 환류까지 일련의 과정이 선순환되어 계획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록 전담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 즉, 건축정책 모니터링 및 성과점검 업무 성격을 명확히 하고, ‘행정업무 부여를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 또는 ‘업무의 위탁 또는 위임’ 등 지정 방식을 고려하여 법 개정을 준비해야 한다.

[표 67] 권한 및 위임 관련 개정(안) 예시

현행	현행	개정(안)
건축기본법	〈신설〉	<p>제7장 보칙</p> <p>제27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¹¹⁾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정책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정책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p>
건축기본법	〈신설〉 시행령	<p>제26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5조에 따라 실시하는 건축정책 모니터링 및 국회보고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축기본조사에 관한 사항 3. 법 제24조에 따른 설계공모 시행에 관한 사항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정책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p>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p>

5) 정책 거버넌스 및 위원회 역할 개선

정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갈등은 당연히 발생하기 마련이다. 때문에 갈등을 완화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소통의 필요성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 속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고, 합의된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다양한 소통채널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 거버넌스는 공공-민간 거버넌스, 중앙-지방정부간 거버넌스, 또는 민간이 참여 가능한 정책플랫폼(민주주의 서울 플랫폼, 부산 OK1번가) 등 이해관계자나 소통방법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표출된다.

11) 권한의 “위임”이란 원(原) 권한자인 행정기관의 권한의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그의 지휘 계통에 속하는 하급기관에 맡기는 것이며, 권한의 “위탁”이란 원 권한자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권한을 맡기는 것

한편 건축정책과 관련하여 그동안 일방향적인 소통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정책 발굴 과정에서의 민간 참여 또한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주도로 전환되었고, 정책의 실질적인 대상인 민간 또는 일반 국민이라는 점에서 정책 거버넌스와 건축 관련 위원회에 대한 역할과 의미, 그리고 국민 참여 방안에 대한 새로운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시점이다.

먼저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정기적인 포럼, 세미나, 토론회, 워크숍 등 상호 교류가 가능한 모델을 통해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심의나 자문 역할을 하는 개별 위원회에 대한 정비 또한 필요하다. 현재 개별 법령 및 조례에서 위원회의 중복 설립을 막기 위해 기존 위원회로 하여금 기능을 대신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개별 위원회의 역할과 구성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정책위원회의 역할을 건축위원회가 위임받아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원회에 따라 심의 안건과 내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기존 위원회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위원회 전문성에 대한 문제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규 조직의 경우 지자체 여건에 설치가 어려운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통합 운영에 대한 새로운 기준 또한 검토되어야 한다.

6) 건축기금 및 재정 근거 검토 및 개선방향 제안

국가재정법에서는 특별회계, 기금 등에 관해 자금을 보유할 수 있게 법령으로 규정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의 설치는 「국가재정법」 별표 1(특별회계), 2(기금)에서 정하는 법률에 의해서만 설치가 허용되고 있다. 이러한 기금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등 예산의 예외적인 제도로서 비록 방만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감사원·언론 등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탄력적인 계획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주택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농어촌 지원 확대, 문화·예술 진흥 등 각 분야의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점도 있다.¹²⁾ 기금의 설치·운용은 타 기본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환경정책기본법 제45조에서는 환경개선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관리·운영을 위해 환경개선톈별회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탄소중립기본법 제69조에서는 기후대응기금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그

12) 김상규(2004), 기금제도 정비로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나라경제 2004년 10월호, pp.61-63.

리고 이러한 특별회계, 기금 외에도 자금을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국가재정법 제95조), 고용정책기본법은 법 제35조(실업대책사업의 자금 조성 등)에서 특수법인으로 하여금 자금을 조성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건축기본법의 경우 계획의 수립 및 관련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재원 운용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어 효율적인 사업 또는 시책이 소극적으로 운영되는 한계가 있다. 이에 건축기본법의 이념과 목적, 기금이 요구되는 사업의 범위와 재원 규모를 예측하여 특별 회계 및 기금을 설치·운용에 기준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금과 특별회계의 설치는 「국가 재정법」 별표 1(특별회계), 2(기금)에서 정하는 법률에 의해서만 그 설치가 허용된 점을 고려하여, 기금의 설치, 조성, 용도, 운용·관리, 회계기관,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등 기금 마련 및 운용·관리를 위한 각 조 개정 범위 논의가 세부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표 68] 법률에 명시된 기금 및 특별회계별 설치목적과 근거

유형	기금명	설치근거법	설치목적
특별 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환경정책기본법	제45조(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정부는 환경개선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그 관리·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국가균형발전특별 회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자금	실업대책사업의 자금 조성	고용정책기본법	35조(실업대책사업의 자금 조성 등) ① 공단은 제34조제2항에 따라 실업대책사업을 위탁받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해당 사업에 드는 자금을 조성한다.
	기후대응기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① 정부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과학기술진흥기금)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의 진흥과 과학기술문화의 창달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지역문화진흥기금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출처: 법령정보센터 내용을 토대로 정리

4. 건축기본법 개정안 제안

1) 제1장(총칙)

□ 건축의 지속가능 가치를 고려한 건축정책 기본이념 개정(안 제2조)

2000년 UN에서 채택된 의제가 새천년개발목표(MDGs)였으나, 2015년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가 새로운 의제로 채택되는 등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건축 관련 정책 수요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행법의 기본이념인 '건축의 공공성 구현' 외에도 여건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공간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건축의 '지속가능성'을 기본이념에 제시하고자 한다.

□ 국민의 권리와 의무(안 제5조)

국민의 의무와 관련한 유사 규정 사례로는 「환경정책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이 있으나 대부분의 기본법에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스포츠기본법」에서와 같이 일부 법령에서는 국민의 의무보다는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건축 및 공간환경의 조성을 위해 시민의 노력도 필요하겠으나 건축정책은 기본적으로 공공에서 주도하는 시책이고, 이러한 시책을 통해 다양한 수혜가 국민에게 돌아간다. 또한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한 바 기본법과 헌법과의 관련성을 고려한다면 '국민의 의무' 보다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행법에서는 국민의 의무에 건축주와 발주자, 전문가에 대한 의무를 규정(제5조 제1항제2항)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내용들은 기본법보다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더 적합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은 삭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스포츠기본법]

제4조(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향유할 권리(이하 "스포츠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표 69] 건축기본법 제1장 총칙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공동의 노력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국민의 안전 · 건강 및 복지에 직접 관련된 생활 공간의 조성 2.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조정하고 수용하며 경제활동의 토대가 되는 공간환경의 조성 3. 지역의 고유한 생활양식과 역사를 반영하고 미래 세대에 계승될 문화공간의 창조 및 조성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공동의 노력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건축의 공공적 가치 및 <u>지속가능성을</u> 구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현행과 같음) 2. <u>기후위기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공간환경 조성 및 건축산업 및 기술 경쟁력 강화</u> 3. (현행과 같음)
제5조(국민의 의무) ①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축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 및 발주자는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의하여 설계자와 시공자 등을 선정하고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며, 소유자 및 관리자는 제2조에 따른 건축의 공공적 가치가 올바르게 구현되도록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건축 관련 전문가는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이에 근거하여 독립되고 공정한 입장에서 국민의 건축에 대한 이해를 돋고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u>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u> ② <u>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축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u> 현행 ②. ~ ③. (현행과 같음)

2) 제2장(건축정책의 기본방향) 개정 방향

□ 건축의 지속가능성 확보(안 제9조)

건축기본법 제정이유에 따르면 건축을 ‘공적공간’으로 해석하고 있고, 또한 건축을 개인의 사유재산을 넘어 미래세대에 계승되어야 하는 ‘공공성’을 지닌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음에 따라 건축정책의 기본방향도 ‘건축의 공공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현행 건축기본법의 건축정책의 기본방향을 ‘건축의 공공성’으로 천명하고, 세부적으로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 ‘건축의 생활공간적 공공성’, ‘건축의 사회적 공공성’, ‘건축의 문화적 공공성’ 3개 조항으로 그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그러나 전술하였듯이 UN에서 채택된 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포함하여 건축 및 도시공간환경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중요도와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2006년 제1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현재까지 4차에 걸쳐 해당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한편 UNEP의 결의로 설치된 세계환경개발위원회(WECD)는 1987년 4월,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고, 해당 보고서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¹³⁾.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건축기본법의 제정 이유 중 하나인 ‘미래세대로의 계승’과 ‘지속가능성’의 목표를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개정 건축기본법의 기본이념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지속가능성’을 건축정책 기본방향에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건축기본법 제정 이후 신규 제정된 건축 관련 법령에서 누락된 가치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현행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 규정된 건축의 공공성에 대해 개정안에서는 제7조에 통합하여 축소 규정하였고, 건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개정안 제8조에 신설하였다.

[표 70] 건축기본법 제2장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2장 건축정책의 기본방향	제2장 건축정책의 기본방향
제7조(건축의 생활공간적 공공성 구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건축물 및 공간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고 그 안전수준을 지속적으로	제7조(건축의 공공성 구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 노약자 · 임산부를 비롯한 모든 국민이 생활하기 편리하고 쾌적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이 조성될

13) 지속가능발전의 생성과 전개(지속가능발전포털, <http://ncsd.go.kr/>)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계획 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사용자의 건강과 장애인 · 노약자 · 임산부 등의 이용을 배려하여 조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건축의 사회적 공공성 확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다양한 요구와 다원적(多元的) 문화에 부응하고 미래사회의 문화적 요구변화와 기술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건축정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이 미래세대에 계승되는 사회 · 경제적 자산으로서 조성되고, 그 가치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조성하고 사용하는 과정 등에서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재이용과 재생을 촉진함으로써 자연과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제9조(건축의 문화적 공공성 실현) ①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조성하여 사용하는 전 과정에서 건축의 문화적 가치가 향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문화적 · 산업적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창의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이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풍토나 역사 또는 환경에 적합하게 조성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 유산을 보전하고, 새로운 건축물 및 공간환경이 기존의 공간환경과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조성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시행한 건축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정책성과를 평가하는 등 건축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다양한 요구와 다원적(多元的) 문화에 부응하고,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재이용과 재생을 촉진함으로써 자연과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 유산을 보전하고,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풍토나 역사 또는 환경에 적합하게 조성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건축의 지속기능성 확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 및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재난 및 재해에 대비하고, 탄소중립 구현을 위해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기획 및 설계단계부터 유지관리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건축기획 및 설계, 시공 등 생산과정부터 유지관리의 건축생애 전과정에서 안전수준을 관리하고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사용가치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 및 데이터 등 정보기술과 미래건축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스마트건축을 구현하고, 건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제3장(건축정책의 수립) 개정 방향

□ 건축정책과 건축기본계획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르면 ‘기본계획’은 근거 법령에 따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정책을 종합·조정 하여 수립하는 중장기적 계획,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수립하는 단기 계획이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규정할 때에는 수립권자, 수립사항, 수립시기·주기, 수립절차 등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¹⁴⁾ 현행법은 계획별 수립권자·시기·주기·절차 및 수립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입법 형식에는 충실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건축기본계획이 건축정책인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으나 현행법은 건축정책에 대해 별도로 정의하지 않으며, ‘제3장 건축정책의 수립’ 세부조항으로 ‘건축정책기본계획(제10조) 및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제12조)’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 건축정책의 기본 방향을 건축정책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지역 건축정책의 방향을 지역건축기본계획에서 정하고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즉 건축정책이 기본계획을 통해 그 방향이 결정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건축정책계획의 성격 구분 및 계획 간 관계 정립(안 제9조부터 제11조)

지역에서 수립하는 지역건축기본계획의 내용과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간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는 국가계획과 지역계획간 성격을 분명히 하지 않고, 광역시·도의 역할을 명확히 정의하지 못하는데서 기인한다. 광역시·도에서 수립하는 계획의 성격과 범위는 광역지자체의 행정 권한을 고려하여 구분할 수 있는데, 행정 기능을 고려했을 때 광역시와 특별시는 기존 ‘시’가 승격한 것으로서 단일의 대도시로 통합되어 있고, 승계 전 종전시의 사무와 재산을 승계하기 때문에 광역시청은 도청 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같은 광역지자체 일지라도 도(道)는 수십개의 시·군으로 이루어진 도시연합체로서 개별 시·군에 대한 건축정책의 직접적인 방향제시나 개별 사업을 제안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나, 광역시는 하나의 대도시로서 통합된 광역행정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광역시에서 수립하는 기본계획에서는 기초건축기본계획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건축기본법에서는 계획 수립 주체에 상관없이 모든 계획을 ‘기본계획’ 성격으로 규

14) 법제처(2021, p.84) 내용을 토대로 작성

정하고 있다. 그러나 계획의 실효성 측면을 고려한다면 계획 수립 주체에 따라 계획의 성격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계획 성격을 구분하는데 있어 실질적으로 명칭(종합계획, 기본계획, 실행계획 등)을 변경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나, 이를 명문화하기보다는 수립 주체에 따른 계획의 성격이 어떠한지를 규정하였다(안 제9조). 또한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계획 수립 주체에 따라 각 계획 간의 관계를 규정하였고(안 제10조), 건축정책기본계획이 건축과 관련된 제반 정책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간의 관계도 신설 제안하였다(안 제11조).

□ 건축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및 주요내용(안 제13조)

현행법에서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은 건축 관련 법령(녹색건축법, 한옥등건축자산법 등)이 제정되기 전에 규정된 것으로서 내용적 범위에서 타 계획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을 타 법의 내용과 관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안하였다(안 제13조).

[표 71] 건축기본법 제3장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3장 건축정책의 수립	제3장 건축정책의 수립
〈신설〉	<p>제9조(건축정책계획의 구분) 건축정책계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가건축기본계획, 광역건축기본계획, 기초건축기본계획, 부문별계획으로 구분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건축기본계획: 건축·도시 분야의 국내·외 메가트렌드 분석 및 정책여건 변화를 진단하고, 건축정책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2. 광역건축기본계획: 도 또는 특별자치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지역 건축 및 공간환경에 대한 현황 및 문제진단을 토대로 공간의 질적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정책사업 및 프로그램과 지역 건축관련 계획의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3. 기초건축기본계획: 시·군·구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광역건축기본계획 내용을 토대로 지역 인구특성 및 수요를 고려하고 지역의 통합적 경관 및 지역 거점 조성을 위해 실행할 수 있는 공공건축 및 공간환경 개선 사업을 제시하는 계획 4. 부문별계획: 건축정책기본계획과 연계되어 특정 부문에 대한 중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신설〉	<p>제10조(건축정책계획의 상호 관계) ① 국가건축기본계획은 광역건축기본계획 및 기초건축기본계획의 기본이 된다.</p> <p>② 광역건축기본계획은 해당 지역 관할구역에서 수립되는 기초건축기본계획의 기본이 된다.</p>

③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에서 수립하는 광역건축기본계획은 기초건축기본계획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④ 광역건축기본계획, 기초건축기본계획, 부문별계획의 수립권자는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고려하여 그 수립 주기를 정하여야 한다.

제11조(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① 이 법에 따른 건축정책기본계획 및 지역건축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건축 관련 부문별 계획에 우선하여 그 기본이 된다.

② 건축 관련 부문별 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건축정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제13조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 후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건축정책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공공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에게 건축정책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 등에 관한 소관별 계획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정책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자체 없이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⑥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 건축정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건축의 품격 및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
4.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건축에 관한 발전 및 지원대책
6. 우수한 설계기법 및 첨단건축물 등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제13조(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 건축정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의 현황 및 여건변화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건축관련 정책동향과 전망에 관한 사항
3.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4. 공공건축의 품질 향상을 위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
6. 건축자산의 보전과 활용에 관한 사항

- | | |
|---|--|
| <p>7. 건축분야 전문인력의 육성 ·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p> <p>8. 건축디자인 등 건축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p> <p>9. 건축문화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p> <p>10. 건축 관련 기술의 개발 · 보급 및 선도시범사업에 관한 사항</p> <p>11.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시행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진흥에 필요한 사항</p> | <p><u>7.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을 위한 건축분야 정책에 관한 사항</u></p> <p>8. 재난 및 재해 등에 대비한 건축안전에 관한 사항</p> <p>9. 건축기술변화에 대비한 건축산업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p> <p>10.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교육 및 행사 등에 관한 사항</p> <p>11. 건축행정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p> <p>12.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시행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진흥에 필요한 사항</p> |
|---|--|

제12조(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 · 도지사는 지역의 현황 및 사회 · 경제 · 문화적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을 위하여 건축정책기본계획에 따라 특별시 · 광역시 · 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 · 도”라 한다)의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광역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 시행하여야 하며,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필요한 경우 건축정책기본계획 및 광역건축기본계획에 따라 시 · 군 · 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초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 시행할 수 있다.

② 광역건축기본계획 및 기초건축기본계획(이하 “지역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제18조에 따른 시 · 도건축정책위원회 또는 시 · 군 · 구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③ 지역건축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지역건축기본계획을 수립 ·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체 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기초건축기본계획을 수립 ·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 · 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⑤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 · 도지사는 지역의 현황 및 사회 · 경제 · 문화적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을 위하여 건축정책기본계획에 따라 특별시 · 광역시 · 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 · 도”라 한다)의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광역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 시행하여야 하며, 광역건축기본계획을 토대로 지역의 통합적 경관 및 지역 거점 조성을 위하여 ‘기초건축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한 시 · 군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기초건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광역건축기본계획 및 기초건축기본계획(이하 “지역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제18조에 따른 시 · 도건축정책위원회 또는 시 · 군 · 구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③ ~ ⑥ (현행과 같음)

4) 제4장(건축정책위원회) 개정 방향

□ 건축정책위원회 개정 방향

법에서 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내용적 범위는 통상적으로 위원회의 역할, 범위, 구성, 지원 등의 범주에서 관련 사항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 건축기본법은 위원회의 역할과 더불어, 건축정책 국회보고, 건축 기본조사 등 건축정책과 관련된 사항들도 하위 조문에 포함하였다(아래). 따라서 제4장의 내용적 범위는 건축정책 위원회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현행법에서는 위원회 명을 ‘건축정책정책위원회’와 ‘건축위원회’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건축법’에서도 ‘건축위원회’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용어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기본법에 의해 운영되는 위원회는 ‘정책위원회’로 통일하였다.

[위원회 구성 및 역할 관련 타법 비교]

환경정책기본법	국토기본법	건축기본법
제4장 환경정책위원회	제5장 국토정책위원회	제4장 건축정책위원회
제58조(환경정책위원회)	제26조(국토정책위원회)	제13조(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59조(환경보전협회)	제27조(구성)	제14조(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
	제28조(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 등)	제15조(건축정책 국회보고) 제16조(건축 기본조사) 제17조(기획단) 제18조(지역건축위원회) 제19조(지역건축위원회의 기능)

[표 72] 건축기본법 제4장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4장 건축정책위원회	제4장 건축정책위원회
제13조(국가건축정책위원회) ①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관계 부처의 건축정책의 조정 및 그 밖에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가건축정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건축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 자	제15조(국가건축정책위원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p>④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⑤ 위원의 임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4조(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0. 6. 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정책기본계획을 포함한 건축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건축분야 발전에 관한 주요 사업의 지원 3.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4. 건축문화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5. 국민의 건축문화 향유기회의 확대에 관한 사항 6.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7. 건축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건축정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p>제16조(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7. 현행과 같음 8. <u>제0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정책 국회보고에 관한 사항(신설)</u> 9. <u>제12조 및 제00조 계획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신설)</u> 10. 그 밖에 건축정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p>제17조(기획단) ①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기획단을 둔다.</p> <p>②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p> <p>③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7조(기획단) ① · ② (현행과 같음)</p>	
<p>제18조(지역건축위원회) ① 지역의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의 심의 및 그 밖에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건축정책위원회(이하 “광역건축위원회”라 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건축정책위원회(이하 “기초건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② 광역건축위원회 및 기초건축위원회(이하 “지역건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조직,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위원회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건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p>	<p>제18조(지역건축정책위원회) ① 지역의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의 심의 및 그 밖에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건축정책위원회(이하 “광역건축정책위원회”라 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건축정책위원회(이하 “기초건축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② 광역건축정책위원회 및 기초건축정책위원회(이하 “지역건축정책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조직,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위원회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건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p>	
<p>제19조(지역건축위원회의 기능) 지역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지역의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해당 지역의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3. 건축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사항 	<p>제19조(지역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 (현행과 같음) 4. <u>지역건축기본계획 및 지역실행계획의 이행상황에 관한 사항</u> 	

5) 제5장(건축정책 모니터링) 개정 방향(신설)

□ 건축정책 모니터링 개정방향

현행법은 건축정책위원회의 내용과 건축정책 국회보고의 내용을 건축정책위원회의 하위 조문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타 법에서는 ‘정책’, ‘계획수립’, ‘연차보고’ 등과 같은 별도의 장을 두어 성과점검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과학기술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에서는 정책의 범위에 성과점검의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국토기본법은 제4장(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 등)을 별도로 구성하여 연차보고, 국토조사, 국토모니터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본 개정안에서는 조문의 내용과 성격을 고려하여 건축정책 국회보고를 포함하여 정책의 점검 및 유사 내용은 제5장에 편성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정책 및 계획 부문 타법 비교]

과학기술 기본법	국토기본법	탄소중립 기본법
제2장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제	제4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 등	제3장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과학기술기본계획)	제24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	제10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제7조의2(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제25조(국토 조사)	제11조(시 · 도 계획의 수립 등), 제12조(시 · 군 · 구 계획의 수립 등)
제8조(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제25조의2(국토모니터링의 추진 등)	제13조(국기기본계획 등의 추진 상황 점검)
제8조의2(연차보고서의 작성)		제14조(법령 제정 · 개정에 따른 통보 등)
제8조의3(조례의 제정)		
제8조의4(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설치)		

□ 건축정책 모니터링(안 제20조)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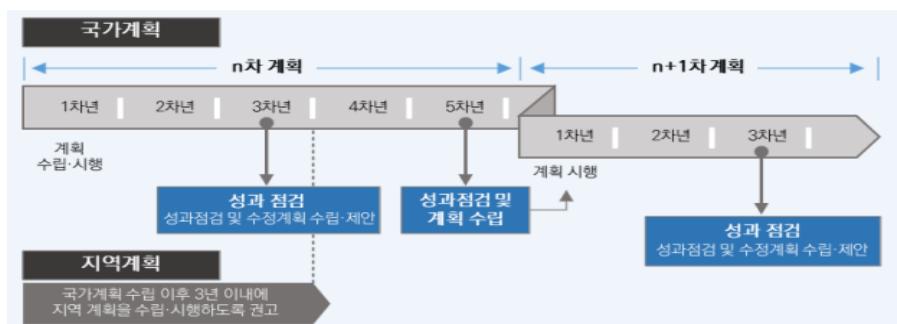
현행법은 건축정책의 이행과 결과에 따른 점검(이하 건축정책 성과점검)을 건축정책 국회보고로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적 측면에서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세부단위과제 이행점검 달성을 여부에만 집중하는 사업실적 중심의 성과 모니터링으로 관련계획과의 연계, 협력 및 종합평가에 대한 체계가 미흡하다. 그리고 건축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수행되지 않아 과정적 측면에서도 객관적인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역에서도 계획 수립 후 형식적인 전차 계획의 이행점검으로 건축정책 추진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은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한편 국토기본법의 경우 기존의 국토조사를 확대하여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모니터링 도모하고 자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건축기본법 또한 정책의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개정안

에서는 건축정책 모니터링을 제안하였다(총괄 표 참고).

□ 건축정책 국회보고(안 제21조)

국가 건축정책은 매 2년마다 건축정책 국회보고(건축기본법 제15조)를 의무화하여 건축정책에 대한 성과관리 및 기타 여건변화를 검토하도록 하였고, 2010년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이후 현재까지 총 4회 국회보고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계획의 수립 주기와 성과점검 시기의 부적합성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실제 건축정책 국회보고의 경우 제1차 계획을 대상으로 2회, 제2차 계획을 대상으로 2회 이루어졌으며, 건축정책 성과점검 시기를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더불어 성과점검을 통해 다양한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계획으로 제안할 수 있는 형태로 성과점검 방법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에 현재 매 2년마다 시행하는 건축정책 국회보고를 건축정책기본계획 시행기간의 중간과 종료 후 시행하고, 성과 결과를 수정계획 또는 신규 계획에 도입하는 등 계획의 탄력적 관리 및 후행 계획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수정이 필요하다.

-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주기 : 5년 ⇒ 건축정책 국회보고 : 중간 및 종료지점



[그림 23]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주기를 고려한 성과점검 변경(안)

□ 건축 분야 정보체계의 통합체계의 구축과 운영(안 제23조) 신설

오늘날 국제사회가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 등 지식중심산업의 발전에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정보화 시대로 돌입하였고, 스마트기를 통해 사람들은 정보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정보를 창출하는 생산자의 역할 또한 수행한다. 공공분야 역시 시대흐름에 맞춰 정부3.0과 같이 공공정보의 적극적 개방과 공유, 소통 등을 강조한 정책을 추진하였고, 정부에서도 기존에 축적되어온 자료들과 새롭게 생산되는 데이터를 시정에 활용하는 방법에 주목하였다. 건축분야는 세움터를 포함하여 7개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 중에 있으며, 각각의 정보체계에서 생산·관리되는 정보들이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융복합 정보 생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데이터의 수집·가공 활용 확대를 위해 데이터 표준화 및 정보체계를 통합적으로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규정이 필요하다.

[표 73] 건축기본법 제5장 개정(안)

현행	개정(안)
〈신설〉	제5장 건축정책 모니터링
〈신설〉	<p>제20조(건축정책 모니터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정책기본계획 및 지역 건축정책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주기적 또는 수시로 점검(이하 “건축정책 모니터링”이라 한다)할 수 있다.</p> <p>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정책기본계획 및 광역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건축정책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과 건축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건축정책 모니터링체계를 구축 · 운영할 수 있다.</p> <p>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정책 모니터링체계를 구축 ·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축정책 모니터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제15조(건축정책 국회보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건축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2년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p>제21조(건축정책 국회보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건축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u>건축정책기본계획 목표연도</u>의 종간시점과 종료시점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 시행 및 성과 등에 관한 사항 2. 미래사회의 건축환경 변화 전망 및 대책 3.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과 사업 등에 관한 사항 4. 건축환경, 문화 창달을 위한 지역의 풍토성 및 전통 성 계승에 관한 시책 5. 건축제도 · 기준 등의 국제화에 관한 사항 6. 건축기술 · 건축설계의 발전,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건축에 관한 중요 사항
제16조(건축 기본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축에 관	제22조(건축 기본조사) ① · ② (현행과 같음)

한 각종 통계, 건축물 현황, 건축에 관한 인식도 및 기대수준, 그 밖에 제15조제2항 각 호와 관련되어 필요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제1항의 조사사항 중 일부에 대하여 이를 직접 조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신설〉

제23조(건축정보 통합체계의 구축과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문화의 진흥 및 산업 촉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정보통합체계를 구축하여 수요자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련기관의 장은 건축정보데이터베이스가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련기관의 장은 건축정보의 구축·관리·활용 및 표준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6) 제6장(건축문화의 진흥) 개정방향

□ 건축문화 진흥 개관

현행 건축기본법에서 건축정책의 실질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5장 건축문화의 진흥이라고 할 수 있으며,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실시’, ‘민간전문가의 참여’, ‘설계공모의 시행’ 등 5개 하위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은 건축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정책적 방향 설정 외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실질적으로 시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재정지원’의 경우 재정 지원을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필요한데 기금 및 회계에 대한 규정이 누락되어 있고, 건축기본법의 대표적인 정책사업으로 볼 수 있는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은 ‘국토환경디자인 시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된 이후 중단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건축문화 진흥을 위해 기존의 내용에 더하여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제안하였다.

□ 건축문화진흥기금(안 제25조) 신설

건축기본법 및 건축기본계획의 실효성 부족에 대한 지적 중 하나로 건축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해당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규정의 부재가 주요 원인으로 거론된다. 현재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건축문화 관련 시설의 설립 및 운영’, ‘출판 전시 등의 건축문화 관련 사업’, ‘교육’, ‘해외 진출 및 국제 교류’, ‘건축디자인 기준 설정 및 시범사업’ 등 6개 항목이 있다. 국가 계획뿐만 아니라 지역건축기본계획에도 ‘건축문화 진흥’ 관련 사업이 기본계획의 세부단위 과제로 제시되고 있는데, 재원마련에 대한 규정이 전무함에 따라 서울, 부산 등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건축문화 관련 사업 예산 및 행사 규모가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건축문화진흥기금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재원 조성·마련을 위한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건축문화 관련 사업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¹⁵⁾

□ 건축의날 추진(안 제30조) 신설

통상적으로 ‘~의 날’로 지칭되는 정부 주관 기념일은 기념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전국적인 범위로 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기념일은

15) 기금 규정의 신설은 국가재정법 제5조에 근거를 두어야 가능한 것이지만 본 연구가 개정에 필요한 내용들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재정법에 대한 검토와 가능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루지 않았다.

‘철도의 날(6.28)’이 있는데, 국토교통부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문화의 날, 체육의 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의 날, 정보통신의 날, 정보보호의 날) 등 다양한 부처에서 기념일을 정하여 운영¹⁶⁾하고 있다.

대한건축학회에서는 경복궁 창건일인 9월25일을 ‘건축의날’로 지정하여 2005년부터 행사를 진행해오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건축 분야 종사자를 중심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으며¹⁷⁾, 건축의 대중화를 위한 프로그램은 부족한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기념일의 경우 한 분야의 대중화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사가 개최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건축 관련 행사(가칭 건축의날)’에 대한 내용을 건축기본법에 규정하고, 건축문화대전 등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행사에 더하여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

[표 74] 기념일 지정 사례

기념일 명	5자정일	주관부처	목적 및 행사 내용
보건의 날	4.7.	보건복지부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관련 분야의 각종 행사
과학의 날	4.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높이고, 모든 국민생활의 과학화 추진과 관련된 행사 추진
바다의 날	5.31.	해양수산부	바다 관련 산업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국민의 해양에 대한 인식을 북돋우며, 관계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 추진
환경의 날	6.5.	환경부	국민의 환경보전의식 함양과 실천의 생활화를 위한 행사 추진
푸른 하늘의 날	9.7.	외교부·환경부	유엔 기념일인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을 맞이하여 대기질 개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대기오염 저감활동에 범국가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행사 추진
문화의 날	10월 셋째 토요일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잡지·영화 등 대중매체의 사회적 가치를 새롭게 하고,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된 행사 추진

출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s://www.mois.go.kr/chd/sub/a05/feteDay/screen.do>, 검색일 : 2022.08.21.)

16) ‘과학의 날’은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과학기술 혁신분위기를 확산시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1969년 8월 「과학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과학기술처 개정일인 4월 21일을 ‘과학의 날’로 지정하였다. ‘문화의 날’은 『문화기본법』제12조 2항에 근거하여 국민의 일상 속 문화학유권 확대를 통한 문화적 삶의 실현을 목적으로 문화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정하였으며, 매달 마지막 수요일과 그 주간에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문화재, 스포츠 시설 등 전국 2,000여 개 이상의 문화시설 할인 또는 무료 관람, 야간개방 등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제공한다.

17) 2021년 건축의날 운영 프로그램은 ‘건축관련단체학술세미나’, ‘초대작품전’, ‘건축신기술전’, ‘건축사진전’, ‘지역건축문화학술행사’ 등 건축 분야 종사자 중심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 대중 참여를 위한 행사나 프로그램 기획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 국제 교류·협력 강화(안 제31조) 신설

국제협력, 교류는 해당 분야의 인적자원 발전 및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경험과 노하우를 타 국가에 전수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인적자원 개발, 전문가 파견, 상호 교류 및 방문, 행사 참여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 국제문화교류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해짐에 따라 2017년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이 제정·시행중이며, 국가 간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수행하는 국제적 협력의 범위를 위의법 제2조(정의)에 명시하고 있으나 건축분야는 누락되어 있다¹⁸⁾.

국내 건축분야 국제교류협력 사업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건축가협회에서 주최·주관하는 '국제건축문화교류' 사업이 있는데, 미래건축인재를 선발하여 다양한 건축문화교류, 텁방 및 연구조사 등의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우수 건축인재들의 국제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회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¹⁹⁾. 건축분야 또한 '관련기관 간 네트워크', '건축 정책 연구 및 개발', '국제 전시회·행사 등 개최 및 참가 지원', '해외 마케팅', 등 건축분야의 국제교류 협력 증진을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 측면에서는 건축진흥원과 연계하여 관련 업무의 위탁·위임에 대한 근거를 추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 조사·연구에 관한 지원(안 제32조 신설)

과학기술기본법의 경우 R&D와 관련하여 조사·연구에 대한 규정을 둠으로써 관련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건축 분야의 경우 이러한 기술 중심의 R&D는 국가 주도뿐만 아니라 민간 건설 분야에서도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건축과 관련한 연구 및 새로운 기술 요소의 개발에 관해서는 관련 예산이 소극적으로 운영되는데, 건축문화의 진흥, 국제교류, 산업 경쟁력 강화 등 건축 분야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공공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연구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이에 개정(안)에서는 조사·연구에 관한 조항 신설을 제안하였다.

18)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2조 정의에 따른 "국제문화교류"의 범위는 「문화기본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영상진흥기본법」, 「국어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문화진흥법」,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도서관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19) 출처: <http://www.yaf.or.kr/>(검색일 : 2022.08.22.)

□ 건축진흥원의 설립(안 제33조) 신설

현행법 체계에서 건축진흥원 설립에 대한 규정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5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서의 진흥원 업무 범위는 건축서비스산업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는 진흥원의 기능을 보면 단순히 해당 분야의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의 홍보, 문화 증진을 위한 활동 등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건축기본법은 제정 목적은 '건축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향상에 이바지'로 규정되어 있고, 건축정책기본계획 및 건축정책의 내용적 범위에 건축 산업이 포함되어야 함을 고려했을 때, 「건축기본법」에서 건축진흥원의 설립 및 업무 범위에 대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개정안에서는 건축진흥원 업무 범위를 기존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서의 내용적 범위 일부와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업무 범위까지 포함하여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표 75] 진흥원의 공통기능 및 고유기능 예시

구분	주요기능	설립근거
고유 기능	한국디자인 홍원	한국디자인(K-Design) 해외진출 지원 우수 디자인 선정 및 디자인 문화 확산
	한국콘텐츠진 홍원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콘텐츠 이용자 권익보호
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	교육시설, 교육 단체의 평가 및 지원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과의 연계
	한국출판문화 산업진흥원	전자출판관리 및 센터 구축 양서발굴 빛 독서문화 증진, 심의사업
정보통신산업 국가평생교육 진흥원	한국로봇산업 진흥원	지능형 로봇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 지원 지능형 로봇의 연구개발 보급, 활동 지원
	정보통신산업 국가평생교육 진흥원	지식서비스산업 기반 구축 IT 산업기반 조성 누리꿈스퀘어 운영
공통기능	국가평생교육 진흥원	학점 인정에 관한 사항 교육 강의 통합 관리 운영
	정책 및 제도 연구, 조사 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정책 및 제도 연구, 조사 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정부위탁 사업 관련 인력 양성, 교육	정부위탁 사업 관련 인력 양성, 교육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출처: 국가건축정책위원회(2015, p.54), 표 재구성

[표 76] 건축기본법 제6장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5장 건축문화의 진흥	제6장 건축문화의 진흥
제20조(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24조(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건축문화 관련 시설의 설립 및 운영 2. 출판 · 전시 · 축제 등 건축문화 관련 사업 3. 국민의 건축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4. 건축 관련 해외 진출 및 국제교류 5. 제21조에 따른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6. 제22조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7. 그 밖에 건축문화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 ~ 7. (현행과 같음)
〈신설〉	제25조(건축문화진흥기금)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문화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및 응자금 2. 정부의 보조금 3. 도시건축박물관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4.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품 5.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21조(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축디자인(공공공간은 제외한다)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공공간의 건축디자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의 범위 안에서 지역 내 건축디자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물 및 공간환경 시설물의 소유자 · 관리자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디자인 기준에 따르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디자인 기준 설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① ~ ⑤ (현행과 같음)
제22조(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공공	제27조(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실시) ① ~ ③ (현행과 같음)

의 이익을 증진하고 건축디자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건축디자인을 개선하는 개발·정비사업
3. 민간에서 발주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절차, 건축디자인 기준의 적용, 재정지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민간전문가의 참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조정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민간전문가의 자격·업무범위·보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설계공모의 시행)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우수한 건축물 및 공간환경 설계의 선정을 위하여 설계공모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제28조(민간전문가의 참여)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설계공모의 시행) (현행과 같음)

제30조(건축의 날 추진) ① 건축에 대한 국민의 의식과 이해를 높이고 건축문화 진흥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의 날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제31조(국제 교류·협력 강화) ①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축문화의 진흥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교류·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제 교류·협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다.

1. 건축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2. 건축 정책 연구 및 개발
3. 국제 전시회·행사 등 개최 및 참가 지원
4. 해외진출에 대한 정보제공 및 해외 마케팅 활동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신설〉

제32조(조사·연구에 관한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문화 진흥 및 건축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조사에 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다.

1. 건축 기술의 발전이 경제·사회·환경·문화 등에 미치는 영향 및 수준 평가
2. 건축기술의 발전과 그에 따른 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예측 조사
3. 건축기술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촉진 및 시범사업 추진

4. 건축문화의 바탕이 되는 기초연구 진흥을 위한 연구 및
상호 협력

5.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9조제10조에 따른 관련
연구·개발 및 표준화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신설〉

제33조(건축진흥원의 설립) ①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축문화의 진흥·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건축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2.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인력 양성 및 교육

3. 건축문화 진흥을 건축의 날 운영

4. 건축문화 확산을 위한 콘텐츠 제작·유통

5. 건축산업 해외 진출 지원

6. 그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정부는 진흥원의 설립·시설·운영 및 제2항 각 호의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지원 할 수 있다

④ 건축진흥원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결 론

-
1. 연구 결과 요약
 2. 연구 한계 및 향후 과제
-

1. 연구 결과 요약

건축 관련 법령의 모법 역할을 하고 해당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조정·종합하는 건축기본법이 2007년 제정되었다. 이후 건축 관련 법령들이 세분화 또는 분별화되면서 선언적 규정에 머물렀던 내용들이 구체화되었다. 이로 인해 여전히 선언적 규정에 머물러 있는 건축기본법의 실효성이 저하되었고, 모법 또는 정책의 종합적인 역할 의미 또한 퇴색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의 사회적 여건변화와 신규 법령들의 제정 현황을 검토함으로써 건축기본법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 개정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건축기본법의 구성 및 형식적 측면에서, 기존의 5장 구성 체계를 6장으로 구분하고, 세부 조항들을 일부 재편함으로써 입법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는 건축기본법이 관련 법령들을 종합·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간의 관계를 정리하였다. 또한, 건축정책의 실질적 실행수단을 높이기 위해 건축문화 진흥에 관한 조문에서 관련 규정 내용을 보강하였다. 마지막으로 건축 및 공간환경이 단순히 공간적 영역으로만 치부되지 않고 사회적 현안과 범지구적 과제 해결에 일조할 수 있도록 기술, 환경 등의 측면에서 사회적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정을 보완하였다. 세부적으로는 건축정책의 기본이념과 정책 방향에 포괄적인 형태의 규정을 두었으며, 건축문화 진흥 세부 규정에 기술, 산업, 교육, 문화행사와 관련된 내용을 제안하였다. 위의 내용에 대한 건축 관련 법 개정 방향의

세부 내용은 본 연구 4장에 제시하였는데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제1장 총칙 규정에는 기존의 건축정책 기본이념의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성’에 더해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제안하였고, 더불어 국민의 권리와 의무 조항에 헌법적 가치를 추가함으로써 헌법 보완적 관계로서 기본법의 성격을 드러내었다.

제2장(건축정책의 기본방향)에서는 건축정책의 기본방향으로 기존의 ‘공공성’에 더하여 ‘지속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최근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새로운 의제로 채택되었고, 국내에서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총 4차에 걸쳐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러한 여건 변화를 기본법에 담지하기 위해서이다.

제3장(건축정책의 수립)에서는 건축정책계획을 수립 주체(국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 지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계획이 어떤 성격으로 수립되어야 하는지 분명히 규정하였다. 또한 건축정책기본계획이 건축 관련 법령(녹색건축법, 한옥등건축자산법, 건축물관리법,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등)에 의해 수립되는 계획과 정합성을 이루고 종합적 성격을 지닐 수 있도록 건축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개정을 제안하였다.

제4장(건축정책위원회)에서는 기존 조문 중 위원회와 직접적인 연관이 적은 내용을 분리하는 형태로 개정 방향을 제안하였다. 법에서 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내용의 통상적 범위는 위원회의 역할, 범위, 구성, 지원 등의 범주에서 구성된다. 그러나 현행법은 이러한 내용 외에도 성과보고, 건축 기본조사 등 상관성이 낮은 규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법의 구성적 측면을 고려하여 내용을 재정리하였다.

제5장(건축정책 모니터링)에서는 현행법 제4장에 포함된 성과보고, 건축 기본조사와 더불어 건축정책 모니터링과 관련된 내용을 본 장에 새로이 규정하였다. 기존의 건축정책 국회보고는 건축정책의 성과점검 형태로 해석될 수 있으며, 건축기본조사 또한 이러한 성과점검을 위한 기초조사에 해당된다. 더불어 건축 분야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관리·표준화하기 위해 건축분야의 정보체계에 대한 사항이 필요한 실정이며, 이러한 내용을 포괄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규정을 신설하였다.

제6장(건축문화의 진흥)에서는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새로운 시책들을 검토하고, 관련 행사, 연구, 재원마련 등의 새로운 규정을 제안하였다. 건축정책의 실질적인 정책 대상은 건축문화의 진흥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행법은 재정지원, 건축디자인 기준 설정 및 시범사업, 민간전문가 참여, 설계공모의 조항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재정지원의 경우

재원 마련을 위한 기금 및 회계에 대한 규정이 누락되어 있고, 대표적인 정책사업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은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현재는 중단된 상태이다. 따라서 건축문화 추진동력을 마련하고자 새로운 정책 대상을 발굴할 필요가 있었으며, 건축문화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건축문화를 만들기 위한 ‘건축의 날’과 더불어 새로운 조문을 신설하였다.

본 연구는 시대흐름에 맞는 건축정책 수립·추진의 법적 기반 형성에 관한 것이다. 타 기본법과의 비교분석과 더불어 설문조사 등 실증연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건축기본법의 실질적인 역할이 증대될 수 있도록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규정을 신설·보완하였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정책적 기반 형성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건축 관련 법령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건축기본계획의 세부 내용에 타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건축 정책 전 분야를 포괄하는 규범성과 세부정책 간 연계성을 담보하고자 하였다. 이는 건축정책의 신뢰성 제고와 더불어 세부 정책 간 연계성이 점증적으로 강화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제안된 내용은 구체적인 법률 개정(안)으로 발전되어 향후 입법 추진에 활용되길 기대한다.

2. 연구 한계 및 향후과제

최근 건축 관련 법령의 비약적인 증가와 분법화 과정에서 법률간의 모순, 갈등이 발생하기 쉬운데 정책의 통합, 분야 간 조정 역할을 하는 건축기본법 개정 연구는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축 관련 법령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건축 정책 전 분야를 포괄하는 규범성과 세부정책 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연구를 통해 제안된 내용은 건축기본법 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안) 작성에 반영 및 활용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러나 법의 특성상 하나의 법령에서 규율하려는 대상이 다른 법령에서 규율하는 대상과 중복되거나, 또는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이 타법에서 규율하고 있어 타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설치할 수 없는 규정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기금’, ‘건축의 날’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 기념일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각종 기념일)에 의해, 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별표 2(기금)에서 정하는 법률에 의해서만 설치가 허용되고 있다. 따라서 「건축기본법」 개정 시 신설하고자 하는 규

정이 타 법률에 의해서만 설치가 가능한 경우 각조 개정 범위 논의가 세부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법률의 특성상 법에서 정하는 사업, 예산 지원 등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위임한다. 건축기본법은 법-시행령 체계로 되어 있고,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신설 규정(건축정보 통합체계, 건축정책 모니터링, 기금, 기념일, 국제 교류, 조사·연구 등)의 일부 내용은 하위 법령(건축기본법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하위 법령 개정 수준에 따라 법 실효성의 체감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며, 후속 과제로서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2022 국제건축문화교류 미래건축인재 양성 홈페이지(<http://www.yaf.or.kr/>)(검색일 : 2022.08.22.)
- 2026 인천광역시 건축기본계획 공청회 자료.
- 건축공간연구원(2022), 건축서비스산업 지원사업 내부자료.
- 건축공간연구원(2022), 지역 공간환경 통합관리 사업의 성과분석 및 개편방안 연구, 내부자료.
- 건축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640호, 2011. 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 건축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475호, 2013. 3.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건축기본법(법률 제13470호, 2015. 8.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건축기본법(법률 제18339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건축기본법(법률 제8783호, 2007. 12. 21. 제정) 제정·개정이유
- 건축물관리법(법률 제18934호, 2022. 6. 10., 일부개정)
- 건축법(법률 제18508호, 2021. 10. 19., 일부개정)
- 건축사법(법률 제18826호, 2022. 2. 3., 일부개정)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법률 제19046호, 2022. 11. 15., 일부개정)
- 경관법(법률 제15460호, 2018. 3. 13., 타법개정)
- 고재경, 김동영, 예민지, & 최민애. (2020). 코로나 19 위기, 기후위기 해결의 새로운 기회. 이슈 & 진단, 1-25.
-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60호, 2019. 7. 4., 전부개정)
- 공시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7941호, 2021. 3. 16., 일부개정)
- 교육부장관. (2019). 제14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 장관회의 모두발언. 10월 11일
교육부 장관 연설문. <https://www.korea.kr/archive/speechView.do?newsId=132031652>
(검색일: 2022.5.27.)

국가건축정책위원회(2020), 제5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활동성과, 건축공간연구원.

국제문화교류 진흥법(법률 제18762호, 2022. 1. 1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2013), 제5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13~2017).

국토교통부(2018),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18~2022).

국토교통부(2020), 2020 건축통계집.

국토교통부(2020), 건축정책 성과보고서(2019~2021). 건축공간연구원.

국토교통부. (2007).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 홈페이지. <http://www.designcity.or.kr>(검색일: 2022.12.6.)

국토교통부. (2016). 2010~2015 건축정책 성과보고서.

국토교통부. (2021). 지자체-민간 전문가 맞손… 공공건축으로 지역경관 품질 높인다. 4월 1일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2021). 한국형-지능형 건설기술로 생산성·안전성 높인다. 10월 29일 보도자료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78043>(검색일: 2022.5.27.)

국토교통부. (2022).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 선정… 전국 80개 기관 참여. 2월 6일 보도자료.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94394>(검색일: 2022.5.27.)

국토교통부. (2022).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사. 5월 16일 보도자료.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07481>(검색일: 2022.5.27.)

국토교통부. (2022). 청년과의 만남, 주거정책의 시작!. 5월 24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08584>(검색일: 2022.5.27.)

국토기본법(법률 제18829호, 2022. 2. 3., 일부개정)

국토부 보도자료, 전국 건축물 총 7,275,266동 / 39억 6천만 m², 2021.3.9.일자.

국토해양부(2010), 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10~2015).

국회 법제실(2019), 법제이론과 실제

권영상(2009), 창조적 공간문화 구현을 위한 정책방향, auri brief, p.1.

기획재정부. (2021).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총론: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 7월 7일 보도자료.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2014). 기후변화 2014 종합보고서. WMO·UNEP.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증립·녹색성장 기본법(법률 제18469호, 2021. 9. 24., 제정)

김민석. (2021).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건축 계획적 대응 방안 연구-감염병예방 환경설계의 재안.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7(2), 67-75.

김병석, & 서원석. (2014). 지역의 인구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특성 연구: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6(4), 1-14.

- 김상규(2004), 기금제도 정비로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나라경제 2004년 10월호, pp.61-63.
- 김상호 외(2008), 질적 특성을 고려한 건축도시공간정책의 방향설정을 위한 연구, p.35.
- 김상호 외(2009), 건축정책기본계획 성과관리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건축도시공간 연구소
- 김상호, 김영현(2017),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성과와 발전방향, 건축과 도시공간(25),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p.10-20.
- 김영현 외(2015),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성과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김영현 외(2020),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축행정정보 개방 범위 확대방안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p.1-4.
- 김영현 외(2021), 건축정책 성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연구, 국토교통부
- 김영현(2014), 유럽 건축정책 동향과 시사점, auri brief, p.4.
- 김영현(2015). 건축정책 변화에 따른 전망. 대한건축학회, 59(1).
- 김용훈(2015), 영국의 건축안전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김지윤, & 김오석. (2021). 초·중·고 학령인구 감소에 의한 학교 통폐합 잠재성.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7(1), 55-69.
- 김현곤. (2022). 새로운 메가트렌드, 우리의 대응은?. 국토. 국토연구원.
- 나태준 외(2003), 공공조직의 전략기획체계 구축 방안, 서울연구원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법률 제18469호, 2021. 9. 24., 타법개정)
- 대한민국헌법(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 박영도(1993). 기본법의 법제상의 위치. 법제연구, 5, 273-287. 한국법제연구원.
- 박영도(2006). 기본법의 입법모델연구.
- 박정훈(2009). 입법체계상 (立法體系上) 기본법의 본질에 관한 연구-일본의 기본법을 중심으로. 법조, 58(12), 272-317.
- 백선경, 김민서. (2022). 국내 민간전문가 운영 및 제도 구축 현황분석.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논문집.
- 보건복지부. (2022).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4월 26일 보도자료.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04915>(검색일: 2022.5.27.)
- 보건복지부. (2022). 학교 등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공기청정기 설치 및 항바이러스 성능 인증 추진. 5월 18일 보도자료.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07805>(검색일: 2022.5.27.)
- 복경수, 유재수(2014), 빅데이터 활성화 정책 및 응용 사례, 한국통신학회지, 31(11), pp.3-13
- 빈미영. (2017). 자율주행차 도입과 교통이용환경 변화 전망. 경기연구원 이슈& 진단.

- 삼정 KPMG 경제연구원. (2018). 라스트마일 딜리버리: 택배물류의 마지막 1마일 시장을 잡아라. 삼정 KPMG ISSUE MONITOR.
- 서울시. (2021). 서울정책아카이브 서울시 공공건축가 설명 자료. <https://seoulsolution.kr> (접속일 2021.8.4.)
- 성유경. (2020). 코로나 19 위기 이후 일자리 변화와 건설산업 대응 방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ISSUE FOCUS, 21.
- 신미림, & 남진. (2011). 서울시 1 인가구의 주택수요 예측. 국토계획, 46(4), 131-145.
- 신윤호. (2021). [전망] 스마트홈 시장, 연평균 21.2% 성장…국내는 올해 22조 규모 넘을 듯. 11월 8일 전자과학 기사. [http://www.conslove.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130](https://elec4.co.kr/m/article/articleView.asp?idx=28718#:~:text=%EA%B8%80%EB%A1%9C%EB%B2%8C%20%EC%8A%A4%EB%A7%88%ED%8A%B8%ED%99%88%20%EC%8B%9C%EC%9E%A5%EC%9D%80,%EA%B7%9C%EB%AA%A8%EC%97%90%20%EB%8B%AC%ED%95%A0%20%EA%B2%83%EC%9C%BC%EB%A1%9C%20%EB%B3%B4%EC%9D%B8%EB%8B%A4.(검색일: 2022.5.27.)</p><p>오원섭. (2018). 4차 산업혁명과 건설산업의 미래. 7월 30일 신문기사. <a href=)(검색일: 2022.4.11.)
- 우기택(2016), 기본법과 체계정당성에 관한 연구, 법제논단, pp.51-53)
- 우창완·김도량·이은경·곽동렬·김동민(2018), 대한민국 혁신성장, 데이터경제에서 길을 찾다 -11/7 데이터경제 포럼 창립세미나 현장보고서-, 한국정보화진흥원.
- 유광흠 외(2011), 건축 관련 법제의 체계적 정비 방안 연구, 건축공간연구소
- 유광흠 외(2021).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 국토교통부.
- 유선일. (2020). '1인가구' 맞춤형 정책...공유주택·로봇·간편식 활성화. 머니투데이 6월 25일 기사.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62509492966166>(검색일: 2022.2.22.)
- 윤석진 외(2011),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윤정길 외(2003), 전략기획을 통한 지방정부 발전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 이상민 외(2020), 국토경관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경관법」 개정 방안, 건축공간연구원
- 이용우 외(2007),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지표 설정과 활용에 관한 연구, 건설교통부
- 장호연, 김경훈, & 김재준. (2009). 시스템 사고를 활용한 건설 산업의 노동생산성 모델. 한국건축시공학회지 (JKIBC), 9(3), 79-85.
- 전영훈 외(2011), 건축문화발전을 위한 국가 건축문화진흥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 조상규 외(2012), 건축정책 성과보고서 작성 연구, 국토해양부
- 조상규 외(2013), 국가사회적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건축정책 발전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최슬기. (2015). 한국사회의 인구변화와 사회문제: 인구변동요인과 인구수/인구구조를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106, 14-40.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타법개정)

한우석, & 유진옥. (2015). 기후변화 재해에 대응한 방재 복원력 (Resilience) 구축방향. 국토정책 Brief, (518), 1-8.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s://www.mois.go.kr/chd/sub/a05/feteDay/screen.do>, 검색일 : 2022.08.21.)

환경정책기본법(법률 제18469호, 2021. 9. 24., 타법개정)

Revision of the Framework Act on Building to Improve the Implementation of Architectural Policy

SUMMARY

Kim, Younghyun
Lee, Yeokyung
Lee, Jookyung
Baek, Seongyeong
Yoon, Hoseon

In December 2007, the Framework Act on Building was enacted to present policy directions for architecture and to establish and promote related policies. The Framework Act on Building declared the living space and social and cultural publicness of architecture as the basic directions of architectural policy, contributing to raising social awareness of the publicness of architecture. Subsequent laws have been enacted according to policies newly identified as necessary during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the architectural policy basic plan and as per legislative demands. This study is designed to clarify the nature and role of the Framework Act on Building as a basic law in the context of the policy-making conditions of subdivided and specialized architectural fields, and to identify directions for revising the law in a way that will enhance the continuity and executive performance of architectural policies.

Chapter 2 studies the legal characters and particularities of basic laws, and reviews the necessity of revision after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and related conditions of the Framework Act on Building. In order to clarify the nature of the basic law, research is

conducted on categorizing the basic functions of the basic law, and the status of the basic law within the legal system is reviewed to establish the role of the basic law. In addition, the study reviews the composition of the current Framework Act on Building and identifies any missing agenda and any revisions deemed necessary to the legislative composition.

Chapter 3 reviews the progress of each architectural policy implementation system and conducts perception surveys on architectural policies to draw a conclusion on the necessity for law revision. A perception survey was conducted centering on the workers from related fields in order to analyze the perception of architectural policy stakeholders and persons concerned with respect to the effectiveness of current architectural policies and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problems and causes in terms of architectural policy execution.

In Chapter 4, the direction of revision of the Framework Act on Building is presented by examining the system and composition of the Framework Act on Building, the nature of the basic law, and the questionnaire survey as well as other recently enacted/revised basic laws.

- Revision direction of architectural policies presented in Chapters 1 and 2

Considering the increasing importance and interest in the sustainability of architecture and urban spatial environment as seen i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the value of “sustainability” is proposed to be added to “publicness,” the core concept of existing architectural policies.

- Revision direction of Chapter 3 (Establishment of Architectural Policy)

Architectural policy plans a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government body responsible for establishing them, i.e., central government, metropolitan city government, municipal government), and the nature of each plan established by local governments is clearly defined. In addition, it was proposed to revise the main contents of the Basic Plan for Architectural Policy to have them become consistent with the plans established under other building-related laws (Green Buildings Construction Support Act, Act on Value

Enhancement of Hanok and Other Architectural Assets, etc.) and provide a comprehensive framework.

- Revision direction of Chapter 4 (Presidential Commission on Architecture Policy)

When the law stipulates matters concerning committees, it generally stipulates related matters regarding the scope of a committee's role, work scope, composition, and support. However, the current law includes various other regulations, such as performance reports and basic surveys on buildings. Therefore, in this chapter, proposals are made to reduce and revise the related regulation to the extent that only committee-related matters remain, rather than establish new regulations.

- Revision Direction of Chapter 5 (Monitoring of Architectural Policy)

The nature of the architectural policy performance inspection is clarified by separating related matters covered in Chapter 4 of the current law. In addition, proposals are made regarding regulations on monitoring policies for the systematic implementation of performance inspections. The integrated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n information system in the field of architecture and construction is also suggested for monitoring and to efficiently manage and standardize the data generated by monitoring.

- Revision direction of Chapter 6 (Promotion of Architectural Culture)

Regulations related to the promotion of the architectural culture are the policies that are in practice. The current law consists of provisions on financial support, establishment of architectural design standards and pilot projects, participation of private experts, and design competitions. In addition to the existing regulations, new regulations on related events, research, and funding are proposed.

In conclusion, this study aimed to systematically reorganize the legislative structure by dividing the existing five chapters into six chapters and rearrange detailed provisions. Next, reorganizing was proposed in a manner so that the Framework Act on Building would integrate and coordinate the related laws and organically interlink them. In detail, the contents of regulations are reinforced in the provisions on architectural policy and the promotion of architectural culture. Lastly, the regulations for enhancing social

responsibility in terms of technology and environment are supplemented so that architecture and spatial environment can contribute to solving social global issues, and not be treated as a mere spatial domain. Comprehensive regulations are specified in terms of basic philosophy and policy direction, and new provisions related to technology, industry, education, and cultural events are proposed in detailed regulations for the promotion of architectural culture.

The recent increase in the number of architecture related acts and their diversification may likely cause contradictions and conflicts between laws. Thus, it is meaningful to research on the revision of the basic law which integrates policies and coordinates different field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relationships between architecture-related laws and to suggest a direction for reinforcing the connectivity between normativity that embraces all building policy areas and detailed policies. We hope that the suggested study is utilized in drafting the legislation for revising the Framework Act on Buil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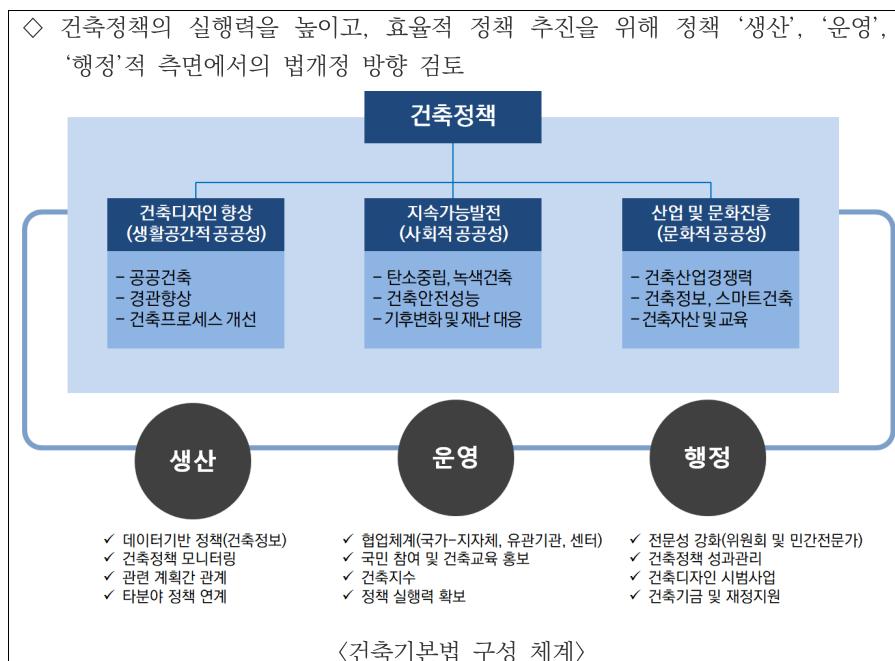
Keyword

Framework Act on Building, architectural policy, publicness of architecture, sustainability of architecture

부 록

1. 건축기본법 초기 개정방향 검토를 위한 TF 회의 자료
2. 건축정책에 관한 전문가 인식조사 설문지

1. 건축기본법 초기 개정방향 검토를 위한 TF 회의 자료



1) 생산 분야 검토사항

□ 건축정책의 이념 및 기본방향

- (현황) 건축기본법 제7조~제9조에서 건축물이 지니는 공공성에 초점을 두고 생활 공간·사회·문화라는 유형에 따라 기본적인 정책방향 제시

- (생활공간적 공공성 구현) 각종 재난에 대비한 안전한 건축환경을 조성하고, 계획 및 설계단계부터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한 건축정책(제7조)
- (사회적 공공성 확보) 국민의 다양한 요구와 다원적 문화에 부응하고, 미래사회 및 기술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가능한 건축정책(제8조)
- (문화적 공공성 실현)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유산을 보전하고, 문화적 산업적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문가 창의성을 향상시키는 건축정책(제9조)
- (문제점) 다만, 탄소중립, 4차 산업혁명, 팬데믹, 인구감소 등 새로운 메가트랜드에 대응하는 정책 기본방향은 미흡한 상황
 - ‘공공성’ 개념을 중심으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 필요
- (대응방향) 건축 관련 전문가 및 관계기관과 함께 건축 현안 및 메가트랜드를 도출하여 정책방향 컨텐츠 및 구성방안 검토 추진

현행	개선
제2장 건축정책의 기본방향 제7조 건축의 생활공간적 공공성 구현 제8조 건축의 사회적 공공성 확보 제9조 건축의 문화적 공공성 실현	제2장 건축정책의 기본방향 제7조 건축물 전생애 동안 안전성 확보 제8조 탄소중립 및 지속가능한 건축 구현 제9조 건축의 공공성 구현 제10조 건축물의 안정적 공급 및 재고관리 제11조 건축 산업 경쟁력 강화 제12조 건축문화 진흥 제13조 도시·교통 등과의 유기적인 연계

- (주요쟁점)
 - 다소 막연해 보일 수 있어도 ‘건축의 공공성 구현’이라는 큰 틀에서의 정책방향(비전)을 제시(3부문의 공공성 구현에 모두의 가치 포함)

□ 건축정책의 범위 및 대상

- (현황 및 문제점) 건축정책 기본방향에서 다루는 항목 중 직접적으로 다루는 항목은 건축문화 진흥으로 제한적
 - 유럽건축정책포럼(EFAP: European Forum for Architectural Policies)에 소속된 37개 국가의 건축정책은 ①건축문화 인식 확산, ②공공건축 설계성능 기준 개선, ③지속가능한 건축기술 확대 등 3개 부문으로 정리
 - 공간환경 및 장소디자인을 비롯하여 인구, 기후변화, 에너지, 지속가능성, 도시계획 등과 연계된 정책대상 확대를 고민 중
- (주요쟁점)
 - 건축정책의 대상을 ‘건축물’과 ‘공간환경’으로 명시하여 기본법 시행 초기 정책대상에 대한 많은 논쟁이 빈번히 발생

- 1차 계획에서는 건축문화, 녹색건축도시, SOC 국가기반시설, 건축도시산업, 경관, 주택 등 광범위한 내용으로 계획이 수립
- 생산 프로세스 및 건축물 전생애주기를 고려하여 건축 분야 각각*에 대하여 별도 챕터를 만들어 관련 정책 규정 필요성 검토
 - * 기획,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해체, 행정 등

□ 데이터기반 정책(건축정보)

- (현황) 세움터, 생애이력, 건물에너지, 민간개방, 한국건축규정, 건축HUB, 건축자재 플랫폼 등 7개 정보체계 운영 또는 구축중
- (문제점) 각각의 정보체계에서 생산·관리되는 건축정보들이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융복합 정보 생산 한계
- (대응방향) 건축HUB에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 기능 외에도 건축정보 통합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구축하고 법적 마련
 - 건축정보의 정보수집-가공-유통 · 활용되는 데이터 가치사슬을 고려하여 데이터기반의 정책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한 기반 마련
- (주요쟁점)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한옥 등 건축자산진흥법,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건축물관리법, (공공건축특별법) 등 개별법령에서 제시되는 ‘정보체계 구축’ 항목과의 연계 등 고려
 - 현재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의한 정보체계를 ‘건축허브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개별 정보체계와 통합플랫폼에 관한 사항 검토
 - 건축정책관련 실태조사, 신규 통계 구축·관리가 필요한 사항 검토
 - 건축생산, 유지관리 과정에서 생산되는 건축정보의 데이터 공개 및 개방 관련 법위, 저작권 등 검토 필요

□ 관련 계획간 관계

- (현황) 건축기본법 이후 제정된 관련 법령에 따라 녹색건축 기본계획, 건축자산 진흥기본계획, 경관기본계획, 건축서비스산업진흥계획 등 부문별 계획 수립
- (문제점) 상위계획 개념인 건축정책기본계획보다 부문계획에 해당하는 계획이 선행 또는 동시에 수립되는 경우 빈번
- (대응방향) 건축기본법 이후 제정된 관련 법령 및 계획의 관계를 정립하고, 계획 간 시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 각 계획별 내용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계획, 기본계획, 실행계획, 시행 계획 등으로 계획 간 위상을 조정하는 방안 검토
- (주요쟁점)
 - 국가-지역(광역, 기초)건축기본계획의 정책대상, 내용에 대한 검토
 - 부문별 계획 수립기간, 내용, 계획간 관계 등에 대한 검토
 - 계획 수립 절차에 대한 검토 필요(공청회, 도 및 시의회 의견청취, 건축정책위원회 심의)
 - * 타법에서의 주민공람, 공청회의 구체적인 시기, 방법 등, 의회 의견청취의 필요성 등 검토 필요

2) 운영 분야 검토사항

□ 협업체계

- (현황) 국가 및 지자체 간 건축정책의 수립·시행 관계 명시, 각 주체별 건축정책 위원회의 설치·기능 명시
- (문제점) 국가 및 지자체의 실질적인 역할 및 관계 설정 미흡, 다양한 주체 간 협업을 위한 제한 사항 존재 및 확대 실행 근거 부족
 -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시 타 계획 고려 근거 미흡
 -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 및 지역건축위원회의 사무 외 역할 및 관계 명시 부족
 - 기본계획 수립 외에 국가-지자체, 공공-민간, 학계-업계, 관계부처 간 협업 관련 명시 부재
- (대응방향) 국가-지자체, 공공-민간, 학계-업계, 관계부처 간 역할분담을 비롯하여 건축 관련 다양한 전담기구 및 센터 간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실행 근거 마련
- (주요쟁점)
 - (국가 및 지자체 역할·관계) 건축정책기본계획과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연계, 타 계획 연계, 자문 등 협의 실행구조 마련
 - (협업체계 구축) 범부처 및 관계기관 협의 강화를 위한 관련 근거 보완, 공공-민간 협업강화를 위한 민간전문가 자격기준 완화

□ 국민참여 확대

- (현황) 국민의 의무 명시, 그 외 민간전문가 참여 명시

- (문제점) 건축정책 수립·시행 및 운영에 국민참여 관련 근거 부재, 국민 모니터링 체계 부재, 범국민 차원의 건축문화진흥 활성화 필요
 - 건축정책기본계획 및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국민참여 실행근거 부족
 - 국가 및 지역 건축정책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국민 모니터링 실행 체계 부재
- (대응방향) 건축정책의 국민 체감도 향상 및 소통을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 및 교육, 홍보채널 확대 방안 마련
- (주요쟁점)
 - (국민참여 정책수립) 국민의 의무 외 권리 명시, 국가 및 지역의 주요 정책 수립시 입안과정부터 시행, 개정사항 등에 국민참여를 위한 명시 구체화
 - (국민 모니터링) 건축정책 보고 외 모니터링 관련 법령 신설을 통한 국민참여 범위 및 방법 제시
 - (건축문화진흥 활성화) 현행 법령에 근거하여 실행력 확보를 위한 계획 구체화 필요

□ 건축지수

- (현황) 심의 및 보고 등을 위한 건축 기본조사에 대해 명시
 - * 「건축법」에 따른 건축행정 평가가 있으나 건축물 관리 실태 등에 초점
- (문제점) 조사 및 평가 기준과 체계 마련을 위한 근거 부재, 국가 및 지역 건축정책에 대한 점검 기반 미흡
 - 건축정책 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 부재로 건축정책 운영에 대한 분석 기준 부재
 - 국가 건축정책과 관련하여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운영에 대한 점검 기반 미흡
- (대응방향) 도시경쟁력, 도시브랜드, 도시이미지 지수와 같이 지역의 건축문화 및 행정, 안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건축정책지표 개발 및 우수 지자체 선정
- (주요쟁점)
 - (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따른 건축정책 지표 마련) 건축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실천계획 수립, 평가, 모니터링 관련 법령 신설을 통한 건축정책 지표 구축

□ 정책실행력 확보

- (현황) 건축정책기본계획과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및 포함사항 명시, 건축정책 국회보고 명시

- (문제점) 건축기본계획에 대한 정의·구분 및 체계적 절차 명시 모호, 2년마다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시행 및 성과 등에 대한 국회보고 외 지역건축기본계획에 대한 확인 체계 부재
 - 지역건축기본계획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국가정책기본계획과 상이한 계획 수립·시행 발생
 -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성과 확산을 위한 법령 외 지원계획 부족
- (대응방향) 건축정책기본계획 및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법적 조치사항, 지역 건축정책 추진 지원 및 유도방안 등 강구
- (주요쟁점)
 - (국가-지역간 계획 구분 및 연계) 건축정책 정의 및 국가 및 지자체(광역, 기초) 계획 구분,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시행시 국가정책기본계획을 고려하도록 명시 * 기초단위의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 현황: 순천시(2007)가 유일(이후 개정 방안 등을 위한 관련 계획 수립 및 공청회 등 지속)
 - (지역건축기본계획 실행력 고려) 건축물 단위의 계획 성격을 고려하여 광역건축 기본계획(도-광역시)의 성격, 기초건축기본계획의 수립 필요성 등 검토 필요

3) 행정 분야 검토사항

□ 정책 거버넌스 및 위원회

- (현황) (국가건축정책 위원회) 건축기본법 제13조에 근거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 (민간전문가의 운영) 법 제23조에 근거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 개발 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
- (문제점) (협업 거버넌스의 미흡) 국가-지자체, 중앙부처 간 건축정책 협업을 위한 거버넌스가 구축되지 않아 부서, 지역, 또는 부처 간 유기적 연계 미흡
 - (전문위원들의 전문성) 일부지역의 경우 건축정책위원회의 역할을 건축위원회가 대신 수행하고 있어 전문성이 결여된 위원회 구성 및 역할 수행 우려
- (대응방향1) 중앙 및 지역 소통을 위한 정례 컨퍼런스를 추진하여 등 정책적 협력기반 구축
- (대응방향2) 지역건축정책위원회를 국건위원회로 임명하는 등 국건위-중앙정부-지자체 교류 확대 및 지자체 애로사항 발굴

- (대응방향3) 건축분야 개별 법령에 따른 위원회 운영 현황 검토 및 필요 시 위원회 통폐합 운영 방안 등 위원회 내실화 추진
- (주요쟁점)
 - 중앙정부-지자체간 정기 컨퍼런스(포럼, 세미나, 토론회, 워크숍 등) 개최를 위한 추진주체, 방법 논의
 - 건축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별 위원회 정비 및 관련 법 개정 검토 필요
 - 현재 개별 법령 및 조례에서 위원회의 중복 설립을 막기 위해 기존 위원회로 하여금 기능을 대신하여 명시하고 있는바 개별 위원회의 역할과 구성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한 개편방안 검토
 - * 건축 관련 위원회 : 건축위원회(건축법, 건축물관리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건축물관리점검 평가위원회(건축물관리법), 건축정책위원회, 건축디자인 조정위원회(건축기본법 및 지역조례), 공공건축심의위원회(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경관위원회(경관법)

□ 건축정책 지원 조직

- (현황) (공공건축지원센터)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4조, 제24조의2에 의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운영을 규정
 - * 건축공간연구원, 서울, 충남, 부산, 경기, 경남 등에서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
 - (건축물관리지원센터 및 건축안전센터) 건축물관리법 제39조, 제40조에 의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을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87조의2에 지역 건축안전센터 설립을 규정
 - * '20년 2월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2개 기관이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지정받았으며,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울산, 세종 등 광역시·도 중심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운영
 - (기타 조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한국토지주택공사),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 및 제11조의2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 및 지역디자인센터 설치
- (문제점) 건축기본법 제정 이후 건축 관련 신규 법령들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조직(센터) 구성·운영에 대해 규정 증가
 - 실질적인 재원 및 인력 지원이 미비한 상태에서 지자체에 위임함에 따라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운영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주로 수도권에 집중
 - * 기초지자체의 경우 건축 관련 부서가 1~2개 팀으로 구성되어 건축인허가 중심의 민원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경우가 다수

- (대응방향) 지자체 내 신규 조직으로 구성하는 방법 외에도, 국토부와 시·도지사 협의를 통해 법인으로 설치하는 등 다양한 설치방법 강구
- (주요쟁점)
 -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규 조직의 경우 지자체 여건에 따라 통합 운영 등 설치방안에 대한 다각화 필요

□ 건축기금 및 재정 분야

- (현황) (건축분야 관련 기금 및 회계) 건축안전특별회계(건축법), 건축진흥특별회계(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31조), 건축자산특별회계(한옥등건축자산법 제36조), 그린리모델링기금(녹색건축법 제28조) 등이 있음
 - (기본법에서의 특별회계 설치 규정 사례) 환경정책기본법 제45조에서는 환경 개선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관리·운영을 위해 환경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탄소중립기본법 제69조에서는 기후대응기금 설치를 규정
 - (자금 조성 사례) 국가재정법에서는 특별회계, 기금 외에도 자금을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법 제95조), 고용정책기본법은 특수법인으로 하여금 자금을 조성하도록 규정(법 제35조(실업대책사업의 자금 조성 등))
- (문제점) 건축기본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건축문화진흥을 위해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분야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재정 지원을 위한 별도의 기금 및 회계는 부재
 - 건축자산, 그린리모델링 기금 등 개별법에서 특별회계 및 기금의 사용 용도를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재원 사용의 유연성 부족
 - 특별회계는 사업의 운영, 특정 자금 운용, 특정세입으로 특정세출에 충당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각 법에 따라 사용 목적이 다른 바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설치근거를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법령 해석 및 검토 필요
- (대응방향) 특별회계, 기금 등 재원 마련을 위한 규정을 만들기 전에 근거법 검토 및 명확한 사용용도 마련
- (주요쟁점)
 - 기금과 특별회계의 설치는 「국가재정법」 별표 1(특별회계), 2(기금)에서 정하는 법률에 의해서만 그 설치가 허용
 - 건축기본법의 이념과 목적, 기금이 요구되는 사업의 범위와 재원 규모를 예측하여 특별회계 및 기금을 설치·운용하는 방안 검토

- 기금의 설치, 조성, 용도, 운용·관리, 회계기관, 이익금과 순실금의 처리 등 기금 마련 및 운용·관리를 위한 각조 개정 범위 논의
- 특별회계 설치목적을 달성하였거나, 기금 간 유사 중복되는 경우 특별회계 및 기금의 통합·폐지(국가재정법 제15조)를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 관련 특별회계 및 기금 운영 현황을 검토하여 통폐합 운영 가능성 검토

□ 건축정책 모니터링 및 성과 분야

- (현황) (건축정책 국회보고) 건축기본법 제15조에서 건축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보고서를 2년마다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회 제출
 - (지역건축정책 성과점검) 법령 및 지역 조례에서 지역건축기본계획이나 지역건축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분석은 미규정
 - 지역에서 계획 수립 시 형식적으로 전차 계획의 이행현황에 대해 분석을 수행하는 등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
- (문제점) (기본계획에 국한된 성과점검) 건축기본계획 세부단위과제 중심의 형식적인 이행현황 점검으로 건축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 미흡
 - 사업실적 중심의 성과 모니터링으로 관련계획과의 연계, 협력 및 종합평가에 대한 체계가 미흡하며 성과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낮은 실정
- (대응방향1) 성과평가의 범위와 전문성을 제고하고, 계획의 실행–모니터링–성과관리의 환류체계를 구축할 필요
- (대응방향2) 현행 건축정책 성과보고 시기 조정을 통한 계획의 탄력적 관리 및 후행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성과점검 방법 개선
- (대응방향3) 건축지수, 건축기본조사 등과 연계하여 데이터 등 건축지수 모니터링 및 성과점검을 일괄 수행 가능한 형태의 기관 지정
- (주요쟁점)
 - (성과 모니터링 전담기관의 지정 타당성) 건축정책 성과관리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 타당성 논의 필요
 - (성과점검 업무의 범위) 매2년마다 시행중인 건축정책 성과점검에 국한하지 않고 건축정책 모니터링, 정책지표 개발 등 건축정책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한 형태의 기관 지정방안 강구
 - (성과점검 전담기관 지정을 위한 보칙 신설) 건축정책 모니터링 및 성과점검 업무 성격을 명확히 하고, ‘행정업무 부여를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 또는 ‘업무의 위탁·위임’ 등 지정 방식을 고려하여 법 개정 준비

2. 건축정책에 관한 전문가 인식조사 설문지

이 조사에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축정책에 관한 전문가 인식조사

안녕하십니까?

건축공간연구원(AURI)은 건축·도시 분야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원에서는 '건축정책 실행력 제고를 위한 건축기본법 개정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 연구의 일환으로 건축 전문가를 대상으로 현행 건축기본법 및 건축정책에 대한 인식과 문제점, 개선방향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건축정책 실행력 제고를 위한 정책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바쁘시더라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 조사는 「통계법」 제33조에 의거 개인정보의 보호를 받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순수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이외의 어떠한 다른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설문 응답에 약 5~1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께는 감사의 의미로 스타벅스 음료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2년 7월

건축공간연구원

※ 본 조사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자 : 건축공간연구원 이주경 부연구위원(☎ 044-417-9658)

DQ. 응답자 특성 질문

DQ1. 귀하의 소속은 어떻게 되십니까?

- | | | |
|---------------|---------------|-------------|
| ① 공무원(지방자치단체) | ② 공무원(지방자치단체) | ③ 연구기관 |
| ④ 대학 | ⑤ 건축설계사무소 | ⑥ 기타(_____) |

DQ2. 귀하의 전문 분야는 무엇입니까?

- | | | |
|------|------|-------------|
| ① 건축 | ② 도시 | ③ 조경 |
| ④ 건설 | ⑥ 토목 | ⑦ 기타(_____) |

DQ3. 귀하의 건축 분야 업무 경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3년 미만 ② 3년~5년 미만 ③ 5~10년 미만 ④ 10년 이상

DQ5. 성별

- ① 남성 ② 여성

DQ6. 연령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A. 건축기본법, 건축기본계획의 인지도 및 활용도

A1. 정부는 건축분야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2007년 「건축기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귀하께서는 「건축기본법」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A2. 귀하께서는 다음 건축 관련 법령들에 대해 어느 정도 아십니까?

구분	매우 잘 안다	잘 알고 있다	어느정도 알고 있다	들어보기만 했다	모른다
	①	②	③	④	⑤
건축기본법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건축법					
건축물관리법					

A3. 귀하께서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다음 법령들을 어느 정도 참고하십니까?

구분	주 1회 이상	월 2~3회	년 2~3회	참고한 적 있음	없음
	(1)	(2)	(3)	(4)	(5)
건축기본법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건축법					
건축물관리법					

A4.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기본법」에 따라 “건축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건축정책기본계획”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A5. 귀하께서는 “건축정책기본계획”에 대해 어느 정도 아십니까?

매우 잘 안다	잘 알고 있다	어느정도 알고 있다	들어보기만 했다	모른다
(1)	(2)	(3)	(4)	(5)

매우 잘 안다 : 계획 수립에 참여하였거나 계획의 구조 및 세부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

잘 알고 있다 : 비전, 전략, 목표, 세부단위과제 등을 본 적이 있는 경우

어느정도 알고 있다 : 비전, 전략, 목표를 본 적이 있는 경우

A6. 귀하께서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업무에 활용하거나 참고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A7. 시·도지사는 「건축기본법」에 따라 “지역건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지역(광역) 건축기본계획”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A8. 귀하께서는 “지역(광역) 건축기본계획”에 대해 어느 정도 아십니까?

매우 잘 안다	잘 알고 있다	어느정도 알고 있다	들어보기만 했다	모른다
①	②	③	④	⑤

매우 잘 안다 : 계획 수립에 참여하였거나 계획의 구조 및 세부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

잘 알고 있다 : 비전, 전략, 목표, 세부단위과제 등을 본 적이 있는 경우

어느정도 알고 있다 : 비전, 전략, 목표를 본 적이 있는 경우

A9. 귀하께서 “지역(광역) 건축기본계획”을 업무에 활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A10. 귀하께서 업무에 주로 활용하는 ‘계획’ 또는 ‘지침’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① 건축기본계획(중앙/지방)

② 건축자산 진흥기본/시행계획

③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중앙/지방)

④ 도시·군 기본계획

⑤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⑥ 기타()

B. 건축기본법의 기본이념 및 정책방향 도출을 위한 인식조사

「건축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용어의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용을 보시고 다음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 “공간환경(空間環境)”이란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공공공간 및 경관을 말한다.
- “공공공간(公共空間)”이란 가로·공원·광장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公衆)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 “건축디자인”이란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조성으로 건축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설계하고 개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 “품격”이란 주변환경과의 관계, 규모, 형태, 구조, 재료, 시공수준 등을 통하여 그 목적과 지역의 정체성을 창출할 수 있는 적절성을 말한다.
- “품질”이란 안전, 보건, 기능, 쾌적, 자원절약과 재활용 등의 객관적 성능을 말한다.
- “건축”이란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B1. 위 정의된 용어 중 수정이 필요한 정의가 있다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건축물	② 공간환경	③ 공공공간
④ 건축디자인	⑤ 품격	⑥ 품질
⑦ 건축		

B1-1. 수정이 필요한 용어에 대해 간략히 수정방향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오.



B2. 위 정의된 용어 외 추가되어야 할 정의가 있다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건축정책	② 건축문화	③ 공공성
④ 지속가능성	⑤ 공공건축	⑥ 기타()

「건축기본법」의 기본이념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용을 보시고 다음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공동의 노력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국민의 안전 · 건강 및 복지에 직접 관련된 생활공간의 조성
2.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조정하고 수용하며 경제활동의 토대가 되는 공간환경의 조성
3. 지역의 고유한 생활양식과 역사를 반영하고 미래세대에 계승될 문화공간의 창조 및 조성

B3. 귀하께서는 현행 「건축기본법」의 기본 이념이 건축의 ‘공공적 가치 구현’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B4. 건축기본법의 기본이념이 앞으로의 인구·환경·경제·기술·정책 등의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대응할 수 있다	일부 대응할 수 있다	보통이다	잘 대응할 수 없다	전혀 대응할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B5. 건축기본법의 기본이념이 바뀌어야 한다면 어떤 부분에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B6. 2007년, 「건축기본법」 제정 당시에는 주로 “건축물의 공공성”에 초점을 맞추어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귀하께서는 “건축물의 공공성” 외에 최근 건축분야의 트렌드를 반영한 정책 기본방향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B7. 다음은 건축기본법에 의해 추구하고자 하는 ‘건축정책의 기본방향’입니다. 다음 각 항목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가치(기본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행 건축기본법에서의 ‘건축정책의 기본방향’(제7조~제9조)

- ① 건축의 생활공간적 공공성 : 모든 이용자가 생활하기 편리하고, 쾌적한 건축
 - ② 건축의 사회적 공공성 : 국민의 다양한 요구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 자원의 재이용 및 재생 촉진
 - ③ 건축의 문화적 공공성 : 건축문화자산의 보전, 지역 환경과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건축
- 추가하고자 하는 ‘건축정책의 기본방향’(신설)
- ④ 기후변화 등 재난으로부터의 지속가능성 :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건축
 - ⑤ 건축생애 과정에서의 지속가능성 : 건축생산부터 유지관리 전 과정에서의 안전과 사용가치 향상
 - ⑥ 미래기술 및 산업구조의 지속가능성 : 첨단 건축기술변화의 능동적 대응 및 건축산업 경쟁력 강화

구분	중요도 ← → 중요도							구분
	매우	상당히	약간	동등	약간	상당히	매우	
건축의 생활공간적 공공성								건축의 사회적 공공성
건축의 생활공간적 공공성								건축의 문화적 공공성
건축의 생활공간적 공공성								기후변화 등 재난으로부터의 지속가능성
건축의 생활공간적 공공성								건축생애 과정에서의 지속가능성
건축의 생활공간적 공공성								미래기술 및 산업구조의 지속가능성
건축의 사회적 공공성								건축의 문화적 공공성
건축의 사회적 공공성								기후변화 등 재난으로부터의 지속가능성
건축의 사회적 공공성								건축생애 과정에서의 지속가능성
건축의 사회적 공공성								미래기술 및 산업구조의 지속가능성
건축의 문화적 공공성								기후변화 등 재난으로부터의 지속가능성
건축의 문화적 공공성								건축생애 과정에서의 지속가능성
건축의 문화적 공공성								미래기술 및 산업구조의 지속가능성
기후변화 등 재난으로부터의 지속가능성								건축생애 과정에서의 지속가능성
기후변화 등 재난으로부터의 지속가능성								미래기술 및 산업구조의 지속가능성
건축생애 과정에서의 지속가능성								미래기술 및 산업구조의 지속가능성

C. 건축정책 실행력 제고를 위한 개선방향

건축문화 진흥 및 재정 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건축기본법은 건축문화 진흥을 위해 아래 항목에 대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고 다음 질문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기본법 제20조 제1~6호	① 건축문화 관련 시설의 설립 및 운영 ② 출판 · 전시 · 축제 등 건축문화 관련 사업 ③ 국민의 건축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④ 건축 관련 해외 진출 및 국제교류 ⑤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⑥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1~3호	⑦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보존하고 계승 ·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 ⑧ 건축문화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인 또는 단체의 설립 ⑨ 건축물과 공간환경에 관한 기록자료의 구축사업

C1. 귀하께서는 “건축정책기본계획”이 우리나라 건축문화진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C2.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다음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매우 그렇다 ①	그렇다 ②	보통이다 ③	그렇지 않다 ④	매우 그렇지 않다 ⑤
건축문화 관련 시설의 설립 및 운영					
출판 · 전시 · 축제 등 건축문화 관련 사업					
국민의 건축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건축 관련 해외 진출 및 국제교류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보존하고 계승 ·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					
건축문화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인 또는 단체의 설립					
건축물과 공간환경에 관한 기록자료의 구축 사업					

C2-1. 위 사업들이 추진이 잘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C3. 다음 사업들이 건축문화 진흥에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건축문화 관련 시설의 설립 및 운영					
출판·전시·축제 등 건축문화 관련 사업					
국민의 건축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건축 관련 해외 진출 및 국제교류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보존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					
건축문화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인 또는 단체의 설립					
건축물과 공간환경에 관한 기록자료의 구축 사업					

C4. 건축기본법에서는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재정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위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금 또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 할 근거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C5. 위 항목 외 건축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건축기본법 이후에 제정된 관련 법령들입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고 다음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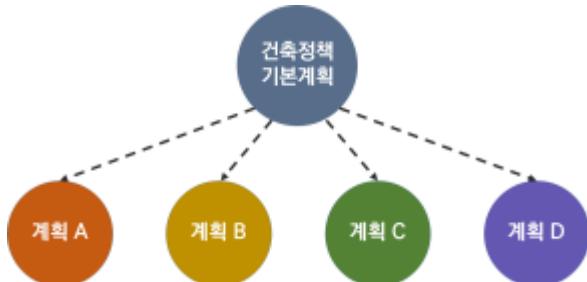
[참고] 건축 관련 법 제·개정에 따른 신규 계획

제정시기	법령	계획 명
2007	건축기본법 제정	건축정책기본계획(1차 2010~2014, 2차 2016~2020, 3차 2021~2025)
2012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정	녹색건축물 기본계획(1차 2014~2018, 2차 2020~2024)
2013	공시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2016)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1차 2019~2023)
	경관법 전부개정	경관정책 기본계획(1차 2014~2019, 2차 2020~2024)
2014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2014)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1차 2016~2020, 2차 2021~2025)
2019	건축물관리법	건축물 관리계획 작성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16호)

C6. 건축기본법 이후 건축관련 신규 법령 제정 및 그에 따른 법정계획이 다양하게 수립되고 있습니다. 건축정책기본계획이 관련된 계획들과 어떠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건축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조정·제시하는
종합 또는 상위 계획의 역할 ② 동등한 법적 위상의 계획으로 독립된 계획
이자 필요 시 상호 보완하는 계획

① 건축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조정·제시하는 종합 또는 상위 계획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기본계획,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등 건축정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총괄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② 동등한 법적 위상의 계획으로 독립된 계획이자 필요 시 상호 보완하는 계획
개별 법정계획과 마찬가지로 건축기본법에 국한된 계획이자 필요시 일부 계획 및 사업 내용을 공유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



C4. 건축 및 공간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해 건축정책기본계획이 범부처 계획으로서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 내에 근거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건축정책기본계획 및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고 다음 질문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건축정책 기본계획 및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 주요 절차

건축정책 기본계획 수립 절차(법적 의무 절차)

: 계획 착수 → 공청회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 → 대통령 보고 → 계획 고시

지역 건축기본계획 수립 절차(법적 의무 절차)

: 계획 착수 → 공청회 → 시·도 의회 의견청취 → 지역 건축정책위원회 심의 → 계획 고시

C5. 건축정책기본계획과 지역건축기본계획은 매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획목표 기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5년(현행)	10년
	①	②
국가 건축정책 기본계획		
지역 건축기본계획		

*5년 : 현행 시간적 범위가 적당하다

*10년 : 중장기 계획으로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필요시 수정계획이 되어야 한다

C6. 귀하께서는 계획 수립 과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간소화가 필요하다	현재가 적당하다	더 강화되어야 한다
	①	②	③
국가 건축정책 기본계획			
지역 건축기본계획			

C7. (건축정책 기본계획) 간소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부분에서 간소화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공청회

②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

C8. (지역건축기본계획) 간소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부분에서 간소화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공청회

② 시·도의회 의견청취

③ 건축정책위원회 심의

C9. 계획 수립 절차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서술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건축정책 성과점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고 다음 질문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건축정책 및 국토정책 성과점검의 근거와 범위

건축정책 국회보고에 따른 건축정책의 성과점검 범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에 따른 성과점검 범위
1.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성과 등에 관한 사항 2. 미래사회의 건축환경 변화 전망 및 대책 3.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과 사업 등에 관한 사항 4. 건축환경, 문화 창달을 위한 지역의 풍토성 및 전통성 계승에 관한 시책 5. 건축제도·기준 등의 국제화에 관한 사항 6. 건축기술·건축설계의 발전,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1. 국토계획의 수립 및 관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하여 추진된 시책과 추진하려는 시책 3. 지역개발 현황 및 주요 시책 4. 사회간접자본의 현황 5. 국토자원의 이용 현황 6. 국토 환경 현황 및 주요 시책 7. 용도지역별 토지이용 현황 및 토지거래 동향 국토모니터링 주요 내용 1. 국토 현황의 시계열·부문별 분석 및 향후 여건 변화 전망 2. 국토 현황 및 향후 여건 변화 전망에 대한 국민의 의식 3. 국토종합계획과 국토계획평가 대상이 되는 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한 진단 및 평가

C11. 귀하께서는 현재 건축정책에 대한 성과점검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C10. 「건축기본법」 제15조에 근거하여 매 2년마다 건축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보고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건축정책 국회보고 또는 성과점검 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년 시행
- ② 매 2년 시행(현행)
- ③ 건축정책 기본계획의 중간과 종료 시점 각 1회
- ④ 건축정책 기본계획 종료 시점 1회
- ⑤ 국회보고 또는 성과점검 불필요

C12. 국토기본법에서는 국토의 변화상과 국토계획 및 국토정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국토모니터링 추진 및 세부 내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건축정책 분야도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성과점검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C13. 건축 관련 데이터 및 플랫폼과 관련하여 세움터, 생애이력, 민간개방, 한국건축규정, 건축자재 플랫폼 등 여러 정보체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축기본법」에 건축 HUB를 확대하여 여러 정보체계와 통합 플랫폼으로서 기능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C14. 그 밖에 건축정책 실행력 제고를 위한 개선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롭게 서술하여 주십시오.

